

이 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 부담금운용에 관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2026. 5.



기획예산처

목 차

제1편 부담금 총람	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3
제2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4
1. 부담금의 개념	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	5
(1) 조세와의 차이	5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5
(3) 준조세와의 관계	8
3. 부담금의 분류	9
4. 부담금의 기능	10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10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11
제3장 부담금 관리제도	12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12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14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14
(2)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14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17
(4) 부담금운용 평가	17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2
제4장 2025년도 부담금 현황	23
1. 부담금 수 현황	23
(1) 2025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23
(2) 부처별 부담금 수	23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24

2. 부담금 징수실적	26
(1) 부처별 징수실적	26
(2) 주요 증감사유	27
3. 부담금 사용내역	29
(1) 총 부담금 내역	29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31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34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37
(5)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39
(6)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내역	41
(7) 분야별 사용내역	43

제 2 편 부담금별 현황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47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49
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6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1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79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7
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97
7.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107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15
제2장 재정경제부 소관	123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25
2. 외환건전성부담금	131
제3장 교육부 소관	139
1. 학교용지부담금	141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53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55
제5장 외교부 소관	165
1. 국제교류기여금	167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76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85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187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95
1.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
2.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206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213
4.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26
5.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36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43
1. 농지보전부담금	245
2. 농산물 공매납입금	258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267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273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280
5. 대체초지조성비	287
6. 축산물수입이익금	295
7. 농산물수입이익금	301
제9장 산업통상부 소관	309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311
2.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321
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329

4.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341
5. 안전관리부담금	347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355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7
제11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367
1. 대기배출부과금	369
2. 원인자부담금(수도법)	382
3. 수질배출부과금	390
4. 생태계보전부담금	404
5. 폐기물부담금	414
6. 재활용부과금	427
7. 원인자부담금(하수도)	435
8.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446
9. 환경개선부담금	454
10. 공공폐수처리처리시설 부담금	465
11.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473
12. 물이용부담금(낙동강)	482
13.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	493
1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504
1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11
16.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520
17. 지하수이용부담금	527
18. 폐기물처분부담금	541
19.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550
20. 전력산업기반금 부담금	557
2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567
2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_폐지	575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597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599
2. 장애인 고용부담금	608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621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23
2. 개발부담금	631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44
4. 원인자부담금(도로법)	661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670
6. 혼잡통행료	679
7. 교통유발부담금	687
8.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727
9. 과밀부담금	735
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744
11. 소음부담금	753
12. 재건축부담금	762
1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74
14.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81
1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788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797
1.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799
2. 수산자원조성금	805
3. 방제분담금	815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22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39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47
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856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63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865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876
제16장 산림청 소관	883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885
2. 임산물수입이익금	896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903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905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921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923
제19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931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933
<부 록>	949
1. 개별 부담금 개요	951
2. 부처별 부담금 현황	999

표 목 차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6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23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25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26
<표 4-4>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27
<표 4-5>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28
<표 4-6>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28
<표 4-7>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29
<표 4-8>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30
<표 4-9>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32
<표 4-10>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35
<표 4-11>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8
<표 4-12>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0
<표 4-13>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42
<표 4-14>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43

그림 목 차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16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24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24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29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31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34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7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9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41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43

제 1 편 부담금 총람

제 1 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함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세부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부담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부담금 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지침에 따라 소관 부담금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부처에서 제출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6년에 제출되는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크게 제1편과 제2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부담금의 총괄적인 사항, 제2편은 개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한 부담금별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제1편은 본 장 이후 부담금의 개념 및 유사 개념과의 차이, 부담금의 기능 등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제2장), 부담금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제3장), 2025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및 징수실적과 증감사유 등 2025년도 부담금 운용현황(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1. 부담금의 개념

- 법적 개념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특 징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개념에는,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²⁾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1) 일반적 재정충당과 달리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징수목적과 특별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

(1) 조세와의 차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납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한편, 각종 행정제재금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나 처벌을 위해 부과되고 있다.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사회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 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 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됨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부담금 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사용료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됨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행정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의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3) 준조세와의 관계

준조세는 법정용어가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은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준조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성금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성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경우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불하는 경우 등 서로 다양한 목표와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을 막연하게 준조세라고 통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 중 반대급부가 명백한 것과 사회적 비용유발 및 질서위반에 의한 제재(制裁, 벌과금)를 제외한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경제적 부담 가운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별표]에 규정된 것을 일컫는다. 이는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는 준조세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부담주체에게 비자발적인 금전적 지출을 하게 하나, 부과 주체와 해당 공익사업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엄격한 관리제도 아래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준조세’와 같은 등식관계 등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3. 부담금의 분류

-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 다양하게 구분
- 경계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중첩되는 등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부담금의 기능

■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

부담금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부담금의 기능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 확보가 연계된다는 측면이 있다.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개별 부담자가 정부의 제반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이나 공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원인에 따라 비례하도록 부담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각종 공공사업에서 그들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유발시킨 추가 비용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행 부담금 중 일부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의 측면도 있다. 즉, 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한다.

반대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적인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반가치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도 한다.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이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다.

제 3 장 부담금 관리제도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그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행정기관은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징수 증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생겨 사업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도 동일한 행위에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존재할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경제단체에서 준조세가 634건에 달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기하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였다.³⁾

3)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준조세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경제단체가 준조세로 지칭하는 것에는 공적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부해야 하는 것, 법규 불이행에 따르는 징벌적 성격의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경제단체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2000년 12월, 국민여론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은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어 존재근거를 상실했거나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힘든 부담금을 정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수도권 집중 억제라든가 환경 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부담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는 정비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되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29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여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요율상한을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다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부담금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
- 매년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징수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를 작성, 국회 제출(동법 제7조)
-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실태,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 (동법 제8조)
- 매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국회 제출 (동법 제6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재원을 부과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부담금 정비와 아울러 신규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부담금 운용내역에 관한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2)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부담금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 신설·변경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신설·변경시의 심사기준으로 첫째, 부담금을 신설·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셋째,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넷째,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섯째,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여섯째,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신설·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에는 계획서의 내용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담금 신설·변경 목적 및 그 필요성, 부과 및 징수주체, 부과요건, 징수액의 사용목적 등 부담금의 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결과 등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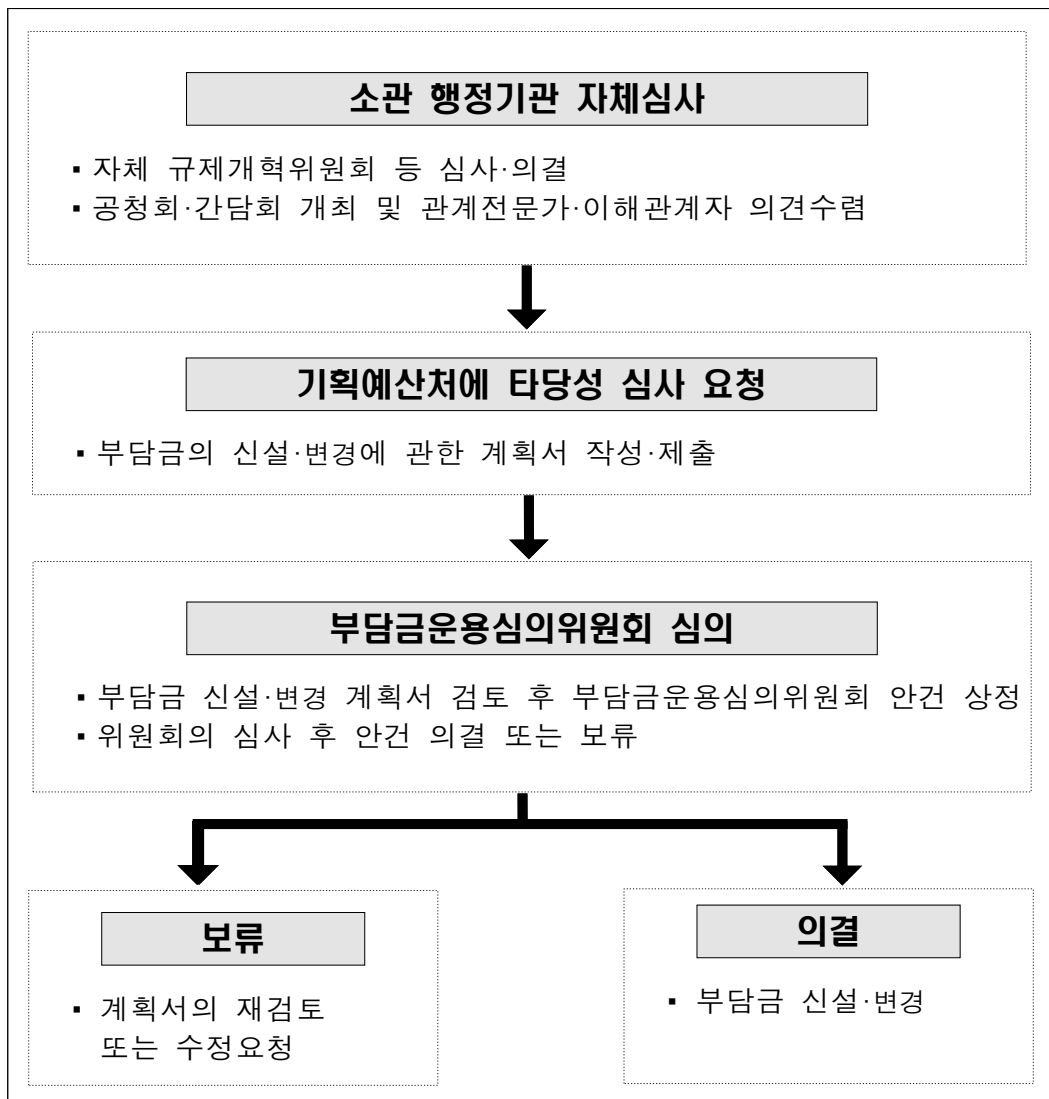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절차는,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인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부담금 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같은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그밖에 부담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부담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절차를 거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에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4) 부담금운용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서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단은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개별 부담금 및 부담금 관리제도, 부담금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담금 평가결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으며 향후 부과가능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부담금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한시적 부담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부담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 발전기금 징수금 등 6개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200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고, 평가단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개 부담금 폐지를 포함하는 19개 부담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결과, 19개 정비 대상 부담금 중 14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환경, 건설, 해양, 산업·금융,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부담금 통·폐합,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을 폐지하고, 8개의 예치금·보증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시행되었다.

2010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29개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한 평가와 연안 정비사업 원인자 부담금 등 9개 유사부담금에 대해 부담금법 관리 대상 포함여부를 검토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부담금법 관리대상이 아닌 유사부담금 4개를 정비하였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의 산정기준 합리화 및 사용용도 합리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산업·금융·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41개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밖의 유사부담금 107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개 부담금의 일몰기한 설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판매 부가금 등 4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배출 부과금 등 4개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환경개선 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의 납부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건설 분야 등 32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 타당성 등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정비, 납부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부과징수 및 사용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금융, 산업, 환경, 문화 분야 부담금 40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는 5개 부담금의 재정 편입,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요율산정방식 개선,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율 제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등 23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율 등 산정방식 개선,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사용 용도 개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 인하 및 사용용도 구체화, 외교분야 부담금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비용 부담금의 부과요율 적정성 검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교통, 해양수산 등 24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소음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방제분담금 등 감면면제 조항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산업·금융·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42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폐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조건부 폐지, 생태계보전협력금·재활용부과금·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농림·보건·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부담금 23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의 일부에 대해 유사 부담금과 통합 추진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9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교통·금융·해양수산·환경 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부담금 통합징수, 징수율 제고, 산정기준 연속성 제고, 권리구제(이의신청, 환급 등) 강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0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문화·산업·환경 분야 부담금 34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회원제골프장 부담금 폐지, 부과기준 개선, 징수 제고, 가산금 규정 마련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1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과학기술·농림·보건·의료 분야 부담금 23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등 부과요건 적정성 검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권리구제절차 마련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2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교통·금융·해양수산·환경 분야 부담금 31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의 관리대상 제외, 과밀부담금, 방제분담금 등 부과기준 적절성 검토, 사용용도·징수율 개선, 시설부담금 등 권리구제절차 마련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문화·산업·환경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부과 타당성 검토,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관리대상 제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효율의 적정성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2024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농업·고용·보건 분야 부담금 19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3개의 부담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하여 부과기준의 적절성, 권리 구제절차, 증가산금 효율의 적정성, 징수율 실적 등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였다.

2025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해수·금융 분야 부담금 25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소음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 부과기준 적절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광역시설교통금,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등 징수율 개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절차를 거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 4 장 2025년도 부담금 현황

1. 부담금 수 현황

■ 2025년 말 기준 부담금은 총 82개로 전년대비 8개 감소

■ 부담금 수 : ('21년) 90개 → ('22년) 90개 → ('23년) 91개 → ('24년) 90개 → ('25년) 82개

(1) 2025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2025년 말 기준 부담금 수는 총 82개로 전년대비 8개 감소하였다.

(2) 부처별 부담금 수

2025년 기준 19개 부처가 총 82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는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21개 부담금을 운용중이고, 국토교통부 15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7개, 해양수산부 6개, 산업통상부 5개, 문화체육관광부가 4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각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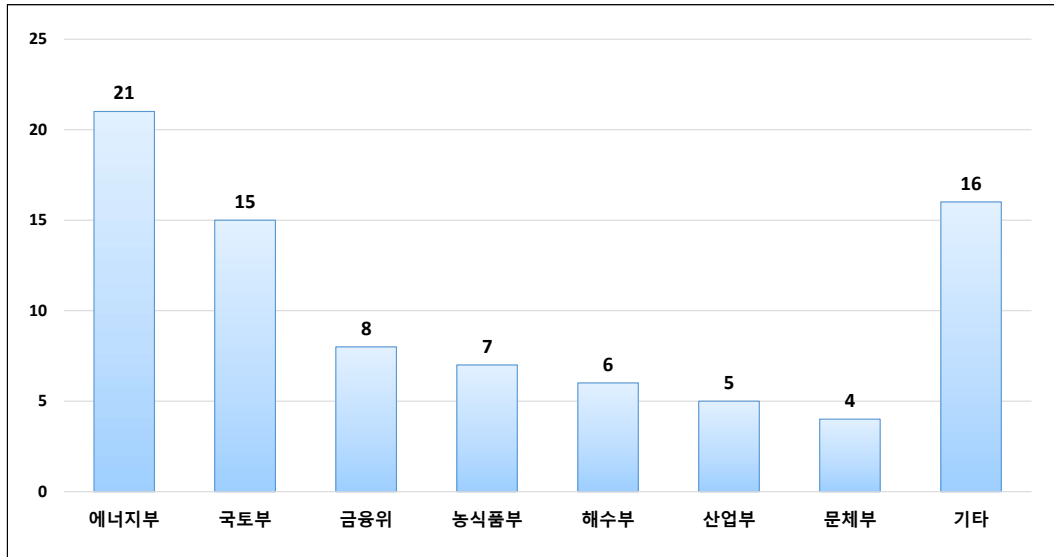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25년 말 기준)

합계	기후 에너지 환경부	국토 교통부	금융 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해 양 수 산부	산업 통상부	문화체육 관광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82	21	15	8	7	6	5	4	각 2	각 1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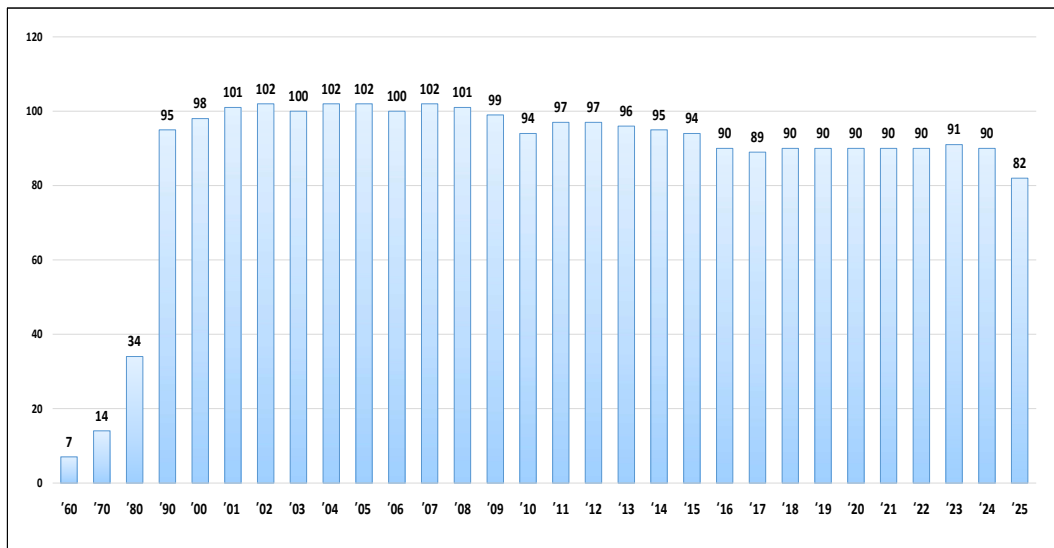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1961년에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개)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개)

'60 년 대	'70 년 대	'80 년 대	'90 년 대	'00	'01	'02	'03	'04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23	'24	'25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0	102	101	99	94	97	97	96	95	94	90	89	90	91	90	82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총 34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보전요구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100여개의 부담금을 유지하다, 2010년 부담금 성격이 있는 존치 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을 제외하여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97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2013년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고, 2014년에는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2015년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총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6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분리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출연금에서 분리)되었고, 한강 수계 수질총량초과 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총 90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7년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89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고 2018년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2023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 신설됨에 따라 91개의 부담금을 운영하였다. 2024년에는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어 총 90개 부담금을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이 폐지되어 총 82개 부담금을 운영 중이다.

2. 부담금 징수실적

■ 2025년도 징수실적: 23.4조 원 ('24년 24.2조 원 대비 3.3% 감소)

(1) 부처별 징수실적

2025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23조 4,391억 원으로 전년대비 8,038억 원 (3.3%)이 감소하였다.

2025년도에 부담금을 운용한 19개 부처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장 많은 6조 4,722억 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7.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5조 7,665억 원으로 24.6%를, 보건복지부가 2조 8,771억 원으로 12.3%를, 국토교통부가 1조 5,011억 원으로 6.4%를, 산업통상부가 1조 3,561억 원으로 5.8%를 차지하였다.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1	기후에너지환경부	55,651 (27.6%)	10	교육부	3,404 (1.5%)
2	금융위원회	57,665 (24.6%)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65 (0.9%)
3	보건복지부	28,771 (12.3%)	12	산 립 청	1,683 (0.7%)
4	국토교통부	15,011 (6.4%)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568 (0.7%)
5	산업통상부	13,561 (5.8%)	14	재정경제부	1,403 (0.6%)
6	고용노동부	13,184 (5.6%)	15	원자력안전위원회	1,244 (0.5%)
7	중소벤처기업부	11,712 (5.0%)	16	해양수산부	912 (0.4%)
8	농림축산식품부	10,518 (4.5%)	17	외교부	906 (0.4%)
9	문화체육관광부	5,844 (2.5%)	18	행정안전부	73 (0.03%)
			19	식품의약품안전처	47 (0.02%)
합 계		234,391			

징수실적 상위 7개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복지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의 부담금 총액이 19조 5,555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3.4%를 차지한다.

징수실적 하위 5개 부처(원안위·해수부·외교·행안부·식약처)의 부담금 총액은 3,182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4%를 차지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244억 원, 해양수산부 912억 원, 외교부 906억 원, 행정안전부 7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7억 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2) 주요 증감사유

2025년도에 전년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37개로 총 1조 4,184억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부담금은 36개로 총 5,690억 원이 감소하였다. 반면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5개로 나타났다.

2025년도에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부담금은 은행권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1,368억 원),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955억 원), 정비사업 및 분양 사업 증가에 따라 증가한 학교용지 부담금(+340억 원) 등이 있다.

<표 4-4>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단위: 억 원)

부담금명	'24실적 (A)	'25실적 (B)	증감 (B-A)		주요 증가 사유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3,028	4,396	1,368	45.2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5.3월)으로 인한 은행권 출연요율 인상 * 요율 : 0.035 → 0.06%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3,128	4,083	955	30.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24.6월)에 따른 출연요율 인상 * 요율 0.04 → 0.05% 상향, (단, '24.6~'27.5월까지 2년간 0.07%)
▪ 학교용지 부담금	3,064	3,404	340	11.1	• 재개발 사업 및 분양 사업 증가 * ①핵심지 정비사업 재개(서울, 대전, 부산), ②산단배후 수요(천안/아산)

2025년도에 징수액이 크게 감소한 부담금은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담금 제도 개편에 따른 요율 인하로 전년대비 3,112억 원 감소하였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795억 원 감소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요율 인하 등으로 1,124억 원 감소하였다.

<표 4-5>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단위: 억 원)

부 담 금 명	'24실적 (A)	'25실적 (B)	증감 (B-A)		주요 감소 사유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0,782	27,670	△3,112	△10.1	· 부담금 제도 개편에 따른 요율 인하 * (~'24.6월) 3.7 → ('24.7~'25.6월) 3.2 → ('25.7월~) 2.7%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31,566	28,771	△2,795	△8.9	· 담배 반출량의 구조적 감소 - 인구감소, 액상형 전자담배 등 대체 상품 등장 * ('24) 3,558 → ('25) 3,501백만갑
· 농지보전부담금	10,000	8,877	△1,124	△11.2	·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요율 인하 * 개별공시지가의 30 → 20%

2025년도에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등 총 5개이며, 모두 징수금액이 없다.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택지개발촉진법) 등 3개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없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광물 수입·판매부과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은 인삼수입권 공매입찰 수요가 없어 '18년을 제외하고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다.

<표 4-6>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부 담 금 명	비 고
■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부담금 부과대상 없음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택지개발촉진법)	
■ 광물 수입·판매부과금(광업법)	·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법령 미비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납부금 (인삼산업법)	· 징수 실적 없음 - 인삼 수입권 공매입찰 수요 없음

3. 부담금 사용내역

■ 부담금 사용내역

- 중앙정부: 기금 17.1조 원(73.0%), 특별회계 2.7조 원(11.4%)
- 지방자치단체: 2.6조 원(11.2%) ■ 공공기관 등: 1.0조 원(4.3%)

(1) 총 부담금 내역

2025년도에 징수된 총 23조 4,391억 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4.4%인 19조 7,960억 원이 중앙정부의 기금(17조 1,214억 원)과 특별회계(2조 6,746억 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1.1%인 2조 6,269억 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597억 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5,672억 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4.3%인 1조 162억 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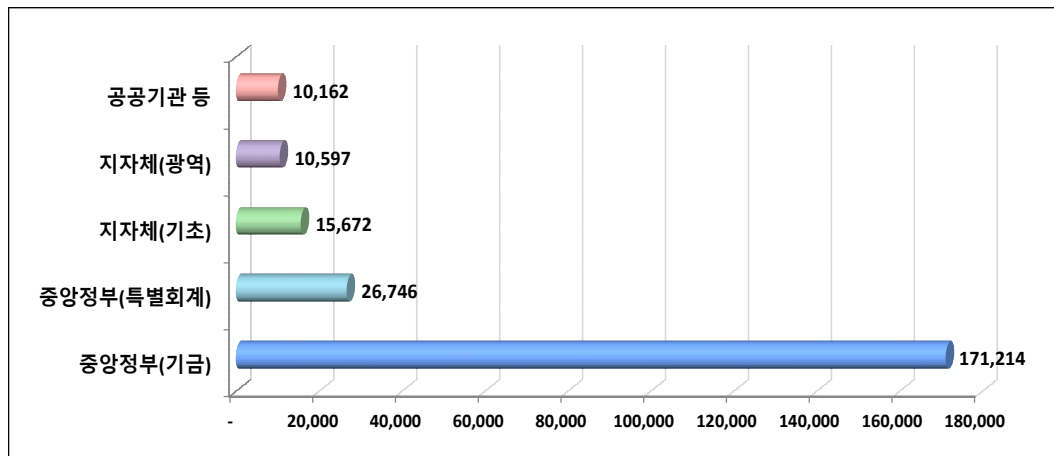
<표 4-7>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 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금 액	171,214	26,746	10,597	15,672	10,162	234,391
(비 중)	(73.0)	(11.4)	(4.5)	(6.7)	(4.3)	(100.0)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단위: 억 원)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부담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산림청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교육부·행정안전부의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은 모두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되었다.

반면 부담금이 두 주체 이상 배분되어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귀속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귀속되었다.

<표 4-8>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 원)

소관부처	부담금 합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합 계	234,391	171,214	26,746	10,597	15,672	10,162
금융위원회	57,665	53,039	-	-	-	4,626
재정경제부	1,403	1,275	-	-	-	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65	2,165	-	-	-	-
교육부	3,404	-	-	3,324	80	-
외교부	906	906	-	-	-	-
행정안전부	73	-	-	26	47	-
문화체육관광부	5,844	5,824	-	-	0.1	20
농림축산식품부	10,518	9,712	-	162	548	96
산업통상부	13,561	16	13,544	-	-	-
보건복지부	28,771	28,771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64,722	45,107	6,857	2,793	9,111	854
고용노동부	13,184	13,184	-	-	-	-
국토교통부	15,011	141	4,662	4,291	5,885	31
해양수산부	912	634	-	1	1.2	276
중소벤처기업부	11,712	7,628	-	-	-	4,084
산림청	1,683	-	1,683	-	-	-
원자력안전위원회	1,244	1,244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47	-	-	-	-	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568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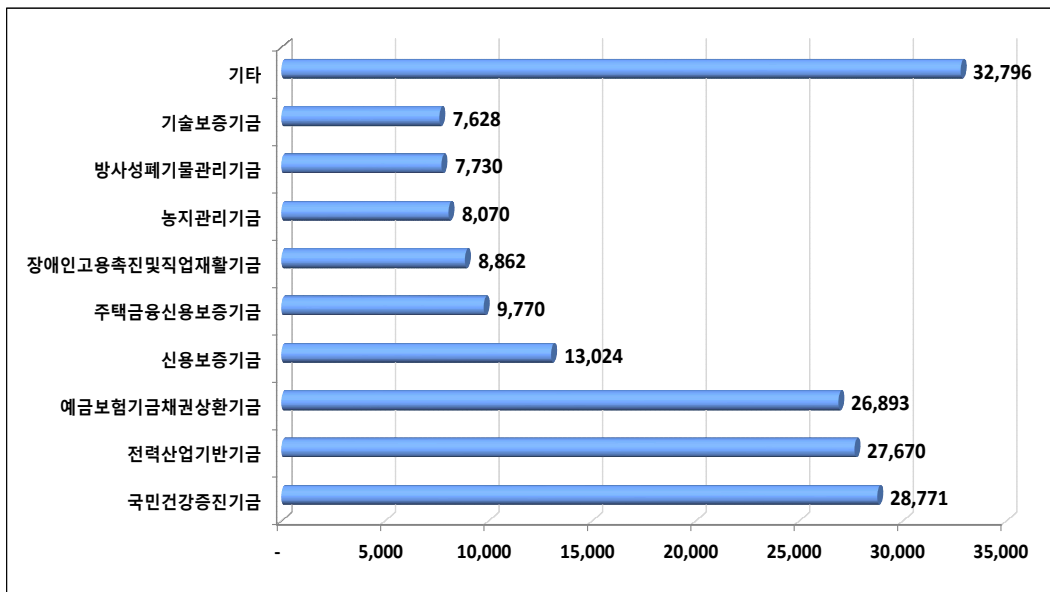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2025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73.0%인 17조 1,214억 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기금별 부담금 귀속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조 8,771억 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조 7,670억 원(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2조 6,893억 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등이다.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단위: 억 원)



<표 4-9>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기 금 명	'25년 기금 귀속액
	합계	17,202,091		17,121,447
	소 계	5,303,880		5,303,880
금융 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893,19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93,19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219,24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9,246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302,370	신용보증기금	1,302,370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115,961	공적자금상환기금	115,9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2,689,33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689,33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83,77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3,771
재경부	외환건전성부담금	127,504	외국환평형기금	127,504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216,525	원자력기금	216,525
방미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156,756	방송통신발전기금	156,756
외교부	소계	90,629		90,629
	국제교류기여금	49,565	국제교류기금	49,565
	출국납부금	41,064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일반회계 귀속)	41,064
문화체육 관광부	소계	582,434		582,434
	출국납부금	262,445	관광진흥개발기금	262,445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71,805		271,805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22,449	영화발전기금	22,449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5,735	국민체육진흥기금	25,735
농림축산 식품부	소계	1,051,809		971,170
	농지보전부담금	887,666	농지관리기금	807,027
	농산물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	85,64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5,641
	대체초지조성비	2,469	축산발전기금	2,469
	축산물수입이익금	3,069		3,069
	농산물수입이익금	26,1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134
	양곡수입이익금(콩,메밀등)	46,830		46,8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		-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기 금 명	'25년 기금 귀속액
산업부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1,64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1,648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877,124	국민건강증진기금	2,877,124
기후 에너지부	소계	4,510,678		4,510,678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481,943	한강수계관리기금	481,943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130,410	금강수계관리기금	130,410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224,7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719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법)	94,57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4,57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39,103	석면피해구제기금	39,103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766,975		2,766,975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772,95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72,956
고용부	소계	1,318,375		1,318,375
	사업주부담금	432,153	임금채권보장기금	432,153
	장애인고용부담금	886,2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86,222
국토 교통부	소계	14,130		14,125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사업분담금	14,12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4,120
	재건축부담금	10	주택도시기금	5
해양 수산부	소계	63,377		63,377
	수산물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0,212	수산발전기금	60,21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659		2,659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506		506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금	762,849	기술보증기금	762,849
원자력안 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124,373	원자력기금	124,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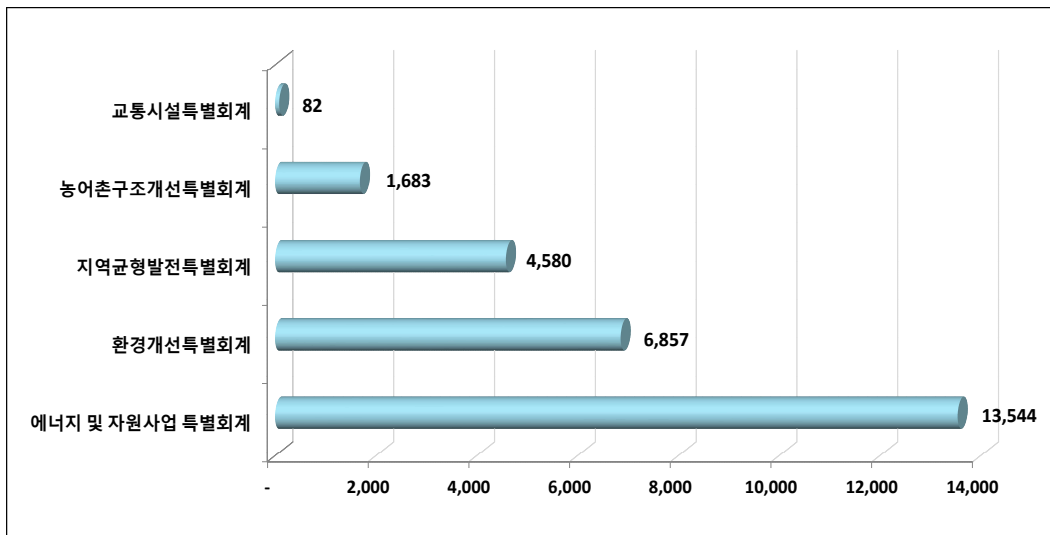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2025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11.4%인 2조 6,746억 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의 중앙정부 특별회계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특별회계별 부담금 귀속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1조 3,544억 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 3개)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6,857억 원(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10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4,580억 원(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4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가 1,683억 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등 2개),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82억 원(소음부담금 등 3개)이다.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단위: 억 원)



<표 4-10>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단위: 백만 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특별회계명	'25년 특별회계 귀속액
	합계	3,141,115		2,674,565
산업부	소계	1,354,407		1,354,4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210,1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10,180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13,373		13,373
	안전관리부담금	130,854		130,854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기후 에너지부	소계	685,667		685,667
	배출부과금(대기환경 보전법,환경오염시설법)	34,149	환경개선 특별회계	34,149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 법,환경오염시설법)	8,247		8,247
	생태계보전부담금	59,407		59,407
	폐기물부담금	224,747		224,747
	재활용부과금 (자원재활용법)	25,419		25,419
	환경개선부담금	143,080		143,08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666		2,66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1,453		1,453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1,422		1,422
	폐기물처분부담금	185,077		185,077
국토 교통부	소계	932,791		466,24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37,96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7,969
	개발부담금	448,360		224,2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9,773		63,909

(단위: 백만 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특별회계명	'25년 특별회계 귀속액
	과밀부담금	63,892	교통시설 특별회계	31,946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114,626		46
	소음부담금	8,100		8,100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71		71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법)	-		-
산림청	소계	168,2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68,2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165,244		165,244
	임산물수입이익금	3,006		3,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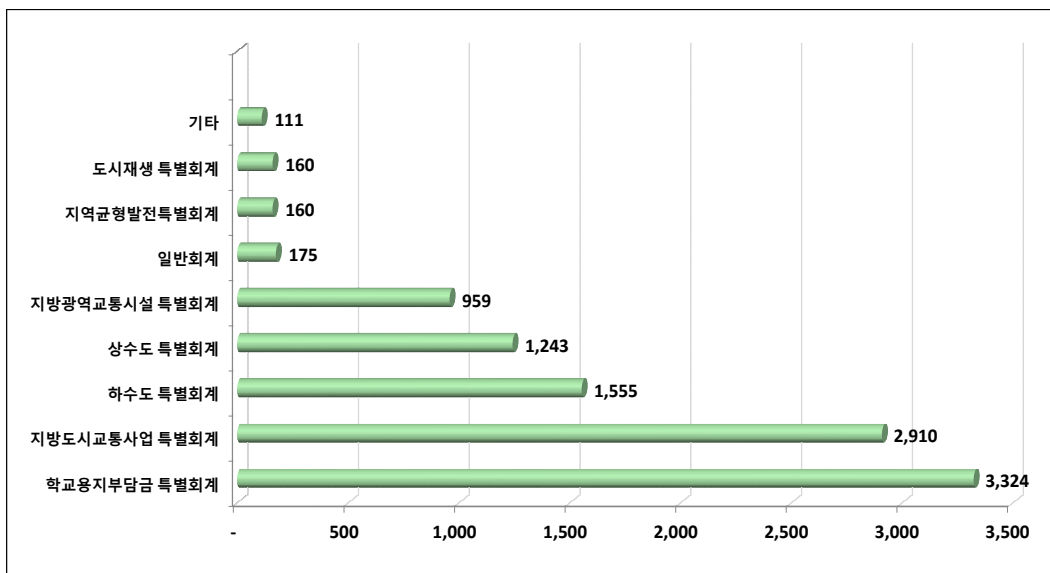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2025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4.5%인 1조 597억 원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324억 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가장 많고,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910억 원(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으로 가장 많고, 하수도 특별회계 1,555억 원(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상수도 특별회계 1,243억 원(원인자부담금-수도법,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959억 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회계 175억 원(농지보전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160억 원(과밀부담금), 도시재생 특별회계 160억 원(과밀부담금) 등이다.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단위: 억 원)



<표 4-11>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단위: 백만 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귀 속 회 계 명	'25년 광역자치 단체 귀속액
	합 계	3,203,815		1,059,736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340,41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32,418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	7,259	상수도 특별회계	2,572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887,666	일반회계	16,201
기후 에너지부	소계	1,190,396		279,307
	원인자부담금-수도법	370,307	상수도 특별회계	121,733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807,136	하수도 특별회계	155,499
	지하수이용부담금	12,953	지하수 특별회계	905
			일반회계	1,170
국토 교통부	소계	777,864		429,14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9,773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95,864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20,100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0,100
	혼잡통행료	5,874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874
	교통유발부담금	527,951		285,094
	과밀부담금	63,89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97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15,973
	재건축부담금	10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264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262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216	일반회계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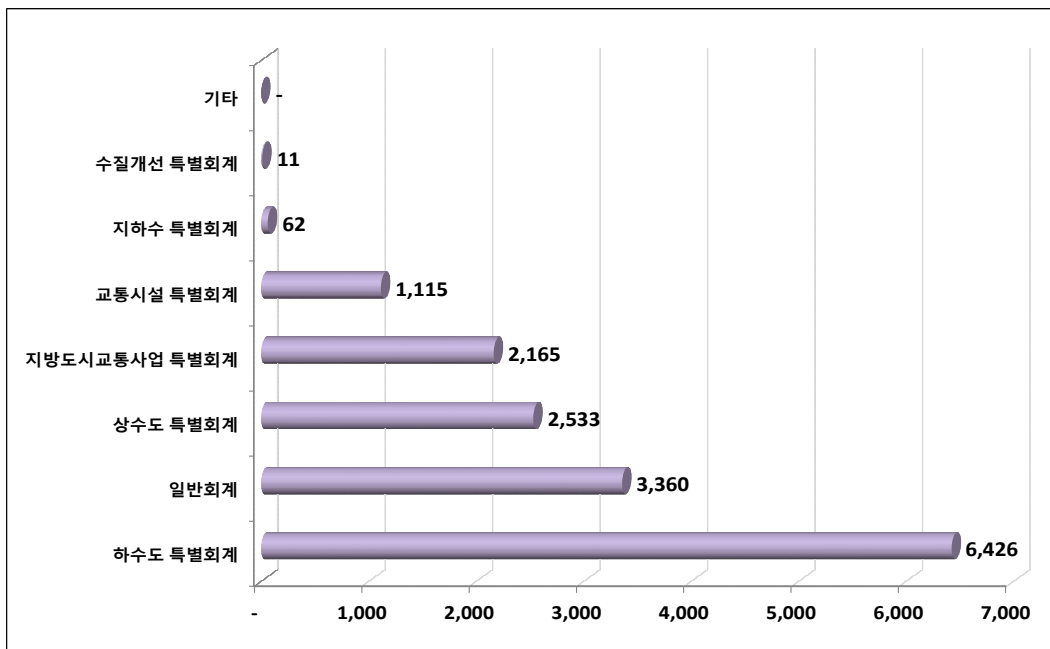
(5)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2025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6.7%인 1조 5,672억 원이 하수도 특별회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액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6,426억 원(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으로 가장 많고, 일반회계가 3,360억 원(개발부담금 등 8개), 상수도 특별회계가 2,533억 원(원인자부담금-수도법 등 2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165억 원(교통유발부담금) 등이다.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단위: 억 원)



<표 4-12>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단위: 백만 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귀속 회계명	'25년 기초자치 단체 귀속액
	합 계	3,539,225		1,567,241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340,414	일반회계	7,996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의수익자분담금	7,259	상수도특별회계	4,687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 자분담금	1,963	일반회계	13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887,666	일반회계	54,812
기후 에너지부	소계	1,190,396		911,089
	원인자부담금-수도법	370,307	상수도특별회계	248,574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807,136	하수도특별회계	642,631
			수질개선특별회계	1,165
			일반회계	7,841
	지하수이용부담금	12,953	지하수특별회계	6,171
			일반회계	4,707
국토 교통부	소계	1,111,311		588,523
	개발부담금	448,360	일반회계	224,160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 시설의설치비용부담금	20,100		10,000
	원인자부담금-도로법	114,626	교통시설 특별회계	111,501
	교통유발부담금	527,951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6,460
			일반회계	26,398
	재건축부담금	10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2
	기반시설설치비용부과금	26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
해양 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216	일반회계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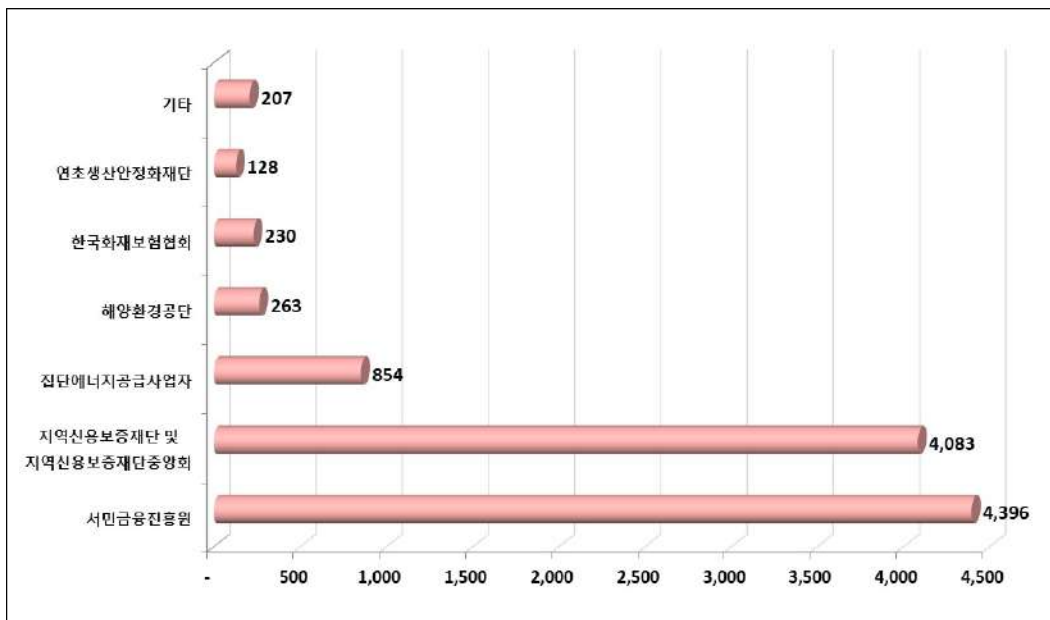
(6)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내역

전체 부담금 중 4.3%인 1조 162억 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4,396억 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4,083억 원(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854억 원(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그 외 기관에 828억 원(해양환경공단 등)이 귀속되었다.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단위: 억 원)



<표 4-13>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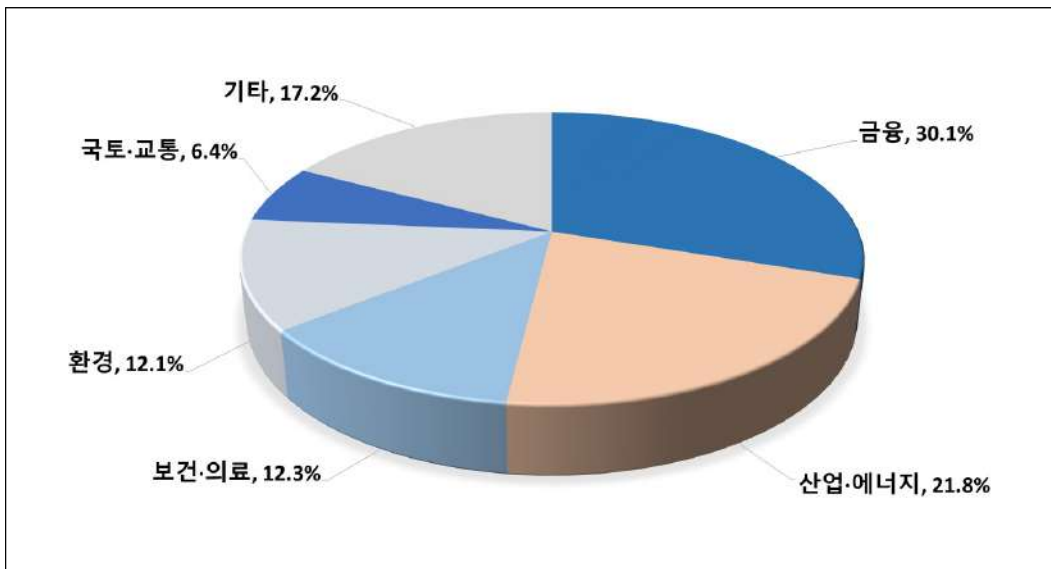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소 관	부담금명	'25년 징수실적	귀속기관 등	'25년 공공기관 등 귀속액
	합 계	2,005,748		1,016,148
금융 위원회	소계	462,620		462,620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23,047	한국화재보험협회	23,047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439,573	서민금융진흥원	439,573
재경부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 위한출연금	12,80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12,806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지등지원시설이용자 분담금	1,963	경북문화관광공사등	1,950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887,666	농어촌공사	9,626
기후 에너지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 비용부담금	85,428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	85,428
국토 교통부	원인자부담금-도로법	114,626	도로공사	3,079
	공공시설설치비용부담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양 수산부	소계			33,322
	방제분담금	26,252	해양환경공단	26,252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1,3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319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및신용 보증재단중앙회출연금	408,348	지역신용보증재단및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8,34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4,72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720

(7) 분야별 사용내역

2025년도에 징수된 부담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에 30.1%인 7조 652억 원, 산업·에너지 분야에 21.8%인 5조 1,058억 원, 보건·의료 분야에 12.3%인 2조 8,818억 원, 환경 분야에 12.1%인 2조 8,468억 원, 국토·교통 분야에 6.4%인 1조 5,011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그 밖의 기타 분야에 17.2%인 4조 384억 원이 사용되었다.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표 4-14>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단위: 억 원, %)

	금 융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환 경	국토·교통	기 타	합 계
금 액	70,652	51,058	28,818	28,468	15,011	40,384	234,391
(비중)	(30.1)	(21.8)	(12.3)	(12.1)	(6.4)	(17.2)	(100.0)

제 2 편 부담금별 현황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7.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2.12.26.), 시행일(2003.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번호 : 02-2100-2904	팩스번호 : 02-2100-2919
부과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번호 : 02-2100-2904	팩스번호 : 02-2100-2919
징수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번호 : 02-2100-2904	팩스번호 : 02-2100-291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공적자금상환기금 법 제5조 제4항, 제5항	○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
2. 시행령	시행령 제5조	○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의 0.1%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기금에 출연 ○ 우체국보험의 전년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금액의 0.1%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기금에 출연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금융권과 정부의 손실분담이 불가피한 여건에서 정부의 지급보장 하에 성장한 우체국 금융이 일정부분 공적자금 상환을 분담할 필요 - 금융권이 부담하는 특별기여금에 상응하는 우체국예금·보험의 출연금 납부	법 제4조 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법 제5조 제4항
○ 우체국보험의 전년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과의 산술평균 금액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법 제5조 제5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 준용)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우체국예금 : 전년도 평균잔액	0.1%	전년도 평균잔액×0.1%	시행령 제5조 제1항
○ 우체국보험 : 전년도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	0.1%	전년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과의 산술평균 금액×0.1%	시행령 제5조 제2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사항 없음	
증가산금	해당사항 없음	
연체료	해당사항 없음	
강제징수절차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가 납부 전 출연금액 및 정산내역을 사전에 직접 책정 후 자진 신고(공문)하고, 해당 신고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부당징수가 발생할 수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입 요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공문 및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가 사전에 직접 공문으로 출연 금액을 책정 후 자진 신고하고 해당 신고 금액을 납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유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
납부기한	○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의 0.1%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기금에 출연 ○ 우체국보험의 전년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금액의 0.1%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기금에 출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2	1,738,539	22	1,738,539	-	-	100.0
2025	1	115,961	1	115,961	-	-	100.0
2024	1	112,873	1	112,873	-	-	100.0
2023	1	110,705	1	110,705	-	-	100.0
2022	1	107,486	1	107,486	-	-	100.0
2021	1	106,740	1	106,740	-	-	100.0
2020	1	103,375	1	103,375	-	-	100.0
2019	1	96,103	1	96,103	-	-	100.0
2018	1	88,122	1	88,122	-	-	100.0
2017	1	85,119	1	85,119	-	-	100.0
2016 이전	13	812,054	13	812,054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공적자금상환기금	115,961	1,622,577	
합 계	115,961	1,622,577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12,873	118,631	115,961	3,088 (2.74%)	
우체국 예금특별회계	81,961	85,000	85,000	3,039 (3.71%)	우체국 예금 실적 증가 등
우체국 보험특별회계	30,912	33,631	30,961	49 (0.16%)	우체국 보험 실적 증가 등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우체국특별회계에서 국가회계 결산 후 직접 납부대상 금액에 대한 과부족액을 책정하여 차년도 납부 금액에서 우체국특별회계가 직접 공제(환급), 합산 등 정산 후 출연하고 있어 <u>체납 미발생</u>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15,961	
국가	공적자금상환기금	100%	115,96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제4항 · 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공적자금상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3,273	59,504	계	93,273	59,504
○ 부담금	1,129	1,160	○ 정부내부거래	93,271	59,504
- 특별회계전입금	1,129	1,160	- 공자기금예수 원금상환	88,423	55,400
○ 정부내부수입	25,000	26,337	- 공자기금예수 이자상환	4,848	4,103
-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 기금운영비	1	0
- 세계잉여금	-	1,337	○ 전입금 환급	-	-
○ 기 타	67,144	32,007	○ 기 타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1,900	32,000	- 여유자금운용	-	-
- 채고자산매각대	816	-			
- 공자기금예수금	14,419	-			
- 기타재산수입	9	7			
- 여유자금회수	-	-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해당사항없음	<부과목적의 유효성> ○ 해당사항없음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사항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	

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74.12.21.), 시행일(1975.03.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 02-2100-2867	팩스번호 : 02-2100-2879
부과기관	기 관 명 : 신용보증기금	부 서 명 : 경영기획부
	전화번호 : 053-430-4103	팩스번호 : 053-430-4755
징수기관	기 관 명 : 신용보증기금	부 서 명 : 자금운용센터
	전화번호 : 02-2014-0275	팩스번호 : 02-2014-027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3항	○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
2. 시행령	-	
3.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 매월말 현재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별표1]의 출연요율(연율 0.225% ± 차등요율)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에 [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출연 ○ 과오납 출연금은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
4. 고시·훈령	-	
5. 기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관리기준(내부규정)	○ 출연금 수납절차 및 검증 ○ 출연금 과오납 징수 및 정산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신용보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재산적 기초로서 기본 재산을 조성하기 위함 *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및 제6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 - 제1호(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기준)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함)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함)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 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함) 다. 종금계정 중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 제2호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1) 원화대출금 중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과대상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 납부의무자: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2) 외화대출금 중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 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유산스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 제외)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 카드의 대금채권 제외)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 카드의 대출채권 제외)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 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 자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 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 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러.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저.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 여신업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매월 말 현재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연율 1만분의 22.5 ± 차등요율	○ 당월출연금 = ① 기준금액 + ②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① 기준금액 = 매월말 출연기준 대출금 평잔 × (연율0.225% ± 차등요율) × 해당일수/365 * 차등요율 : 직전반기 총출연금액 대비 직전반기 총대위변제액에 따라 ± 0.02% 적용 ②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말 기준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 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 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비율 ○ 가군 : -10%~+7% 차등적용 ○ 나군 : -7%~+5% 차등적용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3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가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체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제징수절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72. 8. 3	- 연율 0.5%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한국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금에 대하여 출연의무 법제화 - 대출금리를 0.5% 인상하여 기업이 추가 부담한 금리 0.5% 인상분을 금융기관이 대출이자 수입 시 징수하여 기금에 출연
○ 1974.12.21	- 연율 0.5% -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 1977. 2.14	- 연율 0.3%와 연율 0.5%로 이원화 - “국민은행의 비기업 서민여신 및 비기업 서민상호부금급부금”에 대한 출연요율은 0.3%로 인하(기타 대출금은 0.5% 계속 적용)
○ 1979.12.28	- 연율 0.3% - 대출금이자 인상과 관계없이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0.3%를 출연토록 개정 - 출연기준대출금 조정(가계대출금 등 제외) ※ 신용보증의 수익자는 기업이라는 당초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익자라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조치
○ 1989. 4. 1	- 연율 0.2% - 기보 설립(89.4.1)에 따른 출연요율 배분(신보 0.2%, 기보 0.1%)
○ 1992. 4.24	- 연율 0.17% - 기보 사고율이 급증(‘91년 6.6%→’92년 16.1%) 함에 따라 기보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신보 출연요율을 0.03% 인하(기보 출연요율 0.13%)
○ 1994. 8.25	- 연율 0.2% - 기보 사고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보 출연요율을 0.13%에서 0.1%로 환원
○ 2005. 8.26	‘05.8~’06.1월 : 연율 0.0%, ‘06.2월 이후 : 연율 0.2% - 기보 유동성위기의 해결을 위해 ‘05.8월 ~ ‘06.1월 기준 신보의 금융기관출연금율 한시적으로 기보로 이전 (기보 출연요율 0.30%)
○ 2006. 1.24 ~ 7월 이후	‘06.1월 : 연율 0.1%, ‘06.2월 : 연율 0.2%, ‘06.3~’06.6월 : 연율 0.25%, ‘06.7월 이후 : 연율 0.25% ± 차등요율 - 신보의 재원을 확충하여 신용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기보 출연요율을 인상(0.3%→0.4%)하고,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에 따른 차등요율 도입 → 신보 0.25%, 기보 0.15% ± 각각 차등요율
○ 2007. 6. 4	- 연율 0.225% ± 차등요율 - 출연기준 대출금을 은행이 매월 금감원에 제출하는 B/S상 ‘대출채권’으로 명확화, 출연기준 대출금 조정 및 금융기관 출연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요율을 10% 인하 → 신보 0.225%, 기보 0.135% ± 각각 차등요율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5. 4. 3	○ 기준금액 ± 가산·감액금액 - 금융회사등이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수행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준금액*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감액금액**을 반영 * (기준금액) 상기 '연율0.225%±차등요율'로 계산한 금액 ** (가산·감액금액) '매월말 기준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가群 : -15%~+10% 차등적용, 나群 : -7%~+5% 차등적용)
○ 2016.12.13	○ 기준금액 ± 가산·감액금액 - 평가한 순위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가산 또는 감액 시 그 순위가 낮은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연금 가산 비율을 소폭 조정 * (기존) 가群 : -15%~+10% 차등적용 → (개정) 가群 : -10%~+7% 차등적용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발견시 정산 요구
 - 처리기간 : 정산 요구에 따른 과오납 사유 확인 후 다음 달
 - 관련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금융회사출연금 관리기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사유 확인 후 다음달 출연금에 가감
 - 관련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금융회사출연금 관리기준)
- 2025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1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4건 (금액) 1,203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인터넷홈페이지(www.kodit.co.kr)에 경영공시항목을 통해 기금의 재무상황 공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 경영공시항목을 통해 기금의 재무상황 공개
-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을 통해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금액(대출금)의 범위, 출연 방법, 출연시기, 출연요율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 고지시기 : 상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존속기한 미설정)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납부기한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595	22,975,151	595	22,975,151	-	-	100.0
2025	12	1,302,370	12	1,302,370	-	-	100.0
2024	12	1,272,425	12	1,272,425	-	-	100.0
2023	12	1,167,910	12	1,167,910	-	-	100.0
2022	12	1,048,440	12	1,048,440	-	-	100.0
2021	12	984,661	12	984,661	-	-	100.0
2020	12	940,732	12	940,732	-	-	100.0
2019	12	842,851	12	842,851	-	-	100.0
2018	12	812,625	12	812,625	-	-	100.0
2017	12	815,793	12	815,793	-	-	100.0
2016 이전	487	13,787,344	487	13,787,344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신용보증기금	1,302,370	21,672,781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272,425	1,171,010	1,302,370	29,945 (2.4)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로 금융회사등의 기업대출금 확대 * 출연기준대출평잔 : ('24) 645 → ('25) 664조원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302,370	
국 가	신용보증기금	100	1,302,370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금융기관출연금은 정부출연금 등과 함께 기금의 기본 재산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위변제비용으로 사용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및 제40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4,449	93,810	계	94,449	93,810
○ 부담금수입	12,724	13,024	○ 사업비	34,204	35,062
- 금융기관출연금	12,724	13,024	- 대위변제	29,584	30,206
			- 보증료환급	973	799
○ 정부내부수입	800	1,000	- 구상권관리	688	585
- 정부출연금	800	1,000	- 자본지출	24	229
- 공자기금예탁원금	-	-	- 경영지도	163	161
- 예탁이자수입	-	-	- 보증연계투자	660	668
			- 미래성장성평가	20	47
○ 자체수입	23,982	25,133	- 이차보전지원	356	99
- 구상채권회수	2,675	2,748	- 프론트윈운영	57	59
- 신용보증료	8,452	8,421	- 팩토링금융	1,500	2,001
- 이자수입	2,701	1,958	- 신용정보	14	20
- 기타수입	10,154	12,006	- 신보IT운영	165	177
			- 신용제도조사연구	-	11
○ 여유자금회수	56,943	54,653	○ 기금운영비	3,733	3,907
			○ 기금간거래	-	-
			○ 여유자금운용	56,512	54,84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 사업의 수익자인 금융회사가 기금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며,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채무 보증의 재원 조성이라는 법률적 근거 하에 부담금 수입이 전액 보증재원 확충 및 공익적 사업 수행에 사용되므로 사용 용도도 적절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독립된 법률하에 별도의 제도적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해 운영되며, 출연금도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부과·운영되고 있어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71.01.13.), 시행일(1971.01.13.)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 02-2100-2863	팩스번호 : 02-2100-2879
부과기관	기 관 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 서 명 : 신용보증기획부
	전화번호 : 02-2080-6613	팩스번호 : 02-2080-6606
징수기관	기 관 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 서 명 : 신용보증기획부
	전화번호 : 02-2080-6613	팩스번호 : 02-2080-6606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조, 제4조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원과 부담금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2. 시행령	-	-
3.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담절차 등을 규정
4. 고시·훈령	-	-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 이러한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인 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조, 제4조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역 농·축협, 지역수협, 지역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 제5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농협은행, 수협은행 출연대상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0.27%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times 0.27\% \times \text{대상월 일수} \div \text{연간일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 지역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대상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0.013%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times 0.013\% \times \text{대상월 일수} \div \text{연간일수}$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없음	
증가산금	해당없음	
연체료	해당없음	
강제징수절차	해당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72.08.03.	○출연대상기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출연대상대출금 중 실제이자 수입분에 대한 해당 원금의 연율 0.5%를 출연
○ 1976.12.31.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0.1%를 출연
○ 1980.01.01.	○대상대출금 평균잔액의 0.3%를 출연
○ 1996.01.01.	○대상대출금 월중평잔의 0.2%를 출연
○ 2006.01.24.	○대상대출금 월중평잔의 0.3%를 출연
○ 2006.10.01.	○출연대상기관 추가(지역농·축협, 지역수협, 지역 산림조합)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의 0.027%를 출연
○ 2007.07.01.	○출연대상기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부담률(출연요율)을 0.38%로 변경
○ 2015.01.01.	○부담률(출연요율) 변경 -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0.38% → 0.20%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0.027% → 0.013%
○ 2020.12.22.	○부담률(출연요율) 변경 - 농협은행, 수협은행 0.20% → 0.27%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발견시 정산 요구
 - 처리기간 : 정산 요구에 따른 과오납 사유 확인 후 다음 달
 - 관련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사유 확인 후 다음 달 출연금에 가감
 - 관련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홈페이지(<http://www.nongshinbo.com>)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금액(대출금)의 범위, 출연 방법, 출연시기, 출연요율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 제4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 고지시기 : 상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 제4조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 전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납부기한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12	3,528,624	112	3,528,624	-	-	100
2025	5	219,246	5	219,246	-	-	100
2024	5	214,706	5	214,706	-	-	100
2023	5	211,751	5	211,751	-	-	100
2022	5	197,104	5	197,104	-	-	100
2021	5	183,287	5	183,287	-	-	100
2020	5	138,550	5	138,550	-	-	100
2019	5	126,882	5	126,882	-	-	100
2018	5	124,044	5	124,044	-	-	100
2017	5	122,163	5	122,163	-	-	100
2016 이전	67	1,990,891	67	1,990,891	-	-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19,246	3,309,378	
합계	219,246	3,309,378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14,706	241,231	219,246	4,540 (2.11)	
농협은행	149,889	169,451	152,904	3,015 (2.01)	○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 × 0.27% × 대상월 일수 ÷ 연간일수
수협은행	19,486	20,349	19,571	85 (0.44)	○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 × 0.27% × 대상월 일수 ÷ 연간일수
농·축협	40,459	45,615	41,737	1,278 (3.16)	○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 × 0.013% × 대상월 일수 ÷ 연간일수
수협조합	3,971	4,699	4,093	122 (3.07)	○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 × 0.013% × 대상월 일수 ÷ 연간일수
산림조합	901	1,117	941	40 (4.44)	○ 금융기관의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 - 출연대상대출금 월중평잔 × 0.013% × 대상월 일수 ÷ 연간일수

※ 2024년 실적 = 국회제출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상 숫자와 일치
2025년 계획 = 국회제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 숫자와 일치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 개정('20.12.2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수협은행
출연 요율 인상(0.20% → 0.27%, 0.07%p인상)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19,246	
국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0	219,24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2.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3.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매입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0,574	22,376	계	20,574	22,376
○ 부담금 수입	2,147	2,192	○ 사업비	4,415	4,636
○ 정부내부수입	300	1,500	- 구상권관리비	109	115
○ 자체수입	2,257	2,233	- 농신보IT유지비	25	38
- 보증료	626	808	- 대위변제금	4,195	4,378
- 이자수입	630	436	- 위탁사업비	33	44
- 기타영업외수입	40	53	- 보증료 환급	53	61
- 구상채권 회수등	861	921	○ 기금운영비	548	570
- 기타수입	100	15	○ 여유자금운용	15,611	17,170
○ 여유자금회수	15,870	16,45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과 목적의 타당성 인정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담금		해당없음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

② 제정년도 : 법제·개정 공포일 (2002.12.26.), 시행일(2003.01.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번호 : 02-2100-2915	팩스번호 : 02-2100-2919
부과기관	기 관 명 : 예금보험공사	부 서 명 : 기금정책부
	전화번호 : 02-758-0168	팩스번호 : 02-758-0170
징수기관	기 관 명 : 예금보험공사	부 서 명 : 기금정책부
	전화번호 : 02-758-0155	팩스번호 : 02-758-107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
2.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은행은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 부채(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상환재원 조달 등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시 3개월 이내에 납부 (단 은행은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의 잔액	부보금융회사 ¹⁾ (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²⁾)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회사

2)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 '02.12.26> 제6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06~'17년까지 납부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은행 :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0.1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0.1% × 1/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 1의2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0.1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 0.1%* * 신탁은 '07년부터 0.05%로 인하되었으며 '17년말 납부 종료	
보험회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0.1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 0.1%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연체료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이자율** × 납부지연일수/365 * 다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등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각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를 말한다)에 연 100분의 3을 합산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 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전부 또는 일부	184,118,000원*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3제2항

*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이란계 멜라트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년도 특별기여금 전부를 감면 조치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2.28 ◦ 2017.12.31	◦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요율을 0.1%에서 0.05%로 인하 ◦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 '02.12.26> 제6조에 따라 '17년말 납부 종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사가 자진 신고 후 신고금액을 납부하며, 신고 금액의 산정오류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시에는 부보금융회사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하고 공사는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급 등의 조치를 시행

-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

- 2025년 환급액 : (건수) 31건 (금액) 7,651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7건 (금액) 2,217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7건 (금액) 3,770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공고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12.26.>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존속기한은 2003.01.01.~2027.12.31.까지이다. (단, 신탁은 2006.01.01.~2017.12.31. 까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시 3개월 이내 납부 (단, 은행은 매분기 종료시 1개월 이내 납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¹⁾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²⁾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8,291	33,306,806			
2025			283	2,689,339			
2024			286	2,574,454			
2023			287	2,492,798			
2022			284	2,374,964			
2021			287	2,177,150			
2020			321	1,974,790			
2019			304	1,793,279			
2018			293	1,712,095			
2017			1,199	1,653,075			
2016 이전			14,747	13,864,862			

1)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내역을 자체적으로 신고한 후 신고금액 납부

2) 부담금(특별기여금) 납부대상 부보금융회사 수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은 행	1,975,468	21,725,899	
투자매매·투자 중개업자	71,519	639,332	
보 험	545,770	6,810,764	
종 금	-	27,181	
상호저축은행	96,582	1,152,616	
신 협	-	261,676	
합 계	2,689,339	30,617,467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	2,574,454	2,660,038	2,689,339	114,885 (4.5)	부보대상예금 증가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689,339	
국 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100	2,689,339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 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3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4,432	34,343	계	54,432	34,343
◦ 자체수입 (부담금)	31,424 (25,745)	31,843 (26,893)	◦ 사업비	2	8
			◦ 기금운영비	30	27
◦ 정부내부수입	-	-	◦ 차입금원금상환	-	-
◦ 차입금	-	-	◦ 차입금이자상환	-	-
◦ 여유자금회수	23,008	2,500	◦ 전출	51,900	32,000
			◦ 여유자금운용	2,500	2,3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은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담금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예금보험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특별재정 성격을 가지며, 부보금융회사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크지 않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운용되고 있어, 일반 조세로 전환하기보다 부담금 제도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87.05.30.), 시행일 (1988.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서 명 : 주택보증처
	전화번호 : 051-663-8404	팩스번호 : 0505-036-1553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서 명 : 주택보증처
	전화번호 : 051-663-8404	팩스번호 : 0505-036-1553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56조	○ 금융기관 대출금에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연
3.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표1	○ (제3조)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 주택수요자에 대한 주택 건축·임차·구입 및 개량 용도의 대출금 등 - 주택사업자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주택 건설·구입자금 대출금 - 사업주의 주택 건설·구입자금 대출금 ○ (제4조) 출연시기, 제출서류 등 ○ (별표1) 출연요율에 관하여 규정 - 기준요율(0.05%~0.3%)에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합하여 산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 조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제55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5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출연기준 대출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정	0.01 ~ 0.30	○ 주택도시시기금 대출금 -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액 × 출연요율 × 해당월의 일수 ÷ 해당연도 일수 ○ 금융기관 대출금 -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액 × 출연요율 × 해당월 일수 ÷ 해당연도 일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 출연요율 × 해당월의 일수 ÷ 해당연도 일수 × 100분의 20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관련 규정 없음	
증가산금	관련 규정 없음	
연체료	관련 규정 없음	
강제징수절차	관련 규정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출연요율을 우대하여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 구조개선을 유도	$\Delta 0.01 \sim \Delta 0.10$	산출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대출취급기관 및 대출유형에 따라 건별로 차등 적용되는 기준요율과 기관별로 달리 적용되는 우대·차등 요율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됨. 출연요율이 최종 확정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적 감면이나 가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된 최종 부담금에서 단순 우대요율에 의해 인화된 부분만을 역산하는 것은 불가능.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88.01.01.	○ 출연요율 최저 0.1%(고정요율)
○ 2001.11.30.	○ 출연요율 최저 0.1 ~ 최고 0.15%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 보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 2005.02.01.	○ 출연요율 최저 0.085 ~ 최고 0.165%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 보증이용도에 따라 차등
○ 2007.07.01.	○ 출연요율 최저 0.085 ~ 최고 0.30%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 (장기고정금리 또는 단기변동금리대출 여부에 따라 기준요율 차등)
○ 2011.12.22.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 - 대출금의 만기, 거치식·비거치식,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기준요율 구분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5.12.31.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 - 대출금의 만기, 거치식·비거치식,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기준요율 구분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우대요율 적용
○ 2018.12.31.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변동없음)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취급 독려를 위한 우대요율 구간 확대 적용
○ 2019.09.01.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으로 이전
○ 2020.08.25.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공급목표 초과달성도에 따른 우대요율 신설
○ 2023.09.14.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고정금리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의 적용한도를 $\Delta 0.06\%$에서 $\Delta 0.10\%$로 확대 -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관련 사항을 법령화하여 출연금을 과오납한 금융기관의 권익 보호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발견시 정산 요구
 - 처리기간 : 과오납 사유 확인 후 즉시(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과오납 금액을 다음 달 출연금에 가감하여 정산 가능)
 - 관련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과오납 사유 확인 후 환급(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과오납 금액을 다음 달 출연금에 가감하여 정산 가능)
 - 관련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6,386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18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매년 결산자료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f.go.kr)에 공고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제출 및 국회 결산 심의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출연요율, 출연시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출연요율 변경 시 금융기관에 통보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부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납부기한	부과월의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	13,924,910	-	13,924,910	-	-	100.0
2025		893,193		893,193			100.0
2024	-	985,429	-	985,429	-	-	100.0
2023	-	1,074,015	-	1,074,015	-	-	100.0
2022	-	1,003,537	-	1,003,537	-	-	100.0
2021	-	881,761	-	881,761	-	-	100.0
2020	-	770,354	-	770,354	-	-	100.0
2019	-	791,101	-	791,101	-	-	100.0
2018	-	723,625	-	723,625	-	-	100.0
2017	-	572,636	-	572,636	-	-	100.0
2016이전	-	6,229,259	-	6,229,259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주택금융공사	893,193	13,031,717	
합계	893,193	13,031,717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985,429		893,193	△92,236 (△9.4%)	○ 금융기관 평균 출연요율 하향* 및 출연금 과오납 정산 등으로 총 출연금 수입이 전년대비 9.4% 감소(9,854억원→8,932억원) * 평균 출연요율(%): '24년 0.147 → '25년 0.128
경남은행	17,734		15,122	△2,613 (△14.7%)	
광주은행	17,848		15,967	△1,881 (△10.5%)	
국민은행	142,961		130,330	△12,631 (△8.8%)	
주택도시보증공사	133,017		130,458	△2,559 (△1.9%)	
기업은행	24,705		20,239	△4,466 (△18.1%)	
농협은행	124,764		120,275	△4,489 (△3.6%)	
아이엠뱅크	27,518		12,602	△14,917 (△54.2%)	
부산은행	26,910		19,577	△7,332 (△27.2%)	
산업은행	7,102		5,840	△1,262 (△17.8%)	
수협은행	36,591		36,614	23 (0.1%)	
신한은행	118,247	1,062,743	89,939	△28,308 (△23.9%)	
우리은행	136,683		117,856	△18,828 (△13.8%)	
전북은행	8,860		9,236	375 (4.2%)	
제주은행	715		648	△67 (△9.4%)	
KB하나은행	94,683		94,369	△314 (△0.3%)	
한국씨티은행	1,203		831	△372 (△31.0%)	
카카오뱅크	36,476		34,150	△2,327 (△6.4%)	
케이뱅크	7,567		10,344	2,777 (36.7%)	
SC은행	13,988		16,413	2,425 (17.3%)	
토스뱅크	2,883		7,956	5,073 (175.9%)	
가외국은행	4,974		4,430	△544 (△10.9%)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893,193	
국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0.0	893,19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주택금융신용보증 2.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6.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7.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및 제57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39,934	45,493	합 계	39,934	45,493
○ 부담금	9,854	8,932	○ 사업비	9,271	12,620
○ 정부내부수입	-	-	- 구상권관리	254	330
- 예탁원금회수	-	-	- 보증료환급	285	292
- 예탁이자수입	-	-	- 대위변제	8,579	11,851
○ 기 타	4,708	5,313	- 사업수수료	97	101
- 보증료수입	1,260	1,089	- IT운영(정보화)	57	46
- 구상채권회수금	2,014	2,892	○ 정부내부지출	-	-
- 이자수입 등	1,435	1,332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회수	25,372	31,248	- 일반회계전출	-	-
			○ 기금운영비	386	388
			- 인건비	297	310
			- 기금관리비	80	78
			- 법인세	9	-
			○ 여유자금운용	30,277	32,485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본 제도의 정책 목적이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본 제도 운용에 따른 이익과 납부의 주체가 모두 금융기관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해당사항 없음	

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7.01.11.), 시행일(2007.04.12.)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 02-2100-1691	팩스번호 : 02-2100-169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서 명 : 주택연금처
	전화번호 : 051-663-8474	팩스번호 : 050-5036-1212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서 명 : 주택연금처
	전화번호 : 051-663-8474	팩스번호 : 050-5036-121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59조의3	○ 금융기관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
2. 시행규칙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별표	○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 출연시기 및 제출서류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목적 달성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보증재원 조성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1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출연기준 대출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의한 대출금을 보유한 금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정	0.01~0.3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액 × 출연요율 × 해당월의 일수 ÷ 해당연도의 일수 ○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액 × 출연요율 × 해당월의 일수 ÷ 해당연도 일수) × 100분의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출금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기 타	관련규정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출연요율을 우대하여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 구조개선을 유도	△0.01~△0.06	산출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2

* 금융기관별 우대요율이 반영된 최종 출연요율에 기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로서 별도 감면금액 산출불가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05.03.	○ 출연요율 0.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 2016.04.29.	○ 출연요율 최저 0.1% ~ 최고 0.2% 차등 적용 -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차등요율 적용(0.1%)
○ 2019.09.01.	○ 출연대상 금융기관 대출금 범위 변경 - 은행재원 주택자금대출(건축·구입자금)에 대한 출연금 20% 추가
○ 2020.08.25.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공급목표 초과달성도에 따른 우대요율 신설
○ 2023.09.14.	○ 출연요율 최저 0.01 ~ 최고 0.30% - 고정금리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의 적용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관련 사항을 법령화하여 출연금을 과오납한 금융기관의 권익 보호
○ 2025.04.30.	○ 소상공인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에 대해 최저출연요율 0.1% 적용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출연금의 과오납 발견시 정산 요구
 - 처리기간 :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정산
 - 관련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정산
 - 관련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 2025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306.7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5건 (금액) 2.8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4.4백만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매년 결산자료를 인터넷 상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공고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제출 및 국회 결산 심의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출연요율, 출연시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출연요율 변경 시 금융기관에 통보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계정출연기준대출금 보유시 매월 부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납부기한	부과월의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납부기한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	515,543	-	515,543	-	-	100.0
2025	-	83,771	-	83,771	-	-	100.0
2024	-	84,357	-	84,357	-	-	100.0
2023	-	87,579	-	87,579	-	-	100.0
2022	-	78,878	-	78,878	-	-	100.0
2021	-	71,238	-	71,238	-	-	100.0
2020	-	65,652	-	65,652	-	-	100.0
2019	-	22,807	-	22,807	-	-	100.0
2018	-	5,866	-	5,866	-	-	100.0
2017	-	4,574	-	4,574	-	-	100.0
2016이전	-	10,821	-	10,821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주택 금융공사	83,771	431,772	'19.10월부터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대출 외 은행재원 주택자금 대출(건축구입자금)에 대한 출연금의 20% 추가 징수
합계	83,771	431,772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84,357	95,050	83,771	△586 (△0.7%)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잔액 증가로 관련 출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9.7% 증가(206억원→247억원)하였으나, 그 외 주택관련 대출의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관련 출연금** 수입이 7%감소(637억원→590억원)하여, 총 출연금 수입은 전년대비 0.7% 감소(843억원→837억원)
기업은행	1,917		1,882	△35 (△1.8%)	
경남은행	856		808	△48 (△5.6%)	
광주은행	489		449	△40 (△8.2%)	
국민은행	19,623		20,249	626 (3.2%)	
농협은행	17,608		17,599	△9 (△0.1%)	
대구은행	2,700		1,601	△1,099 (△40.7%)	
부산은행	2,023		2,039	16 (0.8%)	
수협은행	127		117	△10 (△7.9%)	
신한은행	7,069		6,916	△153 (△2.2%)	
우리은행	16,773		15,636	△1,137 (△6.8%)	
전북은행	197		187	△10 (△5.1%)	
제주은행	130		96	△34 (△26.2%)	
하나은행	10,080		10,508	428 (4.2%)	
SC제일은행	2,833		3,460	627 (22.1%)	
씨티은행	297		205	△92 (△31.0%)	
농협상호금융	211		282	71 (33.6%)	
산업은행	31		24	△7 (△22.6%)	
케이뱅크	757		997	240 (31.7%)	
기타외국은행	5		4	△1 (△20.0%)	
카카오뱅크	631		709	78 (12.4%)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1호)

** 은행채원 주택자금대출(건축·구입)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83,771	
국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0.0	83,77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채권의 양수 및 연금의 지급 5. 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8.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5,862	6,240	합 계	5,862	6,240
○부담금	844	838	○사업비	641	878
○정부내부수입	-	-	- 구상권관리	19	21
○기타	2,280	2,476	- 보증료환급	42	53
- 보증료수입	1,752	1,845	- 대위변제	532	752
- 구상채권회수등	373	461	- 사업수수료	8	9
- 이자수입 등	155	170	- 담보설정비용	24	23
○여유자금회수	2,738	2,926	- IT운영(정보화)	16	20
			○정부내부지출	-	-
			○기금운영비	180	184
			- 인건비	132	137
			- 기금관리비	48	46
			- 법인세	-	-
			○여유자금운용	5,041	5,178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본 제도의 정책 목적이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과 노후생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가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본 제도 운용에 따른 이익과 납부의 주체가 모두 금융기관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계정 출연금		해당사항 없음	

7.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방재활동협회비)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73.02.06.), 시행일 (1973.02.06.)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금융위원회	부서명 : 보험과
	전화번호 : 02-2100-2965	팩스번호 : 02-2100-2947
부과기관	기관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서명 :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2-3780-0213	팩스번호 : 02-3780-0239
징수기관	기관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서명 : 총무회계팀
	전화번호 : 02-3780-0247	팩스번호 : 02-3780-025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제14조	○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함
2. 시행령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손해보험회사는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함
3. 시행규칙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협회비 산정기준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사의 실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균등 분담함
4. 고시·훈령		○
5. 기타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 연구 및 계몽	화재보험법 제1조, 제1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11개 사원사	○ 부과대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납부의무자 : 화재보험법 제1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전체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사의 실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균등 분담	$\{(\text{각 손해보험회사 실적비율} \times 70\%) + (1/11 \times 30\%)\} \times \text{방재활동협회비 총액}$	○ 산정기준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부담률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73. 5. 11.	○ 화재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
○ 1983. 8. 18.	○ 특수건물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
○ 1991. 9. 3.	○ 특수건물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0
○ 1997. 6. 13.	○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방재활동협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원총회에서 매년 방재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의결하고, 사원사가 매월 합의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부담징수 여지 없음
- 2025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 방법
 - 사원총회에서 회원사에 공개
 -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운용보고서 제출
 - 금융위원회에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분기 개시 전 공문으로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10일 이내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납부기한	매월 10일 이내	상동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25	388,642	425	388,642	-	-	100.0
2025	12	23,047	12	23,047	-	-	100.0
2024	12	17,992	12	17,992	-	-	100.0
2023	12	20,609	12	20,609	-	-	100.0
2022	12	21,223	12	21,223	-	-	100.0
2021	12	16,000	12	16,000	-	-	100.0
2020	12	14,610	12	14,610	-	-	100.0
2019	12	13,400	12	13,400	-	-	100.0
2018	12	12,695	12	12,695	-	-	100.0
2017	12	11,785	12	11,785	-	-	100.0
2016 이전	317	237,281	317	237,281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기관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화재보험협회	23,047	365,595	
합계	23,047	365,595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원사별	2025년		증감 (B-A) (%)	증감사유
	계획	실적(B)		
합계	22,000	23,047	5,055 (28.1)	
메리츠	2,509	2,581	529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한화	1,597	1,750	444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롯데	937	1,022	257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MG	725	510	-83	- 2025년 계획의 경우 최초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나, 2025년 실적은 사별 순보험료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일부 사원사의 보험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계획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흥국	1,017	1,085	253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삼성	3,750	3,898	831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
현대	3,381	3,456	691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KB	2,633	2,833	680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DB	3,457	3,694	867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NH농협	646	930	402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하나	561	685	226	- 화재예방활동 안전점검 대상(특수건물) 건수 증가
신한EZ	787	603	-41	- 2025년 계획의 경우 최초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나, 2025년 실적은 사별 순보험료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일부 사원사의 보험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계획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23,047	
기타(한국화재보험협회)	100	23,047	화재보험법 제1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2.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 연구 및 계몽	화재보험법 제1조, 제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한국화재보험협회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41	660	계	641	660
○ 방재활동협회비 (부담금)	180	230	○ 사업비용	503	506
			- 안전점검	245	262
			- 조사연구·계몽	28	22
○ 전기이월잉여금	59	13	- 시험연구인증교육	156	147
			- 보험업무	11	10
○ 자체수입	329	349	- 경영관리지원	63	65
- 공동인수 수수료	53	56			
- 시험연구용역 등	276	293	○ 감가상각비 등	27	40
○ 사업외 수입	15	10			
- 이자 등			○ 사업외 비용	4	2
			○ 당기순이익	63	66
○ 사옥임대수입	58	58	○ 사옥관리	44	46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한국화재 보험협회 출연금	'22년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은 성격이 협회비인지 부담 금인지 모호하여 부담금관리 대상에서 제외 필요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 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24-07-30) 현재 국회 계류 중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16.03.22.), 시행일(2016.09.23.)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융위원회	부 서 명 : 서민금융과
	전화번호 : 02-2100-2614	팩스번호 : 02-2100-2629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민금융진흥원	부 서 명 : 보증사업부
	전화번호 : 02-2128-8085	팩스번호 : 02-2128-8352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민금융진흥원	부 서 명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2-2128-8035	팩스번호 : 02-2128-8353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	금융회사 대출금에 대해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2. 시행령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2조	출연기준 대출금, 출연제외 대출금, 출연요율, 출연비율·시기 및 방법, 출연 시 제출서류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출연금 납부대상 제외 대출금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동 출연금을 활용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4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금융회사대출금(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 ○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조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금융회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출연기준대출금 : 연 10만분의 60 (은행) - 출연기준대출금 : 연 10만분의 45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대출금 : 연 10만분의 45에서 농신보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 × 부과요율 × 해당 월 일수 / 해당 연도 일수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4항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대위변제율 150% 초과: 연 1.5% - 대위변제율 100% 초과 150% 이하: 연 1.25% - 대위변제율 100% : 연 1.0% - 대위변제율 50% 이상 100% 미만 연 0.75% - 대위변제율 50% 미만: 연 0.5%	신용보증금액 월중 평균잔액 × 부과요율 × 해당 월 일수 / 해당 연도 일수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 부담률은 서민금융생활지원 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사항 없음	
증가산금	해당사항 없음	
연체료	해당사항 없음	
강제징수절차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서민금융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2025년 기준) 작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이 상위 10% 이내이면서 신용보증금액/거래대출금액이 전체 평균 이상인 금융회사	신용보증금액 월중 평균잔액 × 0.5% 단, 감액금액은 개별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상향분 이내	5,856,312,637원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1.10.9.	부과대상 확대, 출연기준대출금 및 출연요율 변경
○ 2024.9.30.	출연요율 변경,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한시적 감액(서민금융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2025.3.18.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상·납부하며, 과오납 발생시 관련내용의 산정근거 등을 기재한 요청 문서를 통하여 구제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문서 요청내용 확인 후 금융기관 요청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익월분 납부시 가감하여 처리(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8항)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 2023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6,549,257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
 - * 동 시스템에 결산자료 등록(공개) 예정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출연요율, 출연시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월 출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6항
납부기한	부과월의 익월 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6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384,969	2,177,377	384,857	2,173,654	112	3,723	99.8
2025	42,645	441,036	42,539	439,573	106	1,463	99.7
2024	43,523	302,499	44,014	302,819	△491	△320	100.1
2023	44,120	274,036	44,137	274,062	△17	△26	100.0
2022	44,213	233,084	45,056	233,770	△843	△686	100.3
2021	38,589	216,931	37,778	215,942	811	989	99.5
2020	43,026	215,427	43,100	215,420	△74	7	100.0
2019	43,599	200,861	43,538	200,848	61	13	100.0
2018	43,260	162,672	43,094	162,279	166	393	99.8
2017	37,360	121,345	37,004	119,472	356	1,873	98.5
2016이전	4,634	9,486	4,597	9,469	37	17	99.8

주1) : 전년도 금융기관 지연 납부분을 익년도에 반영, 징수금액이 0원인 경우 (가계대출 미취급 기관) 징수 및 부과건수에서 제외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민금융진흥원	439,573	1,734,081	

iii-i) 2024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302,819	272,639	439,573	136,754 (45.2%)	‘25.3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승
서민금융 진흥원	302,819	272,639	439,573	136,754 (45.2%)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439,573	-
서민금융진흥원	100%	439,573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보완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보완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0,582	12,026	계	10,582	12,026
○ 부담금 수입	3,028	4,396	○ 보증채무 이행	9,125	8,534
○ 은행권 출연금	2,214	1,000	○ 대지급금	8	0.5
○ 복권기금 출연금	1,670	1,657	○ 기타영업비용 등	348	1,928
○ 일반출연금	1,460	1,825	○ 여유자금 운용	1,101	1,563
○ 햇살론 I 집행잔액*	380	171	○ 잉여금	0	0
○ 보증료수익	1,433	2,578			
○ 이자수익 등	398	398			

* 신보중앙회의 햇살론 I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진흥원으로 이관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재원으로서 부담금 부과는 타당성을 지님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부담금 사용에 따른 수혜 대상이 타 부담금과 차별화되어 중복 유사성은 없다고 판단됨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대출의 보증 및 대위변제가 주요 업무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제2장 재정경제부 소관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 외환건전성부담금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1.4.7.), 시행일(2001.7.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재정경제부	부 서 명 : 출자관리과
	전화번호 : 044) 215-5173	팩스번호 : 044) 215-8112
부과기관	기 관 명 :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부 서 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42) 671-0081	팩스번호 : 042) 671-0089
징수기관	기 관 명 :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부 서 명 : 사무국
	전화번호 : 042) 671-0081	팩스번호 : 042) 671-008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제조업자로부터 궤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 수행
2.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위해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5원씩 출연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국내 담배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영농기술 개발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에 기여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국내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 국내 담배제조업자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5원	0.1%	◦ 제조장 반출 궤련 (20개비 기준) × 5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담배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 주한외국군, 외항선 선원 등 판매 담배, 수출 등 ◦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반출된 담배가 멸실 또는 훼손 등	100	32백만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2.1. 1.	◦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10원
◦ 2005.1. 1.	◦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15원
◦ 2008.1.14.	◦ 부담금부과 중단(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삭제)
◦ 2015.1. 1.	◦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5원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 없음
 - * 동 출연금은 국내 담배 제조업자가 반출내역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직접 산출하여 납입하므로 위법·부당한 부담금 징수가 발생할 소지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 없음
- 2025년 환급액 : (건수) 해당 없음 (금액)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건수) 해당 없음 (금액)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건수) 해당 없음 (금액)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 방법 : 연초생산안정화재단 홈페이지 공개(www.tpsfund.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관련근거법령,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납부의무자에게 공문 및 고지서 발송
 - 고지시기 : 납부일 기준 10일전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해당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제조장 반출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납부기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의 출연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580	459,092	580	459,092	-	-	100
2025 ^{주2)}	36	12,806	36	12,806	-	-	100
2024	36	12,981	36	12,981	-	-	100
2023	36	13,678	36	13,678	-	-	100
2022	36	14,165	36	14,165	-	-	100
2021	36	14,283	36	14,283	-	-	100
2020	36	14,680	36	14,680	-	-	100
2019	36	14,012	36	14,012	-	-	100
2018	36	14,247	36	14,247	-	-	100
2017 ^{주1)}	36	16,232	36	16,232	-	-	100
2016 이전	256	332,008	256	332,008	-	-	100

주1) 2017년 2월 감사원 감사 및 행정자치부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징수한 출연금(6.54억원)에서 행정소송(원고 : PMK(주)(5.31억원), BATK(주)(1.23억원))으로 인해 부과·징수실적에서 제외(선수금 처리)

주2) 상기 2건의 행정소송 중 2025년 9월 행정소송(원고 PMK(주)) 최종 판결로, 선수금(5.31억원) 중 일부 반환액(0.29억원) 제외한 5.02억원 포함(선수금 → 부담금 수입)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재)연초생산 안정화재단	12,806	446,286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연초경작 지원 등의 사업	12,981	15,275	12,806	△175 (△1.35%)	국내 담배제조업자 반출실적 감소 - 2024년 : 25.96억갑 - 2025년 : 25.61억갑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기 타 (연초생산안정화재단)	100	12,806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재) 연초생산안정화재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21.9	612.4	계	521.9	612.4
◦ 전기이월금	76.7	152.6	◦ 사 업		
			- 연초경작지원 등	224.2	246.6
◦ 부담금	129.8	128.1	◦ 재단관리비	15.3	15.6
(제조업자출연금)			◦ 기본재산편입	129.8	128.1
◦ 기 타			◦ 차기이월금	152.6	222.1
- 자산운용수입	314.9	327.3			
- 기타수입	0.5	4.4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부담금 전면정비」(24.3)에 따라 폐지 발표한 4개 부담금* 평가대상 제외
 - * 연초경작지원출연금, 출국납부금(외교부), 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1년	○ 법령상 권리구제절차 마련 필요	<추진 중> ○ 연초 부담금의 경우 권리구제 절차 마련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을 추진 계획 * 납부 의무자(제조사)가 직접 부담금을 산출, 납부하는 체계로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소지가 없으며, 공제·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과오납시 환급이 가능

2. 외환건전성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외환건전성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11.04.30.), 시행일 (2011.08.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재정경제부	부 서 명 : 외환제도과
	전화번호 : 044-215-4751	팩스번호 : 044-215-8136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은행	부 서 명 : 외환회계팀
	전화번호 : 02-759-5864(6)	팩스번호 : 02-750-6571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은행	부 서 명 : 외환회계팀
	전화번호 : 02-759-5864(6)	팩스번호 : 02-750-657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3, 제13조 등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근거 - 금융회사 등에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0.5%이내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활용 -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
2.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11 제25조, 제27조 등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 산정방법, 공제, 추가부과요율, 납부고지·기한, 분할납부, 가산금, 자료제출, 이의신청 ○ 외국환평형기금과의 분리운용 등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제2-23조의3	○ 비예금성외화부채 범위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부담금 재원은 위기 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납부대상 금융회사 등의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 * 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경과성 계정 등	○ 외국환은행 ○ 증권·보험·여전업자(15.7~)*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1항, 시행령 제9조의2 제21조의2,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제2-23조의3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부담금 부과 대상 부채 (잔존만기 1년 이하)에 부담률을 곱해 최종 부담금 산정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말 잔액 평균으로 산정	○ 부과요율: 0.1%* (각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할인요율 차감) * 증권·보험·여전사, 지방은행은 0.05% (2년초과 3년이하) 0.02% (3년초과 4년이하) 0.03% (4년초과) 0.04%	부담금 $= (\text{부과대상부채}) \times \text{부담률}$ $= (\text{비예금성외화부채등잔액} - \text{공제액}^*) \times \text{부담률}$ * 공제액=공제대상 외화예수금 (①) × 만기별 가중치(②) ①공제대상 외화예수금 =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평균) × 0.3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월평잔의 증감) × 0.7 ②만기별 가중치: (수시예금) 0.05, (1년이하 정기예금) 0.5, (1~3년 정기예금) 2, (3~5년 정기예금) 4, (5년 초과 정기예금) 10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제2-23조의3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기간이 1개월 미만 : 채납된 부담금의 3%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제3항, 시행령 제21조의8제1호
증가산금	채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일이 지날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0.022% (가산기간 180일 초과 불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제3항, 시행령 제21조의8제2호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제4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 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 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	0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 항제1호, 외환건전성부 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2.12.12	○ 외화예수금 공제 신설 * (기존) 비예금성외화부채×부과요율 → (변경)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예수금)×부과요율
○ 2015.06.30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방식과 부과대상을 개편 * (부과방식) 계약만기 기준으로 차등요율(2~20bp)을 적용 → 잔존만기 1년이하 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 부과 ** (부과대상) 은행 → 증권·보험·여전사로 확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부담금 금액이나 대상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10)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담금 금액 조정시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10)

○ 2025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110,735,004원

○ 2024년 부과액 : (건수) 1건 (금액) 94,483,654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305,917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960,577,921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외국환평형기금 결산내용에 포함하여 국회 보고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 납부 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6)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6 제1항
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납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6 제2항
납부기한 연장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11
분할납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게 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7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103	1,660,398	1,103	1,660,398	-	-	100.0
2025	82 ¹⁾	127,504	82	127,504	-	-	100.0
2024	80 ²⁾	122,725	80	122,725	-	-	100.0
2023	85 ³⁾	134,378	85	134,378	-	-	100.0
2022	81 ⁴⁾	119,519	81	119,519	-	-	100.0
2021	90 ⁵⁾	72,307	90	72,307	-	-	100.0
2020	93 ⁶⁾	92,909	93	92,909	-	-	100.0
2019	90 ⁷⁾	78,620	90	78,620	-	-	100.0
2018	82 ⁸⁾	70,020	82	70,020	-	-	100.0
2017	97 ⁹⁾	85,317	97	85,317	-	-	100.0
2016 이전	323 ¹⁰⁾	757,098	323	757,098	-	-	100.0

주1)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1건 포함

주2)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1건 포함

주3)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3건 포함

주4)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1건 포함

주5)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4건 포함

주6)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4건, 분할납부 2건 포함

주7)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3건 포함

주8)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5건 포함

주9)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16건 포함

주10)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30건 포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은행	127,504	1,532,894	
합 계	127,504	1,532,894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22,725	148,927	127,504	4,779 (3.89%)	▪ (증감사유) 전년대비 2024사업 연도 납부의무자 증가 등에 기인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0	0	0	0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27,504	
국 가	외국환평형기금	100	127,504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외평기금에 적립되어 비상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용도로 사용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외국환평형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730,925	1,121,346	계	1,730,925	1,121,346
○ 자체수입 (부담금)	21,060 (1,227)	11,803 (1,275)	○ 기금운영비	13	14
○ 정부내부수입	526,476	376,311	○ 정부내부지출	997,732	375,046
○ 차입금	18,026	183,894	○ 차입금이자상환	5,646	7,477
○ 여유자금회수	1,165,364	549,337	○ 차입금원금상환	17,954	17,151
			○ 여유자금운용	709,581	721,65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외환건전성 부담금	'24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증가산금 요율이 부담금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요율조정 필요	<진행중> 부담금관리법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증가산금 요율을 日 0.033%→0.022%로 하향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25.12월) 부처협의·영향평가· 규제심사 완료 ('25.12.23~'26.2.1) 입법예고 ('26.4월) 개정 완료

제3장 교육부 소관

1. 학교용지부담금

1. 학교용지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② 제정년도 : 법률 제정 공포일(1995.12.29.), 시행일(1996.01.29.)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교육부	부 서 명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번호 : 044-203-6641	팩스번호 : 044-203-6490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건축허가부서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건축허가부서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 (제5조의2)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 -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3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자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 단독주택 토지를 분양하는 자 ○ 공동주택 분양하는 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분양가격 ○ 단독주택 토지 분양가격	○ 0.4% ○ 1.4%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 단독주택 분양가격 × 14/1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2항
강제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가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 법령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100%	48,09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	9,585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	-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100%	116,218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5.12.29. (법률 제5072호)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정 - 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은 시·도 조례로 위임('96.11.02.)
○ 2000.01.28. (법률 제6219호)	○ 부담금 부과요율을 법률에 규정 -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 (단독주택)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
○ 2002.12.05. (법률 제6744호)	○ 주상복합건축물 등 시설에 대해 부담금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 「건축법」을 부과 대상 법률에 추가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5.3.24. (법률 제7397호)	○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규모 및 납부의무자 변경 - (부담금 부과 대상) 300세대 → 100세대 - (납부의무자) 분양받는 자 → 개발사업자 ○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세대 수 산정 시 재건축사업 등 세대 수를 취학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공동주택) 1천분의 8 → 1천분의 4 - (단독주택) 1천분의 15 → 1천분의 7
○ 2009.5.28. (법률 제9743호)	○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자의 경우 ○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 (공동주택) 1천분의 4 → 1천분의 8 - (단독주택) 1천분의 7 → 1천분의 14
○ 2017.3.21. (법률 제14604호)	○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개발사업 법령 추가 ○ 분양자료 제출의무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 ○ 가산금 요율 상한 명시(부담금의 100분의 3) ○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2020.3.24. (법률 제17083호)	○ 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 - 정액(100분의 3) 부과 → 일단위 부과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0.5.19. (법률 제17255호)	○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확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8개 개발사업 법령 추가
○ 2020.12.22. (법률 제17667호)	○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
○ 2024.12.20. (법률 제20568호)	○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공동주택) 1천분의 8 → 1천분의 4 ○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규모 변경 - (부담금 부과 대상) 100세대 → 300세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은 시·도 조례에 위임

< (예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②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은 시·도 조례에 위임

< (예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2조의4(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부과·징수된 부담금이 분양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되 환급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 2025년 환급액 : (건수) 24 (금액) 18,754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1 (금액) 13,316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3 (금액) 28,292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운용보고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시·도 조례에 위임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예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2조의2(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납부기한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76,635	6,156,972	273,123	6,042,567	3,512	114,406	98.1%
2025	1,438	331,772	1,450	340,414	△12	△8,642	102.6%
2024	734	326,494	709	306,444	25	20,051	93.9%
2023	1,102	240,606	1,087	220,764	15	19,842	91.8%
2022	664	293,305	645	273,678	19	19,627	93.3%
2021	1,142	482,077	1,133	462,968	9	19,109	96.0%
2020	1,140	367,307	957	355,852	183	11,455	96.9%
2019	924	282,208	907	286,223	17	△4,015	101.4%
2018	1,366	432,806	1,347	403,148	19	29,658	93.1%
2017	1,687	335,697	1,681	334,443	6	1,254	99.6%
2016이전	266,438	3,064,700	263,207	3,058,633	3,231	6,067	99.8%

주1) : (부산, 대구, 경남) 체납 등 미수납건 및 (경북)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인한 차이 발생

< 참고 시도별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차이 사유 >

(단위 : 백만원)

시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차이(증감)사유
		계획**	실적(B)	(B-A)/A (%)		
합계	306,444	-	340,414	33,970	11.1%	
서울	19,505	-	24,483	4,978	25.5%	분양세대 증가
부산	17,669	-	40,777	23,108	130.8%	부동산 분양 증가
대구	9,938	-	14,162	4,224	42.5%	미분양 주택물량 일부 해소 및 전년도 미납액 징수 실적 증가
인천	22,844	-	8,388	△14,456	△63.3%	주택 분양물량 감소
광주	6,754	-	5,614	△1,140	△16.9%	
대전	29,868	-	32,899	3,031	10.1%	'24년 부과 건 '25년 징수 실적 집계
울산	12,022	-	8,459	△3,563	△29.6%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착공 실적 감소
세종	121	-	3,298	3,177	2,625.6%	5생활권 분양으로 부담금 수입 증가
경기	105,066	-	88,274	△16,792	△16.0%	부담금 수입 감소
강원	8,752	-	16,443	7,691	87.9%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물량 증가
충북	-	-	-	-	△100%	
충남	22,272	-	25,848	3,576	16.1%	
전북	6,580	-	22,171	15,591	236.9%	분양규모 증가
전남	6,785	-	6,177	△608	△9.0%	
경북	24,100	-	17,141	△6,959	△28.9%	부과취소 소송 등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및 개발사업 물량 감소 등
경남	8,901	-	23,024	14,123	158.7%	
제주	5,267	-	3,256	△2,011	△38.2%	개발 사업 감소

* 2024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의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실적 금액으로 작성('25.3.)

** 202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의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금액으로 작성('24.5.)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합계	340,414	5,702,152	
서울특별시	24,483	422,384	
부산광역시	40,777	432,623	
대구광역시	14,162	392,817	
인천광역시	8,388	430,346	
광주광역시	5,614	157,821	
대전광역시	32,899	204,705	
울산광역시	8,459	137,421	
세종특별자치시	3,298	183,686	
경기도	88,274	2,107,257	
강원도	16,443	133,169	
충청북도	-	68,123	
충청남도	25,848	201,665	
전라북도	22,171	133,010	
전라남도	6,177	124,540	
경상북도	17,141	186,856	
경상남도	23,024	353,998	
제주특별자치도	3,256	31,731	

자료: 17개 시·도 지자체 자료 재구성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학교용지 부담금	306,444	0*	340,414	33,970 (11.1%)	재개발 사업 및 분양 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 실적 증가 ※ 서울, 부산, 대전, 경남 등 등 주택 개발 사업 증가(779억원) 및 인천, 울산, 경기, 경북 등 분양 물량 감소(456억원)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4.3.27.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25.1.1.) 추진 예정으로 ’25년도 운용계획이 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4.12.20.)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아닌 부과 완화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없음

※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징수 제고 노력 경주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9,962	15,141	24,295	9,153 (60.5%)	○ (체납 사유) 개발 사업자의 자금부족, 미분양 등으로 인한 자금 운용 어려움 및 납부의무 이행 불성실 등 ○ (징수 계획) 독촉장 발부 등의 납부독촉 행정처분 및 분양 발생 시 부담의무 이행 독려

자료: 17개 시·도 지자체 자료 재구성

※ ’24년 대비 ’25년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서는 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 징수 등을 통해
징수 제고 노력 경주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340,4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각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서울 외 16개 지자체
국가		-	-	
광역시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7.7	332,418	
기초자치단체*		2.3	7,997	

*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4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493,756	510,580	합 계	440,786	377,86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762	3,479	308-02 징수교부금	8,282	7,997
225-01 지난년도 수입	14,971	14,161	703-01 시·도 법정전출금	198,136	175,053
236-01 부담금	283,842	327,618	704-01 예탁금	219,911	183,753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711-01 순세계양여금	54,128	74,211	801-01 일반예비비	3,922	84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20,382	25,083	201-01 사무관리비	2	2
224-07 그외수입	04	69	202-01 국내여비	208	-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4,665	65,808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2
234-02 기타 과태료	2	52	801-03 내부유보금	9,843	10,233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	90	802-03 기타변환금등	481	742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			
216-03 기타이자 수입	-	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없음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해당없음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학교용지 부담금		해당없음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6.12.30.), 시행일(1997.07.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 서 명 : 원자력연구개발과
	전화번호 : 044-202-4642	팩스번호 : 044-202-6023
부과기관	기 관 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 서 명 : 원자력연구개발과
	전화번호 : 044-202-4642	팩스번호 : 044-202-6023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연구재단	부 서 명 : 기금관리팀
	전화번호 : 042-869-6027	팩스번호 : 042-869-6035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범 료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16.1.27. 개정, 2017.1.1 시행
2. 시행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 2016.12.30. 개정, 2017.1.1. 시행 ○ 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마다 전전년도* 해당분기에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함 * 2016.12.30. 개정, 2017.1.1 시행
3. 시행규칙	해당 없음	※ 원자력법 시행규칙 폐지(2011.11.15.)
4. 고시·훈령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 기금수입징수관이 영 제15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 기금수입담당임원은 통보를 받는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함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원자력 진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소요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원자력 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차입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원자력 기금을 설치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부담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원자력 진흥법 제9조, 제12조 원자력 진흥법 제12조 제2항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제1항 원자력 진흥법 제1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원자력 발전량	1.2원/kWh	○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kWh)×1.2원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제2항,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 징수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원자력 진흥법 제1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증가산금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의 율) ○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미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원자력 진흥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0조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7. 7. 1.	○ 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 발전량(kWh)×1.2원
○ 1999. 11. 24.	○ ‘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 발전량(kWh)×1.2원’ 유지 합의 ※ 국무총리실, 국무경제 71100-131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한전부담금 요율조정결과 통보)
○ 2003. 2. 27.	○ ‘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 발전량(kWh)×1.2원’ 유지 합의 ※ 과학기술부, 원정71212-146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요율협의결과 통보)
○ 2017. 1. 1.	○ ‘전전년도’에 생산한 원자력 발전량(kWh)×1.2원 변경 ※ 「원자력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부담금 부과기준을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변경)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처리기간 :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관련근거(법령)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법령)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납부)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 공개,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 분기 서면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 분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납부기한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납부기한 명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15	4,791,492	115	4,791,492	-	-	100.0
2025	4	216,525	4	216,525	-	-	100.0
2024	4	208,374	4	208,374	-	-	100.0
2023	4	189,618	4	189,618	-	-	100.0
2022	4	192,220	4	192,220	-	-	100.0
2021	4	172,736	4	172,736	-	-	100.0
2020	4	160,205	4	160,205	-	-	100.0
2019	4	178,112	4	178,112	-	-	100.0
2018	4	191,211	4	191,211	-	-	100.0
2017	4	196,014	4	196,014	-	-	100.0
2016 이전	79	3,086,477	79	3,086,477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6,525	4,574,969	-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비용부담금	208,374	216,525	216,525	8,151 (3.9)	○ '22년도 대비 '23년도 원자로 생산 전력량 증가 * '23년(180,438백만kWh×1.2원) -'22년(173,645백만kWh×1.2원)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 80% 초과)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원자력기금 원자력 연구개발계정	100.0	216,525	원자력 진흥법 제17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원자력 진흥법 제19조 제2항
5. 원자력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가능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35	2,616	계	2,135	2,616
○ 부담금 수입	2,084	2,165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710	1,922
○ 기 타	52	451	○ 예수 원리금 상환	4	122
- 기타재산이자수입	10	9	○ 기 타	421	572
- 기타경상이전수입	27	21	- 여유자금운용	421	572
- 여유자금회수	15	42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비용부담금	'24년	○ '97년부터 현재까지 요율 고정액이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관련 유관기관 협의 추진 예정

제5장 외교부 소관

1. 국제교류기여금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 국제교류기여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국제교류기여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1. 12. 14.), 시행일(1992. 1. 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외교부	부 서 명 : 공공외교총괄과
	전화번호 : 02-2100-7544	팩스번호 : 02-2100-796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부 서 명 : 대외협력부
	전화번호 : 064-804-1127	팩스번호 : 064-804-1274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부 서 명 : 대외협력부
	전화번호 : 064-804-1127	팩스번호 : 064-804-1274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제1항	○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2.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	○ 모금 대상 및 모금액(별표1)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의 조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 법 제16조 ◦ 시행령 제5조(별표1)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모금의 대상)	(모 금 액)		
	국 내	국 외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12,000원	미화 12월에 해당하는 금액	◦ 산정기준: 시행령 제5조 ◦ 부담액: 시행령 제5조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9,000원	미화 9월에 해당하는 금액	

⑧ 가산금 등: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o 2002. 3. 2.	o 모금 대상 축소 - 여권 기재 사항 변경·사실증명·영사 문서 확인 신청 및 전신수수료 납부시 기여금 면제				
o 2004. 12. 31.	o 모금액 인하 및 모금 대상 축소 - 5년 복수여권 신청시 기여금을 12,000원으로 인하 -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기여금 면제 - 재외공관 모금액에 대한 환율 적용 현실화 (미화 1불당 800원 → 1,000원)				
o 2024. 7. 1.	o 모금액 인하 및 모금 대상 축소 - 10년 복수여권 신청시 12,000원, 5년 복수여권 신청시 9,000원으로 기여금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시 기여금 면제				
구분	당초 (1991.12.31.)	1차 개정 (2002. 3. 2.)	2차 개정 (2004.12.31.)	3차 개정 (2024.7.1.)	비고
1.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일반여권					
(1) 복수여권	15,000원 / \$20	15,000원 / \$20	15,000원/\$15(10년), 12,000원/\$12(5년)	12,000원/\$12(10년), 9,000원/\$9(5년)	o 10년: 만18세이상 o 5년: 만8세이상 ~18세미만
- 거주여권	7,500원 / \$10	7,500원 / \$10	(일반여권에 포함)	-	
(2) 단수여권	5,000원 / \$7	5,000원 / \$7	5,000원 / \$5	-	
나. 여행증명서	2,000원 / \$3	2,000원 / \$3	2,000원 / \$2	-	
2.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 (유효기간연장 포함)	1,500원 / \$2	1,500원 / \$2 (기간연장만 해당)	-	-	
3. 여권에 관련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자	600원 / \$1	-	-	-	
4. 여권에 관련 전신수 수료를 납부하는 자	2,000원 / \$3 (회신용:4,000원/\$6)	-	-	-	
5.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600원/\$1	-	-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 없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국회에 결산서 제출 (기금결산보고서의 국회심의 의결)
 - 홈페이지(www.kf.or.kr) 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해당 없음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해당 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여권 발급 신청 시	법 제16조
납부기한	해당없음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97,384,261	1,221,932	97,384,261	1,221,932	-	-	100.0%
2025	4,251,494	49,565	4,251,494	49,565	-	-	100.0%
2024	5,176,124	68,313	5,176,124	68,313	-	-	100.0%
2023	4,629,855	67,528	4,629,855	67,528	-	-	100.0%
2022	1,958,973	28,924	1,958,973	28,924	-	-	100.0%
2021	604,201	8,966	604,201	8,966	-	-	100.0%
2020	1,244,064	18,087	1,244,064	18,087	-	-	100.0%
2019	4,135,410	59,421	4,135,410	59,421	-	-	100.0%
2018	4,281,338	60,998	4,281,338	60,998	-	-	100.0%
2017	4,566,176	64,883	4,566,176	64,883	-	-	100.0%
2016 이전	66,536,626	795,247	66,536,626	795,247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9,916	385,265	
부산광역시	3,081	81,304	
대구광역시	2,192	49,518	
인천광역시	2,774	52,544	
광주광역시	1,254	27,973	
대전광역시	1,361	30,772	
울산광역시	1,128	21,521	
경 기 도	12,851	204,115	
강 원 도	1,318	26,185	
충청북도	1,464	26,710	
충청남도	1,926	34,747	
경상북도	2,137	40,138	
경상남도	2,986	56,213	
전라북도	1,471	31,543	
전라남도	1,372	27,623	
제 주 도	614	11,929	
세 종 시	425	3,135	
*지자체소계	38,354	725,970	
*재외공관	1,295	61,132	
합 계	49,565	1,172,36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국제교류 기여금	68,313	54,470	49,565	△18,748 (△27.4%)	o '24. 정부의 부담금 정비에 따른 기여금 인화로 전년 대비 수입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국제교류기금	100%	49,565	법 제1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제교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402	1,153	계	2,402	1,153
○ 법정부담금	683	496	○ 경상사업비	810	516
○ 민간출연금	302	113	- 글로벌한국학진흥	177	152
○ 기타재산이자수입	19	37	- 국제협력네트워킹	203	155
○ 기타잡수입	10	6	- 문화교류협력강화	98	7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88	501	- 지정기부금운영	304	112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국제교류정보화	28	27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기금운영비	146	146
			○ 공공자금관리기금	-	-
			○ 여유자금운용	1,445	49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국제교류 기여금	'21년	○ 납부의무자가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명시 필요	○ 권리구제 절차 법제화 관련 영향 검토 과정에서 여권 사무에 미치는 영향, 이의신청 처리 행정 비용, 국제교류기금 고갈 등 우려사항 제기 - 외교부 정부입법계획 철회 요청 및 법제처 수용('25년 10월)
	'24년	○ 근거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명시 필요 ○ 수익자 부담 원칙 적합 여부 관련 부과 타당성 주기적 점검 및 재원 확보 수단 다양화 필요	○ 상동 ○ 수익자 부담 원칙 타당성 제고 노력 및 재원다각화 방안 지속 강구 - (수익자 부담 원칙) 우리 국민 대상 사업 강화 도모 - (재원다각화) ▲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추진('25.11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상정), ▲유관기관 협력사업 신청('25.7월), ▲타 기금 및 일반회계 편입 검토 등 타 재원 확보 노력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6년 12월 30일), 시행일(2017년 1월 1일)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외교부	부 서 명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8361	팩스번호 : 02-2100-8370
부과기관	기 관 명 : 외교부 (부과대행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부 서 명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8361	팩스번호 : 02-2100-8370
징수기관	기 관 명 : 외교부 (부과대행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부 서 명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8361	팩스번호 : 02-2100-837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제2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①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 국제질병퇴치기금 부과 제외 대상, 기금 부과·징수 업무 대행,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 설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내·외국인 공통) ○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좌동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1매	정액부담	1매당 1천원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국내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保稅區域)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100%	31,197,789,000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시행령 제2조 1항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2.8.1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 5년 연장(2017.9.30. 일몰) 법안 국회 통과
○ 2014.10.30	○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법안 상정
○ 2016.12.2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안 국회의결
○ 2016.12.20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제정 공포
○ 2016.12.30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시행령 제정 공포
○ 2017.1.1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
○ 2023.3.28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일부개정
○ 2023.6.29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일부개정 시행
○ 2024.1.16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일부개정 및 시행
○ 2025.1.1.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폐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국제질병퇴치기여금법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행정기본법 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2025년 환급액 : (건수) 786건 (금액) 786,00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973건 (금액) 973,00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068건 (금액) 1,068,00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국회보고)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여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외교부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홈페이지) KOICA 홈페이지에 징수 및 집행실적 공개4)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상시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출국납부금과 함께 국제항공권 영수증 내 taxes로 고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 없음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국내출발 국제선 탑승객 항공권 구매 시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
납부기한	해당 없음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분할납부	해당 없음	

4) https://www.koica.go.kr/koica_kr/974/subview.do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A-B)	
합계	282,782,672	282,783	276,120,765	276,121	6,661,907	66,619	97.6
2025	42,449,517	42,449	41,064,030	41,064	1,385,487	1,385	96.7
2024	44,014,834	44,015	40,338,853	40,339	3,675,981	3,676	91.6
2023	30,914,360	30,914	29,382,568	29,383	1,531,792	1,531	95.0
2022	8,420,036	8,420	6,697,221	6,697	1,722,815	1,723	79.5
2021	1,382,161	1,382	1,349,428	1,349	32,733	33	97.6
2020	6,019,620	6,020	9,541,902	9,542	△3,522,282	△3,522	158.5
2019	41,539,226	41,539	41,035,182	41,035	504,044	504	98.8
2018	39,502,550	39,503	39,151,689	39,152	350,861	351	99.1
2017	35,275,785	35,276	36,749,306	36,749	△1,473,521	△1,473	104.2
2016	33,264,583	33,265	30,810,586	30,811	2,453,997	2,454	92.6

주1) : (부과금액) 당해연도 1월~12월 중 출국한 사람에 대한 납부대상금액
(징수금액) 당해연도 1월~12월 중 기금계좌로 납부된 징수금액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공항공사	12,608	89,554	
인천국제공항공사	28,456	306,414	
외교부	0	19	
합계	41,064	395,98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국제질병 퇴치기금	40,339	-	41,064	725	※ 2025년 1월 1일 국제질병 퇴치기금법 폐지 이후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국가의 일반 회계가 승계하여 별도 계획 없음

※ 2025년 1월 1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이후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국가의 일반 회계가 승계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32	-58	-199	-243%	○(체납 사유) 일부 체납자(항공사) 회생 · 파산 · 소송 절차 등으로 정리유예 상황 ○(징수 계획) 대손 처리 후 외교부 일반회계 미납채권으로 이관 및 이관 예정

※ 미납금액과 회수금액의 소계값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질병퇴치기금	100	41,06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제4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제질병퇴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65	-	계	965	-
○법정부담금	403	-	○ 질병퇴치사업	912	-
○여유자금운용회수	37	-	○ 기금운영비	5	-
○기타경상이전수입	0	-	○ 여유자금운용	32	-
○기타재산이자수입	5	-	○ 예수이자상환	16	-
○기금예수금	520	-			

※ 2025년 1월 1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이후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국가의 일반 회계가 승계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준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폐지	24년 부담금 평가 미 실시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출국부담금	'21년	○ 항공사에 지급되는 징수대행 위탁수수료의 구성항목, 요율 등의 산정기준을 면밀히 산출하여 위탁수수료 요율의 타당성 재검토	<추진완료> ○ 징수위탁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공항공사, 항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23.8월 기재부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회에서 '24년 4월부터 수수료율을 하기와 같이 인하 결정하여 현재 적용 중. <table><tr><th>구분</th><th>기존</th><th>변경</th></tr><tr><td>인천국제공항공사</td><td>5.0%</td><td>3.75%</td></tr><tr><td>한국공항공사</td><td>4.5%</td><td>3.5%</td></tr></table> - 외교부는 '24.4월 인하 결정 시행을 양 공항공사와 징수위탁 약정 개정 체결 완료	구분	기존	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	5.0%	3.75%	한국공항공사	4.5%	3.5%
구분	기존	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	5.0%	3.75%										
한국공항공사	4.5%	3.5%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49.07.04.), 시행일(1949.08.15.)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행정안전부	부 서 명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전화번호 : 044-205-3880	팩스번호 : 044-204-8971
부과기관	기 관 명 : 자치단체(붙임 참고)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자치단체(붙임 참고)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범 율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 징수
2. 시행령	-	-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지자체 조례	○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율 등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지방자치법 제15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경우	○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	지방자치법 제15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이익의 범위	지자체별 상이	이익을 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산출	지자체 조례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시설분담금 면제		43,548천원	자치단체 조례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설건축물	100	42,81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	100	733천원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처리기간/방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서면 통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회계법」에 따라 환급
- 2025년 환급액 : (건수) 27건 (금액) 745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8건 (금액) 1.5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0.4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O)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시설분담금 산출금액 및 근거, 납부방법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고지서, 급수 공사 신청 등 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을 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급수공사 신청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얻는 때	지자체 조례
납부기한	자치단체별로 상이 (예 : 부과일로부터 7일 또는 10일 이내 등)	지자체 조례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자치단체별로 상이 (예 : 최대 3회까지 12개월에 걸쳐 균등 납부 등)	지자체 조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44,541	104,851	242,675	104,120	1,866	732	99.3
2025	12,283	7,301	12,283	7,259	180	42	99.4
2024	14,288	4,783	14,090	4,719	198	64	98.7
2023	13,196	4,299	13,061	4,273	135	26	99.4
2022	17,256	5,923	17,112	5,885	144	37	99.4
2021	18,695	6,044	18,569	6,010	126	35	99.4
2020	17,772	6,336	17,645	6,307	127	29	99.5
2019	22,061	6,659	21,924	6,613	137	46	99.3
2018	17,665	7,417	17,504	7,350	161	67	99.1
2017	17,747	7,881	17,576	7,818	171	64	99.2
2016 이전	93,578	48,208	93,091	47,886	487	322	99.3

주1) : 납기내 미수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 노원구	-	250	
인천시	1,930	-	
대전 유성구	5	115	
울산시	642	41,036	
경기 김포시	149	3,249	
경기 용인시	293		
강원 속초시	-	47	
강원 원주시	61	1,157	
충남 보령시	333	3,557	
충남 금산군	207	1,671	
충남 부여군	351	2,678	
충남 서천군	196	2,942	
전북 임실군	27	392	
전북 김제시	59	2,963	
전남 나주시	82	1,226	
전남 목포시	27	657	
전남 보성군	47	305	
전남 고흥군	140	1,951	
전남 곡성군	17	98	
전남 무안군	120	862	
전남 진도군	7	16	
전남 함평군	27	1,169	
경북 문경시	5	38	
경북 영주시	-	7	
경남 거제시	299	8,665	
경남 밀양시	369	6,162	
경남 사천시	188	2,804	
경남 진주시	165	7,011	
경남 남해군	1,321	200	
경남 함안군	27	472	
경남 함양군	50	533	
경남 의령군	45	2,351	
경남 창녕군	63	1,563	
경남 하동군	8	701	
경남 거창군	-	13	
합계	7,259	96,861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4,719	-	-	-	※ (인천) '21년 시설분담금 규정 삭제 후 '25.3월 재운영 등으로 '24년 대비실적 확대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4,719	-	7,259	2,540 (53.8%)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26	64	42	-22 (-34.4%)	○ (체납 사유) 납부 지연 ○ (징수 계획) 체납고지서 발송 등 납부 독려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7,259	
광역 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35.4%	2,572	지자체 조례
	상수도특별회계	64.5%	4,682	
기초 자치단체	일반회계	0.1%	5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상수도 공동급수 확대(신설 또는 개조 등)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 등 공공시설 관련 비용	지자체 조례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상수도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7.18	72.54	계	47.18	72.54
○ 부담금 수입 - 시설분담금	47.18	72.54	○ 시설비 - 수도시설 공사	47.18	72.54

< 일반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0.01	0.05	계	0.01	0.05
○ 부담금 수입 - 시설분담금	0.01	0.05	○ 시설비 - 관광지 유지관리 - 온천시설 공사	0.01 -	0.05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4.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5.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 출국납부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출국납부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7.01.13.), 시행일(1997.07.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 서 명 :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 044-203-2821	팩스번호 : 044-203-3478
부과기관	기 관 명 : 첨부 참조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첨부 참조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2.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 납부대상자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 납부금액 : 7천원(항만이용 시 1천원)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및 제2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정액부담	1인당 7천원 (항만이용 시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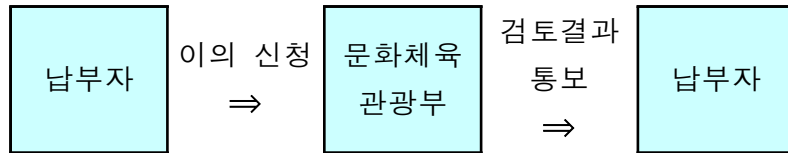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 12세 미만의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100%	60,010백만원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시행령 제1조의2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7. 7. 1.	○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 1998. 11. 18.	○ 국외로 여행하는 내국인(관광목적 삭제)
○ 2000. 1. 26.	○ 면제대상 확대(거주여권 소지자 및 영주권 소지자 등)
○ 2004. 7. 1.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국인 삭제)
○ 2009. 3. 25.	○ 제주지역 출국납부금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2024. 7. 1.	○ 부과금액 인하(공항 이용자 1만원→7천원), 면제대상 확대(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12세 미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 :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예결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금액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공항시설이용료 등과 함께 항공권 운임정보에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 구매 시	관광진흥개발기 금법 제2조제6항
납부기한	해당사항 없음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526,265,419	4,806,969	526,249,021	4,806,953	16,398	15	99.99
2025	40,588,346	262,445	40,588,346	262,445	-	-	100.0
2024	39,086,963	335,797	39,086,963	335,797	-	-	100.0
2023	29,191,752	288,799	29,192,992	288,800	△1,240	△1	100.0
2022	6,674,390	66,694	6,673,150	66,693	1,240	1	99.99
2021	1,343,888	13,439	1,343,888	13,439	-	-	100.0
2020	9,473,728	92,996	9,473,728	92,996	-	-	100.0
2019	41,453,619	400,591	41,453,619	400,591	-	-	100.0
2018	39,732,554	384,068	39,795,379	384,131	△62,825	△63	100.0
2017	35,659,248	344,219	37,721,178	364,832	△2,061,930	△20,614	106.0
2016 이전	283,060,931	2,617,921	280,919,778	2,597,229	2,141,153	20,692	99.2

주1) : 2022년 - 부담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출국납부금 납부 지연(1,240건, 1백만원)
 2023년 - 부담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출국납부금 납부 지연 건 징수(1,240건, 1백만원), '23.1.2. 납부완료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공항공사	59,326	954,511	
인천국제공항공사	202,275	3,566,899	
부산항만공사	464	10,377	
인천항만공사	199	7,7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2	62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38	1,19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3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31	3,153	
합 계	262,445	4,544,508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35,797	264,355	262,445	△73,352 (△21.8)	출국납부금 개편('24.7.1. 시행)에 따른 부과 금액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에 징수실적 감소
출국납부금	335,797	264,355	262,445	△73,352 (△21.8)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5	15	15	- (-)	○ (체납 사유) 선사의 경영악화로 폐업 ○ (징수 계획) 독촉 및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진행 중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62,445	
국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100	262,44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다음의 용도 또는 사업에의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5.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6.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7.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8.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9.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10.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11.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 12.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13.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14.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5.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6.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음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에 출연 1. 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3,892	13,427	계	13,892	13,427
○ 자체수입	13,566	12,088	○ 사 업	11,265	11,375
- 출국납부금	3,358	2,624	- 경상사업	5,884	5,451
- 카지노납부금	2,426	2,718	- 용자사업	5,381	5,924
- 융자원금회수	6,706	6,252			
- 기타	1,076	494	○ 기금관리비	6	6
○ 정부내부수입	244	75	○ 정부내부지출	1,769	2,035
- 일반회계전입금	244	75			
			○ 여유자금운용	852	11
○ 여유자금회수	82	1,264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2.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44.08.03.), 시행일(1994.12.04.)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 서 명 : 융복합관광과
	전화번호 : 044-203-2885	팩스번호 : 044-203-3480
부과기관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 서 명 : 융복합관광과
	전화번호 : 044-203-2885	팩스번호 : 044-203-3480
징수기관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 서 명 :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 044-203-2821	팩스번호 : 044-203-347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관광진흥법 제30조	○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2.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 매출액별 징수비율, 납부 방법,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연기 신청 등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및 제2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전년도 카지노영업으로 매출이 발생한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법 제30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전년도 총매출액	1/100~ 10/100	연간 총매출액이 ○ 10억원 이하: 총매출액의 1/100 ○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1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 ○ 100억원을 초과: 4억6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100	관광진흥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3%	관광진흥법 제30조 제2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관광진흥법 제30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9. 3. 25.	○ 제주지역 카지노납부금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심의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2024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 2023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징수실적 및 운영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재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부과 법적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미납 시 조치사항, 의견제출 가능여부 및 제출기관 명칭과 그 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납부금 통지 문서 발송/1차 납부일로부터 약 60일 전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호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4월 30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
납부기한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분할납부	○ 2회 분할납부 -제1회 :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제2회 :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43	4,607,256	342	4,607,088	1	167	99.9
2025	9	271,805	9	271,805			100
2024	8	242,615	8	242,615			100
2023	8	181,399	14	210,609	△6	△29,210	116.1
2022	8	108,811	4	86,641	4	22,170	79.6
2021	9	92,883	7	85,842	2	7,041	92.4
2020	9	269,669	9	269,669			100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2019	9	247,077	9	247,077			100
2018	9	250,829	9	250,829			100
2017	8	268,408	8	268,408			100
2016 이전	266	2,673,760	265	2,673,593	1	167	99.9

주1) : 2021년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납부기한 1년 연장(2건, 7,041백만원)

2022년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납부기한 1년 연장(6건, 29,210백만원)

및 2021년 납부기한 연장 2건(7,041백만원)에 대한 징수

2023년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22년 납부기한 연장 6건(29,210백만원)에 대한 징수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문화체육관광부	271,805	4,335,283	
합 계	271,805	4,335,283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42,615	289,669	271,805	29,190 (12.0)	신규 카지노사업장 개장 및 전년대비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증가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242,615	289,669	271,805	29,190 (12.0)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71,805	
국가	관광진흥개발기금	100	271,8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다음의 용도 또는 사업에의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5.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6.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7.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8.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9.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10.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11.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 12.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13.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4.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5.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위한 지원사업 16.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음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3,892	13,427	계	13,892	13,427
○ 자체수입	13,566	12,088	○ 사 업	11,265	11,375
- 출국납부금	3,358	2,624	- 경상사업	5,884	5,451
- 카지노납부금	2,426	2,718	- 용자사업	5,381	5,924
- 용자원금회수	6,706	6,252			
- 기타	1,076	494	○ 기금관리비	6	6
○ 정부내부수입	244	75	○ 정부내부지출	1,769	2,035
- 일반회계전입금	244	75			
○ 여유자금회수	82	1,264	○ 여유자금운용	852	1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카지노 독점적 운영 면허권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부담금의 부과 원칙에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 및 중복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86.12.31.), 시행일(1987.07.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 서 명 : 지역관광개발과
		전화번호 : 044-203-2844	팩스번호 : 044-203-3479
보문, 감포 해양 관광 단지	부과 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 서 명 : 개발기획팀
		전화번호 : 054-740-7364	팩스번호 : 054-745-6727
	징수 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 서 명 : 개발기획팀
		전화번호 : 054-740-7364	팩스번호 : 054-745-6727
안동 문화 관광 단지	부과 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 서 명 : 사업관리팀
		전화번호 : 054-823-9324	팩스번호 : 054-823-9329
	징수 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 서 명 : 사업관리팀
		전화번호 : 054-823-9324	팩스번호 : 054-823-9329
지리산 온천 관광지	부과 기관	기 관 명 : 구례군	부 서 명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 061-780-8141	팩스번호 : 061-780-8145
	징수 기관	기 관 명 : 구례군	부 서 명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 061-780-8141	팩스번호 : 061-780-8145
중문 관광 단지	부과 기관	기 관 명 : 한국관광공사	부 서 명 : 제주지사
		전화번호 : 064-735-7327	팩스번호 : 064-738-2052
	징수 기관	기 관 명 : 한국관광공사	부 서 명 : 제주지사
		전화번호 : 064-735-7327	팩스번호 : 064-738-205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제3항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이나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제55조	-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함 -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부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 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함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보문관광단지	관광단지입주계약 규정 제11조	입주자의 공동 시설유지 소요 및 종합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 부담
	감포해양관광단지	단지공동관리비 부담금 징수내규	단지공동관리비 부과대상, 부담률등 부담금 부담에 대한 필요한 사항
	안동문화관광단지		
	지리산 온천관광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지리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중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 내부규정 (관광단지 공동시설 부담금 징수 규정)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등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 부담 -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입주업체별 금액산정 후 부과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관광지 지원시설 등의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 부담토록 함으로써 관광지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또는 관리하기 위함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제3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등의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사업	관광지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광지등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입주자)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구분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보문 관광단지 감포해양 관광단지 안동문화 관광단지	○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의 경우 - 매출액 기준 - 부지면적 기준 - 건축연면적 기준	2005년 전문용역기반에 의뢰한 부담기준에 의거(입주업체 동의)	시설별 매출액 기준율, 부지면적 기준율, 건축연면적 기준율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합산 적용	관광진흥법 제64조,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징수내규
자리산 온천 관광지	○ 지원시설 건설 비용의 경우 - 지원시설 건설 비용(공사비 및 보상비 합산)을 기준	지원시설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	○ 이용자분담금 [지원시설의 공사비(조사 측량·바설·계비 및 관리비 제외)+보상비(감상비 포함)]×(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한 비율)	관광진흥법 제64조, 시행령 제53조
	○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의 경우 - 매출액 기준 - 부지면적 기준 - 건축연면적 기준	구례군 자리산온천 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월별 사용량 검침 후 산출된 금액을 부과	관광진흥법 제64조, 시행령 제55조
중문 관광단지	○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의 경우 - 매출액 기준 - 부지면적 기준 - 건축연면적 기준	한국관광공사 사규 (관광단지 공동시설 분담금 징수 규정 제6조)	총관리비용×업체별부담율	관광진흥법 제64조, 시행령 제53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지리산 온천관광지> - 건당 10만원이상 연체기간 1개월 초과 60개월까지 0.75%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4조
증가산금	<지리산 온천관광지> - 연체기간 1개월까지는 5%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4조
연체료	<보문, 감포해양, 안동문화관광단지>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15%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징수내규 제10조
	<중문관광단지> - 입주자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채납된 공동 시설 분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국관광공사 사규 (관광단지 공동시설 분담금 징수 규정 제13조)
강제징수절차	<중문관광단지>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65조제1항
	<지리산 온천관광지> - 지방세 채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법령
보문 관광단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기타 공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휴업 또는 기업부도 등)	적정 수준	53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징수내규 제8조
감포해양 관광단지			-	
안동문화 관광단지			2.2	
중문 관광단지	○ 입주자가 영업을 개시한 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익년 회계연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연기, 감면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심한 손해를 받은 때 - 영업폐쇄 등 기타 공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	한국관광공사 사규 (관광단지 공동시설 분담금 징수규정 제11조)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구 분	년 월 일	변 천 내 용
보문 관광단지 감포해양 관광단지 안동문화 관광단지	'84. 12. 28.	○ 최초 부과 기준 1. 숙박업: 인가된 각급별 1일 객실료의 150% 해당액 2. 골프장업: 입장객 1인당 평일 회원입장료 (제세금 제외)의 10% 해당액 3. 유희오락장업: 연간 실수익(이익금)의 5%+총수익의 1.5% 4. 요식업: 연간 실수익(이익금)의 5%+총수익의 1.5% 5. 어린이놀이업(체육관련업): 연간 총수익의 3% 6. 제조, 전시장업: 연간 총수익의 3% 7. 수익을 수반하는 주거(아파트), 사업에 부수하는 주거(기숙사): 연간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합한 면적에 평당 1,000원 8. 단순주거: 연간 토지와건물의 총면적을 합한 면적에 평당 500원
	'96. 6. 14.	○ 부과기준변경(~2002년까지) - 시설구분을 세분화 하여 부과 예) 당초 숙박시설에서 호텔, 콘도, 여관으로 구분

	'03. 3. 19.	○ 부과기준변경(2003년부터 시행) - 시설별 부과요율 인하 - 부과금액 산정방법 정형화 등
	'05. 5. 1.	○ 부과기준변경(2005년부터 시행) - 시설별 특성을 파악 단위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의거 부과 요율 조정 - 연체료를 종전 18%에서 기간별 연체이자 적용 최고 연15%
중문 관광단지	'98. 1. 1.	○ 관광단지 이용자분담금 징수규정
	'00. 11. 1.	○ 관광단지 이용자분담금 징수규정 일부조정
	'01. 3. 3.	○ 관광단지 이용자분담금 징수규정 일부조정
	'12. 12. 10.	○ 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일부조정
	'20. 3. 16.	○ 관광단지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일부개정 - 운동시설에 대해 매출액 기준 분담금 부담 반영(0.2%)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보문, 감포해양, 안동문화관광단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매년 상·하반기(6월, 12월 초·중순)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 고지하고, 이의제기(유선, 대면 등)가 있을 때는 타당성 검토 후 수정 고지
 - 이의제기는 입주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기일 전에 이의신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를 통해 고지서 재발급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제2조, 회계규정 제51조)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 2023년 환급액 : 없음

<지리산 온천관광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고지된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받아 심의하여 조정여부 결정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64조
 - 이의제기 신청기간 :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제기 답변기간 :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심의결과 통보 : 서면통보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 2023년 환급액 : 없음

<중문관광단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매년 상반기 자료를 취합하여 분담금을 고지
 - 이의제기는 입주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관광공사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 신청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고지서 재발급 (관광공사 공동시설분담금 징수규정)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 2023년 환급액 :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보문, 감포해양, 안동문화관광단지>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업체별로 집행실적 내역 공문발송(우편) 및 열람

<지리산 온천관광지>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중문관광단지>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 방법 : 업체별로 집행실적 내역 공문발송 및 열람, 중문관광단지 입주자 협의회 대상 설명회 개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보문, 감포해양, 안동문화관광단지>

- 고지 내용
 - 납부안내 공문, 업체별 산출 내역, 납부 시기 등을 사전고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전달
 - 고지시기 : 연 2회(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리산 온천관광지>

- 고지 내용
 - 시설별 월간 하수발생량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월(10일~15일) 사용량 검침 결과에 따라 고지서 발송

<중문관광단지>

- 고지 내용
 - 납부안내공문, 업체별 산출내역, 납부시기 등을 사전고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상기 고지내용을 등기우편 및 방문전달
 - 고지시기 : 연2회(상반기~6월, 하반기~12월)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보문, 감포해양, 안동문화관광단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지리산 온천관광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공사기간 미도래 준공예정(2025.12.30.)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보문 관광단지	부과시기	매년 6월, 12월 초중순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징수내규 제7조, 제8조
	납부기한	상반기(~6월30일), 하반기(~12월31일)	
감포관광 단지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천재지변에 따른 심한 재산손실을 받은 때 - 기타 공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휴업 또는 기업부도 등)	
안동문화 관광단지	분할납부	분기별 4회 분할납부 가능 (공사가 인정할 때)	
지리산 온천 관광지	부과시기	건설 인·허가 시 및 시설별 월간 하수발생량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매월 말	
	납부기한 연장	없음	없음
	분할납부	별도의 기준이 없음 부과대상자가 분납 요청 시 상황에 따라 분납처리 중	
중문 관광단지	부과시기	매년 상반기	관광공사 공동시설 분담금 징수규정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납부기한 연장	입주업체의 공문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입주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2회, 4회로 분할 납부 ※분할납부 사유 기재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250	60,139	1,224	58,425	29	1,714	97.1
2025	40	2,006	40	1,963	3	43	97.8
2024	40	2,982	36	2,900	4	82	97.3
2023	39	2,932	34	2,853	5	79	97.3
2022	4	2,067	4	2,016	-	51	97.5
2021	43	2,340	33	2,287	10	53	97.7
2020	40	2,402	35	2,372	5	30	98.8
2019	45	2,381	45	2,360	-	21	99.1
2018	50	2,578	50	2,438	-	140	94.6
2017	48	2,561	48	2,413	-	148	94.2
2016	39	2,505	39	2,394	-	111	95.6
2015 이전	862	35,385	860	34,429	2	956	97.3

주1) : 당해연도 미납분으로 기수납 완료 및 2026년 수납 예정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1,228	45,456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전라남도(구례군)	13	1,033	지리산 온천관광지
한국관광공사	722	9,973	중문관광단지
합계	1,963	56,462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보문 관광단지 감포해양 관광단지	1,939	-	1,003	△839 (△43.3%)	○ 이용자 부담금 제도 폐지 - '25년 7개월분만 계상됨에 따라 표면적 실적 감소
안동문화 관광단지	231	-	128	△103 (△44.6%)	○ 이용자 부담금 제도 폐지 - '25년 7개월분만 계상됨에 따라 표면적 실적 감소 ○ '24년 대비 영업종료 업체 증가 및 '25년 미납분 발생
지리산 온천 관광지	12	25	13	1 (8.3%)	월별 사용량 검침 후 산출된 금액을 부과
중문 관광단지	718	722	722	△2 (△0.3%)	유지보수비 중 일부 공사 자체예산 투입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보문 관광단지	21	59	39	△33.9%	○ 일부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 ○ 촉구 공문 발송 ○ 현장독려 및 분납유도
감포해양 관광단지					
안동문화 관광단지	-	-	5	-	○ 불명(내부사정) ○ '26.3. 재촉구 공문 발송 ('26.1 촉구공문 발송)
합 계	21	59	44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963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제3항
기초 자치 단체	일반회계	0.6	13	
기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62.6	1,228	
	한국관광공사	36.8	722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등의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사업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제3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이용자 부담금 >

(단위 : 억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보문·감포 관광단지	소 계	19.39	11.00	소 계	25.26	17.31
	○ 단지공동 관리수익	19.39	11.00	○ 단지관리비	16.11	12.21
				○ 감가상각비	2.72	1.19
				○ 단지홍보선전비	0.77	0.47
				○ 인건비	5.66	3.44
안동관광 문화단지	소 계	2.31	1.28	소 계	7.54	3.76
	○ 단지공동 관리수익	2.31	1.28	○ 단지관리비	6.97	3.44
				○ 인건비	0.57	0.32
지리산 온천 관광지	소 계	0.12	0.13	소 계	0.12	0.13
	○ 이용자부담금	0.12	0.13	○ 사 업 -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0.12	0.13
중문 관광단지	소 계	7.18	7.22	소 계	7.24	7.22
	○ 이용자부담금	7.18	7.22	○ 공공시설전력및수도료	0.73	0.70
				○ 공공시설수선 유지비	0.92	0.63
				○ 단지관리비	5.59	5.89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24년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폐지 추진	<추진 완료>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폐지 * 「부담금 전면정비」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25.1.),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25.8.)

4.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7.01.26.), 시행일(2007.07.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영화진흥위원회	부 서 명 : 재무회계팀
	전화번호 : 051-720-4766	팩스번호 : 051-720-4717
부과기관	기 관 명 : 영화진흥위원회	부 서 명 : 재무회계팀
	전화번호 : 051-720-4766	팩스번호 : 051-720-4717
징수기관	기 관 명 : 영화진흥위원회	부 서 명 : 재무회계팀
	전화번호 : 051-720-4766	팩스번호 : 051-720-4717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범 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과금 부과 및 면제 ○부과금 납부방법 및 절차
2.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9조의5	○부과금 납부기한 세부사항 ○부과금 한시적 감액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	영화상영관 경영자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	3	입장권 단가 ÷ 1.03 × 3% (단, 소숫점 이하 반올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⑨ 부담금의 감면

(단위 : 백만원)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이 10억 미만인 영화상영관	연간 100	9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 직전 연도에 애니메이션·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 상영한 전용상영관	연간 100	160	
○ 감염병의 발생으로 월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 감소한 상영관	월간 100	634	
○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액을 입장권가액의 1천분의 3으로 조정	9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 1.26.	○ 부담금 징수 조항 신설 - 징수기한: 2007. 7. 1. ~ 2014.12.31.(7년간)
○ 2014.12.23.	○ 부담금 징수기한 연장 - 징수기한: 2015. 1. 1. ~ 2021.12.31.(7년간)
○ 2015. 5.18.	○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 아래 조건에 부합 시 단년도 부과금 100% 면제 • 직전연도 입장권 판매액 10억 미만 영화상영관 • 직전연도에 애니메이션·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 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전용상영관 ○ 가산금 부과 조항 신설 - 미납 부담금의 3% 가산금 부과
○ 2020. 3. 2.	○ 부담금 미납 가산금 한시적 유예 - 코로나바이러스-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2.1.-2020.11.30. 기간 동안의 부담금 납부 지연 가산금 유예
○ 2020.10.30.	○ 부담금의 한시적 감액 조항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11.1.-12.31. 기간 동안 부담금 90% 감액
○ 2021. 7.20.	○ 부담금 면제 조항 추가 신설 - 아래 조건에 부합 시 해당월 부과금 100% 면제 • 감염병의 발생으로 월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50%이상 감소한 상영관
○ 2021.12.28.	○ 부담금 징수기한 연장 - 징수기한: 2022. 1. 1. ~ 2028.12.31.(7년간)
○ 2024.12.31	○ 부과금 징수 폐지 - 영비법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및 공포('24.12.31) - '25.1.1이후 입장권 부과금 미발생 및 징수 폐지
○ 2025.3.25	○ 부과금 징수 재개 - 영비법 개정으로 부과금 징수 규정 신설 - 상시 징수 전환 및 입장권 가액의 3% 부과율 명시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절 차 : 부과금관리시스템 상 부과금 정정신고 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제9조 의거 부과금 이의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통보일로부터 30일
 - 처리방법 : 내역 확인 후 결과 통보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환불계좌 확인 후 환급
 - 2025년 환급액 : (0건) (0원)
 - 2024년 환급액 : (0건) (0원)
 - 2023년 환급액 : (0건) (0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공개,
국회 등 결산서 제출 및 ‘알리오’ 공시 등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부담금 부과 법적 근거, 납부액, 납부방법, 미납 시 조치사항, 감면 요건 및 방법, 부담금의 용도, 의견 제출 방법,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납부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안내서 배포 및 매월 SMS 안내
 - 고지시기: 통합전산망 최초 가입시(부과근거, 미납 시 조치사항, 감면 요건 및 방법, 부담금의 용도, 의견 제출 방법), 매월 10일(부과금액 고지), 매월 18일(납부기한 고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의 부칙 상 존속기한 규정 삭제(‘24.12.31.)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납부기한	다음 달 20일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85,921	668,507	455,051	655,541	30,870	12,967	98.1%
2025	27,648	22,761	27,599	22,449	49	312	98.6%
2024	23,858	26,501	23,696	26,223	162	278	99.0%
2023	21,737	26,368	21,645	26,255	92	113	99.5%
2022	15,061	17,961	15,050	17,948	11	13	99.9%
2021	19,232	17,087	18,685	17,086	547	2	100.0%
2020	34,715	18,689	11,972	10,522	22,743	8,167 ^{주2)}	56.3%
2019	36,784	54,630	36,298	54,582	486	48	99.9%
2018	34,848	52,145	34,512	51,978	336	167	99.7%
2017	30,950	50,222	30,447	49,900	503	322	99.4%
2016 이전	241,088	382,143	235,147	378,598	5,941	3,545	99.1%

주1) : 부과금 미납금액

주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담경감을 위한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연장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4254, 2020.11.19.)관련 2020년 2월~10월분
부과금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납부 연장 조치됨에 미수납금액 증가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영화진흥위원회	22,449	633,092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26,223	- (25,169 ^{주1})	22,449	△3,774 (△14.4%)	○ 2024년 대비 개봉편수 증가 및 월면제 적용 종료에도 불구하고, 영화상영관 전체 매출 감소로 부과금 징수금액 감소 * 참고1: 개봉편수 비교 - '24년: 1,344편 - '25년: 1,634편 * 참고2: 총매출액 비교(면제극장 포함) - '24년: 11,945억 원 - '25년: 10,470억 원 * 참고3: 면제 상영관(10억미만) 비교 - '24년: 217개 - '25년: 216개 [출처:2025년 한국 영화산업결산]

주1」 : '25.3.25 영비법 개정에 따른 부과금 재징수 및 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영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13	278	312	34 (12.2%)	○(체납 사유) 극장 매출 부진에 따 른 일부 상영관 미납 ○(징수 계획) 독촉,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체납 처분 활동 강화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22,449	
국 가	영화발전기금	100.0%	22,44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영화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89	1,022	계	689	1,022
○ 자체수입	291	245	○ 사업비	437	798
- 부담금수입	262	225	- 경상지출	437	798
- 보조금반환	10	2	○ 기금운영비	122	125
- 여유자금이자	12	16	- 인건비	101	105
- 기타잡수입	7	3	- 경상관리비	21	20
○ 기금전입금	354	645	○ 기금간거래	-	3
			- 복권기금 반환	-	3
○ 여유자금회수	44	132	○ 여유자금운용	130	9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5.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12.05.23.), 시행일(2012.11.24.)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 서 명 : 예방치유과
	전화번호 : 02-3704-0572	팩스번호 : 02-3704-0579
부과기관	기 관 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 서 명 : 예방치유과
	전화번호 : 02-3704-0572	팩스번호 : 02-3704-057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부 서 명 : 기획조정팀
	전화번호 : 02-740-9016	팩스번호 : 02-740-901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2.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기본 부담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로 하고,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부과비율을 낮출 수 있음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을 위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 (외국인 카지노 제외)	사행산업사업자 (외국인 카지노 제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사행산업사업자의 연간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등)	0.35%	사행산업사업자별 연간 순매출액X35/10,000 (기본부담비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연체기간 1개월 이하 - 부담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 연체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 +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부담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체납된 금액의 3/100을 초과하지 않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7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사행산업사업자 - 수익성이 없는 경우 -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 「지방세법」의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되는 사행산업	○ 기본부담비율의 - 100분의 10 이하 - 100분의 20 이하 - 100분의 10 이하 - 100분의 20	7,55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3.12.21.	○ 사감위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1000분의 5이하의 범위 → 1만분의 35이상 1만분의 50이하 범위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사행산업사업자는 위원회가 통지한 부담금의 부과금액 통지 내용(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 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6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사항 없음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함)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2제3항
납부기한	-	-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2제5항
분할납부	○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동일금액 2회)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2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02	258,313	102	258,313	-	-	100
2025	7	25,735	7	25,735	-	-	100
2024*	7	24,560	7	24,560	-	-	100
2023	8	23,856	8	23,856	-	-	100
2022	8	17,243	8	17,243	-	-	100
2021	8	13,183	8	13,183	-	-	100
2020	8	20,041	8	20,041	-	-	100
2019	8	19,276	8	19,276	-	-	100
2018	8	20,480	8	20,480	-	-	100
2017	8	20,822	8	20,822	-	-	100
2016 이전	32	73,117	32	73,117	-	-	100

* 납부주체 변경(체육진흥투표권) : (주)스포츠토토코리아→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25,735	232,578	
합계	25,735	232,578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4,560	24,941	25,735	1,175 (4.8)	부담금 부과·징수 기준인 사행 산업채 순매출액 및 감면비율 증감에 따른 변동
강원랜드	4,159	3,581	3,342	△817 (△19.6)	
한국마사회	3,659	4,392	3,666	7 (0.2)	
국민체육 진흥공단	7,397	7,610	7,414	17 (0.2)	
창원 레포츠파크	98	113	93	△5 (△5.5)	
부산스포윈	97	110	87	△10 (△11.0)	
복권위원회	9,131	9,114	11,112	1,981 (21.7)	
청도공영 사업공사	19	21	21	2 (11.9)	

* 납부주체 변경(체육진흥투표권) : (주)스포츠토토코리아→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5,735	
국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 치유계정)	100	25,735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2제9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4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74	614	계	574	614
○ 부담금 수입	246	257	○ 도박문제 예방치유	245	235
			- 도박문제 예방홍보	22	23
○ 기타수입	26	28	- 도박중독 치유재활	130	118
- 기타재산수입	7	10	- 한국도박문제	93	94
- 기타경상이전수입	19	18	예방치유원 운영		
○ 여유자금 회수	302	329	○ 여유자금 운용	329	37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농지보전부담금
2. 농산물 구매납입금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5. 대체초지조성비
6. 축산물수입이익금
7. 농산물수입이익금

1. 농지보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농지보전부담금

② 제정년도 : (舊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공포일(1975.12.31.), 시행일(1976.1.31.)

* 명칭 변경 : 대체농지조성비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정<'94.12.22.>, 시행<'96.1.1.>)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개정<'05.7.21.>, 시행<'06.1.22.>)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농지과
	전화번호 : 044-201-1738	팩스번호 : 044-868-0523
부과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부 서 명 : 농지관리부서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 서 명 : 기금관리처
	전화번호 : 061-338-5899	팩스번호 : 061-334-728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농지법 제38조제7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규정,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시행령 제53조)
2.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출방법 - 전용 농지면적(m ²) × 제곱미터당 금액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규정 -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0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시행규칙 제47조의2)
3.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상한금액 : 5만원/㎡
4. 고시·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 제20조	○ 사실상 농지의 지목구분 방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부과 기준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제32조)	농지법 제38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요건) 농지의 전용 ○ (대상)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 사업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관련 사업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8조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 또는 100분의30	개별공시지가의 20% 또는 30% (상한금액 : 5만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농업진흥지역밖) 또는 100분의30(농업진흥지역안) * 상한금액 : 5만원/㎡	농지법 제38조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 (금액)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농지법 제38조제9항
증가산금	○ (기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최대 60개월) ○ (금액)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 *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농지법 제38조제10항
강제징수절차	○ (기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농지법 제38조제11항 국세징수법 제24조~제27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중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세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에 규정	100% 또는 50%	622,616백만원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81. 4. 1	○ 절대농지(답, 전) : 4,320원/평, 상대농지 : -
○ 1981. 7. 1	○ 절대농지(답) : 7,560원/평, 상대농지(답) : 5,480원/평 절대농지(전) : 5,910원/평, 상대농지(전) : 4,290원/평
○ 1982. 8.11	○ 절대농지(답) : 3,260원/㎡, 상대농지(답) : 2,380원/㎡ 절대농지(전) : 1,970원/㎡, 상대농지(전) : 1,410원/㎡
○ 1989. 1.20	○ 절대농지(답) : 3,600원/㎡, 상대농지(답) : 2,630원/㎡ 절대농지(전) : 2,160원/㎡, 상대농지(전) : 1,550원/㎡
○ 1990. 5.14	○ 절대농지(답) : 3,600원/㎡, 상대농지(답) : 2,630원/㎡ 절대농지(전) : 2,160원/㎡, 상대농지(전) : 1,550원/㎡
○ 1991. 1.15	○ 절대농지(답) : 3,600원/㎡, 상대농지(답) : 3,600원/㎡ 절대농지(전) : 2,160원/㎡, 상대농지(전) : 2,160원/㎡
○ 1992. 9.21	○ 절대농지(답) : 3,600원/㎡, 상대농지(답) : 3,600원/㎡ 절대농지(전) : 2,160원/㎡, 상대농지(전) : 2,160원/㎡
○ 1997. 1. 1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5,84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9,6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11,840원/㎡ ○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4,710원/㎡ ○ 기타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 3,600원/㎡
○ 1999. 2. 1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7,2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1,9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14,600원/㎡ ○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6,000원/㎡ ○ 기타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 4,500원/㎡
○ 2002. 1. 1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원/㎡ ○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 기타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 10,300원/㎡
○ 2006. 1. 22	○ 전용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 5만원/㎡)
○ 2024. 7. 1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전용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 5만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전용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상한금액 : 5만원/㎡)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제49조제7항, 시행규칙 제41조

- 이의신청

-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납부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명시

- 처리기간

-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통보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는 지체 없이 다시 통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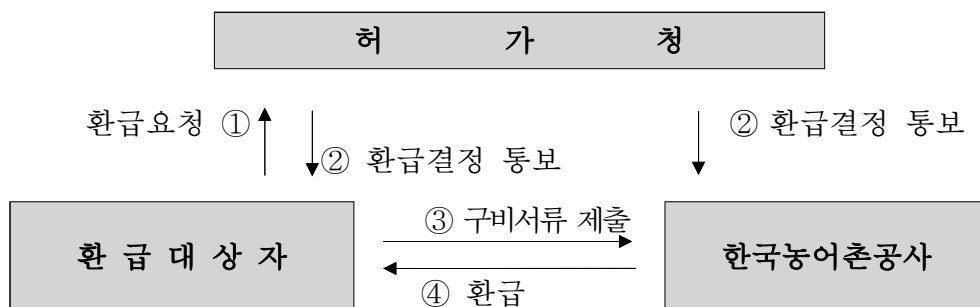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8조제5항,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46조

- 환급사유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절차도 >



- 2025년 환급액 : 8,328건, 151,641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8,766건, 163,995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9,083건, 155,608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농지관리기금 결산서에 내역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
 -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부과 사실, 감면요건 및 방법, 부담금 용도 등을 안내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방법 등이 명시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송부
 - 고지시기 :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부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 * '16.1.21.부터 사전납부제 시행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납부기한	○ 농지전용 (변경)허가 등 전까지 * 분할납부의 경우 목적사업 준공일 전까지	농지법 제38조제4항
납부기한 연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경우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분할납부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 -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분할납부 변경신청서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분할납부	○ (대상)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공장 부지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개인 2천만원 이상, 그 외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방법) 농지전용허가 등 전까지 총액의 100분의 30을 납부하고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 ○ (기한) 4년이내, 목적사업 준공일 전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537,305	29,539,469	1,328,103	26,267,974	209,202	3,271,495	88.9
2025	41,539	994,521	32,901	887,666	8,638	106,855	89.3
2024	51,794	1,287,988	41,587	1,000,039	10,207	287,949	77.6
2023	57,958	1,073,068	46,433	1,072,091	11,525	977	99.9
2022	72,183	1,425,248	57,819	1,331,230	14,364	94,018	93.4
2021	78,918	2,111,498	60,925	1,596,314	17,993	515,184	75.6
2020	68,283	1,193,701	53,188	1,179,667	15,095	14,034	98.8
2019	68,787	1,296,055	54,433	1,174,629	14,354	121,426	90.6
2018	82,543	1,282,433	65,932	1,397,771	16,611	△115,338	109.0
2017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7,396	183,710	86.8
2016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064	177,683	87.6
2015이전	861,377	16,049,370	790,422	14,164,373	70,955	1,884,997	88.3

주1) 납부지연(체납), 분할납부에 따른 기한미도래, 부과 후 농지전용 취소에 따른 부담금 부과취소 등으로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3,078	344,556	
부산광역시	17,586	413,969	
대구광역시	8,275	434,538	
인천광역시	47,220	1,065,687	
광주광역시	5,105	483,504	
대전광역시	10,394	278,733	
울산광역시	19,885	408,650	
세종특별자치시	7,364	105,448	
경기도	433,254	11,748,870	
강원도	35,291	1,043,408	
충청북도	75,282	1,161,525	
충청남도	76,379	2,190,825	
전라북도	18,890	898,579	
전라남도	27,365	828,382	
경상북도	36,529	1,424,768	
경상남도	44,972	1,692,638	
제주특별자치도	20,797	856,227	
합 계	887,666	25,380,308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농지보전 부담금	1,000,039	977,336	887,666	△89,670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개편 (공시지가의 30%→20%),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농지전용 수요 감소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30,147	39,084	45,472	6,388 (16.34%)	○(체납 사유) - 보증보험 미예치로 인한 분할 납부 취소(65%) 등 ○(징수 계획) - 분할납부 심사 내실화 -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관리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887,666	
국 가	농지관리기금	90.92*	807,027*	농지법 제38조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광역 자치 단체	세외수입	1.83**	16,201	농지법 제38조제13항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기초 자치 단체	세외수입	6.17**	54,812	
한국농어촌공사		1.08***	9,626	

* 카드납부에 의한 카드사 수수료(565백만원), 환급금(151,641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농지관리기금 실 납입액은 654,821백만원

** 관할청에서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액의 8% +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지자체
예산액에 따라 배분(징수금액의 4% 이내)

*** 징수금액이 4천억 이하인 경우 징수금액의 2%, 4천억 초과 1조 이하인 경우 (4천억
×2%) + {(징수금액-4천억) ÷ 300}, 1조를 초과하는 경우 징수금액의 1%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농지법 제38조
2.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1항
3.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4.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5.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6.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8.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9.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11.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12.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3.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포상금의 지급	
14.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5.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6. 다른 기금으로 예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3항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18. 금융기관에 예치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9.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0.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사료의 수집 및 관리 21. 농지재개발, 농지조성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 등 2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23. 조성토지매각대금 징수업무 보조 24.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및 직업전환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25.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26.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지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8,682	20,412	계	28,682	20,412
○ 자체수입	11,868	10,808	○ 사업비	19,733	17,897
- 농지보전부담금	7,453*	6,548	-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	2,337	1,824
- 가산금	20	22	- 맞춤형농지지원	12,739	11,515
- 융자원금회수	3,010	2,819	- 대단위농업개발	1,754	1,560
- 재고자산매각대	215	358	- 농가소득안정	2,777	2,881
- 관유물대여료	153	111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97	88
- 기타이자수입 등	1,008	901	- 농지관리정보화	29	29
- 기타경상이전수입	9	49	○ 기금운영비	661	664
○ 정부내부수입	14,497	7,034	○ 정부내부지출	5,718	900
- 기금예탁원금회수	14,227	7,000	- 농특회계전출	1,718	-
- 기금예탁이자수입	270	34	- 공자기금예탁	4,000	900
○ 여유자금회수	2,317	2,570	○ 여유자금운용	2,570	951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액(10,000) - 지자체 수수료(800) - 한국농어촌공사 수수료(100)
- 카드사 수수료(7)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1,64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농지보전 부담금	'24년	○ 증가산금 상한 완화를 위한 부담금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농지 법상 요율 개선	<추진 중> ○ 증가산금 부과 요율 관련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시 「농지법」에도 반영 예정

2. 농산물 공매납입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농산물 공매납입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4.03.22.), 시행일(2004.04.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1713	팩스번호 : 044-868-0650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수급사업부
	전화번호 : 061-931-0911	팩스번호 : 061-804-4536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기금관리부
	전화번호 : 061-931-1126	팩스번호 : 061-931-119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2조)	○정부출연금, 마사회특별적립금,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입금 등(제14조) ○협정에서 정한 관세할당 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제22조)
2. 시행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시행규칙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고시·훈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호(‘22.1.5)>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 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호(22.1.5)>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 관세 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3호(22.1.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 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의 협정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호(22.1.5)>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 배정 및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3호(21.12.3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4호(21.12.31)>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호(22.1.5)> ○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호(22.1.5)>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5호(21.12.3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7호(“22.1.5)>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 배정 및 관세율할당 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8호(“22.1.5)>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 무역 협 정 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 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 배정 및 관세율 할당 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 기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 제14조(기금의 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제5호, 제22조 제1~2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FTA체결에 따라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할당 물량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 유장, 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참깨 등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3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농축산물 관세할당 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공매 입찰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건별로 최고가 공매입찰 방식으로 결정	○ 공매납입금 $= \text{관세율차해당액} \times \text{환율} \times \text{납입비율}(\%)$ * 관세율차해당액 = 수입단가 $\times$ TRQ 물량 $\times$ 관세율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3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강제징수절차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u>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 현황 : 해당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환급방법 및 절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1조 (과오납금의 환급)* 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

* 기금에 납부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FTA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국회 등 외부에 공개

* 공개입찰 결과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FTA 협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부담금(Import Mark-up : 수입차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수입업자)에게 협정 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계약체결)하는 부담금으로 입찰 설명회 시 고지하며, 낙찰 후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사전 납입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음으로 사전 고지의무 불필요

- 납부절차 : 수입권공매 입찰 → 낙찰 → 계약 → 추천서발급 요청
및 공매납입금 입금 → 추천서 발급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해당 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부담금은 FTA 협정, FTA 체결 국가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거 납부 및 FTA 협정이 유지되는 한 부담금 존속기한은 지속되므로 별도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계약 체결 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2항
납부기한	양허관세 적용 수입추천서 신청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0,569	894,414	10,569	894,414	-	-	100.0
2025	862	85,641	862	85,641			100.0
2024	799	83,417	799	83,417	-	-	100.0
2023	710	68,759	710	68,759	-	-	100.0
2022	656	97,037	656	97,037	-	-	100.0
2021	960	109,327	960	109,327	-	-	100.0
2020	981	92,928	981	92,928	-	-	100.0
2019	1,124	95,159	1,124	95,159	-	-	100.0
2018	931	91,121	931	91,121	-	-	100.0
2017	1,092	68,660	1,092	68,660	-	-	100.0
2016	874	69,817	874	69,817	-	-	100.0
2015이전	1,580	32,548	1,580	32,548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85,641	808,773	-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83,417	91,275	85,641	2.6%	한-중 FTA 함께(전체 수입 약 74%) 평균 낙찰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85,641	
국가	FTA기금	100	85,6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기금 용도로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FTA 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3,655	2,568	합 계	3,655	2,568
○ 자체수입	2,661	2,263	○ 사 업 비	3,560	2,425
- 법정부담금	834	856	- 경상지출	2,011	1,375
- 기타경상이전수입	308	303	- 용자지출	998	1,050
- 용자원금회수	1,396	1,018	- 자본지출	550	-
- 용자금 이자	76	51	○ 기금운영비	18	17
- 예치금 이자	42	22	○ 정부내부지출	-	-
- 위약금 등	5	13	○ 차입금원금상환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	○ 차입금이자상환	-	2
○ 정부내부수입	-	-	○ 여유자금운용	78	124
- 농특회계 전입금	-	-	- 여유자금 운용	78	124
○ 차입금	-	227			
○ 여유자금회수	994	78			
- 전년이월 여유자금회수	994	78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평가 결과	'24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 및 농업인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및 기준, 부담금 사용 용도 등에 있어 존치가 타당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중복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 평가항목 이행실적 : 해당 없음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양곡수입이익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5.03.31.), 시행일(2005.03.3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식량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1827	팩스번호 : 044-868-2306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미곡부
	전화번호 : 061-931-0754	팩스번호 : 061-804-4537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미곡부
	전화번호 : 061-931-0754	팩스번호 : 061-804-4537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 양곡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이익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납입
2. 시행령	-	-
3.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 소비자 시판용 미곡
4. 고시·훈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9호	○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수입쌀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한 수입이익금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고, 기금 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양곡관리법 제12조, 13조, 13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소비자 시판용 미곡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자	양곡관리법 제12조, 13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	○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 등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해당없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⑧ 가산금 등 : 해당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절차 마련 추진('26년 개정 예정)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국회 등에 보고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해당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시판용 수입 양곡을 판매하고, 결산·정산 후 수입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납부기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한까지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분할납부	해당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	200,085	7	200,085	-	-	100.0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2	20,128	2	20,128	-	-	100.0
2022	-	-	-	-	-	-	-
2021	-	-	-	-	-	-	-
2020	-	-	-	-	-	-	-
2019	-	-	-	-	-	-	-
2018	-	-	-	-	-	-	-
2017	-	-	-	-	-	-	-
2016 이전	5	179,957	5	179,957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0,085	
합 계	-	200,08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	-	-	-	국산쌀 경합 곡종인 미국산 수입쌀 판매 중단으로 판매실적 감소하여 이익금 미발생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해당없음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준수사항, 자격요건 검증 등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농업농촌공익 직불법」 제2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9,220	33,097	계	28,576	33,096
○ 부담금	-	-	○ 사업비	27,634	32,786
○ 이자수입	-	-	○ 기금운영비	2	3
○ 기타수입	30	48	○ 정부내부지출	-	-
○ 정부내부수입	28,916	31,947	○ 차입금원금상환	660	-
○ 차입금	-	-	○ 차입금이자상환	6	-
○ 여유자금회수	274	1,102	○ 여유자금운용	274	3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부과목적, 부과대상자, 기타 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사용용도의 적정성이 인정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 중복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양곡수입 이익금	'21년	○ 양곡수입이익금 권리 구제 절차와 부과요건 마련	<추진 중> ○ 권리구제절차를 신설하고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26년 예정)

□ 2025년도 제도 변경 내역

<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관련 법령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 기금	변경없음	변경없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② 부과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③ 부과요건	대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 소비자 시판용 미곡을 수입 허가·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양곡관리법 제 12조, 제13조의2
④ 산정기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⑤ 산정방법(산출식)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⑥ 부과요율	산출식에 따름	"	"	-
⑦ 징수대상	소비자 시판용 미곡을 수 입허가·추천을 받아 양허 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⑧ 납부방법	수입발생시 기금에 납부	"	"	기금운용규정 제8조
⑨ 환급 등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	"	"	기금운용규정 제18조
⑩ 근거법률	- 양곡관리법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 '25년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9년 04월 01일), 시행일(2009년 10월 2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전략작물육성팀
	전화번호 : 044-201-2918	팩스번호 : 044-868-0734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두류부
	전화번호 : 061-931-0760	팩스번호 : 061-804-4537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기금관리부
	전화번호 : 061-931-1128	팩스번호 : 061-804-453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

3.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대상 품목: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 땅콩, 메밀·감자, 교잡곡물, 귀리, 울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수입이익금 산정: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 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 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5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 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 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 두류(豆類) 중 대두·팥· 녹두·땅콩, 메밀·감자 등	○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수입차익금의 범위 (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사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일정물량을 저율(양허)관세로 도입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면 정부는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추천서 발급)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근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9호)

-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부담금 의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 마련은 필요하지 않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수입금 납입과 지출은 부담금과 관련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국회 등에 보고(제출) 및 인터넷 공개(www.at.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WTO 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정한 부담금(Mark-Up:국산가격과 수입산 가격 차이)을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수입업자)에게 저율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계약체결)하고 있음

- 입찰 설명회 시 고지 및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사전 납입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음으로 사전 고지의무는 필요하지 않음

- * 납부절차 : 수입권공매입찰 → 낙찰 → 계약(수입이행보증금납부) → 물량수입(통관전)
→ 추천서발급요청(공매납입금입금) → 추천서 발급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양허관세 추천 신청 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납부기한	추천 신청 이전 납입 완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895	435,935	1,895	435,935	-	-	100.0
2025	146	46,830	146	46,830	-	-	100.0
2024	186	42,314	186	42,314	-	-	100.0
2023	147	33,063	147	33,063	-	-	100.0
2022	151	33,208	151	33,208	-	-	100.0
2021	137	20,366	137	20,366	-	-	100.0
2020	186	36,916	186	36,916	-	-	100.0
2019	128	28,845	128	28,845	-	-	100.0
2018	142	31,702	142	31,702	-	-	100.0
2017	108	26,065	108	26,065	-	-	100.0
2016 이전	564	136,627	564	136,627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46,830	389,105	
합 계	46,830	389,10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42,314	32,285	46,830	4,516 (10.7)	○ 입찰경쟁률 및 낙찰단가 상승 으로 인한 부담금 실적 확대 - 콩 : ('24) 10,130백만원 → ('25) 13,034 * 평균낙찰단가(kg) : ('24) 222원 → ('25) 440원(↑98.2%) - 콩나물콩 : ('24) 21,618백만원 → ('25) 27,368 * 평균낙찰단가(kg) : ('24) 1,150원 → ('25) 1,679원(↑46.0%)
양곡수입 이익금 (콩, 메밀 등)	42,314	32,285	46,830	4,516 (10.7)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46,830	
국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	46,830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용자 또는 대출>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출> 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999	23,638	계	21,999	23,638
○ 자체수입	21,428	22,034	○ 사업비	20,937	22,282
- 부담금	566	730	- 경상지출	9,657	10,777
- 농산물판매	5,827	6,121	- 용자지출	11,222	11,482
- 융자원금회수	14,789	14,158	- 자본지출	58	23
- 이자수입	25	76	○ 기금운영비	576	596
- 기타수입	221	949	○ 정부내부지출	159	164
○ 정부내부수입	248	1,277	- 공자기금이자	159	164
- 전입금	115	-			
- 기금예수금	133	1,277			
○ 여유자금회수	323	327	○ 여유자금운용	327	596

* 부담금수입은 농산물 및 양곡(콩, 메밀 등) 수입이익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을 합한 금액임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양곡수입 이익금 (콩 메밀 등)	'21년	○ 부담금 부과가 공매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추진 중> ○ 인삼산업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권리구제절차 및 부과방식 명확화를 위한 개정이행 추진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4.12.31.), 시행일(1995.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원예산업과
	전화번호 : 044-201-2239	팩스번호 : 044-868-5310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양념특작부
	전화번호 : 061-931-0930	팩스번호 : 061-804-4536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기금관리부
	전화번호 : 061-931-1128	팩스번호 : 061-804-453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 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
2.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 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납입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5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수입차익금의 범위 (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사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일정물량을 저율(양허)관세로 도입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면 정부는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추천서 발급)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근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9호)
-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부담금 의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 마련은 필요하지 않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수입금 납입과 지출은 부담금과 관련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국회 등에 보고(제출) 및 인터넷 공개(www.at.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해당 없음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해당 없음
 - WTO 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정한 부담금(Mark-Up:국산가격과 수입산 가격 차이)을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수입업자)에게 저율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계약체결)하고 있음
 - 입찰 설명회 시 고지 및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사전 납입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므로 사전 고지의무는 필요하지 않음
 - * 납부절차 : 수입권공매입찰 → 낙찰 → 계약(수입이행보증금납부) → 물량수입(통관전) → 추천서발급요청(공매납입금입금) → 추천서 발급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WTO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부담금 존속기한은 지속되므로 별도 존속기한 설정은 필요하지 않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양허관세 추천 신청 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납부기한	추천 신청 이전 납입 완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2	2,537	52	2,537	-	-	100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	-	-	-	-
2022	-	-	-	-	-	-	-
2021	-	-	-	-	-	-	-
2020	-	-	-	-	-	-	-
2019	-	-	-	-	-	-	-
2018	1	20	1	20	-	-	100
2017	-	-	-	-	-	-	-
2016 이전	51	2,517	51	2,517	-	-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	2,537	-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농산물가격안정 기금납부금	-	-	-	-	-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인삼 수입권 공매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여건에 따른 수입권 공매입찰 수요가 없어 '17년을 제외하고는 '11년~'24년까지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음
- 수입권 공매 계약체결 요청이 없을 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징수계획 수립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	-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융자 또는 대출>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출> 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의2.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999	23,638	계	21,999	23,638
○ 자체수입	21,428	22,034	○ 사업비	20,937	22,282
- 부담금	566	730	- 경상지출	9,657	10,777
- 농산물판매	5,827	6,121	- 용자지출	11,222	11,482
- 융자원금회수	14,789	14,158	- 자본지출	58	23
- 이자수입	25	76	○ 기금운영비	576	596
- 기타수입	221	949	○ 정부내부지출	159	164
○ 정부내부수입	248	1,277	- 공자기금이자	159	164
- 전입금	115	-			
- 기금예수금	133	1,277			
○ 여유자금회수	323	327	○ 여유자금운용	327	596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 해당없음('24년 평가결과 제도개선 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납부금	'21년	○ 부담금 부과가 공매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추진 완료> ○ 대상자가 공매 등 농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3)
	'21년	○ 납부의무자가 위법·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 명시 필요	<추진 중> ○ 지적사항인 권리구제절차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인삼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의원입법 협의 추진 예정

5. 대체초지조성비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대체초지조성비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1. 5. 31.), 시행일(1991. 12. 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2319	팩스번호 : 044-868-3966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장·군수·구청장	부 서 명 : 축산환경자원과
	-	-
징수기관	기 관 명 : 농협경제지주	부 서 명 :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전화번호 : 02-2080-6492	팩스번호 : 02-2080-649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초지법 제23조	○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한다
2. 시행령	제16조의2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3. 시행규칙	제15조의2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4. 고시·훈령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30호("25.7.31.)>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액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초지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초지전용	초지를 전용하는 자	초지법 제23조 제8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초지전용 면적	1만㎡당 납입 기준액 (매년 농식품부 고시)	(초지조성단가 + 3년간 초지관리비) × 전용면적	초지법 제2조 제5호, 제23조 제9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연체료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제2항
강제징수절차	전용허가의 취소 등	초지법 제23조의 2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목적에 전용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로 전용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용지로 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	50~60 또는 100	초지법 제23조 제8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9. 1. 8.	○ 8,913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0. 1. 8.	○ 9,161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1. 1. 3.	○ 9,261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2. 1. 2.	○ 9,261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3. 1. 2.	○ 9,407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4. 1. 2.	○ 9,593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5. 1. 2.	○ 10,339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6. 1. 2.	○ 11,635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7. 1. 1.	○ 12,641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8. 2. 5.	○ 13,905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19. 2. 27.	○ 14,765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22. 2. 14.	○ 16,226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 2025. 7. 31.	○ 19,508천원[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오 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는 때에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
- 2025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17,354천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14,405천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0건 (금액) 140,471천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 축산발전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국회 등에 보고 및 제출
 - 축산발전기금 홈페이지 등재 : www.ldf.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에 법적인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초지 전용 협의 이전에 구두로 고지 후 초지 전용 허가 시 민원인에 서면으로 제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초지 전용허가·신고접수 또는 협의 시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
납부기한 연장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분할납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	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2,235	48,487	2,178	44,076	57	4,411	90.9
2025	29	2,665	34	2,469	△5	196	92.6
2024	25	428	18	370	7	58	86.4
2023	60	973	59	818	1	155	84.1
2022	30	210	30	209	-	1	99.5
2021	20	1,200	20	1,053	-	147	87.8
2020	18	259	18	249	-	10	96.1
2019	25	4,268	29	4,245	△4	23	99.5
2018	70	400	56	110	14	290	27.5
2017	27	974	27	950	-	24	97.5
2016 이전	1,931	37,110	1,887	33,603	44	3,507	90.5

주1) : 초지전용 취소 및 부과일과 납입기일 간 차이에 따른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차이 발생,

부과일과 납입기일 간 차이 및 환급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지자체별 구분 곤란(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서 부과 후 징수 처리)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70	388	2,469	2,099 (567.3)	○ 단양군 휴양시설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초지조성사업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2,469	
국가	축산발전기금	100.0	2,469	초지법 제23조 제8항 및 축산법 제4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 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축산법 제47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축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130	9,907	계	9,130	9,907
○ 부담금	26	55	○ 사 업 비	8,687	8,952
- 축산물수입이익금	22	30	- 축산물수급관리	1,462	1,275
- 대체초지조성비	2	25	- 축산기술보급	522	491
			- 축산업경쟁력제고	3,658	4,165
○ 정부내부수입	4,178	3,355	- 친환경축산지원	1,525	1,530
- 일반특별회계전입금	-	-	- 축산물품질관리	645	603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455	1,455	- 축산물위생안전성	227	230
- 공자기금예수금	2,723	1,900	- 가축방역	648	658
○ 기타	4,926	6,497	○ 기금운영비	17	18
- 마사회납입금	6.31	1,189	- 인건비	11	11
- 기금운용수익금	767	721	- 기타경비	6	7
- 회수자금	2,332	4,445			
- 전년이월액 등	1,196	142	○ 기 타	426	937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연도	주요내용	'25년 이행실적
대체초지 조성비	'24년	·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시·군·구별 관리	<추진완료> · 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기록·관리
		· 초지법에 따라 부담금 납입기준액 매년 고시	<검토 중> · 법령 개정 사항 추가 발굴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 검토

6. 축산물수입이익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축산물수입이익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77.12.19.), 시행일(1978.02.18.)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2319	팩스번호 : 044-868-3966
부과기관	기 관 명 : 농협경제지주	부 서 명 :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전화번호 : 02-2080-6492	팩스번호 : 02-2080-6490
징수기관	기 관 명 : 농협경제지주	부 서 명 :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전화번호 : 02-2080-6492	팩스번호 : 02-2080-649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축산법 제45조	○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2.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징수 품목 및 금액 산정 방법
3. 고시·훈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4호	○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재원 조성	축산법 제43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축산물 수입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축산법 제4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 수입권공매	○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공매시 납입키로 표시한 금액(원/kg)	○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2. 외화획득용	○ 수입금액 (CIF+관세)×2%	○ 수입금액(CIF+관세)×2% ×환율	○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23-94호)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증가산금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축산법 제45조 제3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사항 없음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납입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
 - 2025년 환급액 : (건수) 5건 (금액) 84,199천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40,484천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10,184천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 매년 결산 시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국회 등에 보고 및 제출
 - 축산발전기금 홈페이지 등재 : www.ldf.or.kr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법적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부담금 납부 방법, 미납 시 조치사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년 수입권 공매 신청을 위한 공고 시(농협중앙회 홈페이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수입 추천받기 전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납부기한	수입 추천받기 전까지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843	2,574,613	7,834	2,574,447	9	166	100.0
2025	108	3,153	108	3,069	-	84	97.3
2024	79	2,228	79	2,228	-	-	100.0
2023	85	2,169	85	2,159	-	10	99.5
2022	63	2,246	63	2,244	-	2	99.9
2021	66	3,072	66	3,068	-	4	99.9
2020	68	2,085	68	2,080	-	5	99.8
2019	56	570	56	530	-	40	93.0
2018	67	2,772	67	2,771	-	1	100.0
2017	52	2,745	52	2,745	-	0	100.0
2016이전	7,199	2,553,573	7,190	2,553,553	9	20	100.0

주1) : 환급금 발생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징수기관별 구분 곤란(전산화가 되지 않아 구분 불가능)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2,228	2,444	3,069	841 (37.7)	○ 전년대비 수입권 공매 징수물량 및 낙찰금액 증가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3,069	
국 가	축산발전기금	100.0	3,069	축산법 제45조 제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 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축산법 제47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축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130	9,907	계	9,130	9,907
○ 부담금	26	55	○ 사 업 비	8,687	8,952
- 축산물수입이익금	22	30	- 축산물수급관리	1,462	1,275
- 대체초지조성비	2	25	- 축산기술보급	522	491
			- 축산업경쟁력제고	3,658	4,165
○ 정부내부수입	4,178	3,355	- 친환경축산지원	1,525	1,530
- 일반특별회계전입금	-	-	- 축산물품질관리	645	603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455	1,455	- 축산물위생안전성	227	230
- 공자기금예수금	2,723	1,900	- 가축방역	648	658
○ 기타	4,926	6,497	○ 기금운영비	17	18
- 마사회납입금	6.31	1,189	- 인건비	11	11
- 기금운용수익금	767	721	- 기타경비	6	7
- 회수자금	2,332	4,445			
- 전년이월액 등	1,196	142	○ 기 타	426	937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연도	주요내용	'25년 이행실적
축산물 수입이익금	'21년	부담금 부과가 공매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근거 법령에 좀 더 명확 하게 규정할 필요	<추진 중> · '공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관계 법령을 개정 추진 - (계획) 공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축산물 유통법*(제정안)에 반영 추진 * 정부안 국회 제출('24.7월) 후 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중

7. 농산물수입이익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농산물수입이익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4년 12월 31일), 시행일(1995년 01월 0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부 서 명 :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2225	팩스번호 : 044-868-3965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양념특작부
	전화번호 : 061-931-0930	팩스번호 : 061-804-4536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 서 명 : 기금관리부
	전화번호 : 061-931-1128	팩스번호 : 061-804-453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자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
3.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대상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 수입이익금 산정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3항 및 제54, 5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수입차익금의 범위(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사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일정물량을 저율(양허)관세로 도입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면 정부는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추천서 발급)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근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9호)
-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부담금 의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 마련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납부의무자의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 '18.12.31. 공포, '19.7.1. 시행)
- 2025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수입금 납입과 지출은 부담금과 관련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서에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을 국회 등에 보고(제출) 및 인터넷 공개(www.at.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WTO 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정한 부담금(Mark-Up:국산가격과 수입산 가격 차이)을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수입업자)에게 저율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계약체결)하고 있음
- 입찰 설명회 시 고지 및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사전 납입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음으로 사전 고지의무는 필요하지 않음
 - * 납부절차 : 수입권구매입찰 → 낙찰 → 계약(수입이행보증금납부) → 물량수입(통관전) → 추천서발급요청(구매납입금입금) → 추천서 발급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계약 체결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납부기한	양허관세 적용 수입추천서 신청전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866	1,310,205	2,866	1,310,205	-	-	100.0
2025	195	26,134	195	26,134	-	-	100.0
2024	80	14,329	80	14,329	-	-	100.0
2023	72	17,050	72	17,050	-	-	100.0
2022	127	54,791	127	54,791	-	-	100.0
2021	81	37,657	81	37,657	-	-	100.0
2020	50	17,018	50	17,018	-	-	100.0
2019	65	15,994	65	15,994	-	-	100.0
2018	84	24,062	84	24,062	-	-	100.0
2017	83	23,335	83	23,335	-	-	100.0
2016 이전	2,029	1,079,835	2,029	1,079,835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6,134	1,284,071	
합 계	26,134	1,284,071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4,329	25,234	26,134	11,805 (82.4)	○ (참기름) 수입권공매 이행물량 증가로 인한 납입액 증가 * 이행물량 : ('24) 573톤 → ('25) 653(↑80) * 납입액 : ('24) 1,364백만원 → ('25) 1,420(↑56) ○ (참깨) 평균낙찰단가 상승에 따른 납입액 증가 * 평균낙찰가 : ('24) 1,119천원/톤 → ('25) 1,887(↑768) * 납입액 : ('24) 11,170백만원 → ('25) 18,874(↑7,704)
농산물 수입 이익금	14,329	25,234	26,134	11,805 (82.4)	○ (양파) 수입권공매 실시로 인한 납입액 증가 * 이행물량 : ('24) 없음 → ('25) 19,833톤(↑19,833) * 납입액 : ('24) 없음 → ('25) 5,785백만원(↑5,785)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6,134	
국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	26,1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용자 또는 대출>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출> 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999	23,638	계	21,999	23,638
○ 자체수입	21,428	22,034	○ 사업비	20,937	22,282
- 부담금	566	730	- 경상지출	9,657	10,777
- 농산물판매	5,827	6,121	- 용자지출	11,222	11,482
- 융자원금회수	14,789	14,158	- 자본지출	58	23
- 이자수입	25	76	○ 기금운영비	576	596
- 기타수입	221	949	○ 정부내부지출	159	164
○ 정부내부수입	248	1,277	- 공자기금이자	159	164
- 전입금	115	-			
- 기금예수금	133	1,277			
○ 여유자금회수	323	327	○ 여유자금운용	327	596

* 부담금수입은 농산물 및 양곡(콩, 메밀 등) 수입이익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을 합한 금액임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농산물 수입 이익금	'21년	○ 부담금 부과가 공매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추진 중> ○ 인삼산업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권리구제절차 및 부과방식 명확화를 위한 개정이행 추진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2.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4.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5. 안전관리부담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4년 03월 24일), 시행일(1995년 01월 01일)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업통상부	부 서 명 : 석유산업과
	전화번호 : 044-203-5222	팩스번호 : 044-203-4762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석유공사	부 서 명 : 기획예산처
	전화번호 : 052-216-2681	팩스번호 : 052-216-5950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석유공사	부 서 명 : 기획예산처
	전화번호 : 052-216-2681	팩스번호 : 052-216-595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19조의2 및 제3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환급
2. 시행령	제23조~제27조의2, 제39조~제41조	부과금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징수유예 등
3. 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부과금 징수대상 제외물량,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4. 고시및훈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부과금 징수·환급 기준 및 절차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법 제18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수입부과금 -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의 수입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및 부탄의 판매	고급휘발유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정액	○ 수입부과금 - 원유·석유제품 : 16원/ L - 천연가스 : 발전용 3,800원/톤, 발전용 외 24,242원/톤 ※ '24.7.1.~'25.6.30. : 16,730원/톤 ※ '25.7.1.~'25.12.31. : 20,605원/톤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 L - 부탄 : 62,283원/톤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 ※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법 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 3항 시행규칙 제24조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름	법 제18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24 조~제88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해당 없음		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5.01.01	<수입부과금> 수입석유 미화1.7\$/배럴, 천연가스 6,908/톤 <판매부과금> 등유 20원/ L, 고급휘발유 90원/ L
○ 2000.07.29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3원/ L <판매부과금> 고급휘발유 36원/ L
○ 2001.03.0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 L
○ 2001.07.01	<수입부과금> 천연가스 9,750/톤 <판매부과금> 등유 23원/ L, 부탄 19,031원/톤, 부 생연료유 17원/ L
○ 2002.07.01	<판매부과금> 부탄 25,952원/ 톤
○ 2003.02.17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 L
○ 2003.03.12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4원/ L
○ 2003.07.01	<판매부과금> 부탄 29,412원/ 톤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3.10.17	<수입부과금> 원유 10원/ L, 석유제품 14원/ L
○ 2004.01.0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 L
○ 2004.04.30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8원/ L
○ 2004.07.01	<판매부과금> 부탄 43,778원/ 톤
○ 2005.01.0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 L
○ 2005.03.01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4원/ L, 천연가스 15,480원/ 톤
○ 2005.07.08	<판매부과금> 부탄 62,238원/ 톤
○ 2006.02.07	<수입부과금> 원유 및 석유제품 16원/ L
○ 2007.01.01	<수입부과금> 천연가스 24,242원/ 톤
○ 2008.01.01	<판매부과금> 등유 및 부생연료유 : 폐지
○ 2019.04.01	<수입부과금> 발전용 천연가스 3,800원/ 톤,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24,242원/ 톤
○ 2022.05.01	<판매부과금> 부탄 62,283원/ 톤→43,600원/ 톤 (2022.7.31.까지)
○ 2022.07.29	<판매부과금> 부탄 62,283원/ 톤→43,600원/ 톤 (2022.12.31.까지)
○ 2024.07.01	<수입부과금> 발전용 천연가스 3,800원/ 톤,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16,730원/ 톤(2025.6.30.까지)
○ 2025.07.01	<수입부과금> 발전용 천연가스 3,800원/ 톤,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20,605원/ 톤(2025.12.31.까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 환급방법 및 절차

-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환급하고,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1할5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환급금에 더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2조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 결산보고·심의를 통해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 부과금 징수대상자
- 부과금 부과에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시의 조치사항
-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우편, Fa× 및 Email 등 유무선 고지
- 고지시기 : 수입신고 수리일(수입부과금)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수입부과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및 부탄의 판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납부기한	○ 수입부과금 : 매월 15일 ※ 단, 신용도가 낮은 기업(사전납부업체)은 수입 당일 납부 ○ 판매부과금 : 매월 말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납부기한연장	○ 납사 및 납사대체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 매월 2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
분할납부	해당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7,017	45,569,958	16,950	45,556,845	67	13,113	100.0
2025	676	1,210,180	676	1,210,180	-	-	100
2024	720	1,258,789	720	1,258,789	-	-	100
2023	673	1,087,341	673	1,087,341	-	-	100
2022	654	1,660,639	654	1,660,639	-	-	100
2021	620	1,484,912	620	1,484,912	-	-	100
2020	647	1,307,403	647	1,307,403	-	-	100
2019	658	1,604,068	658	1,604,068	-	-	100
2018	839	2,011,235	839	2,011,235	-	-	100
2017	753	1,814,155	753	1,814,155	-	-	100
2016 이전	10,777	32,131,236	10,710	32,118,123	67	13,113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석유공사	1,210,180	44,346,664	
합계	1,210,180	44,346,664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258,789	0	1,210,180	△48,609 (△3.9%)	
한국석유 공사	1,258,789	0	1,210,180	△48,609 (△3.9%)	○ '25년 석유 수입부과금은 증가했으나, 발전용외 LNG 징수단가 인하에 따라 LNG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은 전년대비 감소 - 수입부과금 징수액(억원) : ('24년) 10,727 → ('25년) 10,254 ·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액(억원) : ('24년) 5,683 → ('25년) 6,361 · LNG 수입부과금 징수액(억원) : ('24년) 5,044 → ('25년) 3,893 - 판매부과금 징수액(억원) : ('24년) 1,861 → ('25년) 1,848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0	0	0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210,180	
국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00.0	1,210,18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9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2호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989	39,642	계	25,769	23,202
○ 석유수입부과금	10,727	10,253	○ 산업부 사업	24,463	22,568
○ 석유판매부과금	1,861	1,848	○ 공자기금예수이자	674	634
○ 안전관리부담금	1,332	1,309	○ 타계정 전출금	633	-
○ 광해방지부담금	172	134	○ 기타(타부처미포함)	27,078	-
○ 정부출자수입	37	244			
○ 용자원리금회수	3,895	2,655			
○ 기타(타부처미포함)	33,965	23,19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2.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5년 05월 31일), 시행일(2006년 06월 01일)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업통상부	부 서 명 : 석탄산업과
	전화번호 : 044-206-5263	팩스번호 : 044-203-4765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부 서 명 : 부담금보증사업팀
	전화번호 : 033-736-5321	팩스번호 : 033-736-5708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부 서 명 : 부담금보증사업팀
	전화번호 : 033-736-5321	팩스번호 : 033-736-570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체납부담금의 결손처분
2.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9조	○ 부담금 산정기준, 분할납부, 직권조정 ○ 부담금의 추가징수, 반환
3.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1조	○ 부담금 납부통지·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 부담금의 반환
4. 고시및훈령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호(22.1.27.)> ○ 부담금 제도의 개요 ○ 부담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 ○ 부담금의 감면대상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 ○ 광해방지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1항,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계획 및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 ○ (산림(토지)복구사업*)산지전용(일시사용)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허가기간 재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광해방지의무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광해방지사업	20 ~ 40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총사업비 × 자부담율(20~40%)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산림(토지)복구사업	30 ~ 60	복구비 예치 통지액 × 광종별 효율(30~60%) ÷ (잔여) 개발연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광산피해방지법 제26조 제2항
증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단,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광산피해방지법 제26조 제3항
연체료	해당사항 없음	-
강제징수절차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광산피해방지법 제26조 제4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대한석탄공사)	100%	0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1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2.01.11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비용(시행령 제10조) - 시행령 개정('22.1.11.) 및 고시 개정('22.1.27.) - (광해방지사업)기업규모에 부담율 차등 부과로 변경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광해방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시행령 제25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부담금 반환청구*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함.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해 지급(법률 제25조, 시행령 제29조)
 - * 대상광산의 사업완료 및 산림복구의무 면제 등 특정사유로 납입 부담금 반환 신청
 - (광해방지사업) 최종사업비 준공에 따른 사업계획 대비 초과 납입 부담금 정산·반환
 - (산림(토지)복구사업) 광해방지의무자가 자력으로 보증면적 복구 완료하거나 타 보증서(서울보증 등)로 대체할 경우, 공단과 이행 보증계약은 해지하고 그간 납입·예치된 부담금 전액 반환
- 2025년 환급액 : (건수) 15건 (금액) 1,289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7건 (금액) 1,266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31건 (금액) 7,298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개 (<http://www.motie.go.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내용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담금 부과 시 문서와 납입고지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 발송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 - 단,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동 계획의 승인 통지 시 - 당해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수시 부과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3항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납부기한	○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4항
납부기한연장	○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 당해 회계연도 내 4회 이내 분할납부(납부기한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22,247	181,517	11,973	134,676	10,274	46,842	74.2
2025	1,104	15,307	418	13,373	686	1,935	87.4
2024	864	18,837	365	17,197	499	1,640	91.3
2023	1,356	8,295	420	4,103	936	4,192	49.5
2022	1,240	13,644	378	9,756	862	3,888	71.5
2021	1,203	8,256	471	4,805	732	3,451	58.2
2020	852	9,985	542	6,948	310	3,037	69.6
2019	1,358	12,695	554	8,917	804	3,778	70.2
2018	1,297	8,593	564	5,496	733	3,097	64.0
2017	1,261	8,853	615	5,324	646	3,529	60.1
2016 이전	11,712	77,052	7,646	58,757	4,066	18,295	76.3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광해광업공단	13,373	142,048	
합 계	13,373	142,048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7,197	7,125	13,373	△3,824 (△22.2%)	
광해방지 사업	11,528	3,493	8,488	△3,040 (△26.4%)	'24년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수요 확대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 일시적 증가
산림(토지) 복구사업	5,669	3,632	4,885	△784 (△13.8%)	타 보증대체 등 보증해지에 따른 반환액(807백만원) 발생으로 징수실적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617.148	1,640.464	1,934.664	17.9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부과 대상인 이행보증계약 광산의 보증사고주2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16년 이전에 발생한 미징수 누계액임 1,934,663,500 징수 예정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3,373	
국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00.0	13,373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교육 5. 국내·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운영 7. 가행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응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법 제23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989	39,642	계	25,769	23,202
○ 석유수입부과금	10,727	10,253	○ 산업부 사업	24,463	22,568
○ 석유판매부과금	1,861	1,848	○ 공자기금예수이자	674	634
○ 안전관리부담금	1,332	1,309	○ 타계정전출금	633	-
○ 광해방지부담금	172	134	○ 기타(타부처미포함)	27,078	-
○ 정부출자수입	37	244			
○ 용자원리금회수	3,895	2,655			
○ 기타(타부처미포함)	33,965	23,19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1년 01월 14일), 시행일(1992년 01월 0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업통상부	부 서 명 : 화학산업과
	전화번호 : 044-203-4936	팩스번호 : 044-203-4725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화학산업협회	부 서 명 : 국제협약본부
	전화번호 : 02-3668-6190	팩스번호 : 02-743-1887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화학산업협회	부 서 명 : 국제협약본부
	전화번호 : 02-3668-6190	팩스번호 : 02-743-1887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부담금 부과 목적 및 징수 대상 - 부담금의 면제·환급 - 부담금의 산정기준 - 부담금의 징수 방법
2.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8	-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자 - 부담금 면제 - 부과대상 특정물질별 징수비율 - 부담금의 분할납부 - 독촉장 및 가산금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3.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
4. 고시및훈령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내지 제7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 부과대상 특정물질별 징수금액 -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 부담금의 면제 및 환급 - 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몬트리올 의정서 상 규제물질인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특정물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 제조업자 ○ 특정물질 수입업자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종) HCFC-22 1kg의 공장도가격 × 특정물질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0.1~10.0) × 특정 물질의 종류별 정 수비율(100%이내 에서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함)	○ CFCs : 15.0% ○ Halons : 3.0~7.55% ○ 사염화탄소 : 15.1% ○ 1,1,1-TCE : 15.4% ○ HCFCs(40종) : 30.0%	제1종 부담금 = 제조업자의 판매량 또는 수입업자의 수입량(kg)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1kg의 공장도가격(2,557원)) × 해당물질의 오존파괴지수 × 해당물질의 부담률(3~30%)	법 제24조의4 시행령 제10조의4
(2종) HFC-134a 1kg의 수입가격 × 특정물질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 × 해당물질의 부담 률(0.0005%)	○ HFCs(18종) : 0.0005%	제2종 부담금 = 제조업자 판매량 또는 수입업자의 수입량(kg)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kg의 수입가격(4,000원)) × 해당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 × 해당물질의 부담률(0.0005%)	법 제24조의4 시행령 제10조의4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7
증가산금	-	-
연체료	-	-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30조의2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1.01.24	○ 수입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상공부고시 제92-3호) - 부과대상 : CFCs, 할론, CTC, 1,1,1-TCE 등 20종 - CFC-11 공장도가격 : 980원 - 적용 징수비율 : 20% (징수금액/kg) CFC-11 : 196원, Halon-1301 : 1,960원, CTC : 215원, 1,1,1-TCE : 19원 등
○ 1992.12.21	○ 수입금의 징수금액 개정(상공부고시 제1992-46호) - CFC-11 공장도가격 : 1,300원 - 적용 징수비율 : 30% (단, Halon-1301/-1211/-2402 : 50%) (징수금액/kg) CFC-11 : 390원, Halon-1301 : 1,960원, CTC : 429원, 1,1,1-TCE : 39원 등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4.03.09	○ 수입금의 징수금액 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4-25호) - 할론에 대해 징수비율 차등 적용하여 금액 조정 - CFC-11 공장도가격 : 1,300원 - 적용 징수비율 : 30%(단, Halon-1301/-1211/-2402 : 6%/15.1%/10%) (징수금액/kg) Halon-1301 : 780원, Halon-1211 : 588원, Halon-2402 : 780원
○ 1999.04.27	○ 수입금의 징수금액 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9-39호) - 징수비율 하향 및 차등 적용하여 금액 조정 - CFC-11 공장도가격 : 1,300원 - 적용 징수비율 : 15%(단, Halon-1301/-1211/-2402 : 3%/7.55%/5%, CTC : 15.1%, 1,1,1-TCE : 15.4%) (징수금액/kg) CFC-11 : 195원, Halon-1301 : 390원, Halon-1211 : 294원, Halon-2402 : 390원, CTC : 215원, 1,1,1-TCE : 20원 등
○ 2011.03.30	○ HCFCs(40종) 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대통령령 제23189호) - 징수비율 : 30%, '12.1.1.부터 부과·징수
○ 2011.09.30	○ HCFCs(40종) 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대통령령 제23189호) - 징수비율 : 30%, '12.1.1.부터 부과·징수 ○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6호) - 기존 부과 대상물질의 징수비율은 종전 동일하게 적용 및 금액 조정하고, 신규 부과대상(HCFCs)의 징수금액 추가 - HCFC-22 공장도가격 : 2,557원 (징수금액/kg) HCFC-22 : 42원, HCFC-141b : 84원, HCFC-142b : 49원 등 {CFC-11 : 383원, Halon-1301 : 767원, CTC : 424원, 1,1,1-TCE : 39원}
○ 2013.10.16.	○ 수입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폐지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4.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6호)
○ 2017.09.29	○ 부담금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73호)
○ 2023.04.19.	○ HFCs(18종) 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대통령령 제33417호) - 징수비율 : 0.00074%, '23.4.19부터 부과·징수 * 기존 부과 대상물질은 1종 특정물질로, 신규 물질은 2종 특정물질로 구분 -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4호) - 기존 부과 대상물질의 징수비율은 종전 동일하게 적용 및 금액 조정하고, 신규 부과대상(HFCs)의 징수금액 추가 - HFC-134a 수입가격 : 4,000원 (징수금액/kg) HFC-134a : 42원, HFC-23 : 438원, HCFC-22 : 42원, HCFC-141b : 84원, HCFC-142b : 49원 등 {CFC-11 : 383원, Halon-1301 : 767원, CTC : 424원, 1,1,1-TCE : 39원}
○ 2024.07.01.	○ 부담금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9호) - 2종 특정물질(HFCs) 징수비율 하향 및 금액 조정 - HFC-134a 수입가격 : 4,000원 - 징수비율 : 0.0005% (징수금액/kg) HFC-134a : 28원, HFC-23 : 296원, HCFC-22 : 42원, HCFC-141b : 84원, HCFC-142b : 49원 등 {CFC-11 : 383원, Halon-1301 : 767원, CTC : 424원, 1,1,1-TCE : 39원}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 환급신청서와 함께 환급신청사유서, 부담금 납부 영수증, 환급사유별 관계증빙서류, 환급신청액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 징수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회는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 2025년 환급액 : (건수) 35건 (금액) 135,974천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9건 (금액) 170,095천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7건 (금액) 60,042천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결산시 부담금수입금 징수실적 및 사용 내역 등을 공개(기금운용심의회,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결산, 국회 심의 등)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 부담금 납부 대상자, 대상물질(단일물질 및 혼합물질)별 징수금액, 부담금 납부액 산정 방법, 부담금 납부 시기 및 방법, 가산금 부과 방법, 부담금 납부 면제 및 환급방법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서 및 판매계획 승인서 발송(매년 12월말)
시 부담금 납부 안내서를 통해 고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특정물질 수입확인서 발급 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납부기한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 판매 분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일까지 납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제1항
납부기한연장	-	-
분할납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의 경우 적용 가능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횟수는 3회 이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1,855	57,640	11,857	57,688	△2	△48	100.1
2025	1,401	1,648	1,401	1,648	-	-	100
2024	1,637	1,991	1,637	1,991	-	-	100
2023	1,095	1,663	1,095	1,663	-	-	100
2022	399	830	399	830	-	-	100
2021	429	938	430	945	△1	△7	100.7
2020	478	954	478	966	-	△12	101.3
2019	533	1,072	533	1,065	-	7	99.3
2018	525	1,140	525	1,139	-	1	99.9
2017	5,358	47,404	5,359	47,441	△1	△37	100.1
2016 이전	10,777	32,131,236	10,710	32,118,123	67	13,113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화학산업협회	1,648	56,782	
합계	1,648	56,782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991	1,485	1,648	△343 (△17.2%)	
특정물질 제조업자	208	133	134	△74 (△35.6%)	
특정물질 수입업자	1,783	1,352	1,514	△269 (△15.1%)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0	0	0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648	
국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00.0	1,648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사업 6.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7조의5 시행령 제44조의3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216	239	합 계	216	239
○법정부담금	20	17	○경상사업비	9	9
○기타수입금	1	1	-	-	-
			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	-	-
			-	-	-
○융자원금회수	21	12	몬트리올의정서대응	9	9
○여유자금회수	50	96	○융자사업비	-	-
○정부내부수입	125	113	-	-	-
			시설대체자금융자	-	-
			○기금운영비	2	2
			○여유자금운용	96	138
			○정부내부지출	110	9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4.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4년 03월 24일), 시행일(1995년 01월 0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업통상부	부 서 명 : 석탄산업과
	전화번호 : 044-203-5262	팩스번호 : 044-203-4766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광업법 제87조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	법 제87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미제정	○ 미제정	-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미제정	-	-	-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미 제정	-
증가산금	미 제정	-
연체료	미 제정	-
강제징수절차	미 제정	-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미 제정	미 제정	0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4.03.24	○ 제도 도입
○ 2009.04.13	○ 제도 폐지(안) 국회제출 (지경위: 현행유지 결정)
○ 2012.11.28	○ 부과금 징수 의무화를 위해 同제도 개정안 발의 (회기만료로 폐기)
○ 2016.08.26	○ 부과금 징수 의무화와 부과금액 범위 규정을 위해 同제도 재입법 추진(회기만료로 폐기)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광물 수임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현재 징수금액이 없으나 징수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통해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없음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해당없음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관련규정 없음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미제정	광업법
납부기한	미제정	광업법
납부기한연장	미제정	광업법
분할납부	미제정	광업법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	-	-	-	-	-	-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	-	-	-	-
2022	-	-	-	-	-	-	-
2021	-	-	-	-	-	-	-
2020	-	-	-	-	-	-	-
2019	-	-	-	-	-	-	-
2018	-	-	-	-	-	-	-
2017	-	-	-	-	-	-	-
2016 이전	-	-	-	-	-	-	-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합계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	
국 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00.0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국가 지질 또는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광업법 제87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989	39,642	계	25,769	23,202
○ 석유수입부과금	10,727	10,253	○ 산업부 사업	24,463	22,568
○ 석유판매부과금	1,861	1,848	○ 공자기금예수이자	674	634
○ 안전관리부담금	1,332	1,309	○ 타계정전출금	633	-
○ 광해방지부담금	172	134	○ 기타(타부처미포함)	27,078	-
○ 정부출자수입	37	244			
○ 융자원리금회수	3,895	2,655			
○ 기타(타부처미포함)	33,965	23,19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5. 안전관리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안전관리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6년 12월 12일), 시행일(1997년 01월 0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업통상부	부 서 명 : 자원안전팀
	전화번호 : 044-203-5181	팩스번호 : 044-203-4743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석유공사	부 서 명 : 기획예산처
	전화번호 : 052-216-2684	팩스번호 : 052-216-5950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석유공사	부 서 명 : 기획예산처
	전화번호 : 052-216-2684	팩스번호 : 052-216-595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 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
2.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 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부과기준, 납부시기 등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	○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 판매자 ○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수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액화석유가스(LPG)	-	징수물량(kg) × 4.5원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액화천연가스(LNG)	-	징수물량(m ³) × 3.9원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5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 결산보고·심의를 통해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사전고지 생략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납부기한	판매일 또는 사용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납부기한연장	해당 없음	-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6,614	3,088,587	6,614	3,088,587	-	-	100
2025	356	130,854	356	130,854	-	-	100
2024	357	133,223	357	133,223	-	-	100
2023	328	126,617	328	126,617	-	-	100
2022	303	132,684	303	132,684	-	-	100
2021	296	133,786	296	133,786	-	-	100
2020	293	126,632	293	126,632	-	-	100
2019	283	131,005	283	131,005	-	-	100
2018	279	139,178	279	139,178	-	-	100
2017	271	119,680	271	119,680	-	-	100
2016 이전	3,848	1,914,928	3,848	1,914,928	-	-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석유공사	130,854	2,957,733	
합 계	130,854	2,957,733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33,223	141,389	130,854	△2,369 (△1.8%)	
한국석유 공사	133,223	141,389	130,854	△2,369 (△1.8%)	○ '25년 LNG 수요 감소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대비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0	0	0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30,854	
국 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00.0	130,854	○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5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34조의2 제6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 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자원별 운영현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989	39,642	계	25,769	23,202
○ 석유수입부과금	10,727	10,253	○ 산업부 사업	24,463	22,568
○ 석유판매부과금	1,861	1,848	○ 공자기금예수이자	674	634
○ 안전관리부담금	1,332	1,309	○ 타계정전출금	633	-
○ 광해방지부담금	172	134	○ 기타(타부처미포함)	27,078	-
○ 정부출자수입	37	244			
○ 융자원리금회수	3,895	2,655			
○ 기타(타부처미포함)	33,965	23,19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없음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5.01.05.), 시행일(1997.09.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부 서 명 : 재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 : 044-202-2332	팩스번호 : 044-202-3918
부과기관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부 서 명 : 재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 : 044-202-2332	팩스번호 : 044-202-3918
징수기관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부 서 명 : 재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 : 044-202-2332	팩스번호 : 044-202-391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시행령 제27조의2	담배는 쉐련, 전자담배 등 9종으로 구분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4. 고시·훈령	해당 없음	
5. 기타	해당 없음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	○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1. 궐련: (20개비)×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ml)×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750원 2) 기타 유형: (1g)×73원 3. 파이프담배: (1g)×30.2원 4. 엽궐련: (1g)×85.8원 5. 각련: (1g)×30.2원 6. 씹는 담배: (1g)×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g)×21.4원 8. 물담배: (1g)×1050.1원 9. 머금은 담배: (1g)×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채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100분의3	
강제징수절차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6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	100	(공제) 427백만원 (환급) 3,376백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7.05.01.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20개비당 2원)
2002.02.01.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20개비당 2→150원)
2004.12.30.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20개비당 150→354원)
2011.12.08.	○ 전자담배(니코틴용액)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부과(1ml당 221원)
2014.07.21.	○ 신종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부과 (1g당 엽결련 36.1원, 각련 12.7원, 파이프담배 12.7원 등)
2015.01.01.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결련 20개비당 354→841원, 니코틴용액 1ml당 221→525원 등)
2017.04.01.	○ 전자담배(연초고형물)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부과(1g당 73원)
2017.12.30.	○ 전자담배(연초 및 연초 고형물)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부과 (결련형: 20개비당 750원, 기타유형: 1g당 73원)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부담금 환급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 환급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및 폐기 증빙자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지방세 환급내역,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대한 납부 확인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발송 → 검토 후 부담금 환급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지방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025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3,376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56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46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당사자 성명 및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④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⑤의견제출 기관 및 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처음 반출하는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확인서 신청 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발송 →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담배 수량과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 공문 및 고지서로 납부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15일까지 부담금 내역서를 받고 5일 이내에 부담금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제3항
납부기한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4항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258	49,980,979	5,108	49,585,469	150	395,510	99.2
2025	311	2,877,100	312	2,877,124	△1	△24	100.0
2024	333	2,929,643	340	3,156,594	△7	△226,951	107.7
2023	311	2,998,725	312	2,973,665	△1	25,060	99.2
2022	346	3,186,529	295	2,824,994	51	361,535	88.7
2021	327	3,109,599	283	2,962,962	44	146,637	95.3
2020	234	2,977,754	228	2,967,130	6	10,624	99.6
2019	213	2,810,514	213	2,810,503	-	11	100.0
2018	215	2,892,447	220	3,066,575	△5	△174,128	106.0
2017	215	3,051,223	214	2,969,000	1	82,223	97.3
2016 이전	2,753	23,147,445	2,691	22,976,922	62	170,523	99.3

주1) :

- 17년 : 16년 11월 부담금 수입 이월액 및 재고차익 환수금 추가 수입과 17년 11월 반출분에 대한 부담금 이월액 간 차액(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18년 : 17년 11월 부담금 수입 이월액 추가 수입 발생
- 20년 : 20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분
- 21년 : 21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분 및 납기 미도래분
- 22년 : 22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분 및 납기 미도래분(줄기 니코틴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부담금 부과는 되었으나 수납하지 않은 업체 多)
- 23년 : 22년 11월 부담금 수입 이월액 추가 수입과 23년 11월 반출분에 대한 부담금 이월액 간 차액 발생
- 24년 : '23년 11월 부담금 수입 이월액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보건복지부	2,877,124	46,708,34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3,156,594	3,058,717	2,877,124	△279,470 (△8.9)	24년 대비 담배 반출량 감소 (‘24. 3,558 → ‘25. 3,501백만갑)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 부담률 등을 정의하고 있음. 또한 납부담보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미수납을 최소화하고 있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384,223	172,440	172,416	△24 (△0.0%)	담배 업체 소송 진행 중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100	2,877,124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5,444	43,144	계	45,444	43,144
○ 자체수입	32,908	29,760	○ 사 업 비	36,214	34,155
- 부담금 수입	31,566	28,771	-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101	89
- 기타재산수입	220	170	- 노인의료보장	1,992	1,828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2	814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308	408
- 기타(가산금 등)	0	5	- 공공보건의료확충	1,453	1,756
			- 보건산업육성	67	74
○ 계정간전입금	434	735	- 국민건강생활실천	3,616	3,620
			- 건강보험제도 운영	19,022	18,701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 기금예수금	10,777	9,121	- 감염병정책관리	799	769
			- 감염병위기대응	77	108
○ 여유자금회수	1,325	3,529	- 감염병진단분석	117	117
			- 의료안전예방관리	7,855	5,926
			- 만성질환관리	736	628
			- 보건의료연구관리	70	98
			- 일반사회복지 행정지원	0	34
			○ 기금운영비	1	1
			○ 정부내부지출	5,700	6,426
			○ 여유자금운용	3,529	2,563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제11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 대기배출부과금
2. 원인자부담금(수도법)
3. 수질배출부과금
4. 생태계보전부담금
5. 폐기물부담금
6. 재활용부과금
7. 원인자부담금(하수도)
8.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9. 환경개선부담금
10. 공공폐수처리처리시설 부담금
11.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12. 물이용부담금(낙동강)
13.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
1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1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17. 지하수이용부담금
18. 폐기물처분부담금
19.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20. 전력산업기반금 부담금
2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2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폐지)

1.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 (약칭)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
- ② 제정년도 : (대기배출부과금) 공포일(1981.12.31.), 시행일(1983.9.1)
 (통합배출부과금) 공포일(2015.12.22.), 시행일(2017.1.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대기관리과
	전화번호 : 044-201-6905	팩스번호 : 044-201-6915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통합허가제도과
	전화번호 : 044-201-6735	팩스번호 : 044-201-6728
부과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근거 ○ 대기배출부과금 가산금 징수 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통합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근거 ○ 통합배출부과금 가산금 징수 근거
2.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37조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 대기배출기본부과금 면제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7조의2	○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 배출부과금 감면 및 납부 통지 절차
3.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50조	○ 대기배출부과금 관련서식 ○ 부과면제절차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작성·제출 ○ 배출부과금 관련 서식
4. 고시·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 배출부과금 징수 및 환급 업무 등 사무처리 절차 및 내용을 정함
5. 기타	배출부과금업무편람	○ 배출부과금 업무처리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비용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비용 부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대기배출 부과금	기본부과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일부 시설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령 제23조
	초과부과금(먼지, 황산화물 등 총 9종)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대기배출 부과금 (통합)	기본부과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일부 시설 면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초과부과금(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총 9종)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대기배출 부과금	오염물질 배출 량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배출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통합배출 부과금	오염물질 배출 량	(기본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허가배출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초과부과금)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허가배출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배출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정액부과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대기배출 부과금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 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준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증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징수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대기배출 부과금 (통합)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 징수(「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준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대기 배출 부과금	① 황합유량 0.3%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 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황합유량 이 0.5%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합유량 이 0.45% 미만인 고체연료 사용하는 발 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 가와트 미만 열병합발전시설 포함) ②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가스로서 황합유 량이 0.05%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 는 배출시설 ③ ①과 ② 해당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대기배출부 과금은 발생량 등을 기반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며, 면제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액을 산출하지 않음	대기환경보전 법 제35조의2제1 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④ ① 또는 ② 해당 연료와 ① 또는 ② 외 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	① 또는 ② 해당 연료 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면지와		
	⑤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	기본부과금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치한 시설	면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	부과금 면제		
	⑧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4종·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면제		
	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배출시설	기본부과금에 협약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		
대기 배출 부과금 (통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	배출부과금 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사설을 설치한 사업자	제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배출부과금 면제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부과금 면제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대기 배출 부과 금	1991.1.28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4종 → 10종)
	1997.1.1	○ 기본부과금 제도 시행
	1999.10.13	○ 초과부과금 중 종별부과금 폐지 ○ 기본부과금 농도별 부과계수 조정
	2005.1.1	○ 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면제, 4종 사업장은 50% 경감
	2005.2.10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중 악취 삭제
	2010.1.6	○ 4종 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2010.12.31	○ 초과부과금 감면제도 신설 - 먼지, 황산화물이 허용기준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 농도가 허용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2013.1.31	○ 중소기업의 굴뚝TMS 부착 시설 기본부과금 면제
	2018.12.31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 및 삭제*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 추가,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중 염소 삭제(20.1.1부터 적용)
	2025.11.11.	○ 3천원 미만에 대한 징수 면제 규정 추가
통합 배출 부과 금	2017.1.1.	○ 통합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2019.5.21.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 조항 신설
	2019.7.1.	○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조항 신설·시행 - 폐수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 100분의 90 ○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로 산정방법 확대·적용(황산화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인 다른 대 기오염물질에도 확대·적용)
	2020.1.1.	○ 가산금 근거조항 변경(「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시행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16조
- (신청 절차) 사업자는 부과금납부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 → 부과권자(환경청, 시·도지사, 기후부장관(통합사업장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 (환급 방법) 초과부과금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차액 부과 또는 환급 시 금액, 일시, 장소 등은 서면으로 통지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정을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초과부과금 고지 시기)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 (기본부과금 고지 시기)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기본부과금: 매 반기별로 부과 ▪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 발생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제33조
	▪ 기본배출부과금: 매 반기별로 부과 ▪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 발생 시(자동측정기기 측정·전송 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시기 준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납부기한 연장	▪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분할납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13,717	506,277	102,497	391,581	11,220	114,696	77.3
2025	4,271	37,252	3,893	34,149	378	33,359	91.7
2024	4,950	40,137	4,023	35,703	927	4,434	89.0
2023	4,921	37,644	4,028	33,643	893	4,001	89.4
2022	4,646	37,769	3,631	29,383	1,015	8,386	77.8
2021	1,751	20,432	1,320	17,812	431	2,620	87.2
2020	2,637	17,921	2,512	12,890	125	5,031	71.9
2019	1,549	10,866	1,527	10,935	22	△69	100.6
2018	1,463	7,354	1,610	7,130	△147	224	97.0
2017	1,241	8,638	1,153	8,300	88	338	96.1
2016 이전	86,288	288,264	78,800	201,636	7,488	86,628	69.9

주1) : 납부의무자 미납 및 불납결손 등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	37	576	
부산	17	2,289	
대구	23	2,258	
인천	72	7,175	
광주	23	641	
대전	23	612	
울산	19	11,432	
경기	399	22,174	
강원	15,736	63,666	
충북	366	9,956	
충남	175	68,439	
전북	136	6,143	
전남	95	28,768	
세종	20	134	
경북	220	16,400	
경남	171	28,653	
제주	10	1152	
환경청	16,607	79,907	
합 계	34,149	350,37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대기배출 부과금	35,703	31,947	34,149	△1,554 (△4.3)	-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2,507	3,162	3,099	△63 (△2.0)	○(체납 사유) 납부의무자 미납 ○(징수 계획) 독촉 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34,149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7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환경정책 기본법 제47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용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2. 원인자부담금(수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1.12.14.), 시행일(1992.12.1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수도기획과
	전화번호 : 044-201-7117	팩스번호 : 044-201-7130
부과기관	기 관 명 : 지자체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불임	팩스번호 : 불임
징수기관	기 관 명 : 지자체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불임	팩스번호 : 불임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수도법 제71조	○ 수도사업자가 원인자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를 부과대상으로 함
2.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과방식, 납부방법, 산정기준 등에 세부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유지 등을 위해 수도공사 및 손괴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	수도법 제71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주택단지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경우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수도법 제71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각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준용하여 징수	수도법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증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수도법」에서는 별도의 감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감면 조항을 정하여 운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	5,12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1.12.14	○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
○ 2001. 3.28	○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 2007. 1. 3	○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을 통합하고 기존 손괴자부담금 관련규정을 삭제(시행 : '08.1.4) -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시행 : '08.1.4)
○ 2011. 7.28	○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022. 1.11	○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이외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환급방법 및 환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2025년 환급액 : (건수) 180건 (금액) 4,897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47건 (금액) 15,573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93건 (금액) 16,168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 공개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내용 고지 (납부자, 납부기한, 납부금액, 용도, 의견제출 시 대상기관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서면통지, 개발계획 승인 또는 사업 승인 시,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관 손과·이설 시 등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개발계획 승인 또는 사업 승인 시, 건축물 인·허가 시, 급수공사 신청 시 등 사업규모 및 대상별로 자치단체마다 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납부기한	○ 지자체마다 상이(15일 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
납부기한 연장	○ 지자체마다 상이 - 납부기한 연장은 대부분 없으나, 1회 이상 연장 가능한 지자체도 있음	-
분할납부	○ 지자체마다 상이 -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납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616,127	7,283,896	1,600,460	7,094,757	15,667	189,139	97.4
2025	45,234	391,962	44,748	370,307	486	21,655	96.0
2024	49,097	376,358	47,845	362,282	1,252	14,076	96.3
2023	59,315	519,186	58,093	515,006	1,222	4,180	99.2
2022	79,013	513,109	78,041	495,474	972	17,635	96.6
2021	80,118	397,610	79,125	383,531	993	14,079	96.5
2020	76,832	316,876	75,714	302,650	1,118	14,226	95.5
2019	74,043	336,545	72,050	333,148	1,993	3,397	99.0
2018	81,317	339,101	80,345	345,232	972	△6,131	101.8
2017	88,842	388,200	88,080	375,916	762	12,284	96.8
2016 이전	982,316	3,704,949	976,419	3,611,211	5,897	93,738	97.5

주1) : 분할납부, 납부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	22,382	940,914	
부산	18,560	326,557	
인천	47,587	112,652	
대구	7,267	171,015	
광주	5,274	187,768	
대전	4,546	153,705	
울산	13,225	51,570	
세종	2,892	85,382	
경기	71,345	2,893,108	
강원	37,837	313,244	
충북	55,385	222,217	
충남	29,244	302,586	
전북	5,321	89,521	
전남	11,587	114,943	
경북	16,492	364,462	
경남	13,665	240,392	
제주	7,698	154,414	
합 계	370,307	6,724,450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62,282	450,150	370,307	8,025 (2.2%)	○ 대규모 사업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증가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3,033	2,928	10,395	7,467 (255%)	○ (체납 사유) 사업추진 지연 등 ○ (징수 계획) 사업 준공 시 완납 예정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370,307	-
광역시 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33	121,733	-
기초 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67	248,574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수도법 제71조 제3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상수도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8,737	83,806	계	64,957	69,845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원인자 부담금 (수도법)	'23년	○ 부과기준의 적정성,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자체마다 부담금 산정 기준, 감면·면제 사항이 상이하여 운용·관리 애로	<추진 완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과기준 및 감면·면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예정 *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완료('24.12.~'25.8.)

3. 수질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 (약칭) 수질배출부과금, 통합배출부과금 -
- ② 제정년도 : (수질배출부과금) 공포일(1981.12.31.), 시행일(1982.7.1.)
 (통합배출부과금) 공포일(2015.12.22.), 시행일(2017.1.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수질수생태과
	전화번호 : 044-201-7075	팩스번호 : 044-201-7070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통합허가제도과
	전화번호 : 044-201-6722	팩스번호 : 044-201-6728
부과기관	기 관 명 : 불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불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수질배출부과금 종류, 부과·징수, 가산금 등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합배출부과금 종류, 부과·징수, 가산금 등
2.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 제57조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감면 및 조정, 징수유예·분할 납부 방법 등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 제17조의2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감면 및 조정, 징수유예·분할 납부 방법 등

3.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0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와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식 등
	환경오염시설의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7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와 감면절차 등
4. 고시·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체납처분, 결손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5. 기타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폐수배출시설 사업자 (미허가·신고자, 공공처리 시설 운영자 포함)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등		
(통합기본배출부과금) 수질오염 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폐수배출시설 사업자 (미허가·신고자, 공공처리 시설 운영자 포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합초과배출부과금) 수질오염 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등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부과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따라 부담 비율 차등	○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허가배출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부과	오염물질량 및 농도에 따라 부담 비율 차등	○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배출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물질당 1kg당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⑧ 가산금 등

1) 수질배출부과금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증가산금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 제외)의 10만분의2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

2) 통합배출부과금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1.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일 10만분의22에 상당하는 금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증가산금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5종사업자	○ 면 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	○ 면 제	-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면 제	-		
○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 간 별 차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6개월~1년 : 20/100			
	· 1년~2년 : 30/100			
	· 2년~3년 : 40/100			
	· 3년이상 : 50/100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재 이 용 른 별 차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10~30% : 20/100			
	· 30~60% : 50/100			
	· 60~90% : 80/100			
	· 90%이상 : 90/10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1) 수질배출부과금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82. 7. 1.	○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1983. 5.14.	○ 부과 대상 오염물질 및 부과금 산정방법 규정
1987. 4. 1.	○ 배출부과금 기산일 변경(개선명령일 → 시료채취일)

1991. 6.28.	○ 배출부과금 제도 강화(부과계수 상향, 부과항목 추가) *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1.0~4.5→3.0~7.0),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05→1.3),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추가(12종→15종) 등
1993. 6. 9.	○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근거 신설(「국세징수법」 준용)
1994.11.11.	○ 공동방지사설 관련 사업자 공동 부담에서 사업자별 사전 부담비율 확정으로 변경
1995. 1. 1.	○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변경
1996. 7. 1.	○ 기본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1996. 7.31.	○ 5종사업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감면 신설
2000.10.22.	○ 배출부과금 항목 확대(17종→19종, 총질소·총인 추가)
2004. 8.10.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포함
2010. 6.22.	○ 부과금 조정신청 기간, 징수유예 기간 및 분납횟수 연장 * (조정신청 기간) 30일 이내 → 60일 이내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횟수) 1년 6회 → 2년 12회(최대 3년 18회)
2017. 1.17.	○ 징수기관(지자체)의 징수비용 지급률 상향 * 징수금액의 10% 일괄지급 → 징수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10~20%)
2018. 1.18.	○ 부과금 납부 수단 확대(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2019.10.15.	○ 유기물질 부과항목(COD → TOC) 변경
2019.11.26.	○ 가산금 근거조항 변경(「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1개월당 1천분의 12 → 1일당 10만분의 22
2021. 4.13.	○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납부 독려방안 마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통합배출부과금

년 월 일	변 천 내 용
2017. 1. 1.	○ 통합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2019. 5.21.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 조항 신설
2019. 7. 1.	○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조항 신설·시행 - 폐수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 100분의 90
2020. 1. 1.	○ 가산금 근거조항 변경(「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신청 절차 및 처리)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 → 시·도지사(통합배출부과금은 환경부장관)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
 - (환급 방법 및 처리)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
 - 2025년 환급액 : (건수) 6건 (금액) 516,910,08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241,358,37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에 부과·징수 내역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납부통지서(서면) 고지
 -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기본부과금) 반기별로 부과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3조
	○ (기본부과금) 반기별로 부과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납부기한 연장	○ 사업자 재산에 심각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2년과 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12회(최대 3년 18회) 가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분할납부	○ (기본부과금)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 (초과부과금) 2년 이내, 12회 이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68,342	1,563,078	45,868	198,836	22,474	1,364,242	12.7
2025	1,710	58,987	1,080	8,247	630	50,740	14.0
2024	2,430	55,291	1,267	7,402	1,163	47,889	13.4
2023	2,402	57,192	1,787	6,404	615	50,788	11.2
2022	2,366	55,417	1,470	6,365	896	49,052	11.5
2021	2,612	64,277	1,744	14,088	868	50,189	21.9
2020	2,606	106,431	1,579	11,260	1,027	95,171	10.6
2019	2,883	108,079	1,864	10,791	1,019	97,288	10.0
2018	2,618	72,505	1,748	8,804	870	63,701	12.1
2017	2,937	66,219	1,823	8,305	1,114	57,914	12.5
2016 이전	45,778	918,680	31,506	117,170	14,272	801,510	12.8

주1) : 처분에 대한 소송진행, 미납, 결손처분 및 분할납부 등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89	16,883	
부산시	1,286	22,574	
대구시	23	5,951	
인천시	539	13,761	
광주시	19	1,199	
대전시	18	1,149	
울산시	25	9,991	
세종시	114	495	
경기도	1,268	43,810	
강원도	65	3,993	
충청북도	276	10,015	
충청남도	158	10,134	
전라북도	236	10,074	
전라남도	103	5,295	
경상북도	630	8,052	
경상남도	102	9,885	
제주도	25	1,202	
경자청*	22	357	
기후부**	3,249	15,769	
합 계	8,247	190,589	

* 광양만권,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과) 및 유역(지방)환경청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7,402	10,723	8,247	845 (11.4)	전년대비 수납금액 증가 ※ 징수율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회의, 징수 독려 강화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비용 지급률 상향) 기존 100분의 10에서 징수비율에 따라 100분의 20까지 차등 지급('17.1월)
 - (납부편의 개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 다양화('18.1월)
 - (결손처분위원회 근거 마련)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수월('18.3월)
 - (채납자 관리 강화) 채납자의 경영활동 일부 제한(허가취소, 관허 사업 제한, 영업정지 등) 등 실효적 납부 독려방안 마련('21.4월)
 - (업무편람 개정)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판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무자용 업무편람 개정으로, 실효적 채납처리 및 납부 독려('24.2월)
 - (기타)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정기 점검(분기/반기) 외 수시 회의(총4회/연) 개최 등 모니터링 강화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부과금 감면)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중(기노위 상정, '25.7월)
 - (징수기관 점검 강화) 수질배출부과금 뿐만아니라 타 세금 등의 채납 여부 등도 같이 확인하고 해당 기관(부서)와 합동 대응 확대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50,078	46,497	25,739	△20,758	○(채납 사유) 행정 소송, 회생절차, 폐업 및 납부회피 등 ○(징수 계획) 소송 대응, 채권 명의개서, 재산조회·압류 및 납부독촉(계속)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8,247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4.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융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수질배출 부과금	'23년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행정의 미비, 높은 부담률 수준, 제도 구조상 허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부과기준을 보다 실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원인자인 사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와 검토 필요	<추진 중, 장기검토 필요> ○ 수질오염물질의 유해성·처리비용 등을 고려,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고,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 일부 업계의 힘든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와 중장기적 충분한 검토 및 협의·조정 필요

4. 생태계보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7.8.28.), 시행일(2001.1.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자연생태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7232	팩스번호 : 044-201-7235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 · 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 · 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부과목적, 부과대상사업, 산정방법 등
2. 시행령	시행령 제36조 ~ 제38조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부과절차 등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부과통지 및 분할납부 방법 등
4. 고시·훈령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기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확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발사업자	○ 부과대상 : 법 제46조 제2항 ○ 납부의무자 : 법 제46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 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text{생태계보전부담금}^* = \text{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text{원}/\text{m}^2) \times \{(\text{용도지역별 훼손면적} \times \text{용도지역별 지역계수}(0\sim 4)/2) + (\text{생태·자연도권역·지역별 훼손면적} \times \text{생태·자연도권역·지역별 지역계수}(2\sim 5)/2)\}$	법 제46조제3항 및 제6항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시행('22.1.6)에 따라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포함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3/100	법 제48조 제1항
증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름	법 제48조 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법령
○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39조 [별표2의5]
-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법 23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100	-	
-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1. 1. 1	○ 총사업비 기준(0.1~0.15%) ○ 생태계 훼손면적 기준(250원/㎡) ※ '01.1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
○ 2005. 12. 30	○ 부과상한액 확대(5억 → 10억)
○ 2007. 11. 18	○ 부과대상 확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개발면적 3만㎡) 추가
○ 2013. 3. 22	○ 부과상한액 확대(10억 → 50억)
○ 2014. 12. 9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변경(250원→300원)
○ 2018. 5. 29	○ 감면대상 확대: 생태계 보전·복원 목적 사업 추가 ○ 분할납부 횟수 완화(2~3회 → 3~4회)
○ 2021. 4. 13	○ 결손처분 규정 신설: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 2022. 1. 6	○ 명칭 변경: 생태계보전협력금→생태계보전부담금 ○ 부과상한액(50억원) 폐지 ○ 부담금 산정 시 개발대상지 생태가치 반영: 토지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외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 추가 ※ '22.1.6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등을 요청한 사업부터 적용 ○ 교부금 사용용도 조정 등: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16개사업→12개사업),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감액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부과·징수방법 및 환급절차

- 부담금 납부통지(부과징수권자) → 사업자(징수내용확인) → 재산정 신청(잘못 부과된 경우) → 부과징수권자(검토·확인) → 채부과 또는 환급(사업자) → 정산

○ 재산정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제기를 받은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정 신청 ⇒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통보

- 요건 :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정산

- 부과대상사업의 준공후 생태계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정산신청 ⇒ 정산부과 또는 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2025년 환급액 : 9건 162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3건 14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12건 2,702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 등을 통해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에 따라 고시

- 납부금액, 산정근거, 납부기한, 근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보를 받은 부과·징수권자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납부 통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사업 인·허가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행령 제38조 제3항
납부기한	1개월(납부개시 5일 전까지)	“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 1천만원 초과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가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38조 제4항 시행규칙 제30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18,948	2,023,528	13,396	1,310,497	5,557	713,031	64.8
2025	1,019	94,462	639	59,407	380	35,055	62.9
2024	950	74,638	582	46,560	368	28,078	62.4
2023	895	64,355	597	39,939	303	24,416	62.1
2022	896	87,658	601	61,572	295	26,086	70.2
2021	986	94,206	682	56,648	304	37,558	60.1
2020	1,232	89,775	902	60,919	330	28,856	67.9
2019	973	78,798	655	49,754	318	29,044	63.1
2018	1,071	91,591	733	59,090	338	32,501	64.5
2017	988	96,646	612	61,593	376	35,053	63.7
2016	925	89,780	590	50,610	335	39,170	56.4
2015이전	9,013	1,161,619	6,803	764,405	2,210	397,214	128.5

주1) 전반적인 건설경기 하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여건 악화 등으로 징수율 개선 미흡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5년 실적비율)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144	9,690	0.2%
부산시	74	24,618	0.1%
대구시	468	17,723	0.8%
인천시	601	27,387	1.0%
광주시	291	13,051	0.5%
대전시	342	10,412	0.6%
울산시	956	29,071	1.6%
세종시	104	6,516	0.2%
경기도	20,355	264,114	34.3%
강원도	6,440	84,017	10.8%
충청북도	6,906	102,935	11.6%
충청남도	7,195	120,501	12.1%
전라북도	4,006	79,309	6.7%
전라남도	3,872	121,679	6.5%
경상북도	4,705	173,041	7.9%
경상남도	2,875	142,061	4.8%
제주도	73	24,784	0.1%
합 계	59,407	1,250,909	100.0%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생태계 보전 부담금	46,560	57,597	59,407	12,847 (27.6%)	· 전년 대비 징수액 증가 (46,560→59,407백만원, 27.6% 증) · 전년 대비 징수율 27.6% 증 ※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은 개발사업 수요 등 경제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도별로 징수액의 50%를 정률 지급하던 것을 전년도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지급(40~60%)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3.9.23)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13.12.23)
 - 생태계보전부담금 장기 체납액 적정 관리를 위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채납자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등)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1.4.13)
 - 부과 누락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을 환경부에서 부과·징수기관에 통보 정례화(1회/반기)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채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보완(법 개정 추진, '25.2.27. 본회의 통과)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간접이행확보수단(과세자료 이용요구, 채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정지 등) 도입 추진
 - 시·도의 반기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리 철저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59,407	법 제46조제4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자연환경복원사업 3.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4.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6. 도시생태 복원사업 7. 생태통로 설치사업 8.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9.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0.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11.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1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융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4년 이행실적
생태계 보전 부담금	'23년	○(부과대상 확대) 부과 대상(3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환경훼손 등 발생 우려가 있어 개발 사업간 부과 형평성을 확보를 위해 부과대상 확대 검토 ○(부과단가 상향) 자연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금 단가(현재 300원/㎡) 상향 검토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부담금 부과비용 현실화를 위해 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완료 (법 개정('21.1), 시행령 개정('22.1))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 기준으로 용도기준 외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추가 ○ 부담금 상향은 관계부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생태계보전부담금 운용 현실화 및 징수율 제고방안 연구, '24.12~'25.8),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담금 현실화 방안 마련 예정
		○(징수율 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추진 완료> ○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2.27. 본회의 통과) - 체납액 징수방법 준용법률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예*에 따른 징수' 추가 *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 정지 등
	'25년	○(부과단가 상향) '14년부터 단가 고정, 그간 물가상승률 및 훼손 생태계 복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단가 상향하는 것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현재 300→400원/㎡, '25.9월)	<추진 중>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단가 상향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26)

5. 폐기물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폐기물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2.12.08.), 시행일(1993.06.09.)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 044-201-7381	팩스번호 : 044-201-7394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부담금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171~8	팩스번호 : 032-590-421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부담금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171~8	팩스번호 : 032-590-421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
2. 시행령	시행령 제10조~제14조의5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조의2~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4. 고시·훈령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 매년 폐기물담금 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지수
5. 기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산(「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만 해당) ○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 ○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나 수입업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함유제품 - 법 제15조의2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이 포함된 1회용 컵 ○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살충제, 유독물 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개당 24.9원	
	2) 500ml 초과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개당 56.2원	
	2) 500ml 초과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개당 53.9원	
	2) 500ml 초과	개당 78.2원	
부동액	부동액	ℓ 당 189.8원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 당 24.4원
플라스틱 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당 313원
○ 산출식 - 폐기물부담금 =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금액 × 부담금 산정지수 ※ 부담금산정지수 : 최초 적용년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또는 연체료)	○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4항
강제징수절차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5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	관련법령
○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100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 시행령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100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 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시행령 제11조 별표2 비고1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	
○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 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제조업자의 경우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10억원 ÷ 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연간 수입액[수입항 도착 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 나.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톤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계산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

○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연간 매출액-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 아이스팩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계산식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3. 6.24	○ 부담금 산출기준 제정
○ 1996.12.28	○ 합성수지 제외 전 품목 20%~50% 요율 인상
○ 2003. 1. 1	○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변경 -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부과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과로 변경 ○ 복합용기 과자제품, 리튬전지, 플라스틱용기 화장품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변경
○ 2004.12.31	○ 담배 부담금 요율(4원→7원) 변경
○ 2007. 3.27	○ 모든 품목의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08.1.1시행)
○ 2010.12.20. (2011.1.1. 시행)	○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2012.10.29. (2012.11.1. 시행)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중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부동액·브레이크액·윤활유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로 전환 ○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법령 반영
○ 2013. 1. 22 (2013.2.2. 시행)	○ 플라스틱 제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 제조업자 대상 2010년분부터 2012년 출고분까지 50% 추가 감면 ○ 수입업자 신고 및 납부방식, 경감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 - 신고방식 : 수시신고→ 정기 연간 1회 신고 - 면제 및 감면 : 수입가 연간 9만불 / 플라스틱 연간 3톤 ○ 플라스틱 부담금 대상 품목 중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한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 면제제도 신설(재활용의무율 : 일반용 80%, 건축용 20%) ○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1회용기저귀 및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수액세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 대상 폐기물부담금 50% 추가 감면 적용기간 연장(~'13년까지)

○ 2013.11.20	○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 대상 폐기물부담금 50% 추가 감면 적용기간 추가 연장('10년분부터 '14년까지)
○ 2015. 2. 3 (2015.1.1분부터 적용)	○ 담배 부담금 요율(7원→24.4원) 변경 ○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 대상 폐기물부담금 50% 추가 감면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감면 및 적용기간 연장('15년분부터 '16년분까지)
○ 2016.12.30	○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 대상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 2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 감면방식 누진방식으로 개선, 적용기간 연장('17년분부터 '18년분까지)
○ 2019.11.26. (2020.5.27분부터 적용)	○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금액의 2/100 또는 5/100에서 1/100 또는 3/100으로 조정 ○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입증 의무('19.11.26 시행)
○ 2021. 1. 5	○ 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 근거 마련 - 부담금 납부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사항 법률 제정
○ 2021. 5. 25	○ 고효수성수지 아이스팩 신규 부과 품목 추가(kg 당 313원)
○ 2024. 6. 4	○ 부과 품목에서 '껌' 삭제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해 반환 결정을 한 때에는 폐기물 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 등을 입금(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39조)

○ 2025년 환급액 : 26건, 3,006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24건, 3,553백만원

⑫ 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을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해당없음(「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제3호)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폐기물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법률 제·개정 규제심사 시 별도의 존속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심사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제조·수입업자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항
납부기한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 납부	시행령 제12조제5항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6개월) 이내 징수 유예 가능 * 재산에 중대한 손실 발생,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	법 제12조의2
분할납부	○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 ※ 1분기 5월 20일까지, 2분기 7월 20일까지, 3분기 9월 20일까지, 4분기 11월 20일까지	시행규칙 제7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273,155	3,379,722	247,811	3,298,211	25,344	81,511	97.6
2025	12,427	230,173	11,031	224,747	1,396	5,424	97.6
2024	11,950	226,829	10,536	221,952	1,414	4,877	97.8
2023	12,660	232,427	11,221	227,295	1,439	3,868	97.8
2022	12,254	215,118	10,875	209,889	1,379	5,229	97.6
2021	12,112	209,048	10,747	204,426	1,365	4,622	97.8
2020	11,172	199,399	9,900	195,147	1,272	4,252	97.9
2019	11,525	200,197	10,309	196,350	1,216	3,847	98.1
2018	13,613	186,693	12,081	182,734	1,532	3,959	97.9
2017	10,707	195,194	9,650	191,374	1,057	3,820	98
2016 이전	164,735	1,484,644	151,461	1,444,297	13,274	40,347	97.2

주1) : 채납 및 기한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본사	-	51,948	'03년부터 한국환경 공단에서 부과·징수
수도권동부	20,170	219,972	
수도권서부(서울)	103,933	1,160,268	
부산울산경남권	18,025	256,374	
대구경북권	3,744	77,836	
충청권	69,648	838,135	
충북지사	5,131	106,513	
광주전남	2,535	34,634	
제주지사	45	2,038	
강원	456	10,378	
전북	1,060	21,665	
합계	224,747	2,779,761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폐기물 부담금	221,952	200,943	224,747	2,795 (1.2%)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24,747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224,747	법 제12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융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운용 준치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6. 재활용부과금(자원재활용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재활용부과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2.2.4.), 시행일(2003.1.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 044-201-7392	팩스번호 : 044-201-7394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포장재EPR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04	팩스번호 : 032-590-421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포장재EPR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04	팩스번호 : 032-590-421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징수
2. 시행령	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4. 고시·훈령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 부과	자원재활용법 제19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미이행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의무 미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자원재활용법 제19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의무량 \text{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times \text{재활용단위비용}^*) + \text{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함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 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6항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7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2003년 1월 1일	○ 제도 시행 - 4대 포장재(음식료품 등의 포장재에 한함)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 포장재) - 11개 제품 (운할유, 타이어, 전지 4종, 전자제품 5종)
2004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필름형 포장재 추가) - 12개 제품(형광등 추가)
2005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살충살균제 포장재 추가) - 14개 제품(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추가)
2006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 - 17개 제품(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추가)
2007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화장품 유리병 추가) - 17개 제품
2008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 - 10개 제품(망간/알칼리 망간/니켈수소 전지 추가) ※ 전자제품 10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08.1.1 시행)에 따라 별도관리
2010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의복 · 위생용종이제품 · 고무장갑 포장재, 전기제품 필름형 포장재 추가) - 10개 제품
2011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운할유 용기 추가) - 11개 제품(양식용 부자 추가)
2014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 전제품의 포장재로 확대) - 11개 제품
2016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 전제품의 포장재로 확대) - 13개 제품(곤포용 사일리지 필름 및 김발장 추가)

2020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 전제품의 포장재로 확대) - 18개 제품(1회용 비닐장갑 등 필름류 제품 5종 추가)
2022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 - 20개 제품(합성수지재질의 제품 2종(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추가)
2023년 1월 1일	○ 대상품목 확대 - 4대 포장재 - 34개 제품(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3종(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추가)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의 이의신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반환청구서와 납부영수증 사본, 반환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확인 후 재활용부과금 반환 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 반환 청구 이외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결정 통지서를 교부
 -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반환금 입금
 - 관련근거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25년 환급액 : (건수) 24건 (금액) 64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6건 (금액) 72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3건 (금액) 194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과정을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과사유, 내용 및 법적근거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문서 및 유선, 납부고지 7일전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7월 31일	시행령 제28조
납부기한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장 제5절(징수유예)
분할납부	연 2회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4,251	453,879	35,238	273,982	9,013	179,897	60.4
2025	2,198	35,152	1,657	25,419	541	9,733	72.3
2024	2,289	27,613	1,663	17,106	626	10,507	61.9
2023	2,619	31,418	2,101	22,358	518	9,060	71.2
2022	2,691	32,120	2,165	23,096	526	9,024	71.9
2021	2,473	32,703	1,962	23,991	511	8,712	73.4
2020	2,240	27,785	1,680	18,788	560	8,997	67.6
2019	1,583	29,024	1,262	20,600	321	8,424	71.0
2018	1,682	28,442	1,369	19,609	313	8,833	68.9
2017	1,418	31,488	1,110	14,101	308	17,387	44.8
2016이전	25,058	178,134	20,269	88,914	4,789	89,220	49.9

주1) :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따른 미수납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본사	5,695	80,998	
수도권동부환경본부	2,709	24,222	
수도권서부환경본부	13,636	75,110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394	17,611	
대구경북환경본부	674	9,161	
충청권환경본부	615	17,940	
충북지사	500	5,812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837	8,558	
제주지사	-	2,017	
강원환경본부	250	2,919	
전북환경본부	109	4,215	
합계	25,419	248,563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7,106	21,767	25,419	8,403 (49.4%)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실적 변동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수입 일시 증가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수납율 제고

- 경영부진으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 실시
- 신용정보 전문기관의 DB활용을 통한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관리 강화

* 시중 17개 은행에 예금압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함에 따라 체납액 감소 도모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재활용부과금 카드 납부 방법 도입으로 납부자 편의 제공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조사 및 관리 강화, 타 기관 징수실적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징수율 제고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25,419	자원재활용법 제1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8항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자원재활용법 제20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용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7.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66.8.3.), 시행일(1966.8.3.)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생활하수과
	전화번호 : 044-201-7034	팩스번호 : 044-201-7037
부과기관	기 관 명 : 지방자치단체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지방자치단체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하수도법 제6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시행령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m³ 이상 증가시키는 자 ○ 타공사 및 타행위 사업범위 규정
3. 시행규칙	-	
4. 고시·훈령	-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개축 및 신·증설 등을 위한 재원확보	하수도법 제6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1일 10m ³ 이상 하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가산금 - 하수도법 시행, '21.1.6) 가산금 부과기준 규정(채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강제징수 - 하수도법 시행, '21.1.6) 가산금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하수도법 제73조, 제61조제3항
증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⑨ 부담금의 감면

(단위 : 백만원)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6,431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4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확대(환경부)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후 하수처리구역안의 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 미설치자 부과규정 추가, 부담금 납부대상 배수설비 설치자 범위 확대(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5분의1→10분의1)
○ 2007. 9.28.	○ 소규모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폐지 - 건축물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해 10m³/일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부과로 완화
○ 2014. 7.17.	○ 개별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 건축물 등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해 10m³/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부과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의신청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 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 이의 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
 -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 규정 준용 처리

<대구광역시>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환급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의신청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1조 및 64조 규정 준용 처리

<대구광역시>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징수금에 착오 또는 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환급방법 및 절차는 환급신청에 의거 당해 년도분은 당해연도 수입에서 과년도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환급 조치.

- 2025년 환급액 : (건수) 98건 (금액) 6,946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34건 (금액) 32,448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60건 (금액) 11,286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및 결산서, 홈페이지 및 시보 등 게재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법적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시의 조치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서면고지(납부고지서 교부 등)

- 고지시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등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서울특별시>

- 부과시기 : 건축물 준공협의 시,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협의 시, 개발사업 준공협의 시

- 납부기한 : 건축물 준공 전,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 개발사업 준공 전

- 납부기한 연장 : 해당없음

- 분할납부 : 공사기간 1년 이상,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상 일 경우

<부산광역시>

- 부과시기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 납부기한 연장 : 해당없음

- 분할납부 : 공사기간 1년 이상,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상 일 경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361,645	15,940,000	350,154	15,213,905	11,491	710,831	95.4
2025	4,890	909,911	4,722	807,136	168	102,775	88.7
2024	5,657	839,413	5,418	819,356	239	20,057	97.6
2023	6,623	788,303	6,425	733,162	198	55,141	93.0
2022	7,871	717,762	7,160	677,048	711	40,714	94.3
2021	7,767	694,351	7,253	657,997	514	36,354	94.8
2020	7,782	656,837	7,446	600,250	336	56,587	91.4
2019	8,883	777,464	8,515	727,727	368	49,737	93.6
2018	9,864	732,769	9,400	699,287	464	33,482	95.4
2017	10,725	695,566	10,147	645,736	578	49,830	92.8
2016 이전	291,583	9,127,624	283,668	8,845,948	7,915	281,676	189

주1) : 납부시기 미도래(부과시기와 납부기한 상이), 분할납부, 체납 등으로 당해 연도에 미징수 사례 발생(김포시 440억원, 양주시 224억원, 평택시 69억원 등)

* (전남 나주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210억원 부과, 1.8억원 징수)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43,415	890,221	
부산광역시	27,132	1,114,322	
대구광역시	25,837	664,182	
인천광역시	9,384	692,828	
광주광역시	8,037	424,079	
대전광역시	18,787	313,761	
울산광역시	12,905	492,783	
세종자치시	1,782	39,031	
경기도	434,582	5,137,039	
강원도	34,764	586,087	
충청북도	19,434	401,793	
충청남도	29,079	753,628	
전라북도	27,916	395,082	
전라남도	18,191	484,209	
경상북도	31,838	810,319	
경상남도	55,833	907,486	
제주도	8,220	299,919	
합 계	807,136	14,406,769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19,356	682,383	807,136	△12.2 (△1.4)	도시개발계획 감소, 소송 등으로 부담금 미징수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807,136	
광역 자치 단체	하수도특별회계	19.2	155,499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초 자치 단체	하수도특별회계	79.6	642,493	
	하수도일반회계	1.0	7,841	
	수질개선특별회계	0.1	1,165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01	138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공공하수도 개축사업 2. 공공하수도 신·증축 공사	하수도법 제61조 제5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99,522	96,877	합 계	81,976	77,461
〈서울특별시〉	11,542	12,053		8,752	8,752
○ 원인자부담금	450	434	○ 하수도사업	4,125	4,125
○ 하수도사용료	7,281	7,230	○ 기 타	4,627	4,627
○ 기 타	3,811	4,389			
〈부산광역시〉	4,851	5,529		3,997	4,647
○ 원인자부담금	635	271	○ 하수도사업	1,728	1,807
○ 하수도사용료	2,757	3,089	○ 기 타	2,269	2,840
○ 기 타	1,459	2,169			
〈대구광역시〉	4,579	4,692		3,372	3,606
○ 원인자부담금	435	258	○ 하수도사업	1,375	1,419
○ 하수도사용료	1,695	1,661	○ 기 타	1,997	2,187
○ 기 타	2,449	2,773			
〈인천광역시〉	3,491	3,517		2,900	2,915
○ 원인자부담금	184	94	○ 하수도사업	2,824	2,834
○ 하수도사용료	2,300	2,303	○ 기 타	76	81
○ 기 타	1,007	1,120			
〈광주광역시〉	1,312	1,411		1,361	1,141
○ 원인자부담금	86	80	○ 하수도사업	1,201	1,235
○ 하수도사용료	937	1,067	○ 기 타	160	176
○ 기 타	289	264			
〈대전광역시〉	1,820	1,817		1,615	1,954
○ 원인자부담금	74	187	○ 하수도사업	1,463	1,555
○ 하수도사용료	1,148	1,256	○ 기 타	152	399
○ 기타	598	374			
〈울산광역시〉	2,473	2,811		1,892	2,471
○ 원인자부담금	126	129	○ 하수도사업	617	626
○ 하수도사용료	1,592	1,618	○ 기 타	1,275	1,845
○ 기 타	755	1,064			
〈세종특별자치시〉	901	755		704	847
○ 원인자부담금	128	20	○ 하수도사업	313	345

○ 하수도사용료	379	303	○ 기 타	391	502
○ 기 타	394	432			
〈경기도〉	30,152	32,055		23,691	22,175
○ 원인자부담금	3,550	4,346	○ 하수도사업	15,888	15,961
○ 하수도사용료	10,366	10,774	○ 기 타	7,803	6,214
○ 기 타	16,236	16,934			
〈강원도〉	1,469	1,378		1,417	1,258
○ 원인자부담금	488	319	○ 하수도사업	802	530
○ 기 타	981	1,059	○ 기 타	615	728
〈충청북도〉	6,503	5,831		6,190	5,657
○ 원인자부담금	196	187	○ 하수도사업	3,202	3,375
○ 일반회계전입금	439	597	○ 기 타	2,988	2,282
○ 하수도사용료	1,454	1,225			
○ 기 타	4,414	3,822			
〈충청남도〉	4,541	5,065		3,714	3,775
○ 원인자부담금	345	260	○ 하수도사업	2,918	2,999
○ 하수도사용료	832	944	○ 기 타	796	776
○ 기 타	3,364	3,861			
〈전라북도〉	3,164	3,852		2,681	3,251
○ 원인자부담금	167	296	○ 하수도사업	2,014	2,206
○ 일반회계전입금	985	154	○ 기 타	667	1,044
○ 하수도사용료	1,032	1,028			
○ 기 타	980	2,395			
〈전라남도〉	2,626	2,829		2,973	3,133
○ 원인자부담금	317	372	○ 하수도사업	2,429	2,563
○ 일반회계전입금	233	388	○ 일반회계전출금	278	325
○ 하수도사용료	633	676	○ 기 타	266	245
○ 기 타	1,435	1,393			
〈경상북도〉	6,715	6,342		5,696	5,507
○ 원인자부담금	604	318	○ 하수도사업	3,503	3,052
○ 일반회계전입금	1,474	1,069	○ 기 타	2,193	2,455
○ 하수도사용료	623	676			
○ 기 타	4,014	4,279			

〈경상남도〉	7,187	7,976		5,972	7,065
○ 원인자부담금	266	559	○ 하수도사업	3,566	4,562
○ 하수도사용료	2,107	2314	○ 일반회계전출금	923	513
○ 기 타	4,814	5,228	○ 기 타	1,483	1,990
〈제주도〉	3,636	5,067		3,237	4,054
○ 원인자부담금	186	82	○ 하수도사업	2,050	2,853
○ 하수도사용료	728	868	○ 기 타	1,187	957
○ 기 타	2,722	4,11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8.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9.2.8.), 시행일(1999.8.9.)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부서명 : 유역계획과
	전화번호 : 031-790-2448	팩스번호 : 031-790-2489
부과기관	기관명 : 시·도	부서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관명 : 시·도	부서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9조	한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2.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7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산정 방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3. 시행규칙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4. 고시·훈령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45호(2019.7.31.)>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함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한강수계법 제11조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 ○ 다만, 해당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 수도사업자(부과·징수 주체인 시·군 등 28개소) - 실제납부자 : 물을 사용한 최종수요자 ○ 전용수도설치자(1개소) ○ 하천수사용자(7개소)	한강수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부담금 산정방법에 있어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공공수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 22조의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조정	○ '99.8.9.~'00.12.31. - 80원/톤 ○ '01.1.1.~'02.12.31. - 110원/톤 ○ '03.1.1.~'04.12.31. - 120원/톤 ○ '05.1.1.~'05.12.31. - 130원/톤	물사용량 × 부과율	한강수계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함 - 단,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는	○ '06.1.1.~'06.12.31. - 140원/톤 ○ '07.1.1.~'07.12.31. - 150원/톤 ○ '08.1.1.~'10.12.31. - 160원/톤	물사용량 × 부과율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9-145호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물사용량에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 '11.1.1.~ - 170원/톤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한강수계법 제19조 제7항
증가산금		
강제징수절차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0항

⑨ 부담금의 감면

(단위 : 백만원)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법령
○ 시·군별 수도조례에서 정한 수 도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해 물이 용부담금 감면	징수기관별 수도조례에 의함	8,227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 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전 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열 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100	62,503*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의2

* 하천수 허가량 기준으로 산정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9. 8. 9.	80원/톤
2001. 1. 1.	110원/톤
2003. 1. 1.	120원/톤
2005. 1. 1.	130원/톤
2006. 1. 1.	140원/톤
2007. 1. 1.	150원/톤
2008. 1. 1.	160원/톤
2009. 1. 1.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하천수 사용자)
2011. 1. 1.	170원/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6조) 등
 - 수도사업자 및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과다입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함
 -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 결정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기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상동
- 2025년 환급액 : (건수) 8건, (금액) 98백만원
 - * 타법(농협, 중소기업은행) 감면 소급적용 환급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건수) 577건, (금액) 1,868백만원
 - * 타법(농협) 감면 소급적용 환급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web/main.do) 게재 및 결산설명을 통하여 공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법적 근거, 납부금액, 부과율, 미납 시 조치사항, 이의신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월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게재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해당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부과시기	징수기관별 수도조례에 의함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액(A-B)	(B/A)
합계	16,440	11,289,039	15,649	10,394,204	795	894,835	92.1
2025	443	529,367	414	481,943	29	47,424	91.0
2024	468	530,270	432	484,370	36	45,900	91.3
2023	565	527,737	529	478,841	36	46,896	90.7
2022	458	512,855	427	473,639	31	39,216	92.4
2021	469	516,155	437	476,342	32	39,813	92.3
2020	547	516,469	492	470,943	55	45,526	91.2
2019	575	520,901	526	476,519	49	44,382	91.5
2018	587	522,165	539	477,535	48	44,630	91.5
2017	569	509,842	523	466,519	46	43,323	91.5
2016이전	11,763	6,603,278	11,330	6,107,553	433	495,725	92.5

주1) : 납기미도래, 체납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165,554	4,010,630	
인천광역시	57,901	1,174,885	
경기도	238,798	4,378,500	
고양시	18,148	367,855	
과천시	1,414	25,926	
광명시	4,662	114,526	
구리시	2,978	70,487	
군포시	4,435	99,841	
김포시	8,053	117,868	
남양주시	9,201	142,616	
동두천시	941	16,186	
부천시	13,991	330,682	
성남시	16,980	391,961	
수원시	18,797	415,015	
시흥시	11,328	232,440	
안산시	21,616	533,328	
안성시	3,105	40,638	
안양시	9,499	217,522	
양주시	5,185	78,061	
오산시	4,427	73,630	
용인시	15,008	281,190	
의왕시	2,754	55,151	
의정부시	6,925	143,350	
파주시	4,906	47,644	
평택시	24,834	216,850	
포천시	2,769	37,829	
하남시	5,739	70,487	
화성시	21,103	257,417	
한국수자원공사	19,451	338,64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337	13,414	전용수도, 하천수
과오납금 반환	-98	-3,8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합 계	481,943	9,912,261	

iii - i) 2025년도계획 대비 실적 부담금 징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484,370	476,274	481,943	△2,427 (△0.5)	일부 지역 인구수 감소 추세 등 으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1,808	9,755	9,539	△216 (△2.3)	○(체납 사유) 체납자 재력부족, 정리유예 등 ○(징수 계획) 체납자 중점관리로 독촉장 발부, 독촉 전화 문자 후 방문 단수처리 등 납부 재안내 실시(자자채-체납자)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한강수계 관리기금	100.0	481,943	한강수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토지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에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상수원 수질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강수계법 제22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707	5,334	계	5,707	5,334
○ 부담금	4,844	4,819	○ 사 업	5,403	4,891
○ 정부내부수입	-	-	- 주민지원사업	819	767
○ 기 타	863	515	- 환경기초시설	2,722	2,472
			- 기타수질개선지원	446	343
			-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 관리	952	930
			- 오염총량관리	89	85
			- 친환경청정사업	283	206
			○ 기금관리비	92	88
			○ 기 타		
			- 여유자금운용	304	443

다. 부담금운용 준치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성과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9. 환경개선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환경개선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1.12.31.), 시행일(1992.07.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전화번호 : 044-201-7593	팩스번호 : 044-201-6666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군·구(시·도)	부 서 명 : 환경담당부서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군·구(시·도)	부 서 명 : 환경담당부서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이하 “법”) 제9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부과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의 납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자동차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 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법 제10조제2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 징수(100분의 3)	법 제20조제1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법 제20조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	10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100	감면대상 자동차는	
○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 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100	지자체에서 부과고지서 발급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	100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제9조제3항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경도장애이상의 고엽 제후유증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	100	감면액 확인 어려움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시설물》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3. 12. 31.	○ 분할 또는 공동 소유시설물로서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물로 상향조정(30㎡⇒50㎡)
○ 1994. 12. 31.	○ 분할납부제 도입
○ 1997. 08. 19.	○ 업종구분 없이 160㎡ 이상 모두 부과[1,000㎡(음식점 160㎡, 숙박시설 240㎡)⇒160㎡]
○ 2002. 09. 11.	○ 공동소유 시설물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부과(중전: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1인 지분면적이 160㎡ 미만 면제)
○ 2007. 02. 01.	○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10.95%⇒8.0%)
○ 2007. 12. 28.	○ 경감대상 확대(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물 25% 감면)
○ 2010. 11. 26.	○ 도청소재지의 읍·면 지역에 대한 지역계수 조정(1.00⇒0.40)
	○ 수시부과요건 확대(시설물 멸실, 자동차 등록말소 등)
	○ 징수교부금 지급범위 확대(10%⇒최대 30% 이내)
	○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시설물에 부담금 감면
	- 최우수 50%, 우수 40%, 우량 30%, 일반 20%
	○ 분할납부 이자율(연 8%) 폐지
	○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변경(시·도별 평균징수율 기준 ⇒시·군·구별 징수금액 기준)
○ 2012. 09. 14.	○ 시설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일할계산
○ 2013. 07. 16. (2014.01.14.)	○ 녹색매장 및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담금 감면
	- 대형녹색매장 20%, 중소형녹색매장 50%, 환경표지인증 시설물 20%
	○ 가산금 요율인하(5%→3%)
○ 2014. 01. 14.	○ 분할납부금액 하향 조정(100만원→50만원)
	○ 특별자치시 지역계수 등 적용(대기 : 0.79, 수질 : 0.67)
○ 2015. 01. 20.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015.7.1. 시행)

《자동차》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2. 07. 2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8,100원), 사업용(적용유예)
○ 1995. 01.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12,150원), 사업용(적용유예)
○ 1996. 07.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12,150원), 사업용(8,100원)
○ 1997. 01.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 사업용(8,100원)
○ 1998. 01.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 사업용(12,150원)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0. 01.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 사업용(20,250원)
○ 2002. 09. 11.	○ 지역계수 조정(행정구역⇒인구수)
○ 2007. 12. 28.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 15,190원*), 사업용(20,250원)
○ 2009. 02. 13.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 15,190원*, 10,125원**), 사업용(20,250원) * 개인소유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개인소유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09년도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 2010. 11. 26.	○ 경유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차령계수 일할계산
○ 2013. 07. 16.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 부담금 면제 ○ 일시납부(연납)시 10%감면 ○ 가산금 요율인하(5%→3%)
○ 2018. 05. 15.	○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 부담금 면제
○ 2019. 10. 17.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 제2차납부의무, 공동납부의무 신설
○ 2020. 01. 01.	○ 일시납부 시기 및 내용 변경(3월[1년분 10% 감면] → 1월[1년분 10% 감면], 3월[하반기분 10% 감면])
○ 2020. 01. 01.	○ 일시납부 온라인 신청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감면 실시('21.1)
○ 2022. 03. 28.	○ 징수율 60% 초과 시 추가 징수교부금 확대(최대 20 →30%)
○ 2023. 07. 18.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장애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 위임, 체납액 강제징수 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가능 근거 신설
○ 2024. 07. 01.	○ 단위당 부과금액: 자가용20,250원(7,600원*), 사업용(20,250원) * 개인소유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담금의 조정 신청
- 이의제기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 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
- 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6,122건, (금액) 230,918,30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7,065건, (금액) 269,951,32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홈페이지(www.mcee.go.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해당 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반기별 1회	법 제9조
납부기한	(상반기) 9.16. ~ 9.30. (하반기) 다음 해 3.16. ~ 3.31.	법 제9조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	시행령 제8조
분할납부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시행령 제8조의3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92,230,192	26,226,879	310,892,076	14,216,848	281,338,096	12,010,031	54.2
2025	13,780,454	533,509	5,964,943	143,080	7,815,491	390,429	26.8
2024	15,453,339	641,410	6,674,269	171,946	8,779,070	469,464	26.8
2023	17,126,223	699,729	7,383,594	188,334	9,742,629	511,395	26.9
2022	17,646,624	750,314	8,436,265	216,371	9,210,359	533,943	28.8
2021	17,952,040	840,976	7,504,725	271,311	10,447,315	569,665	32.3
2020	23,885,152	936,520	10,939,410	331,737	12,945,742	604,783	35.4
2019	27,582,431	1,023,347	12,814,817	387,761	14,767,614	635,586	37.9
2018	27,101,339	1,097,879	13,188,058	423,633	13,913,281	674,246	38.6
2017	27,053,396	1,179,942	10,932,831	464,247	16,120,565	715,695	39.3
2016 이전	401,825,224	18,523,253	223,874,082	11,618,428	177,951,142	6,904,825	63.2

주1) : 불납결손, 미수납, 환급 발생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대부분 과년도 부과액(채납액)임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23,547	3,672,625	
부산시	9,323	930,956	
대구시	7,221	705,826	
인천시	8,883	713,805	
광주시	4,251	416,592	
대전시	4,265	445,044	
울산시	3,343	301,743	
세종시	565	16,384	
경기도	29,238	2,351,606	
강원특별자치도	4,387	395,799	
충청북도	5,066	397,772	
충청남도	6,050	472,176	
전북특별자치도	6,767	480,846	
전라남도	7,319	460,368	
경상북도	10,099	710,954	
경상남도	10,331	770,538	
제주도	2,425	199,224	
합 계	143,080	13,442,289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71,946	121,163	143,080	△28,866	
시설물	148	345	151	3	시설물 부담금 폐지('15.7.1)로 '16년부터 과년도 체납액만 징수
자동차	171,798	120,818	142,929	△28,869	부과대상* 차량 폐차 등 지속 감소로 부담금 징수액 감소 * 경유차 4·5등급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 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개선('14년~)
 - 일시납부 시 감면(10%) 혜택 제도를 마련하고('13.7), 일시납부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16년)
 - 징수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기본 징수율 60% 이하 지자체는 징수금액의 10% 교부, 기본 징수율(60%) 초과시 징수금액의 10~30% 교부(기본교부율 10% + 추가교부율 최대 20%)
 - 부담금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 표창 수여자 해외 환경기술 벤치마킹 연수 등 실시
 -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도입('19.10)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19.10)
 - 일시납부 시기 및 내용 변경(3월[1년분 10% 감면] → 1월[1년분 10% 감면], 3월[하반기분 10% 감면])(‘20.1)
 - 일시납부 온라인 신청 가능(‘20.1)
 -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감면 실시(‘21.1)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 징수비용 확대(20→30%, '22.3)
 -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23.2)
 -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활용 가능('23.7)
 -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자체 합동평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지표 신설('23.10)
 -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0.7) + (미납액 해소율 × 0.3)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시 부담금 수시 부과를 통해 부담금 완납 확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24.1)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 징수율 제고방안 논의,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개선 부담금 시스템 활용방법 등 교육('25)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체납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체납정보, 소유자·법인 정보 및 차량 정보 등 산재된 정보를 일괄 처리하여 부과대상 확정에 시간 절감
 - (담당자 전문성 제고) 인수인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질의회신 사례집 작성·배포, 담당자 워크숍 및 징수 부진 지자체 자문회의 등
 - (사기진작) 징수율 우수 지자체 담당자에 장관상 표창 등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498,185	417,408	337,935	△79,473 (-19%)	○(체납 사유) 과년도 징수액 체납분 ○(징수 계획)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실적 제고 추진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43,080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143,080	법 제1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5.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6.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7.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용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 '25년 평가 미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6개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② 제정년도 : 공포일·시행일(1992.4.2.)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수질수생태과
	전화번호 : 044-201-7063	팩스번호 : 044-201-7070
부과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수질수생태과
	전화번호 : 044-201-7063	팩스번호 : 044-201-7070
징수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수질수생태과
	전화번호 : 044-201-7063	팩스번호 : 044-201-707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시행령 제62조~제65조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 등)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374호 (2025.6.5.)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원인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48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소요사업비 전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지역에 따라 표준사업비의 50~100% 국고보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정함. ○ 계획비 및 조사비 ○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 용지비(보상비 포함) ○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증가산금	채납기간 1일당 채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
강제징수절차	납부기한까지 설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시설의 설치 사업비는 비용부담계획 승인 신청시 원인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적 절차규정을 마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의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설치부담금과 사용료(운영관리비 산출내역)를 원인자에게 개별통지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374호) 제15조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8조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 제27조에 의한 가산금, 제28조에 의한 독촉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374호)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제출 시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374호) 제4조 및 제15조, 제1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 등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비용부담을 하여야 함.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374호)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분할징수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분할납부	· 1천만원 미만 : 1년간 월별 분할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년간 월별 분할 · 1억원 이상 : 3년간 월별 분할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535	23,938	2,535	23,911	0	27	99.9
2025	99	2,666	99	2,666	0	0	100.0
2024	65	244	65	244	0	0	100.0
2023	59	179	59	179	0	0	100.0
2022	90	252	90	252	0	0	100.0
2021	54	144	54	144	0	0	100.0
2020	30	407	30	407	0	0	100.0
2019	27	429	27	429	0	0	100.0
2018	27	572	27	663	0	△91*	115.9
2017	27	539	27	595	0	△56*	110.4
2016이전	2,057	18,506	2,057	18,332	0	174	99.1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차년도 징수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경산산단	9	2,662	
진주산단	3	2,026	
청주산단	191	4104	
익산산단	54	3,177	
여수산단	2,405	6,094	
달성산단	4	3,182	
합 계	2,666	21,24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44	191	2,666	2,422 (992.6%)	여수 4단계 설치('23.10)에 따른 공폐 설치부담금 부과 징수 시행 ('25.하반기~)
경산산단	5	5	9	4 (80.0%)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증가
진주산단	3	5	3	- (-)	-
청주산단	148	156	191	43 (29.1%)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증가
익산산단	14	10	54	40 (285.7%)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증가
여수산단	64	10	2,405	2,341 (3,658%)	여수 4단계 설치('23.10)에 따른 공폐 설치부담금 부과 징수 시행 ('25.하반기~)
달성산단	10	5	4	△6 (△60.0)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2,666	-
국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2,66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 포함)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62조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융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 해당없음

11.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2.01.14.), 시행일(2002.07.1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부 서 명 : 유역계획과
	전화번호 : 042-865-0820	팩스번호 : 042-865-0829
부과기관	기 관 명 : <불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불임>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제30조	○ 수도사업자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
2.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 최종수요자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 부담금 등
3. 시행규칙	제3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
4. 고시·훈령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42호('19.7.31.)>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70원/톤
5. 기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침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금강수계법 제1, 30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대청댐, 용담댐) 및 금강본류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수도사업자 - 실제 납부자는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전용수도 설치자 ○ 하천수 사용자	금강수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부과율) 위원회는 부과율을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심의·조정 ○ (산정기준) -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도요금 기준 물사용량에 전년도 전체 물공급량 중에서 부과대상 공공수역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최종수요자 물사용량 ○ (산정방법) - 수도사업자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전용수도·하천수 : 자가취수한 물 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170원/톤 (18.1.1.~)	물사용량(톤) × 부과율(원/톤)	금강수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환경부 고시 제2019-142호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금강수계법 제30조 제8항
증가산금	○ 최종수요자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의 예 따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강제징수절차	○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금강수계법 제30조 제11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상수원관리지역 및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100	1,543백만원	금강수계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100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3조의2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100	-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100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조례준용	3,034백만원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2. 7. 15	○ 110원/톤
○ 2003. 1. 1	○ 120원/톤
○ 2004. 1. 1	○ 130원/톤
○ 2005. 1. 1	○ 140원/톤
○ 2006. 1. 1	○ 150원/톤
○ 2007. 1. 1	○ 160원/톤
○ 2018. 1. 1	○ 170원/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름.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름(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수도사업자 및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과다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함(「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4조)
 -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결정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기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2025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21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123백만원*
 - * 하천수사용자(1개소) 과다납입 환급건임. 수도사업자는 조례절차에 따라 자체 환급
- 2023년 환급액 : (건수) 6,589건 (금액) 820백만원**
 - ** 타법(농협) 감면 소급적용 환급 포함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 기금통계를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web/main.do)에 게재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법적 근거, 납부금액, 부과율, 미납시 조치사항, 이의신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 : 매월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고지하며, 고지시기는 수도사업자 수도요금 조례에 따름
 - 전용수도·하천수사용자 : 취수자가 물사용량과 물이용부담금을 위원회에 통보 및 위원회에서 매월 15일경 물이용부담금 납입 안내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수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 따름 ○ 전용수도·하천수사용자 : 매월 15일경 납입 안내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납부기한	○ 수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 따름 ○ 전용수도·하천수사용자 : 매월 말일	
납부기한 연장	○ 수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 따름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분할납부	○ 전용수도·하천수사용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따름	금강수계법 제30조 제8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8,942	2,501,081	8,366	2,291,834	576	209,247	91.6
2025	409	143,901	378	130,410	31	13,491	90.6
2024	406	143,070	374	129,833	32	13,237	90.7
2023	411	139,137	380	127,458	31	11,679	91.6
2022	402	140,128	370	127,682	32	12,446	91.1
2021	390	139,495	360	127,157	30	12,338	91.2
2020	377	131,923	348	120,206	29	11,717	91.1
2019	364	133,545	336	121,860	28	11,685	91.3
2018	366	130,800	338	119,178	28	11,622	91.1
2017	377	122,071	348	111,823	29	10,248	91.6
2016 이전	5,440	1,277,011	5,134	1,176,227	306	100,784	92.1

주 1) : '06년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납기미도래, 체납 및 소멸시효완성 등의 불납결손

※ '25회계연도 차이내역 : 13,491백만원(납기미도래 11,608백만원, 체납 1,846백만원, 불납결손 37백만원)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대전광역시		27,744	564,395	
충북	청주시	23,986	383,376	
충남	공주시	1,576	25,953	
	논산시	2,119	34,994	
	천안시	14,162	243,018	
	아산시	11,723	108,226	
	연기군	-	4,585	
	부여군	817	13,503	
	계룡시	797	13,596	
	서천군	796	6,617	
	당진시	2,635	26,721	
	금산군	120	1,324	
	청양군	53	244	
	예산군	20	111	
	서산시	30	573	
	보령시	12	260	
	홍성군	18	276	
	태안군	12	211	
	소계	34,890	480,212	
전북	전주시	10,727	194,368	
	익산시	3,310	47,474	
	군산시	12,209	202,630	
	김제시	1,207	8,523	
	완주군 (완주산단)	1,753	20,570	
	소계	29,206	475,156	
세종특별자치시		6,526	54,054	
한국수자원공사		5,951	160,444	
금강수계관리위원회		2,107	43,787	
합 계		130,410	2,161,424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29,833	127,432	130,410	577 (0.4)	○ 계절적요인(이른더위)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 및 보령댐 도수로 간헐적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대전광역시	27,805	28,250	27,744	△61 (△0.2)	
충청북도	23,713	23,480	23,986	273 (1.2)	
충청남도	34,258	32,840	34,890	632 (1.8)	
전북특별자치도	29,132	28,222	29,206	74 (0.3)	
세종특별자치시	6,448	5,790	6,526	78 (1.2)	
한국수자원공사	6,529	6,832	5,951	△578 (△8.9)	
금강수계관리위원회	1,948	2,018	2,107	159 (8.2)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27,458	129,833	130,410	577 (0.4)	○ (체납 사유) 체납자 무재산 및 재력부족 등 ※ 1349백만원 중 11,008백만원 '26.1월 징수완료 ○ (징수 계획)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를 통해 체납 해소 제고 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30,410	
국 가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130,410	금강수계법 제30, 31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에 따른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토지등의 매수 3.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주민지원사업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사업 9.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1.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3. 상수원 준설, 조류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 청소 등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14. 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5.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수변녹지조성, 수질개선 교육 및 홍보,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환경기초조사사업,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 비점오염저감사업, 호소안의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사업 -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현황조사 및 관리사업 - 조류발생 예방 및 저감사업 - 그 밖에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금강수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금강수계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817	1,889	계	1,817	1,889
○ 부담금 수입	1,298	1,304	○ 주민지원사업	235	228
- 물이용부담금	1,298	1,304	- 관리청별주민지원	224	218
○ 기 타	519	585	- 주민지원사업기타	11	10
- 가산금	1	2	○ 환경기초시설	619	601
- 기타재산이자수입	8	8	- 환경기초시설 설치	264	264
- 기타경상이전수입	43	40	- 환경기초시설 운영	355	337
- 기타잡수입 등	9		○ 기타수질개선지원	99	91
. 토지매각대	9	12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7	25
. 위약금·변상금	-	-	- 환경기초조사연구	19	20
. 잡수입 등	-	-	- 비점오염저감사업	41	36
- 여유자금회수	458	523	- 생태하천복원사업	12	10
			○ 토지매수및수변지역관리	263	227
			- 토지등의 매수	165	148
			- 수변녹지조성관리	98	79
			○ 오염총량관리	52	49
			- 오염총량관리사업	30	27
			- 오염총량조사연구	22	22
			○ 기금운영비	25	26
			- 운영경비	4	5
			- 징수비용비전	21	21
			○ 기 타	524	667
			- 여유자금운용	524	66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12.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2.01.14.), 시행일(2002.07.1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부 서 명 : 유역계획과
	전화번호 : 055-211-1735	팩스번호 : 055-211-1704
부과기관	기 관 명 : <불입>	부 서 명 : <불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불입>	부 서 명 : <불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제32조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
2.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5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3. 시행규칙	제48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4. 고시·훈령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기후부 고시 제2019-143호(19.7.31.)> ○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함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성	낙동강수계법 제1조, 제32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 ○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수도사업자 ※ 실제 납부자는 물을 사용한 최종수요자 ○ 전용수도의 설치자 ○ 하천수의 사용자	낙동강수계법 제32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부과율)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심의·조정함 ○ (물사용량)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함 - 다만,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전년도의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함 ○ (산정)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법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170원/톤 (“15.1.1.”)	$\text{물사용량(톤)} \times \text{부과율(원/톤)}$	낙동강수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기후부 고시 제2019-143호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낙동강수계법 제32조 제8항
증가산금		
강제징수절차	○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낙동강수계법 제32조 제11항 및 수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⑨ 부담금의 감면

(단위 : %, 백만원)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 시행령 제21조(담주변지역의 범위 등) - 다목적댐이 2개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 -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집수구역 -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	100.0	9,765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
○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100.0	-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감면 - 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 단,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름	조례 준용	3,770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 수질연동제에 따른 감면 -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조정	30~50	-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기후부 고시 제2019-143호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2. 7. 15.	○ 100원/톤
○ 2004. 1. 1.	○ 110원/톤
○ 2005. 1. 1.	○ 120원/톤
○ 2006. 1. 1.	○ 140원/톤
○ 2008. 1. 1.	○ 150원/톤
○ 2009. 1. 1.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하천수 사용자 추가)
○ 2011. 1. 1.	○ 160원/톤
○ 2015. 1. 1.	○ 170원/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요금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함
 - 수도사업자가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 결정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이 관리은행의 기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음

※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 2025년 환급액 : (건수) 41,477건 (금액) 865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343건 (금액) 274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8,147건 (금액) 1,587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자문위원회 결산 심의(보고), 국회 및 재정경제부 결산보고서 제출, 홈페이지(<http://www.mcee.go.kr/ndg>) 및 열린재정(<http://openfiscaldate.go.kr>)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법적근거, 물사용량 및 부과율, 납부금액, 미납시 조치사항, 이의신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최종수요자의 경우 매월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통합고지
 - 하천수사용자 및 전용수도설치자의 경우, 15~20일 사이 수계위에서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를 송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최종수요자 : 매월 수도요금 납입 고지서에 통합 부과·징수 ○ 전용수도 설치자·하천수 사용자 : 매월	낙동강수계법 제3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납부기한	○ 최종수요자: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 규정 준용 ○ 전용수도 설치자·하천수 사용자 : 매월 말	
납부기한 연장	○ 최종수요자: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 준용	
분할납부	○ 전용수도 설치자·하천수 사용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 준용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3,209	5,079,315	12,494	4,686,092	715	393,223	92.3
2025	604	244,672	572	224,719	32	19,953	91.8
2024	608	250,638	576	230,395	32	20,243	91.9
2023	598	256,045	564	234,932	34	21,113	91.8
2022	596	247,222	564	226,987	32	20,235	91.8
2021	598	243,358	566	222,768	32	20,590	91.5
2020	582	242,622	550	221,991	32	20,631	91.5
2019	548	260,244	516	238,887	32	21,357	91.8
2018	554	264,730	522	243,108	32	21,622	91.8
2017	555	246,283	521	229,267	34	17,016	93.1
2016 이전	7,966	2,823,501	7,543	2,613,038	423	210,463	92.5

주1) :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으로 당해연도 12월분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부산광역시		50,230	1,045,411	
대구광역시		43,893	935,636	
울산광역시		1,417	66,162	
경북	경산시	5,467	97,576	
	경주시	1,886	25,453	
	고령군	378	5,891	
	구미시	12,835	320,182	
	군위군	-	3,761	
	김천시	3,180	31,786	
	문경시	944	1,165	
	상주시	759	11,437	
	성주군	607	5,668	
	영천시	1,657	26,087	
	예천군	431	3,430	
	의성군	773	7,285	
	청도군	605	7,434	
	칠곡군	2,032	37,707	
	포항시	6,599	99,271	
경남	거제시	2,302	36,907	
	고성군	790	12,610	
	김해시	8,664	146,986	
	남해군	459	3,916	
	밀양시	1,546	23,183	
	사천시	2,083	36,197	
	양산시	5,122	90,422	
	진주시	-	1,048	
	의령군	59	169	
	창녕군	1,116	15,761	
	창원시	14,894	282,763	
	통영시	2,071	39,055	
	하동군	176	2,861	
	합안군	1,274	18,724	
	합천군	342	5,202	
수자원공사		46,368	954,36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3,760	59,863	하천수사용자 등
합 계		224,719	4,461,373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230,395	229,113	224,719	△5,676 (△2.5)	○ (혼합공급지역 부과율 하락) 낙동강수계 공공수역과 그 외 수역의 물을 혼합공급하는 지역*의 낙동강수계 물사용량 감소 * 울산, 부산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율(단위:원)>												
부산광역시	51,282	51,105	50,230	△1,052 (△2.1)													
대구광역시	44,800	44,457	43,893	△907 (△2.0)													
울산광역시	4,964	3,575	1,417	△3,547 (△71.5)													
경상북도	37,885	37,021	38,153	268 (0.7)													
경상남도	41,249	40,788	40,898	△351 (△0.9)	<table><tr><th>구 분</th><th>‘24년</th><th>‘25년</th><th>‘24년 대비 증감률(%)</th></tr><tr><td>울 산시</td><td>36.4</td><td>4.3</td><td>△88.2</td></tr><tr><td>부 산시</td><td>151.3</td><td>148.9</td><td>△1.6</td></tr></table>	구 분	‘24년	‘25년	‘24년 대비 증감률(%)	울 산시	36.4	4.3	△88.2	부 산시	151.3	148.9	△1.6
구 분	‘24년	‘25년	‘24년 대비 증감률(%)														
울 산시	36.4	4.3	△88.2														
부 산시	151.3	148.9	△1.6														
수자원공사	46,463	48,705	46,368	△95 (△0.2)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3,752	3,462	3,760	8 (0.2)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최근 5년간 징수율 91.8%)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2,032	2,421	2,518	97 (4.0)	○ (체납 사유) 체납자 재력 부족 등 ○ (징수 계획)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자체 독려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24,719	
국 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	224,719	낙동강수계법 제32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수질오염원 관리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토지 등의 매수 4.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주민지원사업 7. 지역상생협력사업 8.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10.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원 11.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4.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5.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개선요청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낙동강수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442	2,463	계	2,442	2,463
○ 부담금 수입	2,304	2,247	○ 사업비	2,261	2,201
- 법정부담금	2,304	2,247	- 주민지원사업	216	215
○ 기 타	138	216	- 환경기초시설	1,429	1387
- 가산금	2	2	- 기타수질개선지원	168	167
- 기타재산이자수입	5	5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385	371
- 기타경상이전수입	58	64	- 오염총량관리	63	61
- 토지매각대 등	17	1	○ 기금운영비	37	39
- 여유자금회수	56	144	- 운영경비	5	6
			- 징수비용보전	32	33
			○ 기 타	144	223
			- 여유자금운용	144	223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 없음

13.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법)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2. 1. 14.), 시행일(2002. 7. 15.)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부 서 명 : 유역계획과
	전화번호 : 062-410-5322	팩스번호 : 062-410-5309
부과기관	기 관 명 : <불입>	부 서 명 : <불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불입>	부 서 명 : <불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30조	○ 주암호, 동북호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2.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산정방법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3.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
4. 고시·훈령	환경부 고시 제2019-144 ('19.7.31.)호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70원/톤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성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1조, 제30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 취수한 원수의 양에 따라 부과 * 주암호, 동북호, 상사호, 이사천의 역조정지댐, 수어호, 탐진호의 수역	○ 수도사업자 ○ 전용수도 설치자 ○ 하천수 사용자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부과율) 위원회는 부과율을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마다 심의·조정 ○ (산정기준) -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170원/톤 ('08~)	$\text{물사용량(톤)} \times \text{부과율(원/톤)}$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도요금 기준 물사용량에 전년도 전체 물공급량 중에서 부과대상 공공수역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최종수요자 물사용량 ○ (산정 방법) - 수도사업자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전용수도·하천수 : 자가취수한 물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증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 ○ 최종수요자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름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0조제11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상수원관리지역 및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100	-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100	-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조례 준용	196	
○ 중소기업 제조업 창업에 따른 감면	100(사업 개시일로 부터 3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3조 제4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2. 7. 15	○ 110원/톤
○ 2003. 1. 1	○ 120원/톤
○ 2004. 1. 1	○ 130원/톤
○ 2005. 1. 1	○ 140원/톤
○ 2006. 1. 1	○ 150원/톤
○ 2007. 1. 1	○ 160원/톤
○ 2007. 12. 27	○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하천수 사용자)
○ 2008. 1. 1	○ 170원/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름.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름(시행령 제32조 제4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수도사업자 및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과다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함
 -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결정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기금에서 과오납금 반환(「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2조)

- 2025년 환급액 : 0건
- 2024년 환급액 : 53건 38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249건 321백만원*

* 타법(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감면 소급적용 환급액)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 영산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web/main.do) 게재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법적 근거, 납부금액, 부과율, 미납 시 조치사항, 이의신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월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하며, 고지 시기는 수도사업자
수도 요금 조례에 따름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수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 따름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5,608	1,858,590	5,204	1,709,427	404	149,163	92.0
2025	299	103,644	276	94,572	23	9,072	91.2
2024	299	102,823	276	93,798	23	9,025	91.2
2023	299	98,862	276	90,316	23	8,546	91.4
2022	299	102,285	276	93,661	23	8,624	91.6
2021	299	101,061	276	92,403	23	8,658	91.4
2020	299	94,657	276	86,678	23	7,979	91.6
2019	295	94,912	272	87,006	23	7,906	91.7
2018	247	93,606	228	85,672	19	7,934	91.5
2017	247	90,714	228	83,192	19	7,522	91.7
2016 이전	3,025	976,026	2,820	902,129	205	73,897	183.9

주1) : 06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으로, 당해연도 12월분 미수납액이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징수율 하락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광주광역시	25,712	487,617	
전라남도	22,847	345,489	
순천시	904	17,872	
여수시	4,701	85,873	
목포시	4,111	85,459	
광양시	2,706	45,651	
나주시	2,201	25,995	
화순군	911	16,639	

	보성군	175	2,468	
	장흥군	678	7,777	
	영암군	1,008	9,117	
	강진군	250	1,909	
	고흥군	550	6,750	
	장성군	113	426	
	담양군	74	366	
	함평군	152	518	
	무안군	1,949	20,027	
	해남군	819	6,489	
	진도군	424	4,157	
	완도군	224	2,540	
	신안군	272	2,990	
	영광군	94	318	
	광양만권	531	2,148	
한국수자원공사		46,013	782,108	
과오납금 반환		-	△ 359	광주광역시 등 13개 지자체
합 계		94,572	1,614,855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93,798	92,127	94,572	774 (0.8)	전년대비 물 사용량 0.8% 증가
광주광역시	25,186	25,796	25,712	526 (2.1)	
전라남도	22,465	21,281	22,847	382 (1.7)	
한국 수자원공사	46,147	45,050	46,013	△ 134 (△ 0.3)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해당 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041	1,145	1,407	262 (22.9)	○ (체납 사유) - 체납자 재력부족 및 징수유예 등 ○ (징수 계획) -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지속적 징수 독려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94,572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30조, 제31조
국 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100	94,572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에 따른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토지등의 매수 3.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주민지원 사업 6.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 조류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 청소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퇴적물준설사업,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환경기초조사업,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유출·방치된 가축 분뇨 및 퇴비·액비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692	1,827	계	1,692	1,827
○ 부담금 수입	938	946	○ 주민지원사업	192	198
- 물이용부담금	938	946	- 관리청별주민지원	182	189
○ 기타경상이전수입	25	26	- 주민지원평가및DB지원	10	9
○ 기타재산이자수입	27	29	○ 환경기초시설	185	183
○ 기타	12	26	- 환경기초시설설치	138	139
- 변상금	0	0	- 환경기초시설운영	47	44
- 위약금	0	0	○ 기타수질개선지원	63	63
- 가산금	1	1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27	26
- 기타잡수입	0	0	- 환경기초조사연구	21	21
- 토지매각대	11	25	- 생태하천복원사업	-	-
○ 여유자금회수	690	800	- 수질보전활동지원	-	-
			- 물사랑배움터운영	4	3
			- 비점오염저감사업	11	13
			○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391	401
			- 토지등의매수	226	240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65	161
			○ 오염총량관리	43	42
			- 오염총량관리사업	22	21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21	21
			○ 기금운영비	18	19
			- 운영경비	3	5
			- 징수비용보전	15	14
			○ 여유자금 운용	800	921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준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물이용 부담금	'24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7.04.27.), 시행일(2008.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전화번호 : 044-201-7416	팩스번호 : 044-201-7781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환경성보장치 EcoAS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30	팩스번호 : 032-590-422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환경성보장치 EcoAS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30	팩스번호 : 032-590-422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제18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에 대하여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
2. 시행령	제19조의 2	○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
3. 시행규칙	제19조	○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4. 고시·훈령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을 촉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미이행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의무 미이행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가산금액 - 감경금액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가산률 ※ 감경금액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금액 결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9조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3 제1항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3 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9. 1. 1.	○ 재활용부과금 부과 (전기·전자제품 10종)
○ 2015. 1. 1.	○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대상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10종 → 27종)
○ 2015. 7. 20.	○ 재활용부과금 감정기준 신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11조)
○ 2020. 1. 1.	○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대상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27종 → 50종)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절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
 - (관련근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1호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반환청구서와 납부영수증 사본, 반환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확인 후 재활용부과금 반환 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 반환 청구 이외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결정 통지서를 교부
 -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반환금 입금
 - (관련근거) 환경부 예규(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 2025년 환급액 : (건수) 50건, (금액) 62,455,830원

* '24년 출고량 대비 과오납금 차액을 '25년에 반환

○ 2024년 환급액 : (건수) 1건, (금액) 3,660,18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0건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 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통해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통지의무 면제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 없음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	시행령 제19조의2
납부기한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 납부	시행령 제19조의2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징수유예	시행령 제21조의3
분할납부	연 2회 분할납부 - 1회분 8월 31일까지 - 2회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10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5,227	52,149	4,159	44,440	1,068	7,709	85.2
2025	195	2,328	78	1,453	117	875	62.4
2024	137	2,579	60	1,681	77	898	65.2
2023	151	3,805	86	3,022	65	783	79.4
2022	165	3,438	104	3,048	61	390	88.7
2021	254	5,128	191	4,571	63	557	89.1
2020	227	4,014	169	3,527	58	487	87.9
2019	268	3,034	208	2,701	60	333	89.0
2018	302	3,480	233	3,007	69	473	86.4
2017	442	3,927	363	3,487	79	440	88.8
2016 이전	3,086	20,416	2,667	17,943	419	2,473	87.9

주1) 체납 및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부과 및 징수 : 누적액(체납분 부과 및 징수액) 포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본사	-3	7,246	24년 과오납 차액 → '25년에 반납
수도권동부지역본부	62	5,967	
강원지사	11	41	
수도권서부지역본부	1,316	23,926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1,908	
대구경북지역본부	1	485	
충청권지역본부	66	1,976	
충북지사	-	236	
호남권지역본부	-	1,196	
전북지사	-	6	
제주지사	-	-	
합 계	1,453	42,98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부과금	1,681	3,374	1,453	△228 (△13.5)	▪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공제조합을 통한 의무대행 확대로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감소
					구분
					'24년
					'25년
					부과업체 수
					108개소
					133개소
					공제조합 업체 수
					1,128개소
					1,203개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경영난 등 장기 체납업체 대상 재산조회 등 강제징수 관리 지속
 - 부과금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및 대행 안내(대행비용은 부과금 대비 1/3 수준)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채납업체 재산(부동산) 조회 시 국토부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추진 계획)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화 추진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계획
합 계	804	793	903	110 (13.8%)	○(체납 사유) -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납부 지연 - 대다수 사업장은 폐업 또는 법인 말소된 업체로 장기 체납업체가 많음 ○(징수계획) -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의 압류 조치를 통해 채권 보전 - 부과금 체납·채권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1,453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3 제4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융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1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0.03.22.), 시행일(2011.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환경피해구제과
	전화번호 : 044-201-6812	팩스번호 : 044-201-6823
부과기관	기 관 명 : 근로복지공단	부 서 명 : 건설납부지원부
	전화번호 : 052-704-7249	팩스번호 : 0505-312-3120
징수기관	기 관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 서 명 : 수납정산부
	전화번호 : 033-736-2664	팩스번호 : 033-749-6344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함)」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법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장(단,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
	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령 제25조, 제26조	○ 석면피해구제일반분담금 징수방법
	령 제27조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률 결정방법
3. 고시·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	법 제31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장(단,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	법 제31조, 제32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	법 제33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장	0.006 ※ 기 후 부 장 관 이 매 년 고시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법 제31조, 제3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5호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5.5% 한도 내에서 업체별 허가량 누계비율에 따라 부과	시행령 제27조, 제28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 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4조
증가산금	-	-
연체료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5조
강제징수절차	납입고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보험료 또는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 독촉 후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조 및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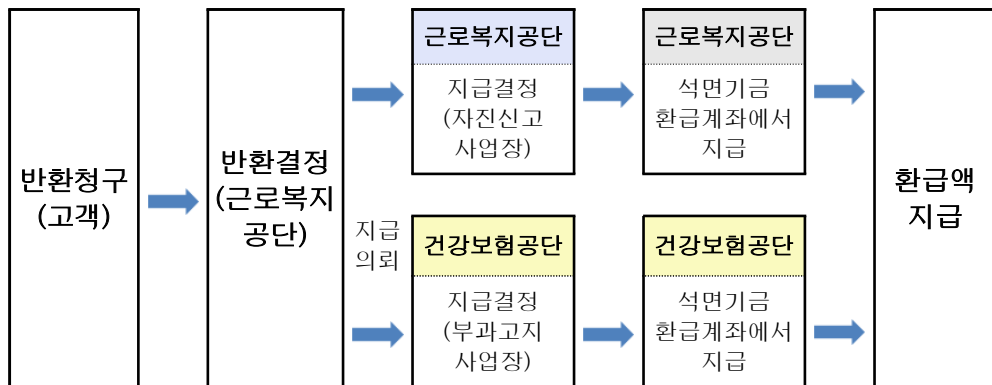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1. 1. 1	○ 0.005%
○ 2013. 1. 1	○ 0.004%
○ 2017. 1. 1	○ 0.003%
○ 2023. 1. 1	○ 0.004%
○ 2024. 1. 1	○ 0.006%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 송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재정산 및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절차
 - 근로복지공단 수납금액 :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대상 사업장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록완료 후 반환결정 및 지급
 - 건강보험공단 수납금액 :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결정 후 반환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록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의뢰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 환급방법 및 절차 흐름도



- 관련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2025년 환급액 : (건수) 18,385건 (금액) 108,051,97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23,749건 (금액) 118,284,49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6,567건 (금액) 94,837,62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여(), 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의 부과·징수규정을 준용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	법 제31조, 제3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5호
납부기한	○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10일, ○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 납부기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5조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39조
분할납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해당없음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분기별 분할납부	시행령 제28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55,197,661	298,562	38,209,322	270,998	16,988,339	27,564	90.8
2025	3,383,143	42,373	2,843,495	39,103	539,648	3,270	92.3
2024	3,377,092	38,327	2,831,433	35,201	545,659	3,126	91.8
2023	3,482,649	25,625	2,911,171	23,395	571,478	2,230	91.3
2022	3,323,114	19,006	2,762,024	16,677	561,090	2,329	87.7
2021	3,234,318	16,592	2,660,141	14,935	574,177	1,657	90.4
2020	3,700,344	16,182	3,105,939	14,569	594,405	1,613	90.0
2019	3,066,406	15,824	2,503,782	14,304	562,624	1,520	90.4
2018	4,336,766	15,162	2,593,462	13,649	1,743,304	1,513	90.0
2017	4,434,915	14,720	2,646,572	13,406	1,788,343	1,314	91.1
2016 이전	22,858,914	94,751	13,351,303	85,759	9,507,611	8,992	90.5

주1) : 미수납, 불납결손, 환급 발생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기후에너지환경부	1,803	9,788	
근로복지공단	5,378	32,140	
국민건강보험공단	31,922	189,977	
합계	39,103	231,905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5,201	37,343	39,103	3,902 (11.1)	- 산출식 $=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text{보수총액} \times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text{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 \times 5.5\% \text{ 한도 내에서 업체별 허가량 누계비율에 따라 부과})$ - 증가 사유 - 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개선, 체납 보험료 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액 증가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645	796	765	△31	(체납 사유) - 정리유예,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등 (징수 계획) - 적기 납부서 발송 및 납입고지 처리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제고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석면피해구제기금	100	39,103	법 제31조 ~ 제33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법 제25조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행령 제16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석면피해구제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2	662	계	512	662
○ 부담금	352	391	○ 환경위해관리	347	319
○ 가산금	0.07	0.1	- 석면피해구제급여	341	314
○ 정부내부수입	120	120	- 석면건강영향조사	5	5
○ 기타재산수입	3	1	- 석면안전관리사업	1.04	-
○ 기타경상이전수입	17	6	○ 기금운영비	21	20
○ 여유자금 회수	20	144	- 인건비	10	10
			- 기타운영비	9	8
			- 정보화경비	2	1
			○ 여유자금운용	144	323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25년 부담금평가 비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2024년 부담금평가 비대상

16.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1.04.05.), 시행일(2012.01.06.)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전화번호 : 044-201-7416	팩스번호 : 044-201-7781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환경정보장치 EcoAS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30	팩스번호 : 032-590-422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환경정보장치 EcoAS운영부
	전화번호 : 032-590-4230	팩스번호 : 032-590-422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 미이행량에 대하여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
2. 시행령	제20조의2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
3. 시행규칙	제9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4. 고시·훈령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회수부과금 부과·징수, 채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수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회수·인계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을 촉진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제18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미이행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의무 미이행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제18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회수 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부과	-	【회수의무 미이행량 × 회수기준비용】 + 가산금액 - 감경금액 ※ 회수기준비용 : 회수단위비용 × 회수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 재활용기준비용 × 회수의무미이행량 × 가산률 ※ 감경금액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금액 결정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시행령 제20조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된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제18조의3 제1항
강제징수절차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제18조의3 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3. 1. 1	○ 회수부과금 부과 (전기·전자제품 10종)
○ 2015. 1. 1	○ 회수부과금의 부과대상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10종 → 27종)
○ 2015. 7.20	○ 회수부과금 감정기준 신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11조)
○ 2020. 1. 1	○ 회수부과금의 부과대상 품목 확대 (전기·전자제품 27종 → 50종)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절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처리기간)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통지
 - (관련근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 제2호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반환청구서와 납부영수증 사본, 반환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확인 후 재활용 부과금 반환 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 반환 청구 이외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결정 통지서를 교부
 -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반환금 입금
 - (관련근거) 환경부 예규(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 2025년 환급액 : (건수) 0건
- 2024년 환급액 : (건수) 0건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144,01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특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통지의무 면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	시행령 제20조의2
납부기한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납부	시행령 제20조의2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징수유예	시행령 제21조의3
분할납부	연 2회 분할납부 - 1회분 8월 31일까지 - 2회분 11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10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3,028	13,547	2,863	12,928	165	619	95.4%
2025	169	1,603	157	1,422	12	181	88.7%
2024	173	1,073	163	1,014	10	59	94.5%
2023	153	848	140	769	13	79	90.7%
2022	173	703	166	649	7	54	92.3%
2021	186	518	177	463	9	55	89.4%
2020	291	850	279	831	12	19	97.8%
2019	309	1,176	298	1,149	11	27	97.7%
2018	321	1,802	299	1,745	22	57	96.8%
2017	337	1,262	320	1,240	17	22	98.3%
2016 이전	916	3,712	864	3,646	52	66	98.2%

주1) : 체납 및 기한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부과 및 징수 : 누적액(체납분 부과 및 체납분 징수액) 포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본사	-	567	
수도권동부지역본부	128	1,907	
강원지사	-	5	
수도권서부지역본부	1,112	7,625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3	448	
대구경북지역본부	87	187	
충청권지역본부	64	506	
충북지사	3	28	
호남권지역본부	5	225	
전북지사	-	-	
제주지사	-	8	
합 계	1,422	11,506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전기·전자 제품 회수 부과금	1,014	772	1,422	408 (40.2%)	▪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상승에 따른 회수의무량 증가 및 회수비용 산정지수 상승으로 부과금액 증가 ※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 ('24년) 8.38kg/인→('25년) 8.79kg/인 ※ 회수비용 산정지수 : ('24년) 1.1685 → ('25년) 1.1927 <table><tr><th>구분</th><th>'24년</th><th>'25년</th></tr><tr><td>부과업체 수</td><td>139개소</td><td>132개소</td></tr><tr><td>공제조합 업체 수</td><td>265개소</td><td>296개소</td></tr></table>	구분	'24년	'25년	부과업체 수	139개소	132개소	공제조합 업체 수	265개소	296개소
구분	'24년	'25년												
부과업체 수	139개소	132개소												
공제조합 업체 수	265개소	296개소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채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채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55	57	185	128 (224.5%)	○ (채납 사유) - 사업장 경영난으로 인한 납부 지연 - 대다수 사업장은 폐업 또는 법인 말소된 업체로 장기 채납업체가 많음 ○ (징수계획) -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의 압류 조치를 통해 채권 보전 - 부과금 채납·채권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	1,422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3 제4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용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17. 지하수이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지하수이용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5.5.31.), 시행일 (2005.12.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 044-201-7183,7175	팩스번호 : 044-201-7189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붙임 : 부과·징수기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하수법」 제30조의3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 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도지사
2.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내지 제40조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8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 납부고지,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등
4. 고시·훈령		○
5. 기타	시·군·구 조례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행위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 제1호
○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 제2호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0~100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제1호
○ 샘물등 취수량 및 먹는샘물등 수입량 기준 1세제곱미터당 단가적용	100	취수량 또는 수입량(m ³) x 1,320원/m ³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지하수법」 제30조의3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7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1)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3호 및 제4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10)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결정	71,216,760원	지하수법 제30조의3제2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5. 5. 31.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 2024. 12. 31. (시행 2025. 1. 1.)	○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지하수법」 개정)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 2025. 11. 25. (시행 2025. 11. 25.)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지하수법」 제30조의4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시·군·구 조례로 정함
- 2025년 환급액 : 213건, 13,279,620원
- 2024년 환급액 : 123건, 3,580,050원
- 2023년 환급액 : 220건, 25,271,775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의회결산서 등으로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 시·군·구 조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함
 -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제1호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신고) 시 제2호 -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
납부기한	제1호 -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제2호 -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
납부기한 연장	유예한 달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5제1항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함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5제1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4,638,073	917,522	4,206,122	649,526	431,255	271,807	70.5
2025	260,127	13,459	238,990	12,953	21,137	506	96.2
2024	266,856	26,383	242,143	27,573	24,713	2,621	91.3
2023	281,817	31,786	246,713	26,887	35,104	4,899	84.6
2022	290,910	32,674	256,935	27,221	33,975	5,453	83.3
2021	298,061	31,918	269,090	26,374	28,971	5,544	82.6
2020	302,910	32,313	268,487	26,609	34,423	5,704	82.3
2019	311,856	34,337	274,435	28,184	37,421	6,153	82.1
2018	321,445	35,590	301,178	28,779	20,267	6,811	80.9
2017	333,495	36,246	303,945	29,389	29,550	6,857	81.1
2016 이전	1,970,596	642,816	1,804,206	415,557	165,694	227,259	64.6

주1) : 체납액 등 발생

<제1호 지하수이용부담금(개발·이용)>

	부 과		징 수		차 이 ^{※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4,625,634	200,218	4,196,368	192,552	428,570	7,666	96.2
2025	260,115	11,250	238,976	10,878	21,139	372	96.7
2024	266,496	11,635	241,784	11,282	24,712	353	97.0
2023	281,295	11,938	246,394	11,536	34,901	402	96.6
2022	290,392	11,836	256,585	11,549	33,807	287	97.6
2021	297,472	11,865	268,742	11,555	28,730	310	97.4
2020	302,391	12,545	268,164	12,158	34,227	387	96.9
2019	311,250	13,765	274,091	13,393	37,159	372	97.0
2018	320,935	14,215	300,849	13,744	20,086	471	96.7
2017	332,947	14,693	303,615	14,132	29,332	561	96.2
2016 이전	1,962,341	86,476	1,797,168	82,325	164,477	4,151	95.2

<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먹는샘물등)>

	부 과		징 수		차 이 ^{※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12,439	721,115	9,754	456,974	2,685	264,141	63.4
2025	12	2,209	14	2,075	-2	134	93.9
2024	360	18,559	359	16,291	1	2,268	87.8
2023	522	19,848	319	15,351	203	4,497	77.3
2022	518	20,838	350	15,672	168	5,166	75.2
2021	589	20,053	348	14,819	241	5,234	73.9
2020	519	19,768	323	14,451	196	5,317	73.1
2019	606	20,572	344	14,791	262	5,781	71.9
2018	510	21,375	329	15,035	181	6,340	70.3
2017	548	21,553	330	15,257	218	6,296	70.8
2016 이전	8,255	556,340	7,038	333,232	1,217	223,108	59.9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111	9,947	
부산광역시	1,003	23,619	
대구광역시	566	7,271	
인천광역시	111	3,338	
광주광역시	117	738	
대전광역시	218	9,303	
울산광역시	455	16,867	
세종특별자치시	49	1,890	
경기도	2,354	152,584	
강원특별자치도	929	50,798	
충청북도	1,873	108,880	
충청남도	1,168	46,013	
전북특별자치도	189	25,070	
전라남도	19	10,922	
경상북도	-	8,639	
경상남도	2,433	94,037	
제주특별자치도	1,358	66,658	
합 계	12,953	636,573	

<제1호 지하수이용부담금(개발·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111	2,211	
부산광역시	1,003	23,616	
대구광역시	566	7,271	
인천광역시	111	3,338	
광주광역시	117	738	
대전광역시	218	6,197	
울산광역시	455	9,825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2,265	35,720	
강원특별자치도	929	13,646	
충청북도	1,294	16,867	
충청남도	1,168	16,942	
전북특별자치도	189	2,105	
전라남도	19	507	
경상북도	-	-	
경상남도	2,433	42,691	
제주특별자치도	-	-	
합 계	10,878	181,674	

<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먹는샘물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	7,736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0	
인천광역시	-	0	
광주광역시	-	0	
대전광역시	-	3,106	
울산광역시	-	7,042	
세종특별자치시	49	1,890	
경기도	89	116,864	
강원특별자치도	-	37,152	
충청북도	579	92,013	
충청남도	-	29,071	
전북특별자치도	-	22,965	
전라남도	-	10,415	
경상북도	-	8,639	
경상남도	-	51,346	
제주특별자치도	1,358	66,658	
합 계	2,075	454,899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7,573	20,817	12,953	△14,620 (△53.0%)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서울특별시	626	420	111	△515 (△82.3%)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부산광역시	992	1,018	1,003	11 (1.1%)	지하수 이용량 증가
대구광역시	618	677	566	△52 (△8.4%)	지하수 이용량 감소
인천광역시	131	136	111	△20 (△15.3%)	지하수 이용량 감소
광주광역시	132	130	117	△15 (△11.4%)	지하수 이용량 감소
대전광역시	219	228	218	△1 (△0.5%)	지하수 이용량 감소
울산광역시	1,000	770	455	△545 (△54.5%)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세종특별 자치시	336	188	49	△287 (△85.4%)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경기도	7,006	5,163	2,354	△4,652 (△66.4%)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강원특별 자치도	1,928	1,622	929	△999 (△51.8%)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충청북도	2,516	2,145	1,873	△643 (△25.6%)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일 미도래
충청남도	2,036	1,726	1,168	△868 (△42.6%)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전북특별 자치도	1,365	498	189	△1,176 (△86.2%)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전라남도	200	152	19	△181 (△90.5%)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경상북도	920	242	-	△920 (△100.0%)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경상남도	5,230	4,212	2,433	△2,797 (△53.5%)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제주특별 자치도	2,318	1,489	1,358	△960 (△41.4%)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지하수법」 개정)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기관(시·군·구)별 고지서 발송,
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함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708	785	825	40	○(체납 사유)폐업 후 거소불명, 납부태만, 경영 악화 등 ○(징수 계획) 고지서 발송 및 압류, 공매 등

※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2,953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방 자치 단체	일반회계	45.4	5,878	
	특별회계	54.6	7,075	
광역 자치 단체	일반회계	9.0	1,170	
	특별회계	7.0	905	
기초 자치 단체	일반회계	36.3	4,707	
	특별회계	47.6	6,171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 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검사·조사의 실시.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 나.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 중 먹는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질검사 다.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중 먹는샘물등의 수질 기준 적합 여부 조사 라. 「먹는물관리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5)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및 운영(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7)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8)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9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지하수이용부담금(회계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계	27,275	12,953	합계	21,993	15,337
일반회계	14,494	5,878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6,454	3,733
특별회계	12,781	7,075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5,539	11,604

[지하수이용부담금(시도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서울	합계	626	111	합계	81	87
	일반회계	626	111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81	87
	특별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부산	합계	992	1,003	합계	6,914	2,312
	일반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992	1,003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6,914	2,312
대구	합계	618	566	합계	992	515
	일반회계	130	116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256	2
	특별회계	488	45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855	513
인천	합계	131	111	합계	236	57
	일반회계	37	5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22	23
	특별회계	94	61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214	34
광주	합계	132	117	합계	24	30
	일반회계	132	117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24	30
	특별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대전	합계	219	218	합계	1,034	313
	일반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219	218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034	313
울산	합계	1,000	455	합계	441	535
	일반회계	787	23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67	75
	특별회계	213	216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374	460
세종	합계	336	49	합계	0	0
	일반회계	336	4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5실적
경기	합계	7,006	2,354	합계	3,500	2,382
	일반회계	6,509	1,807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2,474	1,758
	특별회계	497	547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026	624
강원	합계	1,928	929	합계	1,183	693
	일반회계	1,350	38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517	202
	특별회계	578	54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666	491
충북	합계	2,516	1,873	합계	1,769	944
	일반회계	2,007	1,37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278	416
	특별회계	509	494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491	528
충남	합계	2,037	1,168	합계	1,213	1,103
	일반회계	1,186	1,168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213	1,103
	특별회계	851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전북	합계	1,365	189	합계	94	29
	일반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1,365	18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94	29
전남	합계	200	19	합계	19	19
	일반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200	19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19	19
경북	합계	920	0	합계	522	0
	일반회계	92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522	0
	특별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경남	합계	5,230	2,433	합계	3,852	2,510
	일반회계	0	0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0
	특별회계	5,230	2,433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3,852	2,510
제주	합계	2,318	1,358	합계	0	3,808
	일반회계	773	453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37
	특별회계	1,545	905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0	3,771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지하수이용부담금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지하수이용부담금 해당없음

18. 폐기물처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폐기물처분부담금
- ② 제정년도: 공포일(2016. 5. 29.), 시행일(2018. 1. 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7354	팩스번호 : 044-201-7351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자원순환처
	전화번호 : 032-590-5080	팩스번호 : 032-590-4088
	기 관 명 : 시·도	부 서 명 : 환경담당부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부 서 명 : 자원순환처
	전화번호 : 032-590-5080	팩스번호 : 032-590-4088
	기 관 명 : 시·도	부 서 명 : 환경담당부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2. 시행령	시행령 제33조~제4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부과, 납부·절차 ○ 징수유예·분할납부, 환급, 교부 등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4. 고시·훈령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5. 기타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과·징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지자체장(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부과요율*(원/kg)×산정지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3항	
*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산정지수 : 최초연도는 1, 다음연도부터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고시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6~7항
강제징수절차	○ 재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 법령
합 계		98,351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50 100	29,54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기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30 50 60 65 70 75	29,3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50 60 70 80 90 100	8,67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27,756	
방과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19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	50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33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2,02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8. 1. 1.	○ 최초 시행
○ 2018. 12. 4.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절차 변경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 지자체 장이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00% 감면 -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선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요율 적용
○ 2019. 4. 17.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2회→4회)
○ 2020. 3. 24.	○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처분 감면 신설(100%)
○ 2024. 1. 1.	○ 중소기업 감면확대 개정(120억→600억 미만)
○ 2024. 7. 1.	○ 중소기업 감면확대 개정(600억→1,000억 미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 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9조 (폐기물처분 부담금환급)

- 2025년 환급액 : (건수) 207건 (금액) 1,177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58건 (금액) 205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86건 (금액) 3,512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과정을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부담금 납부금액, 산출근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제3항
납부기한	○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제4항
납부기한 연장	○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9조제5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46,369	1,326,005	140,738	1,277,542	5,631	48,463	96.3
2025	19,299	191,341	18,271	185,077	1,028	6,264	96.7
2024	19,978	186,496	19,101	179,907	877	6,589	96.5
2023	19,845	170,981	18,995	167,154	850	3,827	97.8
2022	20,811	164,105	19,984	157,680	827	6,425	96.1
2021	21,008	203,118	20,241	191,965	767	11,153	94.5
2020	23,465	196,393	22,809	188,035	656	8,358	95.7
2019	20,100	209,875	19,654	204,437	446	5,438	97.4
2018	1,863	3,696	1,683	3,287	180	409	88.9

주1) '25년 차액: 체납액 4,368백만원, 납기미도래 1,896백만원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환경공단	96,972	597,807	
서울특별시	14,759	58,538	
부산광역시	2,442	16,944	
대구광역시	5,714	31,058	
인천광역시	3,070	18,026	
광주광역시	1,922	16,377	
대전광역시	2,461	15,265	
울산광역시	1,461	12,395	
세종특별자치시	718	2,586	
경기도	15,868	93,633	
강원특별자치도	4,683	30,577	
충청북도	3,740	21,926	
충청남도	5,734	28,441	
전북특별자치도	4,259	24,550	
전라남도	4,365	27,163	
경상북도	6,801	39,852	
경상남도	8,143	44,610	
제주특별자치도	1,965	12,716	
합 계	185,077	1,092,464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79,907	149,426	185,077	5,170 (2.9)	○ 일시적 공사 및 폐기물처리로 인한 부과·징수액 증가
시도	85,308	86,186	88,105	2,797 (3.3)	
환경공단	94,599	63,240	96,972	2,373 (2.5)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채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채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3,586	3,647	4,368	721	○(채납 사유) 폐업 및 파산 등에 따른 납부능력 부족 ※ '25년부터 직권부과 실시 ○(징수 계획) 수시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 등 강제징수 실시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85,077	
국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0	185,07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8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9,375	78,121	계	67,664	75,966
◦ 부담금 수입	6,995	6,859	◦ 환경일반	21,095	31,404
◦ 관유물매각대	1	1	◦ 물환경	19,862	17,100
◦ 용자회수금	3,164	2,070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0,219	12,320
◦ 일반회계전입금	53,117	63,615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8,116	7,131
◦ 전년도 이월금	1,482	668	◦ 자연환경	8,372	8,011
◦ 기타	4,615	4,90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19.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② 제정년도 : 법제·개정공포일 ('84.12.31), 시행일('84.12.3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분산에너지과
	전화번호 : 044-203-3927	팩스번호 : 044-203-4756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전력공사	부 서 명 : 해외발전엔지니어링처 도서전력실 및 관할지사
	전화번호 : 061-345-5783	팩스번호 : 061-345-5798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전력공사	부 서 명 : 해외발전엔지니어링처 도서전력실 및 관할지사
	전화번호 : 061-345-5783	팩스번호 : 061-345-579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촉진법	○ 제3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 시행령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촉진법 시행령	○ 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01-54호('01.5.8)	○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중 기본시설부담금으로 한다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거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시설공사 비용에 충당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전기 사용자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촉진법 제7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0%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중 기본시설부담금(정액 200천원)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증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0. 01. 13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25천원
○ 1993. 03. 06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100천원
○ 2001. 04. 30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137천원
○ 2003. 12. 30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164천원
○ 2012. 11. 01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정액 200천원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공사부담금으로서 이의제기 등의 사유 발생사항이 아님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공사부담금으로서 환급 등의 사유 발생사항이 아님
- 2025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0건 (금액) 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사항 없음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외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의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가 놓여촌전기 공급촉진법 제7조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 제10조 등에 명시되어 있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 (인터넷 청구일 포함)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 제10조 1항
납부기한	○ 공급준비 착수 전 시설부담금 전액 납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 제92조 1항
납부기한 연장	○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합계	1,436	210	1,436	210	-	-	100.0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	-	-	-	-
2022	1	1	1	1	-	-	100.0
2021	3	1	3	1	-	-	100.0
2020	15	3	15	3	-	-	100.0
2019	14	3	14	3	-	-	100.0
2018	13	3	13	3	-	-	100.0
2017	16	3	16	3	-	-	100.0
2016	14	3	14	3	-	-	100.0
2015	27	5	27	5	-	-	100.0
2014 이전	1,333	188	1,333	188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전력공사	0	210	
합 계	0	210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0	0	0	0.0 (0.0%)	▪ '25년도 농어촌신규전기공급 사업대상 없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체납 사유) ○(징수 계획)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0	0	
한국전력공사	100	0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거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시설공사 비용에 충당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3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전력산업기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2,568	47,636	계	52,568	47,636
○ 부담금 수입	30,782	27,670	○ 사업비	21,146	24,131
- 법정부담금	30,757	27,646	- 전기안전관리	1,288	1,333
- 가산금	25	23	- 전력수요관리	1,632	3,731
			- 전선로지중화사업	406	227
○ 자체수입	4,398	3,683	- 재생에너지지원	6,421	6,851
- 융자원금회수	1,976	2,029	- 에너지신산업	309	350
- 재산수입	716	613	- 석탄수급안정지역지원	159	164
- 기타수입	1,706	1,04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238	1,981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572	1,150
○ 정부내부수입	2,894	1,012	- 전력공급기술	4,616	4,751
- 공자기금예탁회수	2,800	1,000	- 전력수요기술	105	62
- 기금예탁이자수입	94	12	- 기술정책	45	40
			- 기반구축	588	549
○ 여유자금회수	14,494	15,271	- 국제협력	211	862
			- 전력산업정책개발정보	78	77
			- 전력해외진출	85	333
			- 전력산업기반조성	1,393	1,669
			○ 기금운영비	77	77
			○ 정부내부지출	16,074	14,007
			- 예특회계전출	13,074	7,574
			- 기후기금전출	2,000	2,000
			- 공자기금예탁	1,000	4,433
			○ 여유자금운용	15,271	9,422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수수료로 전환 하거나 부담금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과목적의 유효성> ○ 매우 미미한 규모로 현실적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부담금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사항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23년	○수수료 성격 ⇒ 농어촌 전기공급법 개정 을 통 한 수수료 전환 또는 부담금관리법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여 폐지 권고	<추진 중> ○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 항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계류('24년 정부 입법)

2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0년 12월 23일), 시행일(2001년 02월 24일)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전력산업정책관
	전화번호 : 044-203-3882	팩스번호 : 044-203-4758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전력공사	부 서 명 : 영업처
	전화번호 : 061-345-4571	팩스번호 : 061-345-454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전력공사	부 서 명 : 영업처
	전화번호 : 061-345-4571	팩스번호 : 061-345-454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및 부칙 제2조	○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24.7.1. 시행) ○ 단, '24.7.1~'25.6.30 동안, 부담금의 부과율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함 * (개정 전)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24.6.30.까지)
3. 시행규칙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전기사업법 제49조)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 전기 안전확보, 보편적 전력공급 등 구현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 요금의 2.7%*를 부담금으로 부과 * (‘25.1월~6월) 3.2%, (‘25.7월~) 2.7%	전기사용자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제2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전기요금의 2.7% 해당금액	3.2 (‘25.1월~6월)	전기요금 × 3.2%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2.7 (‘25.7월~12월)	전기요금 × 2.7%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연체기간에 따른 부과율 ○ 1개월까지 : 체납액의 1.5%(일할계산) ○ 1개월 초과 ~ 2개월 : 체납액의 1.5% + 체납액의 1.0%(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연체기간에서 연체일수별로 일할계산. 2개월 초과시는 2개월로 계산)	전기사업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전기사업법 제51조 제4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창업하는 자,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제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전기	100%	12,286백만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100%	12,679백만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01.03.20 ~ '01.12.31	○ 부담금 요율 : 3.13% -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17137호, '01.2.24) 부칙 제5조, 산업자원부 고시
'02.01.01 ~ '05.12.27	○ 부담금 요율 : 4.591%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05.12.28 ~ '24.6.30	○ 부담금 요율 : 3.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24.7.1 ~ '25.6.30	○ 부담금 요율 : 3.2% -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4호, '24.6.4) 제36조 및 부칙 제2조
'25.07.01 ~	○ 부담금 요율 : 2.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부담금징수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제74조의2 (요금의 이의신청)의 예에 따라 처리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부담금환급및환급가산금)에 따라 처리
 - 부담금징수기관은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 2025년 환급액 : (건수) 48,918건 (금액) 11,982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7,558건 (금액) 13,498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31,853건 (금액) 7,535백만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 (기금 결산보고서의 국회 심의·의결)
 -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금 관리기관 홈페이지(etep.or.kr)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관련 법률(전기사업법), 부담률(전기요금의 27%), 기금관리 기관인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etep.or.kr)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관련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병기
 - 고지시기 : 매월 전기요금 청구 시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전기요금 청구 시 병기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납부기한	전기요금 납부기한과 동일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납부기한 연장	해당 없음	
분할납부	해당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 계	295	43,148,535	295	42,876,058	-	272,477	99.4
2025	12	2,737,056	12	2,766,975	-	△29,919	101.1
2024	12	3,048,190	12	3,078,190	-	△30,000	101.0
2023	12	3,057,651	12	3,010,565	-	47,086	98.5
2022	12	2,431,510	12	2,378,389	-	53,121	97.8
2021	12	2,118,394	12	2,149,586	-	△31,192	101.5
2020	12	2,014,807	12	1,973,617	-	41,190	98.0
2019	12	2,088,409	12	2,089,210	-	△801	100.0
2018	12	2,110,751	12	2,112,642	-	△1,891	100.1
2017	12	2,052,704	12	2,041,551	-	11,153	99.5
2016 이전	187	21,489,063	187	21,275,335	-	213,728	99.0

주1) : '25년 부과액 : '25년 중 실제 부과액

'25년 징수액 : ① ('24년 말 부과, '25년 초 전력기금 국고계정 이체 완료액)

+ ② ('25년 부과, '25년 중 전력기금 국고계정 이체 완료액)

※ 위의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전력공사	2,766,975	40,109,083	
합 계	2,766,975	40,109,083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078,190	2,687,997	2,766,975	△311,215 (△10.1%)	○ 전력판매단가 상승 * ('24) 162.92원/kWh → ('25) 170.37원/kWh
전력산업 기반기금	3,078,190	2,687,997	2,766,975	△311,215 (△10.1%)	○ 부담금 요율 인하 * (~'24.6월) 3.7% → ('24.7월~'25.6월) 3.2% → ('25.7월~) 2.7%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41,710	39,640	61,829	22,189 (56.0%)	○(체납 사유) 한전(부담금 징수기관)은 전기요금 청구시 전력기금 부담금을 통합 청구하고 있어,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 미납시 전력기금 부담금 체납 발생 ○(징수 계획) 한전은 검침원 활용, 방문, SMS, 공문 발송 등 전기요금(전력기금 부담금 포함) 수금 활동을 시행함 전기요금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처리하며 해지미수 고객은 체납자 재산(등기부등본 등) 조사하여 보관, 가압류, 지급명령, 추심명령, 재산명시 등 법적조치 시행

※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2,766,975	
국가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	2,766,975	전기사업법 제51조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10.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11.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3.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4.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5.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16.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17.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과 이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18.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9.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 구축 20.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21.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2.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전력산업기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2,568	47,636	계	52,568	47,636
○ 부담금 수입	30,782	27,670	○ 사업비	21,146	24,131
- 법정부담금	30,757	27,646	- 전기안전관리	1,288	1,333
- 가산금	25	23	- 전력수요관리	1,632	3,731
○ 자체수입	4,398	3,683	- 전선로지중화사업	406	227
- 융자원금회수	1,976	2,029	- 재생에너지지원	6,421	6,851
- 재산수입	716	613	- 에너지신산업	309	350
- 기타수입	1,706	1,041	- 석탄수업안정지역지원	159	164
○ 정부내부수입	2,894	1,01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238	1,981
- 공자기금예탁회수	2,800	1,000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572	1,150
- 기금예탁이자수입	94	12	- 전력공급기술	4,616	4,751
○ 여유자금회수	14,494	15,271	- 전력수요기술	105	62
			- 기술정책	45	40
			- 기반구축	588	549
			- 국제협력	211	862
			- 전력산업정책개발정보	78	77
			- 전력해외진출	85	333
			- 전력산업기반조성	1,393	1,669
			○ 기금운영비	77	77
			○ 정부내부지출	16,074	14,007
			- 예특회계전출	13,074	7,574
			- 기후기금전출	2,000	2,000
			- 공자기금예탁	1,000	4,433
			○ 여유자금운용	15,271	9,422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23년	- 향후 부담금 수입증가 예상됨에 따라, 부담금 효율적정성 등 고려 필요 100개가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세부사업 규모는 적절 규모로 운용 필요 - 부담금 사업용도에 맞도록 재원규모와 운영 개선 필요	<추진 완료> - 부담금 효율 인하 (시행령 개정 '24.8.20) * (~'24.6) 3.7% → ('24.7~'25.6) 3.2% → ('25.7~) 2.7% - 유사사업 통합 등 구조조정 시행 * 세부사업 : ('24) 74개 → ('25) 62개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전출규모 조정 * 에트회계 전출금 : ('24) 13,074억 → ('25) 7,574억

2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8.03.28.), 시행일(2009.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원전환경과
	전화번호 : 044-203-5346	팩스번호 : 044-203-4768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 서 명 : 기금관리센터
	전화번호 : 054-746-8210	팩스번호 : 054-746-8221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 서 명 : 기금관리센터
	전화번호 : 054-746-8210	팩스번호 : 054-746-822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 부담금 정의, 미납시 가산근거 및 체납처분
2.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별표2	○ 부담금 산정기준, 납부시기, 가산금 부과기준
3. 시행규칙	해당없음	
4. 고시·훈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호) 제12조~제17조의2	○ 부담금 산정기준(기준시점, 실질할인율,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5. 기타	해당없음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사용후핵연료 분기별 발생량 - 원자력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원자력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에 분기별 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경수로 615,521천원, 중수로 14,407천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호) 제17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징수 - 1개월 이하 : 1.5% 일할계산 (연체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 - 1~2개월 : 1.5% + 1% 일할계산 (1개월을 초과한 연체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 - 2개월 이상 : 2.5%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증가산금	해당없음	
연체료	해당없음	
강제징수절차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3장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3.6.17.	○ 산정기준(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산출식) 변경 - (변경전) $\text{추정비용} \times (1 + \text{물가상승률})^{\text{물가반영기간}} \times 1 / (1 + \text{할인율})^{\text{할인기간}}$ - (변경후)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부담금 적립잔액) $\times 1 / \text{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경수로 319,814천원 중수로 13,202천원
○ 2026.1.27.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변경 : 경수로 615,521천원 중수로 14,407천원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해당없음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시 납부의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부당한 부담금 징수사례 원천 차단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홈페이지(www.korad.or.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의 금액, 산정 근거,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고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납부기한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납부기한 연장	'09년 이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부담금은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납부 유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연장된 부담금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간 분할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80	9,861,307	80	9,861,307	-	-	100.0
2025	5	772,956	5	772,956	-	-	100.0
2024	5	792,903	5	792,903	-	-	100.0
2023	5	787,785	5	787,785	-	-	100.0
2022	5	664,856	5	664,856	-	-	100.0
2021	5	732,032	5	732,032	-	-	100.0
2020	5	710,618	5	710,618	-	-	100.0
2019	5	656,979	5	656,979	-	-	100.0
2018	5	667,721	5	667,721	-	-	100.0
2017	5	641,216	5	641,216	-	-	100.0
2016 이전	35	3,434,241	35	3,434,241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72,956	9,088,351	
합계	772,956	9,088,351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792,903	844,957	772,956	△19,947 (△2.5%)	1.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당해연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은 전년 대비 34,659백만원 감소한 420,809백만원 징수 - 경수로 : 260,009백만원 - 중수로 : 160,800백만원 2. 연도말 징수하는 기발생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장수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4,712백만원 증가한 352,147백만원 징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792,903	844,957	772,956	△19,947 (△2.5%)	

* 경수로 : ('24) 1,068다발 → ('25) 813다발 / 중수로 : ('24) 8,628다발 → ('25) 12,180다발

** '09년 방사성폐기물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14년부터 15년간 분할납부(방사성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772,956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0	772,956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89,706	98,331	계	89,706	98,331
○ 부담금 수입	7,929	7,729	○ 사업비	2,269	2,044
- 법정부담금	7,929	7,729	-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1,212	929
○ 기타 자체수입	2,795	2,097	- 사용후핵연료관리	55	36
- 기타재산수입	2,013	1,326	- 방사성폐기물	21	29
- 기타경상이전수입	123	136	- 정책지원 및 홍보		
- 기타잡수입	659	635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345	400
○ 정부내부수입	34,922	39,969	- 사용후핵연료관리 시설확보	23	15
○ 여유자금회수	44,060	48,536	- 한국원자력환경 공단지원	613	635
			○ 기금운영관리비	14	15
			○ 정부내부지출	38,887	40,163
			○ 여유자금운용	48,536	56,10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5년도 평가 비대상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사용 후 핵 연료관리 부담금	'23년	○ 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미래 사업비의 현재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 완료> ○ 고준위 특별법('25.3월) 및 최신 에너지정책을 반영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검토('25.12.12.)한 후, 관련 고시 개정까지 완료('26.1.27)

2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폐지)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1.12.04.), 시행일(1992.06.15.), 폐지일(25.5.27.)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 서 명 : 열산업혁신과
	전화번호 : 044-203-5142	팩스번호 : 044-203-4759
부과기관	기 관 명 : <불입1>	부 서 명 : <불입1>
	전화번호 : <불입1>	팩스번호 : <불입1>
징수기관	기 관 명 : <불입1>	부 서 명 : <불입1>
	전화번호 : <불입1>	팩스번호 : <불입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 ○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 부담금 부과시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부담금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의 신청 가능, 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사용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타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공사비 부담금 징수	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 주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 <붙임2>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연체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8조

주1」: 대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을 준용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열사용신청자 중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공급받아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냉방용과 관련된 공사비부담금	100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5조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붙임3>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 법령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환급방법	환급절차	관련 근거
이의 신청 처리결과 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공사비 부담금을 선납한 것으로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0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2 (금액) 293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4 (금액) 310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4 (금액) 1,426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재무제표 주석 공시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고지방법	고지시기
○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 ○ 집단에너지사업자 열공급규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	사용자의 열사용 신청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주1)}
부과시기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6조
납부기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 이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7조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및 학교 ○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7조

주1) : 대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을 준용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63,832	5,939,331	63,929	5,955,434	△ 97	△ 16,103	100.3
2025	596	84,102	591	85,428	5	△ 1,326	101.5
2024	1,022	149,169	1,024	149,002	△ 2	168	99.9
2023	1,543	181,348	1,571	188,766	△ 28	△ 7,418	104.1
2022	2,132	251,098	2,152	246,812	△ 20	4,286	98.3
2021	2,134	237,297	2,150	241,968	△ 16	△ 4,671	102.0
2020	2,105	230,759	2,094	230,977	11	△ 218	100.1
2019	2,248	251,407	2,263	261,777	△ 15	△ 10,370	104.1
2018	2,630	334,333	2,743	334,209	△ 113	124	100.0
2017	2,778	329,180	2,820	329,773	△ 42	△ 593	100.2
2016 이전	46,644	3,890,638	46,521	3,886,722	123	3,916	99.9

주1) : 미수금, 연체로 인한 지연 납부, 부과시점과 납부시점의 차이, 수용가의 증감 등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분할 납부 및 열공급 계약 해지·승계 등의 사유로 연도별 실적의 변동사항이 존재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합 계	85,428	5,798,084	
서울에너지공사	2,525	274,099	
부산광역시	-	52,651	
한국지역난방공사	29,664	3,102,101	
한국토지주택공사	-	111,750	
GS파워	5,784	375,913	
안산도시개발	2,187	164,264	
인천공항에너지	293	59,113	
위드인천에너지	-	31,357	
인천종합에너지	6,570	215,545	
나래에너지서비스	3,250	257,558	
수완에너지	342	31,017	
대륜발전	1,850	219,958	
대구그린파워	36	16,051	
내포그린에너지	1,380	41,378	
춘천에너지	39	8,330	
한국씨이에스	-	11,292	
포스코와이드	-	-	
청라에너지	9,568	292,708	
평택에너지서비스	11,658	82,538	
휴세스	558	111,653	
부산도시가스	3,877	52,597	
엔솔브	49	39,866	
대성에너지	-	14,630	
제이비	-	34,061	
삼천리	2,164	44,364	
씨엔씨티에너지	-	18,027	
대성산업	-	-	
전북집단에너지	-	8,179	
디에스파워	2,343	65,052	
대전열병합발전	955	36,009	
무림파워텍	127	22,758	
석문에너지	209	3,265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49,002	89,086	85,428	△63,574	연도간 기준일수 상이 (2025년 8월 27일부 폐지) 신규 계약 사용자 감소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34	69	99	30 (43.5%)	○(체납 사유) 사용자 자금사정 ○(징수 계획) 부과 독촉 및 미납 시 열수급계약 해제 및 채권 회수 법적 조치 검토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85,4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서울에너지공사	2.96	2,525	
부산광역시	-	-	
한국지역난방공사	34.72	29,664	
한국토지주택공사	-	-	
GS파워	6.77	5,784	
안산도시개발	2.56	2,187	
인천공항에너지	0.34	293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위드인천에너지	-	-	
인천종합에너지	7.69	6,570	
나래에너지서비스	3.80	3,250	
수완에너지	0.40	342	
대륜발전	2.17	1,850	
대구그린파워	0.04	36	
내포그린에너지	1.62	1,380	
춘천에너지	0.05	39	
한국씨이에스	-	-	
포스코와이드	-	-	
청라에너지	11.20	9,568	
평택에너지서비스	13.65	11,658	
휴세스	0.65	558	
부산도시가스	4.54	3,877	
엔솔브	0.06	49	
대성에너지	-	-	
제이비	-	-	
삼천리	2.53	2,164	
씨엔씨티에너지	-	-	
대성산업	-	-	
전북집단에너지	-	-	
디에스파워	2.74	2,343	
대전열병합발전	1.12	955	
무림파워텍	0.15	127	
석문에너지	0.24	209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설 비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서울에너지공사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2,035	60,547	계	45,886	58,609
공사비부담금	8,751	2,525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32,000	51,207
영업현금흐름	△4,802	19,87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3,291	3,85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14,033	7,987	기타현금유출	10,595	3,552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4,053	30,162			

< 부산광역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75	-	계	-	-
공사비부담금	175	-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
영업현금흐름	-	-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921,125	935,497	계	1,951,099	911,496
공사비부담금	49,286	29,664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649,247	258,844
영업현금흐름	364,601	735,82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277,644	641,011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1,482,168	152,350	기타현금유출	24,208	11,641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5,070	17,660			

<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518	-	계	-	-
공사비부담금	4,518	-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
영업현금흐름	-	-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			

< GS과워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888,662	759,866	계	677,230	636,293
공사비부담금	13,014	5,784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45,323	161,520
영업현금흐름	416,450	262,797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243,184	326,375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471,000	427,000	기타현금유출	188,723	148,398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1,802	64,285			

< 안산도시개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8,095	58,742	계	42,912	62,459
공사비부담금	4,703	2,187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3,798	4,079
영업현금흐름	25,004	30,780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27,072	53,556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6,105	26,317	기타현금유출	12,041	4,823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283	△543			

< 인천공항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 실적
계	17,329	25,227	계	△10,134	△10,743
공사비부담금	3,207	293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
영업현금흐름	14,002	24,771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10,134	△10,743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20	163			

< 위드인천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 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6,421	-	계	26,562	-
공사비부담금	114	-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323	-
영업현금흐름	16,209	-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0,531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20,200	-	기타현금유출	13,708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2	-			

< 인천종합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4,497	132,181	계	84,767	133,469
공사비부담금	13,806	6,570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9,144	17,096
영업현금흐름	59,344	53,354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44,000	95,00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15,000	71,400	기타현금유출	11,623	21,372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3,653	856			

< 나래에너지서비스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169	446,810	계	-	461,154
공사비부담금	4,169	3,250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34,754
영업현금흐름	-	53,560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225,00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390,000	기타현금유출	-	201,400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			

< 수완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4,267	22,031	계	28,151	21,265
공사비부담금	1,608	342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1,573	3,370
영업현금흐름	7,659	8,689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8,500	17,875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20,000	10,000	기타현금유출	8,078	20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5,000	3,000			

< 대륜발전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08,252	184,604	계	215,978	-
공사비부담금	3,074	1,850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6,174	-
영업현금흐름	75,861	90,226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78,600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20,000	20,000	기타현금유출	131,204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09,317	72,528			

< 대구그린과워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5,608	16,386	계	32,316	24,400
공사비부담금	439	36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89	487
영업현금흐름	35,563	16,41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25,455	17,629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6,572	6,284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394	△71			

< 내포그린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19,888	644,397	계	△62,211	△679,619
공사비부담금	2,873	1,380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5,258	△75,003
영업현금흐름	114,094	100,82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51,426	△509,642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541,952	기타현금유출	△5,527	△94,974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921	242			

< 춘천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1,814	43,483	계	50,868	44,863
공사비부담금	1,208	39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584	402
영업현금흐름	40,606	43,444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44,737	25,162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5,547	19,299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			

< 한국씨이에스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854	3,943	계	2,982	3,793
공사비부담금	80	-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
영업현금흐름	693	92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2,982	3,793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081	3,020			

< 청라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8,331	75,673	계	17,671	123,857
공사비부담금	14,172	9,568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16,404	108,120
영업현금흐름	53,032	65,959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190	15,737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77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127	146			

< 평택에너지애파워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03,374	300,824	계	214,695	339,186
공사비부담금	6,662	11,658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3,567	31,963
영업현금흐름	76,712	54,122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71,551	259,863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100,000	239,703	기타현금유출	19,577	47,306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20,000	-4,661			

< 휴세스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6,166	14,006	계	26,166	14,006
공사비부담금	2,423	558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4,887	2,437
영업현금흐름	20,087	13,448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6,952	8,576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4,327	2,993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3,656	-			

< 부산도시가스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3,936	9,934	계	7,340	6,963
공사비부담금	5,105	3,877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7,340	6,963
영업현금흐름	8,831	6,057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	-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엔솔브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8,516	78,828	계	29,500	90,153
공사비부담금	49	49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
영업현금흐름	18,419	8,553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9,000	76,00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70,000	기타현금유출	10,500	14,153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48	180			

< 삼천리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625	2,164	계	3,397	1,892
공사비부담금	2,625	2,164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3,397	1,892
영업현금흐름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기타현금유출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 디에스파워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3,599	40,729	계	45,513	38,435
공사비부담금	6,413	2,343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2,574	4,537
영업현금흐름	36,418	30,879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23,608	24,73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19,332	9,168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768	7,506			

< 대전열병합발전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739	54,372	계	22,316	59,396
공사비부담금	229	955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4,137	9,967
영업현금흐름	13,492	17,219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9,739	-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7,986	2,650	기타현금유출	8,440	49,429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32	33,548			

< 무림과워텍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149	16,588	계	4,299	11,110
공사비부담금	-	127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	127
영업현금흐름	6,984	8,221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767	8,979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8,000	기타현금유출	3,532	2,004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65	240			

< 석문에너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99,656	89,342	계	199,856	89,101
공사비부담금	321	209	투자현금유출 중 집단투자금	3,520	580
영업현금흐름	13,405	25,810	재무현금유출 중 차입금상환	13,910	13,910
재무현금유입액 중 차입액	-	-	기타현금유출	182,426	74,611
투자현금유입액 등 기타	185,930	63,323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25년 폐지)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25년 폐지)

[붙임1] 부담금 부과 및 징수기관

순번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3	02-2640-5256
2	부산광역시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051-929-7062	051-701-0096
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031-8018-6316	031-702-7238
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에너지사업단	042-820-0315	042-826-5224
		아산에너지사업단	041-538-2942	041-538-2960
5	GS파워	지역난방사업부문 마케팅팀	031-420-2514	031-420-2636
6	안산도시개발	고객지원팀	031-489-1231	031-492-7600
7	인천공항에너지	경영기획부	032-450-0616	032-751-4610
8	위드인천에너지	사업개발팀	032-712-3318	032-232-3491
9	인천종합에너지	고객지원팀	032-850-6131	032-850-6101
10	나래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02-6477-7722	031-936-1512
11	수완에너지	열사업팀	062-960-1252	062-960-1249
12	대륜발전	열영업팀	031-860-3766	031-860-3619
13	대구그린파워	지역난방팀	070-4035-5905	070-8277-5621
14	내포그린에너지	지역난방팀	041-631-2901(301)	041-631-7327
15	춘천에너지	지역난방팀	033-260-0200	033-260-0432
16	한국씨이에스	기획팀	062-383-1981	062-383-1979
17	포스코와이드	-	-	-
18	청라에너지	마케팅팀	070-4487-5247	032-563-8869
19	평택에너지앎파워	집단에너지사업팀	031-646-4230	031-646-4207
20	휴세스	사업개발팀	070-8018-9614	031-295-0619
21	부산도시가스	집단에너지기획팀	051-607-1417	051-623-8819
22	엔솔브	CS운영팀(에너지운영팀)	051-730-8912	031-936-1722
23	대성에너지	에너지사업팀	053-606-1492	053-606-1495
24	제이비	에너지기술팀	041-620-1412	041-621-1401
25	삼천리	업무팀	02-3397-8512	02-897-6475
26	씨엔씨티에너지	에너지O&M	042-336-5316	070-4275-0147
27	대성산업	-	-	-
28	전북집단에너지	경영기획실	063-830-2221	063-830-2239
29	디에스파워	DH/S사업팀	031-370-7433	031-370-7497
30	대전열병합발전	부과 신성장사업개발팀	042-930-0215	042-930-0119
		징수 기획재무팀	042-930-0033	042-933-5141
31	무림파워텍	경영관리부	055-760-1132	055-760-1114
32	석문에너지	경영관리팀	041-351-4306	041-351-4324

[붙임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계약종별		단 위	단 가		비고	
온수	주택용		신축	14,040			
			기존	7,050			
	업무용		신축	연결열부하 1m ²	0 ~ 300Mcal/h	167,630	
					301 ~ 1,000Mcal/h	131,360	
					1,001 ~ 3,500Mcal/h	126,180	
					3,501Mcal/h 이상	110,630	
			기존	1Mcal/h	0 ~ 300Mcal/h	96,740	
					301 ~ 1,000Mcal/h	82,290	
					1,001 ~ 3,500Mcal/h	79,050	
					3,501Mcal/h 이상	69,300	
공 공 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88,500		
			기존		52,300		
	그 이외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0 ~ 300Mcal/h	150,860	
					301 ~ 1,000Mcal/h	118,220	
					1,001 ~ 3,500Mcal/h	113,560	
					3,501Mcal/h 이상	99,570	
			기존	1Mcal/h	0 ~ 300Mcal/h	87,060	
					301 ~ 1,000Mcal/h	74,050	
1,001 ~ 3,500Mcal/h					71,140		
3,501Mcal/h 이상					62,370		
냉수			연결열부하 1Mcal/h	0 ~ 1,000Mcal/h	429,300		
				1,001 ~ 2,000Mcal/h	269,800		
				2,001 ~ 3,000Mcal/h	230,700		
				3,001Mcal/h 이상	208,600		

주) 1.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열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합니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속병원에 대한 온수 공사비부담금은 공공용중 “그 이외”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붙임3]

공사비부담금 부담률의 변천현황

가. 온수 주택용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조정일자	조 정 내 용						
'87. 10.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2,500원						
'90. 6.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6,700원(168)						
'90. 9. 6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6,700원(0) * 조정사유 : 초과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91. 6. 17	신 축						기 존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7,280(8.7)		7,530(12.4)		7,560(12.8)		4,750(△29.1)
'92. 1. 1	7,750(6.5)		8,000(6.3)		8,050(6.5)		5,050(6.4)
'93. 2. 8	15층이하	16층이상	15층이하	16층이상	15층이하	16층이상	5,310(5.2)
	8,160(5.3)	8,160(5.3)	8,410(5.2)	8,420(5.3)	8,450(5.0)	8,460(5.1)	
'94. 6. 2	8,630(5.8)	8,630(5.8)	8,880(5.6)	8,890(5.6)	8,910(5.5)	8,920(5.5)	5,310(0)
'95. 3. 2	9,040(4.85)	9,040(4.85)	9,320(5.0)	9,330(5.0)	9,370(5.2)	9,380(5.2)	5,310(0)
'96. 2. 1	9,880(9.3)	9,890(9.3)	9,880(6.0)	9,890(6.0)	10,070(7.5)	10,080(7.5)	5,310(0)
'97. 3. 1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기 존
	15층 이하		16층 이상		15층이하	16층이상	
	10,300(4.3)		10,310(4.3)		10,480(4.1)	10,490(4.1)	5,310(0)
'98. 1. 1	10,740(4.3)		10,780(4.6)		10,940(4.4)	11,000(4.9)	5,570(4.9)
'99. 1. 1			단가조정 없음				
2000.1.1	신 축						기 존
	계약면적 1㎡당						
	14,040원(0)						7,050원(0)

※ ()는 증감 비율(%)

※ 2000.1.1. 이후 부과기준이 건축연면적에서 계약면적으로 변경(부과기준은 동일)

나. 온수 업무용

(단위 : 원/연결열부하 Mcal/hr당, 부가세별도)

조정일자	조 정 내 용							
'87.10.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2,500원							
'90. 6.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6,700원(168)							
'90. 9. 6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6,700원(0) * 조정사유 : 초과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91. 6. 17	신 축				기 존			
	연결열부하 1Mcal/Hr당				연결열부하 1Mcal/Hr 당			
	155,300				89,640			
'92. 1. 1	155,300(0)				89,640(0)			
'93. 1. 1	0 - 300까지	300초과- 1,000까지	1,000초과 -3,500까지	3,500 초과	0 - 300까지	300초과- 1,000까지	1,000초과 -3,500까지	3,500 초과
	159,800 (3.1)	125,230 (△19.2)	120,290 (△22.4)	105,470 (△32)	90,230 (0.7)	78,450 (△12.5)	75,360 (△15.9)	66,070 (△26.3)
'94. 6. 2	단가조정 없음							
'95. 3. 2	단가조정 없음							
'96. 2. 1	단가조정 없음							
'97. 3. 1	단가조정 없음							
'98. 1. 1	167,630 (4.9)	131,360 (4.9)	126,180 (4.9)	110,630 (4.9)	96,740 (4.9)	82,290 (4.9)	79,050 (4.9)	69,300 (4.9)
'99. 1. 1	단가조정 없음							
2000.1.1	단가조정 없음							

※ ()는 증감 비율(%)

다. 온수 공공용

(단위 : 원/연결열부하 Mcal/hr당, 부가세별도)

조정일자	조 정 내 용							
'87.10.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2,500원							
'90. 6.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6,700원(168)							
'90. 9. 6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6,700원(0) * 조정사유 : 초과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91. 6. 17	신 축				기 존			
	연결열부하 1Mcal/Hr당				연결열부하 1Mcal/Hr당			
	155,300				89,640			
'92. 1. 1	155,300(0)				89,640(0)			
'93. 1. 1	0 - 300까지	300초과-1,000까지	1,000초과-3,500까지	3,500 초과	0 - 300까지	300초과-1,000까지	1,000초과-3,500까지	3,500 초과
	143,820 (△7.2)	112,700 (△27.3)	108,260 (△30.2)	94,920 (△38.8)	83,000 (△7.4)	70,600 (△21.2)	67,810 (△21.3)	59,460 (△33.7)
'94. 1. 1	단가조정 없음							
'94. 6. 2	단가조정 없음							
'95. 3. 2	단가조정 없음							
'96. 2. 1	단가조정 없음							
'97. 3. 1	단가조정 없음							
'98. 1. 1	150,860 (4.9)	118,220 (4.9)	113,560 (4.9)	99,570 (4.9)	87,060 (4.9)	74,050 (4.9)	71,140 (4.9)	62,370 (4.9)
'99. 1. 1	단가조정 없음							
2000.1.1	단가조정 없음							

※ ()는 증감 비율(%)

라. 온수 공공용(학교, 사회복지시설)

(단위 : 원/㎡, 원/연결열부하 Mcal/hr당, 부가세별도)

조정일자	조 정 내 용			
'87.10.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2,500원			
'90. 6. 1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6,700원(168)			
'90. 9. 6	종별 구분없이 건축연면적 1㎡당 6,700원(0) * 조정사유 : 초과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91. 6.17	학 교		사회복지시설	
	건축연면적 1㎡당			
	신축	기존	신축	기존
	7,280(8.7)	4,750(△ 29.1)	7,280(8.7)	
'92. 1. 1	7,280(0)	4,750(0)	7,280(0)	
'93. 1. 1	7,490(2.9)	4,880(2.7)	7,490(2.9)	
'94. 1. 1	단가조정 없음		7,490	4,880
'94. 6. 2	단가조정 없음			
'95. 3. 2	단가조정 없음			
'96. 2. 1	단가조정 없음			
'97. 3. 1	단가조정 없음			
'98. 1. 1	7,850(4.9)	5,110(4.9)	7,850(4.9)	5,110(4.9)
'99. 1. 1		단가조정 없음		
2000. 1. 1	신축			기존
	연결열부하 1Mcal/Hr당			
	88,500원			52,300원

※ ()는 증감 비율(%)

※ 2000.1.1. 이후 부과기준이 건축연면적에서 계약면적으로 변경(부과기준은 동일)

마. 냉수

(단위 : 원/연결열부하 Mcal/hr당, 부가세별도)

조정일자	조 정 내 용
'05.12.29	0부터 1,000Mcal/h까지 429,300원 다음 2,000Mcal/h까지 269,800원 다음 3,000Mcal/h까지 230,700원 3,000Mcal/h초과 208,600원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2. 장애인 고용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8.2.20.), 시행일(1998.7.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부 서 명 :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 044-202-7564	팩스번호 : 0503-8803-0063
부과기관	기 관 명 : 근로복지공단	부 서 명 : 보험료부과부
	전화번호 : 052-704-7224	팩스번호 : 0505-310-3114
징수기관	기 관 명 : 근로복지공단	부 서 명 : 건설납부지원부
	전화번호 : 052-704-7242, 7249	팩스번호 : 0502-312-3120
	기 관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 서 명 : 통합징수실(수납정산부)
	전화번호 : 033-736-2653	팩스번호 : 033-749-6344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용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금 징수
2. 시행령	제12조	○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4. 고시·훈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2023.1.1.)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0.6/1000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체불사업주, 체불근로자에게 용자를 지원하는 비용에 충당(기업의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확보를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 전체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은 제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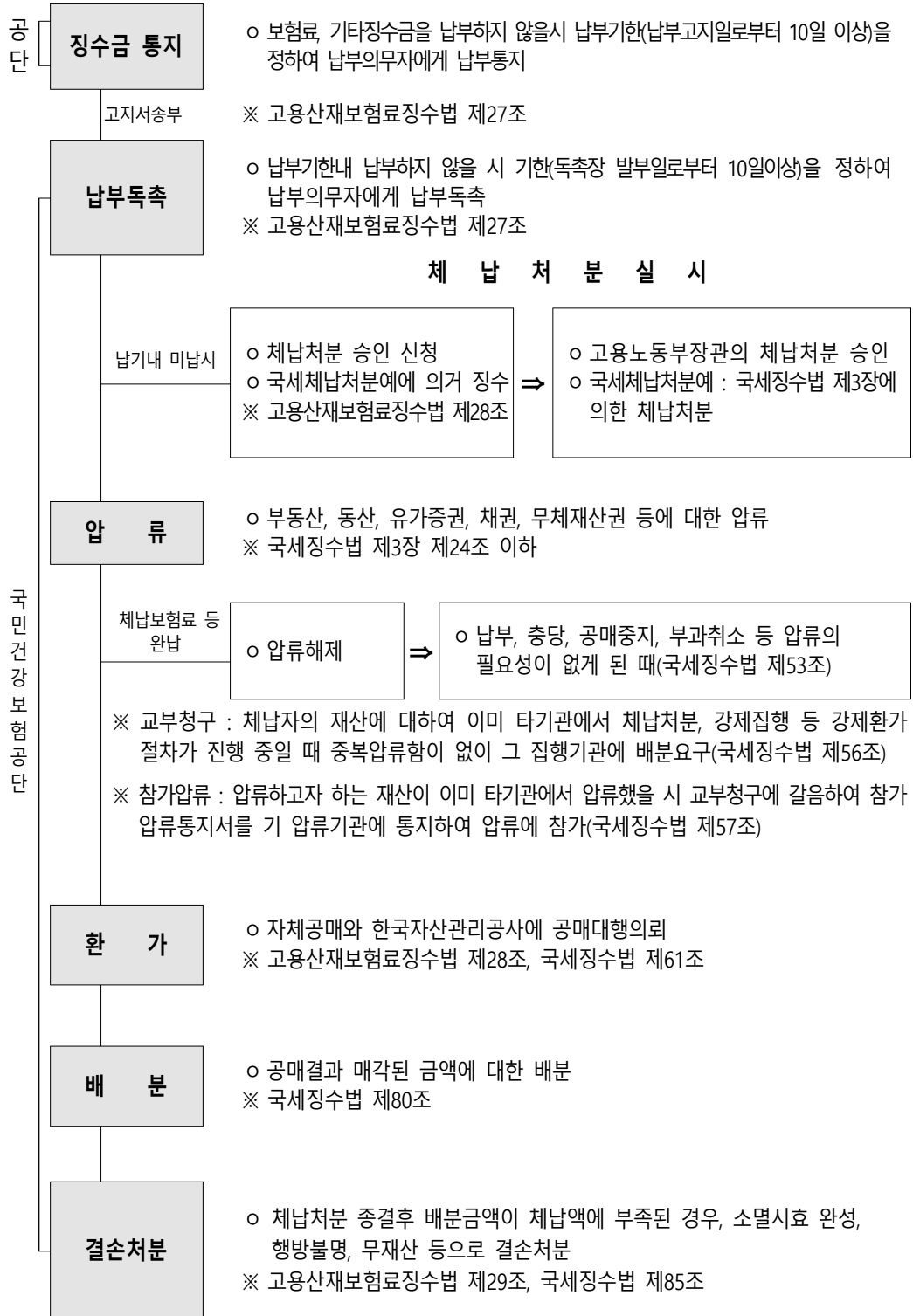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0.6/1000 ※ 2/1000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보 수 총 액 × 부담금비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2항, 제3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가입자가 확정부담금의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할 확정부담금의 10/100을 징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연체료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1/1500을 징수(20/1000한도),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1/6000을 징수(50/1000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강제징수절차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채납처분 절차 준용	<참고>

< 참고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⑨ 부담금의 감면

(단위 : %, 백만원)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전년도말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체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최대 50%)	41,249백만원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2018.7.1.)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8. 7. 1.	○ 2/1000
○ 1999. 1. 1.	○ 0.3/1000
○ 2000. 1. 1.	○ 0.9/1000
○ 2001. 1. 1.	○ 0.5/1000
○ 2003. 1. 1.	○ 0.3/1000
○ 2005. 1. 1.	○ 0.4/1000
○ 2010. 1. 1.	○ 0.8/1000
○ 2016. 1. 1.	○ 0.6/1000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 송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 조치(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104,176건, (금액) 6,240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10,046건, (금액) 7,566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22,423건, (금액) 7,550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결산보고를 통하여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여(), 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과·징수규정을 준용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가 신설 되기(2010.3.31.) 전에 신설되어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납부기한	○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10일 ○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39조
분할납부	개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연 4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7조 제3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7,715,436	6,875,675	38,230,270	6,137,693	9,485,166	737,982	89.3%
2025	2,446,230	478,927	2,117,310	432,153	328,920	46,774	90.2%
2024	2,471,210	463,585	2,123,705	418,430	347,505	45,155	90.3%
2023	2,523,425	457,042	2,145,713	408,272	377,712	48,770	89.3%
2022	2,560,974	429,220	2,171,584	380,275	389,390	48,945	88.6%
2021	2,566,820	391,597	2,142,273	346,381	424,547	45,216	88.5%
2020	2,473,927	381,923	2,026,252	335,437	447,675	46,486	87.8%
2019	2,507,873	384,584	2,062,243	337,988	445,630	46,596	87.9%
2018	2,436,775	366,441	1,999,116	322,002	437,659	44,439	87.9%
2017	2,377,922	342,770	1,942,746	300,660	435,176	42,110	87.7%
2016 이전	25,350,280	3,179,586	19,499,328	2,856,095	5,850,952	323,491	89.8%

주1) :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 건수는 부과 사업장수

※ 부과·징수금액은 순수 부담금만 작성

※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11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음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근로복지공단	53,373	1,580,571	
국민건강보험공단	378,780	4,124,969	
계	432,153	5,705,540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임금채권 보장기금	418,430	430,680	432,153	13,723 (3.3)	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개선, 채납보험료 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액 증가 - 건설경기 부진으로 자진신고 사업장 징수액은 감소

※ 순수 부담금 기준 작성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 최근 5개년('21~'25년) 평균 징수율 97.7%(예산액 대비), 89.4%(징수결정액 대비)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9,236	18,887	18,162	-725 (-3.8)	○ (체납 사유) - 사망, 거소불명 등 - 사업부진(회생, 파산 등), 생계곤란 등의 사유 ○ (징수 계획) - 체납 특성별 징수관리 및 징수 기법 다변화를 통한 집중징수 -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적기 납부서 발송 및 납입고지 처리 등으로 징수율 제고

※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임금채권보장기금	100.0	432,153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호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기업의 도산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임금채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용지원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출연금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채불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지원 6.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7.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임금채권보장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0,062	9,567	계	10,062	9,567
○ 부담금	4,184	4,322	○ 사업비	8,180	7,898
○ 정부내부수입	1,028	1,076	- 대지급금지급	7,272	6,885
○ 기 타	4,849	4,170	- 무료법률구조지원	139	154
- 가산금	1	1	- 채불청산지원용자	769	859
- 기타경상이전수입	1,626	1,839	○ 사업운영비	168	174
- 기타이자수입및	519	284	○ 기 타	1,713	1,495
재산수입			- 공자기금예탁	500	0
- 여유자금회수	2,431	1,699	- 여유자금운용	1,214	1,495
- 용자원금회수	272	34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24년	◦ (권리구제절차)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이를 명시할 필요 ◦ (가산금 등) 임금채권보장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준용)상 가산금(10%) 및 증가산금(일 0.067%)이 부담금법상한(가산금 3% 및 증가산금 일 0.025%)보다 높아 조정 필요 ◦ (회수율 제고) 기금이 지불한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고, 임금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이유로 회수율 저조 →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추진 중> ◦ (자체법령 개정) 권리구제절차와 가산금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은 부담금기본법 내용과 법체계적 통일성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26년) ◦ (회수율 제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5.11.11.)을 통해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변제책임 부과, 고액채권집중회수팀 신설 운영, 변제금 미납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 강화 노력 * '25년 변제금 회수액 1,730억원, 전년 대비 148억원 증가

2.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장애인 고용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0. 1. 13.), 시행일(1991. 1. 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부 서 명 :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 044-202-7498	팩스번호 : 044-202-8055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 서 명 : 기업지원부
	전화번호 : 031-728-7248	팩스번호 : 050-3470-0041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 서 명 : 기업지원부
	전화번호 : 031-728-7248	팩스번호 : 050-3470-004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을 고용한 국가· 지자체의 장 및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기초액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납부일 : 다음 연도 1월 31일 이내
2. 시행령	제35조의2, 36조	○ 국가·지자체의 장 및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전년도 고용실적에 따라 고용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
3. 시행규칙	제14조의2, 15조	○ 부담금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명시
4. 고시·훈령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 장애인고용 시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	장애인고용법 제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68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장 ○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적용)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의무고용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1,258,000원(“25년) - 고용률 1/2이상 3/4 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33,480원 - 고용률 1/4이상 1/2 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09,6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761,2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2,096,270원	$\text{미달장애인수} \times \text{부담기초액} \times \text{개월수}$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33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가산금은 부담금의 100분의 10	장애인고용법 제35조
연체금	연체금은 체납금의 10,000분의 75	장애인고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장애인고용법 제37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백만원)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 산품의 판매를 전담하 거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 산 품을 납품받는 경우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 연계고용 직업재활 시설 등의 총 매 출액 대비 고용 의무사업주 및 기 관장의 도급 에 의 한 도급액의 비율 에 해당연도 부담 기초액과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및 기관장 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법 제33조 에 따라 납부해 야 할 고용부담 금 총액의 100분 의 90, 도급액의 100분의 50 이내 에서 감면	29,982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0호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민간부문 장애인미고용시 부담금 부과(부담기초액 120천원)
○ 1992. 1. 1.	○ 부담기초액 130천원
○ 1993. 1. 1.	○ 부담기초액 138천원
○ 1994. 1. 1.	○ 부담기초액 149천원
○ 1995. 1. 1.	○ 부담기초액 159천원
○ 1995. 8. 4.	○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시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 1996. 1. 1.	○ 부담기초액 173천원
○ 1997. 1. 1.	○ 부담기초액 190천원
○ 1998. 1. 1.	○ 부담기초액 202천원
○ 1999. 1. 1.	○ 부담기초액 207천원
○ 2000. 1. 1.	○ 부담기초액 216천원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3천원
○ 2000. 7. 1.	○ 연계고용대상시설에 표준사업장 추가
○ 2001. 1. 1.	○ 부담기초액 273천원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16천원
○ 2002. 1. 1.	○ 부담기초액 392천원
○ 2003. 1. 1.	○ 부담기초액 437천원
○ 2004. 1. 1.	○ 부담기초액 482천원
○ 2004. 1. 29.	○ 연계고용대상시설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추가
○ 2005. 1. 1.	○ 부담기초액 500천원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0천원 가산 - 중증장애인 고용시 1인당 부담기초액 250천원 감액
○ 2006. 1. 1.	○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300인 이상→200인 이상) - 업종별제외율 폐지에 따른 부담금부과 특례적용
○ 2007. 1. 1.	○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200인 이상→100인 이상) ○ 부담기초액 510천원
○ 2009. 1. 1.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5천원 가산 - 중증장애인 고용시 1인당 부담기초액 255천원 감액 ○ 부담기초액 53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65천원 가산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2배수 인정하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배수 인정)
○ 2010. 1. 1.	- 중증장애인 감면제도는 폐지 ○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 민간사업주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아닌 사람)

	* 2.3%('10년~'11년), 2.5%('12년~'13년), 2.7%('14년 이후)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민간과 동일) ** '12년까지 의무고용률 3%와 2.3%(2.5%) 차액의 1/2 감면
○ 2011. 1. 1.	○ 연계고용감면 상한금액 설정 - 연계고용감면금액을 의무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 다만, 2010년 100분의 100, 2011년 100분의 75, 2012년 100분의 50로 순차적으로 적용 ○ 2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주의 부과특례 감면 종료 ○ 부담기초액 56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80천원 가산 ○ 100인이상~200인미만 사업주의 부과특례 감면 종료 ○ 미고용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 (2011년 903천원)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 - 다만,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11. 7. 1.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 - 다만,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12. 1. 1.	○ 부담기초액 59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95천원 가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95만 7천원 (공공기관 및 상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의무고용률 2.3%→2.5% 상향 - 민간 및 국가·지자체(공무원 아닌 근로자), 기타공공기관 ○ 부담기초액 626천원
○ 2013. 1. 1.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6.5천원 가산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13천원 가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015,740원 ○ 부담기초액 670천원
○ 2014. 1. 1.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67.5천원 가산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35천원 가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088,890원 ○ 부담기초액 710천원
○ 2015. 1. 1.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781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52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23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166,220원
○ 2016. 1. 1.	○ 부담기초액 757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32.7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08.4천원
○ 2017. 1. 1.	○ 부담기초액 812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60.7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74.4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36.8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352,23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월말
○ 2018. 1. 1.	○ 부담기초액 945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001.7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34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23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573,770원 ○ 부담기초액 1,048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10,88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257,6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467,200원
○ 2019. 1. 1.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745,150원 ○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 2.9%→3.1% - 국가·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9%→3.4% - 국가·지자체(공무원),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3.2%→3.4% ○ 부담기초액 1,078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42,68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293,6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09,2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795,310원 ○ 공무원 부문 부담금 납부 적용
○ 2020. 1. 1.	○ 부담기초액 1,094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59,64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12,8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31,6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822,480원
○ 2021. 1. 1.	○ 부담기초액 1,149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217,94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78,8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608,600원
○ 2022. 1. 1.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 1,914,440원

○ 2023.1.1.	○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3.4%→3.6% ○ 부담기초액 1,207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279,42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448,4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689,8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2,010,580원 ○ 부담기초액 1,237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11,22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484,4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731,8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2,060,740원
○ 2024.1.1.	○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3.6%→3.8% ○ 한시적 분할납부제도 확대 - 2025, 2026년도 납부분에 한해 6기 분할납부 선택가능 ○ 연계고용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한도 상향 - 국가·지자체까지 감면대상 확대 - 감면한도를 부담금 납부총액의 90%이내로 상향 ○ 부담기초액 1,258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33,480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09,600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761,2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2,096,270원
○ 2025.1.1.	○ 중소기업 분할납부 제도 신설 - 2026년에 신고하는 부담금부터 중소기업은 부담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가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장애인고용법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신청 가능(「장애인고용법」 제36조의2 신설, 시행일 '26.5.12.)
 - 행정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5조)

- 행정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예금계좌에 입금조치(「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동 시행령 37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과오납반환액* : (건수) 1,024건 (금액) 24,066백만원
 * 과오납부로 인한 반환으로 수입에서 즉시 차감

⑫ 징수실적 · 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기금결산서 및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국회 등에 제출
 - 홈페이지 공개 www.kead.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사전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우편 및 전자결재시스템(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고지시기 부과금액 확정 즉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매년 1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사부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33조
납부기한	○ 법정신고 납부기한 : 매년 1월 31일 ○ 조사부과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0일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분할납부	○ 4기 분할납부(1.31, 4.30, 7.31, 10.31까지) ○ 6기 분할납부(1.31, 3.31, 5.31, 7.31, 9.30, 11.30까지) *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62,305	10,565,117	154,264	10,264,615	8,041	300,502	97.2
2025	9,180	913,246	8,791	886,222	389	27,024	97.0
2024	9,162	916,777	8,792	895,365	370	21,412	97.7
2023	9,282	852,413	8,824	829,580	458	22,833	97.3
2022	9,338	786,072	8,875	763,688	463	22,384	97.2
2021	9,039	789,303	8,591	767,611	448	21,692	97.3
2020	9,250	773,911	8,841	755,756	409	18,155	97.7
2019	9,011	635,393	8,595	619,090	416	16,303	97.4
2018	9,456	567,773	9,031	552,121	425	15,652	97.2
2017	8,439	470,032	7,996	453,236	443	16,796	96.4
2016 이전	80,148	3,860,197	75,928	3,741,946	4,220	118,251	96.9

주1)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	152,824	2,061,398	
서울남부	81,806	2,013,528	
서울동부	143,533	909,882	
서울북부	17,687	44,051	
부산	24,279	230,454	
대구	19,529	213,731	
인천	30,869	237,450	
광주	11,821	114,096	
대전	39,971	282,906	
울산	15,045	127,232	
경기	90,496	1,075,678	
경기북부	10,831	100,476	
경기동부	57,494	351,214	
경기서부	29,736	60,833	
강원	15,010	97,083	
충북	22,551	162,931	
충남	28,972	165,995	
전북	15,137	92,003	
전남	20,580	94,417	
경북	20,763	143,192	
경남동부	23,761	215,474	
경남서부	7,911	0	신설지사
제주	5,616	44,525	
고용노동부*		539,845	
합 계	886,222	9,378,394	

*'00년 이전 고용노동부 징수금액 누계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895,365	917,706	886,222	△9,143 (△1.0)	○ 장애인 고용 증가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 제도도입 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근 5개년('21~'25년) 평균 징수율이 80%이하인 경우 작성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24,850	25,287	26,134	847 (3.3)	○ 경영악화 등 ○ 장기채권 관리 및 결손처분 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886,222	
국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00.0	886,222	장애인고용법 제6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 련 법 령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2.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 3. 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용자·지원 4.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훈련수당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고용법 제71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3,044	23,664		23,044	23,664
○ 자체수입	10,137	10,582	○ 사업비	8,517	8,613
- 부담금	8,954	8,862	- 장애인고용장려금	3,534	3,774
- 가산금	10	16	- 출연사업비 등	4,984	4,839
- 연체금	13	6	○ 기금운영비	841	859
- 융자금회수	62	77	- 인건비	721	746
- 기금운용수입	920	1,435	- 기타운영비	120	113
- 기타수입	179	187	○ 정부내부지출	6,000	7,000
○ 정부내부수입	6,199	6,169	- 공자기금예탁금	6,000	7,000
- 예탁원금회수	6,000	6,000			
- 예탁이자수입	199	169			
○ 여유자금운용회수	6,707	6,913	○ 여유자금 운용	7,686	7,192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장애인고용 부담금	'21년	○ 부담금 법령 정비 - 해당 법령 내에 부담금 징수로 인한 부당한 권익침해 발생 시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필요	<추진 중> ○ 자체 법령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도록 정한 부담금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고용법 제36조의2를 신설('25.11.11.)하고, '26.5.12. 시행 전에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 개발부담금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도로법)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6. 혼잡통행료
7. 교통유발부담금
8.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9. 과밀부담금
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11. 소음부담금
12. 재건축부담금
1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4.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0.01.28.), 시행일(2000.07.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 044-201-3744	팩스번호 : 044-201-5574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장·군수·구청장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장·군수·구청장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은 자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시행령	-	○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	○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 해제지역 개발자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건축허가 받는 경우	- 행위허가를 받은 자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해제대상지역 개발 사업자 중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0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100분의 20 × 해당 지역의 면적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경우	0~150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100분의 3	개발제한구역법 제25조제7항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 적용	개발제한구역법 제25조제8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0. 7. 1.	○ 제도 도입
○ 2001. 9. 6	○ 부담률 하향 조정
○ 2003. 2. 6.	○ 해제지역 부담금 징수 확대
○ 2009. 2. 6.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 훼손지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보전부담금 부과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6개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1개월
○ 2014. 1. 28.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 제외
○ 2016. 3. 22.	○ 부담금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6개월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토록 개정
○ 2022. 6. 10.	○ 훼손지복구 사업지 현실화를 위해 해제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15에서 100분의20으로 상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2025년 환급액 : (건수) 14건 (금액) 2,870,691,74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1건 (금액) 498,694,212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2건 (금액) 5,574,017,87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운용보고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부과에 법적인근거 및 부과금액, 산출근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행위허가 상담 등 허가 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 결정시 ○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시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납부기한	○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개발제한구역법 제25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	○ 부득이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	
분할납부	○ 부득이할 경우 분할 납부 가능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2,782	4,212,924	11,438	3,827,140	1,344	385,785	90.8
2025	386	113,216	361	137,969	25	-24,753	121.9
2024	434	235,902	415	195,901	19	40,002	83.0
2023	458	213,560	393	254,023	65	-40,463	118.9
2022	575	221,994	511	155,842	64	66,152	70.2
2021	605	237,400	430	165,839	175	71,561	69.9
2020	585	190,008	460	132,454	125	57,554	69.7
2019	687	222,708	548	156,492	139	66,216	70.3
2018	611	232,786	430	165,008	181	67,778	70.9
2017	488	264,101	439	240,029	49	24,072	90.9
2016 이전	7,953	2,281,249	7,451	2,223,583	502	57,666	97.5

주1) : 납부기한 연도 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14,611	455,601	
부산시	707	131,011	
대구시	14,214	213,435	
인천시	30,802	268,385	
광주시	5,430	121,973	
대전시	4,441	329,964	
울산시	17,612	63,953	
세종시	-	2437	
경기도	45,208	1,909,790	
충북도	-	1,416	
충남도	-	505	
전북도	-	1,524	
전남도	9	2,101	
경북도	46	4716	
경남도	4,889	142605	
기타	-	39755	
합 계	137,969	3,689,171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95,901	180,407	137,969	-57,932 (-29.6%)	납기일도래 징수금액 감소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5년 평균 89%)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9,698	2,420	11,362	369.5	○(체납 사유) 납부자 부재(폐문, 파산 등) 및 사업 지연 ○(징수 계획) 납부촉박 및 현황 점검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	137,969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 제2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95,901	137,969	계	163,381	150,825
○ 부담금 수입	195,901	137,969	○ GB 관리운영	5,682	6,346
			○ GB 관리(보조)	1,601	1,601
			○ GB 주민지원사업	91,098	72,878
			○ GB 토지매입비	65,000	70,00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부담금 본연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함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담금 부과방식 차이에 대해 제도취지에 부합함 ○ 부담금 부과기준 자이의 합리성이 인정됨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됨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2. 개발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개발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89.12.30.), 시행일(1990.01.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03,3405	팩스번호 : 044-201-5534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군·구	부 서 명 : 토지정보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군·구	부 서 명 : 토지정보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3, 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야 함.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
2. 시행령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4. 고시·훈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39호(“22.7.15)> ○ 같은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3호(“25.6.27)>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4항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25.12.3)> ○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결정하여 고시 - 적용대상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67호(“23.6.9)> ○ 종료시점지가 검증 시 적용하는 검증 수수료 - 검증수수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 여비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등)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다만,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	개발이익환수법 제5, 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개발이익	20% (제1~6호) 25% (제7, 8호)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25% 또는 20%)	개발이익환수법 제8, 13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30, 31조, 부칙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준용) 및 제22조
증가산금	월 0.75%(최대 60개월)	
연체료	체납시 가산금, 증가산금 부과	
강제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준용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100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5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50	
○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외)	50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50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50	
○ 지자체장이 지역민간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부과대상사업 중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개발사업	지자체 귀속분 (50%)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제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면제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제외)	면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물류단지 제외)	면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면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단지	면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업도시의 조성사업	면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면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면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	면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0. 1. 1.	○ 개발이익의 50%
○ 1998. 9. 19.	○ 개발부담금 한시적 부과중지
○ 2000. 1. 1.	○ 재부과 및 부담율 인하(50 → 25%)
○ 2002. 1. 1.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부과중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 2004. 1. 1.	○ 수도권지역 부과중지
○ 2006. 1. 1.	○ 전국 재부과, 부담률 25%

○ 2014. 1. 14.	○ 계획입지사업(20%), 개별입지사업(25%) 부담률 조정 ○ 계획입지사업으로 2014.7.15.부터 2015.7.14.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수도권 50%감면, 지방 100%면제
○ 2015. 8. 11.	○ 계획입지사업 한시감면 연장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
○ 2016. 12. 30.	○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한시상향 조정 (2017.1.1~2019.12.31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 ※ 660㎡→1,000㎡(특·광역시 도시지역), 990㎡→1,500㎡ (특·광역시 이외 도시지역), 1,650㎡→2,500㎡(비도시지역)
○ 2018. 6. 30.	○ 계획입지사업 한시감면 종료
○ 2019. 12. 3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 2023. 9. 1.	○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한시상향 조정 (2023.9.1~2024.12.31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 ※ 660㎡→1,000㎡(특·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990㎡→1,500㎡(특·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도시지역), 1,650㎡→2,500㎡(비도시지역)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 (행정심판 등 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행정쟁송 결과 등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50%, 시·군·구에서 50% 환급(「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 가산, 지급)

○ 2025년 환급액

- 국고분 : (건수) 21건 (금액) 363백만원
- 지방분 : (건수) 29건 (금액) 748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국고분 : (건수) 31건 (금액) 13,093백만원
- 지방분 : (건수) 44건 (금액) 13,144백만원

* (건수차 사유) 납부의무자가 국고분 혹은 지자체분 중 한쪽만 납부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통지 중
 - 고지하는 내용 : 납부의무자,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금액, 부과기준, 그 밖의 사항, 고지전 심사청구 시기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내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
납부기한 연장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분할납부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 (연·분납사유)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무자 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29,230	10,397,450	123,323	7,917,346	5,907	2,480,104	76.1
2025	4,498	372,979	5,309	448,360	△ 811	△ 75,381	120.2
2024	6,253	504,381	7,373	495,535	△ 1,120	8,846	98.2
2023	8,178	600,776	8,403	454,614	△ 225	146,162	75.7
2022	7,759	876,690	7,552	572,685	207	304,005	65.3
2021	6,667	584,862	6,728	446,394	△ 61	138,468	76.3
2020	6,395	564,347	7,067	428,301	△ 672	136,046	75.8
2019	8,275	430,678	6,826	297,802	1,449	132,876	69.1
2018	6,822	457,865	6,502	323,317	320	134,548	70.6
2017	7,381	395,734	7,357	324,964	24	70,770	82.1
2016 이전	67,002	5,609,138	60,206	4,125,374	6,796	1,483,764	73.5

주1) ① 부과 건수 및 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이고, 징수 건수 및 금액은 과년도 및 당해연도에 부과하여 당해연도에 수납한 금액

② 분납·연납신청 및 납부기한(6개월) 미도래, 결손처분, 행정쟁송에 의한 부과취소 등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간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9,815	511,564	
부산시	7,196	237,393	
대구시	3,011	114,686	
인천시	45,404	359,177	
광주시	2,693	118,559	
대전시	665	114,821	
울산시	2,150	78,378	
세종시	3,104	20,725	
경기도	319,161	4,633,007	
강원도	4,615	105,208	
충북도	4,722	145,026	
충남도	12,753	245,117	
전북도	1,811	138,188	
전남도	3,432	113,577	
경북도	8,003	199,514	
경남도	5,213	223,551	
제주도	14,613	110,495	
합 계	448,360	7,468,985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495,535	488,674	448,360	△47,175 (△9.5)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조기납부 일부 환급) 납부기일 전 조기 납부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신설로 납부율 제고 유도('15.1)
-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물납 인정대상에 기존 토지 외에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납부자 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16.7)
- (감정평가사 지가검증)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부과·징수권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수용율 제고('17.12)
- (체납처분 방법 추가) 체납처분 방법으로 기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외에 '지방세외 수입금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개선('17.12)
 - *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등 납부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17.12)
- (지자체) 「미수납액 회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17년~)
 - * (납기 미도래, 분할연기 납부) 체납방지를 위한 SMS 통지·공문 안내 등 시행 (체납) 납부 독촉, 압류 조치 즉각 이행, 압류 가능 재산 지속 추적 실시 등
- (지자체 공무원 교육)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채권관리 교육 포함 실시('15~)
 - *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 전문가가 국가채권관리(체납처분 등) 교육 실시중
- (연구용역)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 연구」 용역('18.6~'19.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19.12~'20.12)
- (징수대책 수립)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시·군·구에 대하여 체납 원인과 관리·징수대책 등을 수립하도록('20.3월, '21.4월, '22.3월)하여 징수율 제고
- (신용카드 확대) 개발부담금을 물납하는 경우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23.6)
- (표창수여) 체납액 징수 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체납관리 동기부여 유도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25년도 말 기준 체납액을 파악하여 시·군·구에 주요체납 원인, 관리·징수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26.上), 5년이상 장기미수납 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징수 실적 제고 독려(~'26.下)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090,028	1,068,642	1,032,327	△36,315 (△3.4)	○(체납 사유) 납부의무자의 소재 파악 곤란 등으로 납부독촉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움 ○(징수 계획)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및 거주지 수시 파악 등을 통해 적극적 징수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448,360	
국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	224,2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 및 제78조
기초 자치 단체	일반회계	50	224,160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해당 시·군·구의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제7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보조,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등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재생 필요비용,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수립비용,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등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 >

(단위 : 억원)

수입 (지역자율계정)			지출 (지역지원계정)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2,445	2,241	계	220	220
○ 개발부담금	2,445	2,241	○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220	220

※ 수입은 지역자율계정, 지출은 지역지원계정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부과목적, 부과대상, 사용용도 등이 명확하고 적정
	<타 부과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개발 부담금	'22년	○ 월할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증가산금 규정을 일할기준으로 개정 필요	<추진 중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25.9.19)를 통해 개정 추진 중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1.1.29.), 시행일(2001.4.30.)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부 서 명 : 광역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5052	팩스번호 : 044-868-8375
부과기관	기 관 명 : 대도시권의 각 시·도지사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대도시권의 각 시·도지사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1조의7	부담금의 부과대상, 감면, 산정기준, 부과 시점, 납부기한,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용도,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
2.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의5	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 공공과 민간부분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법 제11조 ~ 제11조의7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대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건설사업 5. 재개발·재건축사업 6. 주상복합건축사업	사업시행자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사업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제3호)	수도권 30%, 기타 대도시권 15%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가능)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 - 공제액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영 제16조의2 제8항
2. 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사업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제5호)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가능)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주상복합건축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가능)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합계)} - 공제액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1년)까지 미납부시 부담금의 1% + 일할계산(채납일×0.00022)의 가산금 부과(채납 부담금의 3% 초과 불가)	법 제11조의4 제5항, 제6항 영 제17조제8항
강제징수 절차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미납부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법 제11조의4 제7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건설사업 및 주상복합건축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부과대상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행복도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100	법 제11조의2 영 제16조
7.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부과대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75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9. 재개발사업 10. 재건축사업 1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부과대상 사업	5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7.4.10.	○ 광역전철부담금제 신설
○ 2001.1.29.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신설 * 택지개발사업 등(부과율 수도권 30%, 기타 15%) ** 주택건설사업 등(부과율 수도권 4%, 기타 2%)
○ 2009.1.30.	○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60일→1년)
○ 2013.8.6.	○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주상복합건축사업 중 임대 주택사업을 건설하는 사업 추가 면제
	○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납부기한 연기 사유 신설
○ 2015.12.15.	○ 부담금 공제대상 확대(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로 공제) ○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10분의2에서 10분의10으로 확대(부담금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근거 마련)
○ 2020.3.2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규정 신설
○ 2020.6.9.	○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내용 신설
○ 2020.12.22.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규정 신설
○ 2022.2.8.	○ 리모델링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규정 신설
○ 2023.5.16.	○ 가산금을 부과방식 변경(최대 3% 일할계산) * (기존) 3% 고정 → (변경) 1%(기본)+일할계산
○ 2023.8.16.	○ 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024.1.9.	○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신설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일괄개정안(법제처)'
○ 2024.12.10.	○ 주상복합건축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제외 규정 신설
○ 2025.10.23.	○ 주택건설·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구역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제외규정 신설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이의신청 절차)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 (처리기간)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관련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 결정
 - (관련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40 (금액) 6,176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62 (금액) 16,279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35 (금액) 5,685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7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연기	
분할납부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납부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9,476	4,940,390	16,846	3,501,269	2,896	1,583,096	70.8
2025	427	304,892	479	159,773	-52	145,119	52.4
2024	467	224,828	442	132,683	25	92,145	59.0
2023	612	251,568	574	152,585	38	98,983	60.7
2022	800	252,606	856	194,930	-56	57,676	77.2
2021	868	202,622	963	230,218	-95	-27,596	113.6
2020	823	205,538	802	164,221	21	41,317	79.9
2019	867	197,544	999	222,222	-132	-24,678	112.5
2018	950	200,507	1,010	227,725	-60	-27,218	113.6
2017	1,176	207,011	1,038	249,751	138	-42,740	120.6
2016이전	12,486	2,893,274	9,683	1,767,161	3,069	1,270,088	61.07

주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년이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공제대상 사업의 사후공제로 인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11,076	342,322	
부산광역시	12,024	232,233	
대구광역시	5,000	234,340	
인천광역시	20,066	435,851	
광주광역시	7,209	71,523	
대전광역시	5,349	76,397	
울산광역시	2,794	53,414	
경기도	85,359	1,700,757	
충청북도	2,914	53,890	
충청남도	1,980	8,637	
전라남도	963	15,170	
경상북도	614	43,896	
경상남도	4,206	104,091	
세종특별자치시	219	1,489	
합 계	159,773	3,374,010	

iii - i) 2024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32,683	169,578	159,773	27,190 20.5(%)	부동산 건설경기 활황기에 착공한 건설업자들의 준공기한 도래 사업준공 등에 따른 납부액 증가 및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용역('22.3~'22.12) 등 추진
- 매년 분기마다 지자체별 장기미수납(5년 이상) 채권 현황 파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장기미수납채권 해소를 위한 지자체 실무회의('24.1, '25.2)
- 디브레인 관리관련 개선방안 및 징수율 저조 관련 개선방안 회의('26.3)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규정)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인가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1년 내에 납부하도록 규정
 - 다만, 납부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준공완료 공고일)까지 분할납부 또는 착공시까지 납부기한 연기 가능
- (문제점) 부담금의 부과시점을 사업승인·인가시로 규정하나, 이후 착공 시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되고, 사업승인 이후 사업취소 등 변동사유 발생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체납 증가, 체납 및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증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환급 등 징수관리의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법상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승인·인가→실제 납부가능한 시점인 착공시점으로 개정
 - * 사업승인·인가시기는 소득 및 수익창출이 없는 상태이나, 착공시점에는 PF대출을 통해 가능
 - ** 부담금 납부시기를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법안(김철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
- (개선효과) 부과시점을 현실화해서 사업자의 구조적·형식적 체납을 방지하고,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159,773	
국 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40%	63,909	법 제11조의6
지방 자치 단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	95,864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법 제11조의6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국가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30.7	639.1	계	3,167	2,452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30.7	639.1	○ 광역도로	522	617
			○ 혼잡도로	1,426	1,088
			○ 광역철도	904	514
			○ 도시BRT	149	182
			○ 환승체계구축	166	51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876.3	901.4	계	2,876.3	901.4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7.2	110.8	○ 광역철도 건설	2590.8	731.8
○ 자치단체간 부담금	0	0	○ 광역도로 건설	69.8	0.8
○ 국고보조금 등	77	34	○ 공영차고지 건설	81.5	31.6
○ 국내차입금	900	0	○ 버스환승정류소 개선 등	65.9	24.1
○ 이자수입	8	0.6	○ 부담금 국고분 납입	22.9	44.3
○ 그 외 기타잡 수입 등	642	0	○ 자치구 징수교부금	2.3	2.1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192	756	○ 보전지출 및 내부 거래 등	43	66.7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부산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72	137	계	372	137
○ 부담금	140	88	○ 광역도로건설사업		
○ 전년도 이월금	137	26	- 동감해C~식만 CT간 광역도로 사업	190	-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포함)	56	-	○ 환승센터건설사업		
○ 내부거래	6	20	- 사상역 광역환승 센터 건설	56	18
○ 이자수입	4	3	○ 국고납입	56	35
○ 기타	29	-	○ 기타(내부거래 다 음연도이월액 등)	70	84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대구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26	85	계	126	85
○ 부담금	31	35	○ 공영차고지	84	64
○ 전년도 이월금	33	24	-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70	32
○ 국고보조금	-	7	- 금호 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14	21
○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1	-	-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	11
○ 일반회계 전입금	6	2	○ 국고납입	16	20
○ 순세계잉여금	14	16	○ 기타(운영비 및 예비비 등)	26	1
○ 기타	1	1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인천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35	501	계	535	501
○ 공공예금이자	8	2	○ 국고 귀속	46	64
○ 일반부담금	178	201	○ 도로사업	50	69
○ 순세계잉여금	149	94	- 금곡동~대곡동	-	21
○ 전년도이월사업비	124	103	- 검단산도사대곡동		2
○ 예탁금이자	21	22	- 거침도~약암리간	50	46
○ 국고보조금	22	79	○ 예비비 등 기타	267	286
○ 기타회계전입금	33	-	○ 예탁금	-	50
			○ 공영 차고지 조성	139	32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100	10
			-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39	21
			-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	1
			○ 광역철도시설지원	33	-
			-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3	-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광주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1.98	164.2	계	41.98	164.2
○ 부담금	30.05	729	○ 광역도로건설사업	25	25
			- 광주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25	25
○ 순세계잉여금	10.15	3.8	○ 국고납입	16.98	29.1
○ 기타(내부전입금 등)	1.78	87.5	○ 기타 (운영비 및 예탁금 전출금 등)		110.1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대전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8	131	계	58	129
○ 부담금	36	53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0	100
○ 전년도 이월금	19	11	○ 국고 납입	13	29
○ 국고보조금	0	0	○ 기타	45	0
○ 일반회계 전입금	0	0	- 통합재정금예탁		
○ 기타	3	67	사책추진비등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울산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3실적	'25실적
계	161	101	계	161	101
○부담금	26	28	○국고납입	11	11
○국고보조금	0	0	○태화강 환승센터 구축지원	54	0
○전년도 이월금	121	70	○북울산역 광역 전철 연장 운행	51	83
○기타	14	3	○예비비	0	0
	-		○다음연도 이월액	43	0
			○기타	2	7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경기도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2,122	2,161	계	2,122	2,161
○ 부담금	1,562	1,510	○ 광역철도사업	1,333	1,259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02	854	- 삼삼~동탄 사업	87	19
- 일반부담금	387	-	- 파주~삼성 사업	451	76
- 자치단체부담금	473	656	- 신안산선 사업	795	620
○ 전년도 이월금	-	1	- 신분당선 사업	-	468
○ 국고보조금	62	49	- 대장~홍대 사업	-	76
○ 일반회계 전입금	81	397	○ 환승주차장 사업	4	38
○ 이자수입	6	8	- 양주역 환승주차장	4	-
○ 기타	411	196	- 초지역 환승주차장	-	35
			- 세류역 환승주차장	-	3
			○ 광역교통개선대책	115	116
			- 갈현~축현 도로확포	115	66
			장		
			- 야동~금릉 도로확포		50
			장		
			○ 기타도로사업	50	27
			- 여주 시도11호선	15	-
			- 안산 지방도301호선	35	-
			- 성남~광주 도로확포	-	27
			장		
			○ 버스공영차고지	-	3
			- 구리 사노공영차고지	-	3
			○ 철도 환승센터 사업	18	36
			- 구리역 환승센터	18	36
			○ 광역BRT 구축사업	78	-
			- 상남S-BRT 구축	78	-
			○ 징수교부금	50	58
			○ 국고납입분	284	302
			○ 기타(결산 잉여금 등)	190	322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충청북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9.67	45.68	계	29.67	45.68
○ 경상적세외수입		0.13	○ 광역교통시설		
○ 지방 행정 제 재	8.53	4.17	사업	-	7.75
부과금			○ 국고 납입		
○ 지난연도수입	19.67	24.97	(40%)	7.57	11.65
○ 순세계잉여금	1.47	1.76	○ 예탁 및 징수		
○ 내부거래		14.65	교부	22.10	26.28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충청남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8.10	25.22	계	8.10	25.22
○ 부담금 수입	6.92	19.80	○ 국고 귀속분	2.76	7.72
○ 이자 수입	0.08	0.18	부담금		
○ 보조금반환수입	0	0	○ 징수교부금	0.04	0.22
○ 잉여금	0.27	4.39	○ 예탁금	5.22	11.52
○ 예탁금 및 예수금	0.83	0.85	○ 기타(예비비	0.08	5.76
			등)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전라남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3실적	'24실적	항 목	'23실적	'24실적
계	25.9	26.7	계	25.9	26.7
○ 부담금 수입	25.9	26.7	○ 국고납입	10.3	10.7
○ 이자수입	-	-	○ 예비비	-	-
			○ 예탁금	15.6	16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경상북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1.73	12.34	계	41.73	12.34
○ 부담금 수입	36.28	6.14	○ 국고귀속분	14.51	2.46
○ 전년도 이월금	0	0	○ 징수교부금	1.09	0.18
○ 이자수입	0.14	0.11	○ 기 타	26.13	9.70
○ 예탁금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5.31	6.09	(이월,예탁금-통 합재정안정화기 금 등)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경상남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1.2	70.0	계	51.2	70.0
○ 부담금	20	42	○ 광역도로건설 사업	10	10
			- 초정~화명간 광역 도로 사업	10	10
○ 전년도 이월금	3.8	3.3	○ 환승센터건설 사업	15	10
			- 북정역 광역 환승센터 조성	15	10
○ 이자수입	0.1	0.3	○ 국고납입	8	16.8
			○ 시군징수 교부금	0.5	1.2
○ 기타	27.3	24.4 (예탁금 회수금 등)	○ 예탁금 등 (다음연도 이월액 등)	17.7	32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71	2.20	계	3.71	2.79
○ 부담금 수입	3.68	2.19	○ 국고납입	1.47	0.87
○ 기타(이자수입 등)	0.03	0.01	○ 기타(예탁금)	2.24	1.92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 평가 결과	'22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 개발, 주택건설,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게 유발될수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인정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은 향후 지역일대에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며, 이러한 교통수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가 상승 등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됨. 따라서 본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수익자 부담금으로서의 타당성도 인정됨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 해당없음

4. 원인자부담금(도로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도로법)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61.12.27.), 시행일(1962.1.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 044-201-3910	팩스번호 : 044-201-5591

※부과·징수기관 :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광역·기초지자체, 고속도로)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 서 명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 02-2110-6787	팩스번호 : 02-2110-0683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부 서 명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 033-769-5742	팩스번호 : 033-742-9590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 서 명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 042-670-3253	팩스번호 : 042-670-3482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 서 명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 063-850-9149	팩스번호 : 063-850-9453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 서 명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 051-660-1040	팩스번호 : 051-660-1042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부 서 명 :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 02-2133-8162	팩스번호 : 02-2133-0765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44-301-3715	팩스번호 : 044-301-372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32-440-3789	팩스번호 : 032-451-2790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대전광역시	부 서 명 : 건설도로과
	전화번호 : 042-270-5913	팩스번호 : 042-270-588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대구광역시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53-803-4814	팩스번호 : 053-803-478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광주광역시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62-613-4731	팩스번호 : 062-613-441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울산광역시	부 서 명 : 건설도로과
	전화번호 : 052-229-4044	팩스번호 : 052-229-401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산광역시	부 서 명 :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 051-888-2751	팩스번호 : 051-888-272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경기도	부 서 명 :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 031-8030-3854	팩스번호 : 031-8030-385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강원특별자치도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33-249-3637	팩스번호 : 033-249-4058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충청북도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43-220-4212	팩스번호 : 043-220-421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충청남도	부 서 명 : 도로철도항공과
	전화번호 : 041-635-4682	팩스번호 : 041-635-3070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 서 명 : 도로공항철도과
	전화번호 : 063-280-4404	팩스번호 : 063-280-288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전라남도	부 서 명 :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 061-286-7424	팩스번호 : 061-286-4782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	부 서 명 : 도로철도과
	전화번호 : 054-880-3989	팩스번호 : 054-880-399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경상남도	부 서 명 : 도로과
	전화번호 : 055-211-5755	팩스번호 : 055-211-5719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부 서 명 :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 064-710-8622	팩스번호 : 064-711-8607
부과 및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도로공사	부 서 명 : 교통처
	전화번호 : 054-811-2657	팩스번호 : 054-811-266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로법 제91조	○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
2.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 명령서 첨부
3.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부담명령서 서식(별지 서식 제44호)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도로법 제9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도로법 제91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도로법 제91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	도로법 제69조, 제94조
증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해당 없음)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62.1.1.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도로법 제70조, 제9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도로법 제70조, 제94조
- 2025년 환급액 : 7,560,596,98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부과근거, 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서 발부(부과의뢰건에 대한 수입징수결의 즉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발생 시	국세징수법 제10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이내(1개월 추가연장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분할납부	최대 9개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90,132	1,831,046	777,031	1,795,988	13,101	35,058	98.1
2025	29,404	128,731	27,781	114,626	1,623	14,105	89.0
2024	29,690	121,772	28,540	117,867	1,150	3,905	96.8
2023	33,936	138,860	32,882	135,614	1,054	3,246	97.7
2022	40,068	136,360	39,291	134,517	777	1,843	98.6
2021	46,962	125,602	45,988	126,534	974	-932	100.7
2020	46,598	127,077	45,785	126,467	813	610	99.5
2019	51,547	135,368	50,969	135,509	578	-141	100.1
2018	52,217	101,135	51,311	101,059	906	76	99.9
2017	52,058	96,310	51,350	95,789	708	521	99.5
2016이전	407,652	719,832	403,134	708,007	4,518	11,825	98.4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2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3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1	1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	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65	
서울특별시	96,060	1,276,011	
세종특별자치시	-	-	
인천광역시	957	28,912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10,361	226,397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부산광역시	4,080	74,968	
경기도	8	735	
강원특별자치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북특별자치도	23	2,906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12	1	
제주특별자치도	-	-	
한국도로공사	3,079	70,341	
합 계	114,626	1,681,362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 적(B)		
합 계	117,867	102,070	114,626	△2.8	전년대비 도로시설물 파손 비용 감소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6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	3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	-	
서울특별시	98,984	91,413	96,060	△3.0	
세종특별자치시	-	-	-	-	
인천광역시	675	857	957	41.8	
대전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9,034	9,764	10,361	14.7	
광주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	
부산광역시	5,453	-	4,080	△25.2	
경기도	24	13	8	△66.7	
강원특별자치도	-	-	-	-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	-	-	-	
전북특별자치도	23	23	23	△0.4	
전라남도	-	-	-	-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	-	12	-	
제주특별자치도	-	-	-	-	
한국도로공사	3,670	-	3,079	△16.1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해당 없음)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14,626	
국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0.04	46	도로법 제95조
자치 단체	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97.27	111,501	도로법 제95조
공공기관		2.69	3,079	도로법 제95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	도로법 제91조, 시행령 제91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교통시설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179	1,146	계	1,179	1,146
○ 부담금 수입	1,179	1,146	○ 사 업	1,179	1,146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존치 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존치 권고	<부과목적의 유효성> ○ 해당 없음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주요 내용	'25년도 평가 이행실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0.01.28.), 시행일(2000.07.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 044-201-3725	팩스번호 : 044-201-5569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도지사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부 서 명 : 지정권자 도시개발담당
	전화번호 여주시 : 031-887-3018 대전시 : 042-270-6564	팩스번호 여주시 : 031-887-3009 대전시 : 042-270-6549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도지사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부 서 명 : 지정권자 도시개발담당
	전화번호 여주시 : 031-887-3018 대전시 : 042-270-6564	팩스번호 여주시 : 031-887-3009 대전시 : 042-270-654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개발법 제58조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된(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 ○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최초 실시계획 인가 총사업비의 10% 이내) ○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비용에 일부를 부담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2. 시행령	시행령 제75조	○ 추가 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6조	○ 추가설치 비용 범위 -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그 밖의 비용(시행규칙 별표6)
4. 고시·훈령	도시개발 업무지침 제6편 제3장	○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제3자에게 의뢰 가능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및 추가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 또는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가 동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법 제58조 제4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부과요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부과대상)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58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 ○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법 제58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	개발계획 포함시: 100 %	기반시설설치비용×100%	○ 산정기준 - 법 제58조 제1항
	개발계획 미포함 (추가설치)	부담비용=(공사비+조사비+ 설계비+보상비+기타비용)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의 총사업비×10%	○ 산정기준 - 법 제58조 제3항 ○ 부담률 - 시행령 제75조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 시설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부담	설치비용의 3분의 1까지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조사·측량비+설 계비+관리비)}*⅓	○ 산정기준 - 법 제58조 제4항 ○ 부담률 - 시행령 제76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일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미납시 가산금 징수	법 제58조제6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납부일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가산금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58조제7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리, 도시개발법 제58조제5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환급, 도시개발법 제58조제8항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운영보고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통지서 발송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추가 설치 시	법 제58조, 시행령 제75조
납부기한	지정권자가 통지 시 결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62	325,398	54	263,194	8	62,204	80.9
2025	3	20,100	3	20,100	-	-	100
2024	3	41,187	2	26,090	1	15,097	63.3
2023	4	31,295	2	1,565	2	29,730	5
2022	8	63,698	4	48,601	4	15,097	76.3
2021	2	10,980	2	10,980	-	-	100
2020	1	3,130	1	1,570	-	1,560	50.2
2019	6	41,401	6	41,401	-	-	100
2018	10	53,634	10	53,634	-	-	100
2017	3	7,230	2	6,510	1	720	90
2016 이전	22	52,743	22	52,743	-	-	100

주1) : 2022년 15,097 백만원(가산금 440백만원 포함) 체납(평택시)에 따른 납부 촉구 중,
체납에 재산압류 실시 (부동산 12필지, 단위농협계좌 최소 8개, 체비지 2필지)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여주시	10,000	-	
대전시	10,100	76,104	
울산시	-	4,415	
춘천시	-	29,760	
용인시	-	57,144	
고양시	-	34,200	
의왕시	-	500	
수원시	-	28,550	
천안시	-	8,558	
영주시	-	1,200	
홍천군	-	2,663	부과 · 징수 완료
합 계	20,100	243,094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6,090	11,400	20,100	-	
대전시	7,390	10,400	10,100	2,710 (37%)	○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 - 2-5지구 : 10,100백만원 징수 - 2-2지구 : 기반시설부담계획변경에 따른 징수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소
고양시	18,700	1,000	-	-	
여주시	-	-	10,000	-	○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 - 홍문1지구 : 500백만원 징수 - 홍문2지구 : 500백만원 징수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해당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 및 지출 지연 지자체 확인 후 권고·독려 예정

iv) 부담금의 채납현황 :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0,100	-
광역 자치 단체	도안지구 2단계 기반 시설특별회계(대전시)	100	10,100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 자치 단체	일반회계(여주시)	100	10,000	-
기 타		-	-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2.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 도시개발법 제5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84	228	계	184	228
○ 이자수입	1	1	○ 도안대로건설	84	1
○ 공유재산매각수입	-	44	○ 시설비 및 사무 관리비	1	1
○ 기반시설부담금장수	73	101	○ 기금원리금상환	26	25
○ 순세계잉여금	4	33	○ 일반회계전출금	-	-
○ 재정예탁금 회수금	106	49	○ 재정안정 기금예탁	73	200
			○ 기반시설 예비비	-	1

< 일반회계(고양시)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187	-	합 계	187	-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187	-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187	-

< 일반회계(여주시)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	100	합 계	-	-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100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담금 부과 타당성> ○ 원인제공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 달성과자 하므로 적절
	<타 부과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6. 혼잡통행료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혼잡통행료

② 제정연도 : 공포일(1995.12.29.), 시행일(1996.06.30.)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생활교통복지과
	전화번호 : 044-201-3812	팩스번호 : 044-201-5581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부 서 명 : 교통실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2-2133-2234 (대행기관 : 02-2290-6441)	팩스번호 : 02-2133-1048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부 서 명 : 교통실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2-2133-2234 (대행기관 : 02-2290-6441)	팩스번호 : 02-2133-104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 통행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2.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요건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3.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혼잡통행료 부과 시 사회편익을 고려한 부과 금액, 부과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감면방안,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4. 고시·훈령	서울특별시 교통 혼잡지역의 지정 (고시 제1996-291호)	○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서울특별시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
5. 기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 서울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해제, 부과시간대, 부과·감면 및 면제 대상 자동차 종류, 부과액, 징수방법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 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 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5조 등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평일 07~21시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등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회당 2,000원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등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증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 징수 (증가산금 징수 기간은 최대 60개월)	
강제징수절차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 법령
1천cc 미만 경형승용차	50%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등
서울특별시 중구민 소유 자동차	50%	21	
3인이상 탑승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화물자동차, 긴급·장애인·외교용·공무용·보도 용 자동차, 영업용 택시 및 버스, 경형승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 소재 다자녀 가족 소유 개인 자동차	면제	5,312	

⑩ 부담금 변천 현황

연 월 일	변 천 내 용
○ '96.11.11. ○ '01. 4. 1. ○ '02. 9.12. ○ '03. 7.25.	○ 혼잡통행료 징수 개시 ○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확대(6인승 이하 → 10인승 이하) ○ 면제대상 확대 - 장애인자동차 : 승용자동차(2,000CC미만) → 제한없음 ○ 경형승용차 혼잡통행료 50% 감면

연 월 일	변 천 내 용
○ '04. 7. 1.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 '05. 7. 1.	○ 혼잡통행료 토요일 징수 면제
○ '06. 5. 4.	○ 혼잡통행료 교통카드 징수
○ '07. 1.19.	○ 감면 및 면제대상 확대 - 전자태그 부착한 요일제 차량 및 제3종 저공해차량 50% 감면 - 제1,2종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 '14. 1. 9.	○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신설 및 증가산금 부과
○ '20. 7. 9.	○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혼잡통행료 감면혜택 종료
○ '21. 1 .7.	○ 제1,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범위 확대 - 맑은서울스티커 부착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전국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23. 3.17~5.16	○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 '23. 3.17 ~ 4.16 : 외곽방향만 면제 - '23. 4.17 ~ 5.16 : 양방향 면제 ※ '23. 5.17 ~ :징수 재개
○ '24. 1.15.~	○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징수
○ '24. 8.21.~	○ 서울시 소재 다자녀 가족 소유 자동차 부과면제
○ '25. 6. 2.~	○ 중구 거주민 혼잡통행료 50% 감면 시행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 의견 있을 시 제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처리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의견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향후 재판 절차에 따름)
 -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
- (환급방법) 감면 대상 차량 등 혼잡통행료 과오납 사실 확인될 시 환급
 - (관련근거) 부담금기본법 제5조 등

- 환급건수 및 금액

구분	건 수	금 액(백만원)
합계	2,726	6
2025년	914	2
2024년	1,379	3
2023년	433	1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방법 :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사전고지의무 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진입 시 (수시)	법 제35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5일	시행규칙 제3조
납부기한 연장	별도 없음	
분할납부	별도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221,427,799	424,342	220,432,152	420,484	995,647	3,858	99.1
2025	3,114,132	6,473	2,965,652	5,874	148,480	599	90.7
2024	3,649,087	7,574	3,490,073	6,931	159,014	643	91.5
2023	6,365,961	12,872	6,148,570	12,146	217,391	726	94.4
2022	6,470,739	15,247	6,240,606	14,611	230,133	636	95.8
2021	7,802,905	15,588	7,783,914	15,526	18,991	62	99.6
2020	8,056,511	15,838	8,043,813	15,715	12,698	123	99.2
2019	7,820,383	15,322	7,813,805	15,259	6,578	63	99.6
2018	7,837,798	15,193	7,831,300	15,130	6,498	63	99.6
2017	7,989,199	15,271	7,880,884	15,180	108,315	91	99.4
2016 이전	162,321,084	304,964	162,233,535	304,112	87,549	852	99.7

주1) : 혼잡통행료 미납 건(과태료)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일부 차이 있음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5,874	414,610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서울	6,931	6,193	5,874	▲1,057 (▲15.2)	▪ 단방향 징수, 중구민 감면 등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51	51	63	12	○ (체납 사유) 납세 태만 등 ○ (징수 계획) 사전 안내 철저로 납부 독려 및 압류절차 진행

※ 디브레인(세입정보시스템) 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5,874	
광역 자치 단체	지방교통사업특별 회계	100%	5,87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련 계정) :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4,514	16,870	계	15,427	19,816
○ 세외수입	4,618	4,481	○ 버스관련사업	5,415	5,887
- 교통유발부담금	2,443	2,402	○ 택시관련사업	1,639	1,841
- 혼잡통행료	69	59	○ 주차관련사업	834	731
- 기타	2,106	2,020	○ 보행자전거관련사업	843	899
○ 지방교부세	-	-	○ 교통일반사업	3,711	5,103
○ 보조금	622	791	○ 다음년도이월액	206	636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74	1,160	○ 재무활동 등	2,779	4,719

※ '25회계연도는 결산 진행중으로 실적은 잠정치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과 지출은 불일치할 수 있음(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의 차년도 수입으로 처리)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권고	<부과목적의 유효성> ○ 도심 내 승용차 진입 억제 및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부과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부담금이 없어 존치 필요성 인정됨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과 타당성이 있음

7.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교통유발부담금
- ② 제정연도 : 공포일(1990.01.13.), 시행일(1990.07.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생활교통복지과
	전화번호 : 044-201-3812	팩스번호 : 044-201-5581
부과기관	기 관 명 : 각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각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41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경감, 분할납부, 가산금, 제척기간 등을 규정
2.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 면제·경감, 징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교통유발 계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여 대중 교통 개선사업 등 재원 확보 및 교통량 감축 유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1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단, 주택단지 내 시설물은 3천㎡ 이상)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시설물 소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각 층 바닥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0분의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증가산금	체납일 × 0.022% * 가산금+증가산금 = 최대 3%	
강제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 주거용 건물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종교시설 ○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한정) ○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 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인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문화시설 ○ 보훈병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 동·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골프장·회관 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 시설 및 고속국도 부속시설물 중 통행료 징수(관리)시설 및 휴게시설(대기실) ○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10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	미사용 기간의 해당 금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감축활동별 경감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50	

⑩ 부담금 변천 현황

연 월 일	변 천 내 용
◦ 1990. 7.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근거 마련
◦ 1993. 6. 9.	부과대상 지역 및 단위부담금 평당 기준을 1㎡로 전환 (3.3㎡당 1,000원 → 1㎡당 350원)
◦ 1994. 12. 19.	지자체 조례로서 단위부담금에 대한 조정범위 신설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제도 도입
◦ 2002. 7. 27.	부담금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법률로 상향
◦ 2006. 6. 29.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및 경감률 상한 폐지
◦ 2010. 6. 10.	납부기간 조정(9.16일~9.30일 → 10.16일~10.31일)
◦ 2013. 5. 22.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축소
◦ 2014. 1. 14.	단위부담금 인상 및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1㎡당 350원 → 2020년까지 1㎡당 최대 1천원)
◦ 2014. 8. 5.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전
◦ 2014. 8. 6.	대학이 교육을 위탁한 수련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 2015. 2. 16.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한 경우 부담금 경감
◦ 2017. 10. 24.	지자체 조례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 범위 확대
◦ 2022. 11. 15.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정률부과(3%)에서 일할 방식으로 부과체계 개선
◦ 2022. 12. 20.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한 경감 규정 마련 및 데이터센터 유발계수 신설
◦ 2023. 8. 16.	분할납부 가능 금액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하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처리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
- (환급방법)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과오납금 처리
 -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 환급건수 및 금액

구분	건 수	금 액(백만원)
합계	9,872	34,431.76
2025년	3,272	9,010.84
2024년	1,954	8,020.79
2023년	4,646	17,400.13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방법 :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사전고지의무 없음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시행령 제25조
납부기한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령 제21조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납부	시행령 제25조
분할납부	부담금을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 시 : 300만원 초과 금액, 600만원 초과 시 : 그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시행령 제26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6,287,853	6,885,123	5,842,412	6,636,046	445,441	249,077	96.4
2025	358,144	555,620	328,303	527,951	29,841	27,669	95.0
2024	350,846	554,855	319,903	535,068	30,943	19,787	96.4
2023	336,439	542,073	322,414	523,873	14,025	18,200	96.6
2022	319,306	521,170	295,444	507,890	23,862	13,280	97.5
2021	302,651	481,884	278,667	470,221	23,984	11,663	97.6
2020	283,662	340,818	263,552	332,376	20,110	8,442	97.5
2019	268,548	401,598	250,966	389,641	17,582	11,957	97.0
2018	256,300	356,136	241,327	346,781	14,973	9,355	97.4
2017	246,146	315,090	234,994	308,503	11,152	6,587	97.9
2016 이전	3,565,811	2,815,879	3,306,842	2,693,742	258,969	122,137	95.7

주1) : 납부자의 체납 등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합 계	527,951	6,221,011	
서울특별시	240,161	3,097,747	
부산광역시	49,288	565,732	
대구광역시	29,035	312,243	
인천광역시	37,658	346,358	
광주광역시	13,641	174,500	
대전광역시	18,023	252,954	
울산광역시	10,075	106,205	
세종특별자치시	2,374	5,925	
경기도	91,859	926,575	
강원특별자치도	1,987	27,278	
충청북도	4,979	61,795	
충청남도	4,351	83,582	
전북특별자치도	4,449	68,323	
전라남도	2,250	26,562	
경상북도	2,790	47,018	
경상남도	7,863	90,996	
제주특별자치도	7,168	27,218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증감액	(%)	
합 계	536,333	539,812	527,951	-8,382	-1.6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감 등
서울	244,310	244,983	240,161	-4,149	-1.7	
부산	49,999	50,631	49,288	-711	-1.4	
대구	29,724	28,500	29,035	-689	-2.3	
인천	37,645	35,115	37,658	13	0.0	
광주	14,857	14,495	13,641	-1,216	-8.2	
대전	18,257	18,696	18,023	-234	-1.3	
울산	10,152	10,297	10,075	-77	-0.8	
세종	3,062	2,200	2,374	-688	-22.5	
경기	90,404	98,313	91,859	1,455	1.6	
강원	2,066	2,087	1,987	-79	-3.8	
충북	5,008	4,836	4,979	-29	-0.6	
충남	5,049	4,212	4,351	-698	-13.8	
전북	4,569	4,326	4,449	-120	-2.6	
전남	2,331	2,236	2,250	-81	-3.5	
경북	2,966	2,754	2,790	-176	-5.9	
경남	8,229	8,387	7,863	-366	-4.4	
제주	7,705	7,744	7,168	-537	-7.0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3,390	16,197	25,896	9,698 (59.8%)	○ (체납사유) 경기침체, 폐업, 부도 등 ○ (징수 계획)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 디브레인(세입정보시스템) 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527,951	
광역 자치 단체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4.0	285,0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기초 자치 단체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1.0	216,460	
	일반회계	5.0	26,398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4,514	16,870	계	15,427	19,816
○ 세외수입	4,618	4,481	○ 버스관련사업	5,415	5,887
- 교통유발부담금	2,443	2,402	○ 택시관련사업	1,639	1,841
- 혼잡통행료	69	59	○ 주차관련사업	834	731
- 기타	2,106	2,020	○ 보행자전거관련사업	843	899
○ 지방교부세	-	-	○ 교통일반사업	3,711	5,103
○ 보조금	622	791	○ 다음년도이월액	206	636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74	1,160	○ 재무활동 등	2,779	4,719

※ '25회계연도는 결산 진행중으로 실적은 잠정치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과 지출은 불일치할 수 있음(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의 차년도 수입으로 처리)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부산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69	558	계	669	558
○ 경상적세외수입	4	2	○ 공공교통정책 관리	167	116
○ 임시적세외수입	24	-	- 공공교통혁신추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8	496	- 부산 교통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443	482	○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88	65
○ 지방교부세	21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국고보조금등	2	2	-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보전수입등	67	6	- 회전교차로설치		
○ 내부거래	93	52	- 교통정체구간체계 개선		
			○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	181	182
			- 교통시설물 관리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85	142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노인보호구역 개선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 횡단보도 확대 설치		
○ 인력운영비	2	2
○ 내부거래지출	42	47
○ 교통법규 계도단속(버스)	3	3
○ 교통법규 계도단속(택시)	1	1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대구광역시 >

(단위 : 억원, 소숫점 1자리까지 작성)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43.2	768.3	계	599.3	560.5
○ 교통유발부담금	292.1	284.8	○ 교통수요관리		
○ 과징금, 과태료	5.2	4.9	- 교통기초조사	1.6	1.6
○ 국고보조금 등	54.0	89.9	- 교통수요관리 운영	0.1	0.1
○ 순세계잉여금	12.9	34.5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홍보	0.6	0.6
○ 기타회계전입금	351.9	231.9	-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미알리지 지원	2	2
○ 기타	27.1	122.3	○ 교통환경개선		
			- 보행교통 여건 조성	1.4	1.2
			-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6.8	4.8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4.1	3
			-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2.6	2.1
			-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0.9	29.9
			- 교통시설 운영	4.7	4.7
			○ 선진형 대중교통 운영		
			-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1.7	1.4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프로그램 운영	1.2	1.2
			-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9	4.5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84.6	167.2
			-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9.1	7.1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25	23.8
			○ 택시제도 운영		
			- 택시운영개선	0.5	0.2

-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통신비및수수료 자원	71.3	65.7
-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2	1.2
○ 기타	344	238.2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인천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73.4	737.0	계	773.4	737.0
○ 경상적세외수입	83.5	86.0	○ 시민편의 교통행정 구현	351.8	324.3
○ 임시적세외수입	55.5	45.2	○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117.3	130.3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92.8	394.2	○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26.1	25.8
- 과징금	1.1	1.1	○ 선진교통문화 정착	61.2	60.5
- 기타과태료	15.7	16.5	○ 시민중심 참여교통 구현	74.7	58.9
- 교통유발부담금	376.0	376.6	○ 도로환경조성	-	0.2
○ 국고보조금	0.1	-	○ 행정운영경비	5.3	5.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1.5	211.6	○ 재무활동	1.5	36.2
			○ 예비비 등 기타	135.5	95.8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광주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37.9	280	계	337.9	280
○ 경상적세외수입	2.1	2.6	○ 교통여건조성	19.1	7.4
- 이자수입	2.1	2.6	○ 교통시설 확대	2.4	-
○ 임시적세외수입	160.5	162.2	○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3.9	5.2
- 교통유발부담금	135	130	○ 교통정보센터운영 등	40.8	38.3
- 과징금및과태료등	3.4	3.4	○ 주차장기반조성	67.2	45.1
- 보조금 반환수입	-	16.5	○ 어린이보호구역등 개선	52.9	59.5
- 기타수입	14.8	5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2.7	42.4
- 지난연도수입	7.3	7.3	○ 선진형교통시설 확대	5	2.4
○ 예약금및예수금	-	1	○ 보전지출 등	72.4	38.3
○ 보전수입등	79.5	35.4	○ 징수교부금지원	41.5	41.4
○ 내부거래	95.8	78.8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대전광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50.0	323.4	계	450.0	323.4
○ 교통유발부담금	185.6	183.8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5.6	54.9
○ 유료주차장 수탁료	9.2	8.9	○ 교통시설물 관리	94.3	84.0
○ 이자수입 등	0.7	1.0	-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29.0	29.7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0.1	9.9	- 교통구획선 도색	23.4	18.8
○ 과징금	0.6	0.7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7.2	14.5
○ 과태료	31.6	27.1	- 교통관리센터 운영	12.7	13.2
- 버스전용차로 위반	31.5	27.0	-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	4.7	4.6
- 여객운수법 위반	0.1	0.1	- 교통관제 CCTV 관리	2.0	2.0
○ 특별교부세	-	3.2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스템 운영	0.7	0.7
○ 국고보조금	18.7	6.0	- 교통안전시설 관리	2.5	0.5
○ 내부거래	193.5	82.8	- 도로조명 원격점검 체계 구축	2.1	-
- 순세계잉여금	5.6	19.7	○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43.5	38.7
- 전년도이월금	23.1	19.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7.2	20.0
- 기타회계전입금	164.8	43.6	-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	12.3	10.0
			- 보호구역 유지관리	4.0	5.5
			-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	3.2
			○ ITS 운영	66.4	46.1
			- ITS시스템 유지관리	16.5	17.1
			- ITS상황실 운영	17.0	16.8
			- 버스정보 기반시설 구축	12.5	10.9
			-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2.3	1.3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8.1	-
			○ 도로구조 개선	30.2	25.2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1.4	12.2
			-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	2.8	4.8
			- 위험도로 구조개선	8.6	4.0
			- 교차로 구조개선	4.6	2.9
			-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	1.3
			- 회전교차로 설치	2.8	-
			○ 주차환경 조성	76.7	19.9
			- 주차시설 운영관리	6.4	9.9
			-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조성	-	4.0
			- 주차환경 개선	2.4	2.2
			-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61.8	2.0
			-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1.3	0.7
			- 불법 주정차 단속	0.7	0.6
			- 주차정보시스템 관리	4.1	0.5
			○ 자율주행 노선버스 실증	21.2	17.8
			○ 버스전용차로 단속실 운영	5.7	5.0
			○ 도시교통정비 등	2.6	4.2
			○ 승용차요일제 운영	4.5	0.5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450.0	323.4	계	450.0	323.4
			○ 기준인건비 등	6.5	5.6
			○ 재무활동	42.8	21.5
			- 채무상환	2.0	7.2
			- 다음연도이월액 등	39.4	14.3
			-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4	-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교통계정) : 울산광역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564	608	계	421	470
○ 교통유발부담금	101	101	○ 교통시설환경개선	148	148
○ 과징금·과태료	2	2	○ 교통정보관리	91	72
○ 지방교부세	27	111	○ 대중교통선진화	30	31
○ 보조금	0	60	○ 철도인프라구축	10	31
○ 순세계잉여금	10	21	○ 다음연도이월액	125	171
○ 전년도이월금	130	125	○ 기타	17	2
○ 전입금	294	180			
○ 기타	0	8			

<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종특별자치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544.3	98.5	계	544.3	98.5
○ 경상적세외수입	15.3	14	○ 주차질서확립	7.1	8
○ 임시적세외수입	9	0.5	○ 교통안전시설 확충	16.8	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	53	○ 버스운영	418.3	-
- 교통유발부담금	30	24	○ 교통관리운영	34.5	1
○ 국고보조금등	97.6	-	○ 교통환경 개선	42.6	30.5
○ 보전수입등	24.2	-	○ 재무활동	1.4	10
○ 내부거래	338.2	7	○ 행정운영경비	0.5	-
			○ 다음연도 이월액 등	23.1	41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수원시 >

(단위 : 억원, 소숫점 1자리까지 작성)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81.4	628.3	계	656.9	551.3
◦ 경상적 세외수입	26.6	34.5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3	1.6
공유재산 임대료	12	20.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구청)	2.1	2.6
기타사용료	5.8	6.8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71.7	71.5
징수교부금 수입	3.1	1.3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17.0	0.9
공공예금 이자수입	5.7	6.1	설치사업		
◦ 임시적 세외수입	230.2	250.0	예비비 운영	0	0
불용품매각대금	0.0	0.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지원	2.3	3.0
위탁비반환수입	0.0	0.1	부적합 자전거도로 개선	2.6	0
그외수입	17.9	17.8	PM&자전거도로 안전개선	1.7	0
지난년도수입	39.4	55.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0	3.3
과징금	0.8	0.3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0	1.7
변상금	0	0.1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	3.9	4.1
부담금	171.8	176.0	노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공사	3.4	1.9
범칙금	0.3	0.0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2.6	9.7
◦ 국고보조금 등	65.9	33.6	자전거&PM 안전하고 편리한	5.6	5.4
특별교부세	11.9	2.0	이용환경 조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0	10.4	만석공원 자전거 연습장 조성	1.3	0
국고보조금	12.4	9.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0.8	0.9
시·도비보조금 등	41.6	11.6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화단 보도 설치	0	5.0
◦ 내부거래	258.7	310.2	도시교통 수요관리 및 계획	0	2.9
순세계잉여금	132.2	114.6	교통공원 운영	0	0.3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6	186.3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0	3.9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5.8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	0	0
예탁금이자수입	5.9	9.3	교통개선관리	0	0
			자전거&PM안전하고 편리한	0	0.1
			이용환경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0	1.2
			수립 용역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0	1.2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0	0
			친환경교통 이용 붐 조성	0	7.4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0	0.5
			내부거래지출	125.1	38.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21.3	0
			관용차량 유지관리	0	0
			철도교통시설 기능 확충	0.3	0.6
			환승센터 유지관리	20.6	27.3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시설보수	0	0.3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1.3	1.7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구청)	19.3	22.6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도비)	11.1	10.6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국비)	24.4	7.5
			버스차고지 시설개선(도비)	4.6	0
			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	0	0.1

교통시설 조성	3.0	4.9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도비)	4.9	1.6
곡선동-권산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0	0.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0	3.3
버스정류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0	0.9
택시산업 선진화	0	0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0.1	0.2
택시키퍼 조성	3.9	5.1
녹색교통회관 운영	15.0	16.3
택시운수종사자 서비스마인드 향상	0	0.5
광역교통개선 지원	8.4	17.7
출퇴근버스(전세) 운행 지원	0	5.5
사전좌석예약버스 운행	0	3.7
스마트 안전서비스통신비 지원	0	3.7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을 위한 경영분석	0	0.2
마을버스 재정지원	0	6.0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추진	0	1.0
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0	0.3
무단방치차량 처리	0.6	0.2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0	55.5
그린파크 지정 및 확충	57.9	0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국비)	0.3	9.7
ITS아태총회 추진	21.1	8.9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공사	0	0.9
팔달구 관내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0	0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6.7	28.2
보전지출	3.3	13.2
다음연도 이월액 등	187.4	124.9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용인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07.1	535.1	계	386.6	357.4
○ 경상적세외수입	12.2	15.2	○ 교통안전시설개선	303.4	223.9
- 징수교부금	4.2	6.5	- 보호구역 개선사업		117.7
- 이자수입	0.1	4.1	- 교통환경개선		19
-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5	3.8	- 교통지도 지원		0.4
- 사업수입	1.4	0.8	- 시설개선		0.4
○ 임시적세외수입	11.7	2.9	- 시설물 유지관리		86.4
- 그외수입	0.8	0.3	○ 교통안전강화		4.3
- 지난년도수입	2.7	2.6	○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44
- 기타	8.2		○ 교통계 획수립		0.4

○ 전년도이월사업비	44.5	166.6	○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57.5	1.9
○ 시도비보조금 등	41.9	82.9	- 버스공용차고지관리		1.9
○ 보전수입 등	25.3	19.2	○ 재무활동	0.7	1.2
○ 내부거래	193.8	168.8	○ 행정운영경비	12.9	39.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7.7	79.5	○ 다음연도 이월액	12.1	42
- 교통유발부담금	76.1	76.8			
- 과징금	1.4	2.7			
- 기타과태료		0.3			
- 범칙금	0.2	0.1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고양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409	1,187	계	1,184	1,198
○ 경상적세외수입	92	59	○ 도로교통개선	58	85
- 징수교부금	75	42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운영 및 관리	32	62
- 기타이자수입	4	4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관리	8	8
-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0	8	- 기타	18	15
- 경상적수입	3	5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143	95
○ 임시적세외수입	276	202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32	29
- 교통유발부담금	154	149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25	31
- 그외수입	15	9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38	13
- 보조금	10	8	- 기타	48	15
- 일반부담금	13	-	○ 대중교통 환경개선	13	14
- 지난연도 수입	4	4	- 교통유발부담금관리	5	5
- 기타	80	32	- 기타	8	9
○ 국고보조금 등	216	209	○ 기타(교통일반사업)	18	17
○ 보전수입 등	128	132	○ 선진버스교통정책 추진	787	915
○ 내부거래	697	585	- 시내버스 재정지원	230	244
			- 마을버스 재정지원	85	120
			-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7	211
			-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	128	108
			- 기타	247	232

○ 기타(버스관련사업)	26	18
○ 재무활동	27	19
○ 행정운영경비	-	-
○ 예비비등일반예산	-	2
○ 다음연도 이월액 등	112	3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화성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소계	396	312	소계	120	106.9
○ 경상적세외수입	3	0.8	○ 교통일반사업	47	41.3
- 징수교부금	2	0.1	○ 공영버스차고지 관리	1	0.7
- 기타이자수입	1	0.7	○ 재무활동	72	64.9
○ 임시적세외수입	277	207.7			
- 교통유발부담금	63	64.4			
- 과징금	1	2.4			
- 그 외 수입	1	0.2			
- 보조금	4	7.6			
- 지난연도 수입	16	30.4			
- 기타	192	102.7			
○ 내부거래	116	103.5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성남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305	777.2	계	1,305	777.2
○ 세외수입	479	482.8	○ 첨단교통정보육성	51	52.2
- 교통유발부담금	100	99.8	- 불법주정차시스템 통합구축	8	0
○ 지방교부세	-	14.0	- 성남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사업	43	52.2
○ 조정교부금등	-	11.4	○ 교통 편의시설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168.2	131
○ 보조금	99	58.3	○ 교통질서확립	71.4	69.4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7	210.7	-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 질서 봉사단체 지원	17.2	16.5
			- 불법주정차관리	50.3	48.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9	4
			○ 교통사업지원	168.4	110

- 버스이용 활성화	154	92
- 택시운영개선	14.2	17.4
- 화물운송질서 확립	1	1
○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436	393
○ 재무활동	392.1	3
○ 인력운영비	17.9	18.6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부천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504	428.6	계	504	428.2
○ 경상적세외수입	211.4	209	○ 교통유발부담금운영	0.9	0.9
- 재산임대수입	6	8	○ 편리한 교통체계운영	205.2	194.7
- 주차요금수입	138.3	126	○ 교통체계 안전사업	10.9	10.0
- 기타사용료	0	3	○ 교통체계 개선사업	11.7	25.8
- 충전소사업수입	61	65	○ 스마트한 교통체계 운영	2.3	0
- 징수교부금 수입	4.2	6	○ 편리한 운송질서 조성	1.5	7.8
- 이자수입	1.9	1	○ 운수사업 지원	36.3	23.7
○ 그외수입	14	12	○ 공영주차장사업	197.3	136.6
○ 부과금 등	112	103.6	- 공영주차장 확충	64.1	11.6
- 과징금	0.6	0.6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2.2	32.9
- 과태료	55.1	51	- 공영주차장 운영지원	91.0	92.1
- 교통유발부담금	56.3	52	○ 주차문화개선	8.6	8.3
○ 지난연도 수입	17.2	15	○ 행정운영경비	16.3	18.8
○ 특별조정교부금	0	26	○ 보전지출	13	1.6
○ 도비보조금	6.4	6			
○ 보전수입 등	140	39			
○ 내부거래	3	18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남양주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161.3	150.1	계	37.2	25.6
○ 경상적 수입	2.7	5.3	○ 불법 주정차단속	18.6	21.4
- 수수료 수입	0.2	0.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4	1.6
- 징수교부금수입	0.5	0.7	○ 자동차 관리	17.2	2.6
- 이자수입	1.9	4.3			
○ 임시적세외수입	5.6	11.8			
- 보조금반환수입	4.7	9.8			
- 기타수입	0.9	1.9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등	62.4	67.7			
- 과징금	0.6	0.3			

- 과태료	49.9	53.8
- 부담금	11.2	13.2
- 범칙금	0.6	0.3
○ 지난 연도 수입	30.4	24.9
○ 보전수입등	59.9	40.4
- 잉여금	59.9	40.4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안산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39.3	286.1	계	239	286.1
○ 경상적세외수입	4.9	2	○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	126	152
- 기타이자수입	4.9	2	○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보수		
○ 임시적세외수입	55	59	○ 교차로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52	50	○ 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 과징금	0.9	3	○ 횡단보도설치사업		
- 그 외 수입	0.1	1.3	○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안산장상 광역교통)		
- 지난 연도 수입	2	1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 기타이자수입		3.7	○ 교통환경 개선사업		
○ 국고보조금 등	1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 보전수입 등	278.4	225.1	○ 성포광장 교통환경 개선사업		
			○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관련법정계획(도시교통정비, 교통약자, 교통안전) 수립		
			○ 보행환경개선사업		
			○ 교통정보센터운영(교특)		
			○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		
			○ 신호과속단속CCTV 설치 및 개선		
			○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 및 개선		
			○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		
			○ ITS 및 BIS 이설공사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 대중교통 시설관리	52	48
			- 승강기 설치		
			- 버스정류소 개선		
			- 대중교통 지도단속		
			- 여객화물자동차 지도단속		
			○ 행정운영경비	40	63.1
			○ 다음연도이월액 등	21	2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평택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527	392	합 계	527	392
○ 주차요금	46	61	○ 주차환경 개선사업		
○ 교통유발부담금	13	11.8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82	64
○ 징수교부금	0.27	1.1	- 공영주차장 조성	10	40
○ 과태료	100	84.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0.7	0.9
- 주정차위반과태료	-	73	○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 과징금	0.74	0.9	- 평택시 도시교통상비 중개획수립	4	2.9
○ 순세계잉여금	70	110	-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	0.4	8
○ 기타	296.99	122.3	○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유지관리	15	14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	23	23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19	8
			- 주정차단속반 운영	5	5
			○ 기타(예비비 등)	367.9	226.2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안양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87.9	422.7	계	387.9	422.7
○ 세외수입	164.8	177.1	○ 도로	82.6	110.8
○ 지방교부세 등	0.9	9	- 도로시설 개선	22.5	50.6
○ 조정교부금 등	0	13.1	- 도로시설 유지관리	60.1	60.2
○ 보조금	29.1	11.6	○ 대중교통 물류	305.3	311.9
○ 보전수입등맞내부거래	193.1	211.9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212.6	213.0
			· 교통환경 조성	44.0	45.7
			· 주차환경 조성	162.5	161.5
			· 부설주차장 개방	6.0	5.8
			- 첨단교통 환경	32.6	-
			- 시민중심의 교통환경	13.4	18.4
			· 대중교통 편의시설	8.1	12.6
			· 사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3.2	3.5
			· 전인보관소	2.1	2.3

-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교통(신규)	-	41.6
- 주차질서 확립	14.6	14.0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8	2.3
· 교통질서 계도	12.7	11.7
- 재무활동	32.1	24.9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시흥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131	218.1	합 계	145.7	149.7
◦ 징수교부금수입	2	1.1	◦ 교통유발부담금조사 및 부과관리	2.2	2.3
◦ 공공예금이자수입	4.2	0.9	◦ 교통종합계획수립용역	-	4.2
◦ 일반 부담금	29.9	29.9	◦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	-	2.9
◦ 과징금	0.6	0.7	◦ 행정운영경비	13	14.8
◦ 과태료(주정차 외)	0.8	0.1	◦ 그 외	130.5	125.5
◦ 그 외 수입	-	0.1			
◦ 지난 연도 수입	13.4	17.9			
◦ 예탁금원금반환	-	20			
◦ 예탁금이자수입	-	3.3			
◦ 시도비보조금 등	9.4	26.6			
◦ 순세계잉여금	47.4	55.1			
◦ 기타회계전입금	-	-			
◦ 전년도이월사업비	23.3	62.4			

< 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파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6.4	37.2	계	26.4	37.2
◦ 부담금 수입	14.4	15	◦ 교통유발부담금	0.5	0.5
◦ 시도비보조금 등	0.3	7.9	◦ 교통환경 개선사업	20.7	36.7
◦ 보전수입 등	1	1	◦ 다음연도 이월액 등	5.2	
◦ 내부거래	10.7	13.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김포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소 계	240	143.77	소 계	194.35	119.78
○ 경상적세외수입	3.6	3.12	○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환경조성	13.25	13.7
- 기타사용료	0.9	0.02	- 지도단속 시설확충	8.8	10.6
- 징수교부금	2.7	1.38	- 지도단속 업무지원	4	3.1
- 이자수입		1.72	- 견인차고지 운영	0.45	0
○ 임시적세외수입		0.13	○ 교통제한시설 확충 및 관리	0.46	3.21
- 그외수입		0.13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0.27	0.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3	59.39	- 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0.19	0.19
- 차량관련과태료	52.7	45.57	- 교통 신호등 설치		2.52
- 교통유발부담금	15.6	13.82	○ 인력운영비	0.45	0.46
○ 지난연도 수입	11.9	12.77	○ 재무활동	110.9	42.09
○ 국고보조금등	0.1		○ 예비비	1.59	1.28
○ 순세계잉여금	56.8	40.49	○ 다음연도 이월액	67.7	59.04
○ 전년도 이월금	99.3	27.7			
○ 내부거래		0.3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의정부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67.0	267.8	계	267.0	267.8
○ 경상적 세외수입	74.7	76.5	○ 위반차량 관리	8.3	7.5
- 사용료 수입	72.0	74.5	- 주차관리별관유지관리	0.8	0.4
- 이자수입	2.7	2.0	- 불법주정차 단속	4.7	4.7
○ 임시적 세외수입	0.4	6.8	- 과태료 부과징수	2.1	2.1
- 기타수입	0.4	6.8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 단속	0.7	0.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7	57.9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63.7	60.8
- 과징금 등	0.4	0.1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5.8	11.3
- 과태료	42.8	40.1	- 공영주차장 운영	47.9	49.5
- 부담금	17.5	17.7	○ 주차관리 시설확충	63.1	86.2
○ 지난 연도 수입	12.1	11.4	-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	6.6	6.5
○ 시도비보조금 등	11	0.7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유지관리	2.1	1.7

○ 보전수입 등	108.1	114.5	- 내집안주차장 설치	0	0
- 잉여금	72.1	82.9	- 주차장 임차사업	7.0	8.2
- 전년도 이월금	36.0	31.6	-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	1.2	1.7
			- 공영주차장건설사업	45.2	58.5
			-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	0.4	7.8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0.6	1.8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0.6	0.5
			○ 교통환경 개선	0	1
			○ 행정운영경비	6.6	6.7
			○ 전출금	10.4	10
			○ 예비비등 집행잔액	73.3	5.9
			○ 보조금 반납금	0.1	0.3
			○ 다음연도 이월액	40.9	88.9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광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소계	63.8	11.3	소계	61.5	69.2
○ 경상적세외수입	5.4	1.6	○ 주차차단속지원	10.0	7.7
- 징수교부금	5.1	1.4	○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0.2	0.3
- 기타이자수입	0.3	0.2	○ 차등교통체계 구축사업	14.2	-
○ 임시적세외수입	7.3	9.7	○ 예탁금	37.1	61.2
- 교통유발부담금	3.8	4.1			
- 그외수입	-	1.4			
- 지난년도 및 기타	3.5	4.2			
○ 보전수입 등	34.1	8.0			
○ 내부거래	17.0	50.7			

< 지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기도 하남시>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37.7	110.9	계	137.7	110.9
○ 교통유발부담금	27.8	27.2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21.8	22.7

◦ 경상적세외수입	19.9	23.7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5.1	16.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19.9	20.6	◦ 교통일반부담금 부과·징수	0.9	0.9
◦ 기타	70.1	39.4	◦ 버스공영차고지 (상산곡동, BRT) 유지관리	7.8	10.5
			◦ 버스·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	9.5	9.9
			◦ 인력운영비(교통 사업특별회계)	0.6	0.6
			◦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고도화사업	2.0	2.0
			◦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4.0	3.7
			◦ 기간제근로자(주차장법 위반차량 현장조사) 보수	0.2	0.2
			◦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	0	2.2
			◦ 버스공영차고지(상산 곡동, BRT) 유지관리	0.6	0.2
			◦ 예비비 및 기타	75.2	41.2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경기도 광명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소계	495	593	소계	495	593
◦ 경상적세외수입	2	2	◦ 교통일반사업	113	36
- 징수교부금	1	1	-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113	36
- 이자수입	1	1	◦ 버스일반사업	269	284
- 기타사업수입		1	- 운수업체 재정 지원	219	234
◦ 임시적세외수입	5	66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50	50
- 보조금 반환수입	3	64	◦ 재무활동	112	272
- 그외수입	1	1	◦ 행정운영경비	1	1
- 지난년도수입	1	1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	23			
- 과징금	1	17			
- 차량관련과태료	1	5			
- 기타과태료	1	1			
- 교통유발부담금	15	17			
- 범칙금	1				
◦ 국고보조금 등	30	59			
◦ 시도비보조금등	25	55			

○ 보전수입 등	99	71
○ 내부거래	315	300

< 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군포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26	246	계	226	246
○ 경상적세외수입	103	107	○ 행정운영경비	13	14
- 주차요금수입	41	50	○ 예비비등일반예산	2	2
- 징수교부금		2	○ 예탁금	88	111
-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1	11	○ 공영차고지 관리	62.5	57
- 기타사업수입	51	44	○ 개방주차장운영지원	1	1
○ 임시적세외수입	31	28	○ 견인차사무소운영	2	2
- 주차차위반과태료	14	16	○ 공영주차장 운영	50	53
- 기타수입	7	-	○ 이의신청실 운영	4.5	3
- 지난년도수입	-	4	○ 주차시설유지관리	3	3
- 임시적수입	4	-			
- 교통유발부담금	6	8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2	111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경기도 오산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소계	132	128	소계	87	87
○ 경상적세외수입	9	7	○ 교통일반사업	52	3
- 징수교부금	1	2	○ 버스관련사업	30	41
- 이자수입	3	1	○ 재무활동	-	-
-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	1	○ 행정운영경비	5	4
- 수수료수입	4	3	○ 예비비등일반예산	-	-
○ 임시적세외수입	123	18	○ 다음연도이월액 등	48	40
- 교통유발부담금	7	5	○ 공영주차장 운영	50	53
- 과징금	1	1	○ 이의신청실 운영	4.5	3
- 그외수입	5	2	○ 주차시설유지관리	3	3
- 지난년도수입	10	10			
○ 보전수입 등	100	48			
○ 내부거래	-	55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경기도 구리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소계	45	67	소계	27	71
○ 임시적세외수입	17		○ 교통일반사업	8	27
○ 교통유발부담금	7	8	○ 버스관련사업	19	25
○ 국고보조금등	8	7	○ 택시관련사업		19
○ 보전수입 등	12	1			
○ 내부거래	1	51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경기도 의왕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합 계	202.6	209	합 계	202.6	209
○ 경상적세외수입	20.9	19.8	○ 주차관리 및 확충	66.99	108.4
- 주차요금수입	17	17.6	- 공영주차장관리	11.2	15.4
- 징수교부금수입	1.7	0.8	-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	3.8	8.9
- 공공예금이자수입	2.2	1.2	- 교통유발부담금		0.2
○ 지방행정제재부담금	16.6	15.3	-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0.1	0.1
- 과태료	10	8.3	- 모락조성사업	1.2	0.3
- 교통유발부담금	6.6	7	- 고천문화공원	20.9	78.1
○ 지난년도수입	1.5	2.6	- 고천지구상업지역 공영주차장	29.79	
- 지난년도수입	1.5	2.6	- 백운호수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5
○ 시군조정교부금		4.5	- 백운호수초등학교 승하차구역		0.4
-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5	○ 예비비	135.7	100.6
○ 보전수입등	163.6	166.8			
- 순세계잉여금	31	28.3			
- 전년도이월사업비	132.6	138.5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강원도 춘천시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114.5	83.2	계	33.7	28.1
○ 임시적세외수입	3	-	○ 교통안전시설 운영	2.3	2.3
- 지난년도 수입	3	-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18.4	1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7	20.5	○ 모범운전자회 지원	0.2	0.2
- 과징금	0.2	0.4	○ 행정운영경비	12.8	10.6
- 과태료	12.5	15.1			
- 교통유발부담금	5	5			
○ 지난연도 수입	-	3.2			
○ 보전수입등	64.2	6.5			
- 잉여금	63.9	5.9			
- 이월금	0.3	0.6			
○ 내부거래	29.6	5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련 계정) : 강원도 원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61	127.8	계	161	87.7
○ 경상적세외수입	-	1.7	○ 교통안전시설물관리	11.2	10.1
○ 임시적세외수입	-	2.7	○ 회전교차로설치	1.9	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	39.2	○ 교차로 체계개선	2.1	3.4
- 교통유발부담금	10	9.5	○ 회전교차로 설치	4	5.3
○ 지난연도 수입	-	13	○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	0.3	0.3
○ 국고보조금등	30	0.2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0.5	0.5
○ 시도비보조금등	20	12.9	○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0.7	0.7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	58.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8.1	15
○ 기타수입	5	-	○ 노인보호구역 개선	1.2	2.3
			○ 샘마루초, 섬강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6	1.4
			○ 관설초, 단관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3.9	-
			○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2	2.9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전환사업)	2.4	2.8
			○ 회전교차로 야간 교통환경개선	0.8	0.5
			○ 우산초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	1.6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1.3	1.2
			○ 교통안전사업 운영	1	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0.4	0.5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0.4	0.2
◦ 교통정보센터운영	11	11
◦ 보행자안내시스템 구축	1.5	0.6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	0.8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2	0.5
◦ 첨단교통체계(ITS) 구축운영	3	1.9
◦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1	1
◦ 교통신호등 관리	14	14.1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2.5	-
◦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3	-
◦ 대중교통편의증진	0.3	-
◦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관리	0.3	-
◦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지원	1.1	-
◦ 승강장 신설 및 보수	9.5	-
◦ 문막버스중간정류소 운영	0.2	-
◦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	0.1	-
◦ 박사선손실보상금 지원	16.5	-
◦ 택시총량제 운영	6.4	-
◦ 브랜드택시 지원	9.2	-
◦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지원	5.2	-
◦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2.4	-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3.8	-
◦ 행정운영경비	12	8.1
- 보조금 반환	4	0.4
- 인력운영비	6.9	7.1
- 기본경비	1.1	0.6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강원도 강릉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9.3	101.9	계	51.7	53.6
○ 경상적세외수입	-	0.5	○ 대중교통개선사업추진	1	1.1
- 이자수입	-	0.5	○ 교통세입 채납액 관리	1.5	1.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13.2	16.3	○ 차선도색	26	23
- 과징금	0.2	1.3	○ 신호등 설치 및 관리	6.3	7.8
- 과태료	8	10	○ 동명초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	0.2	-
- 부담금	5	5	○ 불법주정차 관리	7.1	8
○ 지난연도 수입	-	2.5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통 특별관리	1	-
- 지난연도 수입	-	2.5	○ 승강장 설치 및 관리	5.3	8.8
○ 시도비보조금등	0.1	-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3	3.3
- 시도비보조금등	0.1	-			
○ 보전수입등	31.5	47.6			
- 잉여금	31.5	47.6			
○ 내부거래	54.5	35			
- 전입금	54.5	35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충청북도 청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12	411	계	151	144
○ 교통유발부담금	45	45	○ 터미널관리	2.5	2.3
○ 과태료 등	102	173	○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관리	55.9	58.2
○ 잡수입	1	22	○ 인건비	24.5	22.2
○ 전입금	117	126	○ 기본경비	1	1.1
○ 임대료	17	16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8	2.9
○ 기타	30	29	○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추진	17.4	15.7
			○ 지능형 교통 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28.2	11.4
			○ 교통안전	1.8	1.4
			○ 과속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2.6	2.5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1.5	1.5

◦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 설치	1.9	1.3
◦ 국도25호선 교통 체계 개선	-	16.5
◦ 과속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2.6	3.1
◦ 횡단보도 보행안전 시설 설치	0	1.9
◦ 국도 감속신호 구축사업	3.8	-
◦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인프라구축	1.5	-
◦ 기타	3	2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충청북도 충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9.3	65.6	계	7.3	7.9
◦ 이자수입	0.2	0.2	◦ 주정차 위반 단속	2.6	3.1
◦ 부담금 수입	2.6	3.3	◦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2.1	1.4
- 교통유발부담금	2.6	3.3	-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	0.7	0.5
◦ 과태료	7.4	7.8	- 주정차 위반단속 CCTV (고정식) 교체(성능개선)	1.4	0.9
- 주정차 위반 과태료	7.4	7.8	◦ 주차단속요원	2.6	3.4
◦ 지난년도 수입	2.0	1.6	-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4	3.1
- 주정차 과태료	2.0	1.6	-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0.2	0.3
◦ 잉여금	2.8	4.7			
- 순세계잉여금	2.8	4.7			
◦ 전입금	27.3	48.0			
-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	9.9	10.6			
- 주차환경 개선사업	11.2	36.8			
- 공영주차장 방수정비 등 주차장 관리사업	6.2	0			
- 공무원 퇴직금	0	0.6			
◦ 시·도비보조금등	7.0	0			
- 교현2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7.0	0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련 계정) : 충청북도 제천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1.7	22.8	계	21.7	22.8
○ 경상적세외수입	0.2	0.2	○ 도시교통사업관리	16.6	18.7
- 이자수입	0.2	0.2	- 교통시설물관리	12.5	14.5
○ 임시적세외수입	2	1.5	- 불법주정차지도단속	3.5	4.1
○ 지방행정제재·	5.3	5.4	-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0.1	0.1
부과금	4.4	4.5	-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0.5	-
- 과태료	0.9	0.9	체계 구축사업		
- 부담금			○ 인력운영비	4.7	3.9
○ 국고보조금	0.4	-	○ 예비비	0.4	0.2
○ 시·도비보조금등	0.1	-			
○ 보전수입등	5.3	3.4			
○ 내부거래	8.4	12.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관련 계정) : 충청북도 제천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4.7	103.6	계	34.7	103.6
○ 경상적세외수입	4.0	3.6	○ 도시교통사업관리	34.7	103.6
- 사용료수입	4.0	3.6	- 공영주차장 관리	14.5	33.1
○ 시·도비보조금등	10.0	9.8	- 남천동주차타워조성사업	-	50.7
○ 내부거래	20.7	90.2	- 시민주차타워확장건립	0.2	-
			-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20	19.6
			-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	0.2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충청남도 천안시 >

(단위 : 억원, 소숫점 1자리까지 작성)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22	328	계	322	328
◦ 주차요금수입	9	7.5	◦ 주차장관련 사업	61	55
◦ 교통유발부담금	36	36.4	◦ 교통시설사업	44	39
◦ 과징금및과태료	66	55.4	◦ 교통정보사업	48	57
◦ 지난연도수입	17	15	◦ 교통행정 및 지도사업	93	55
◦ 이자 및 기타수입	1	0.4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1	9
◦ 보조금 등	47	45.8	◦ 다음년도 이월액	69	91
◦ 내부거래	-	95.7	◦ 순세계잉여금	3	-
◦ 보전수입 등	30	2.8	◦ 보조금반납금	1	1
◦ 전년도 이월금	116	69	◦ 기타	2	21
			- 교통유발부담금 추산사업		
			- 무보험 및 방치차량 관리사업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관리사업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충청남도 아산시 >

(단위 : 억원, 소숫점 1자리까지 작성)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7.5	55.3	계	37.5	55.3
◦ 교통유발부담금	7.2	7.8	◦ 교통시설사업	6.2	25.5
◦ 범칙금 및 과태료	4.1	11.3	- 교통안전 시설 운영관리	6.2	25.5
◦ 지난연도수입	6.1	6.6	◦ 다음년도 이월액	15	15
◦ 보조금 등	0	0	◦ 순세계잉여금	8.7	13.7
◦ 보전수입 등	20.1	14.6	◦ 보조금반납금	0	0
◦ 전년도 이월금	0	15	◦ 기타	7.6	1.1
			- 교통유발부담금 추산사업		
			- 무보험 및 방치차량 관리사업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관리사업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전라북도 전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42	221	계	288	180
○ 경상적세외수입	4	6	○ 교통안전시설 확충	33	34.5
- 사업수입 등	4	6	○ 교통시스템 강화	15	11
○ 임시적세외수입	44	0.2	○ 차량등록관리	7	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8	106	○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7	7
- 부담금	35	36	○ 행정운영경비	58	55.9
- 과징금 및 과태료	73	70	○ 재무활동	168	3.6
○ 국고보조금등	5	5	○ 다음연도 이월액 등	-	62
○ 보전수입 등	181	103.8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전라북도 군산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9.3	33.35	계	29.7	38.6
○ 경상적세외수입	2	1.4	○ 지능형교통체계구축	15.9	19.1
- 주차요금 수입	1.9	1.3	○ 불법주정차단속	7.6	7.8
- 기타사용료	0.05	-	- 이월	0.9	-
- 공공예금이자수입	0.05	0.05	○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5.2	5.0
○ 임시적세외수입	13.2	24.2	- 이월	1.5	0.4
- 부담금	2.0	3.0	○ 교통행정 민원처리	0.3	0.3
- 과징금	0.1	0.4	○ 행정운영경비	0.7	0.4
- 과태료	5.8	17.0	- 인력운영비	0.7	0.4
- 지난년도수입	5.3	3.8	○ 재무활동	-	6.0
○ 보조금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	6.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	7.75			
- 순세계잉여금	7.6	6.8			
- 전년도이월사업비	5.7	-			
- 예탁금이자수입	0.8	0.95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련 계정) : 전라북도 목포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20.0	112.8	계	98.0	113.8
○ 경상적세외수입	3.0	3.8	○ 교통행정및지도사업	59.0	20.1
- 수수료수입	1.1	0.9	○ 교통안전시설관리	-	15.1
- 이자수입	1.9	2.4	○ 교통안전시설물확충	-	42.1
- 혼잡통행료	-	-	○ 인력운영비	22.0	20.7
○ 임시적세외수입	-	3.8	○ 기본경비	2.0	1.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0	29.7	○ 대중교통정책및운영지원	2.0	1.3
- 주정차과태료	26.0	19.0	○ 대중교통시설관리	10.0	10.6
- 자동차관련과태료	10.2	5.2	○ 자동차등록금납부지원	-	1.8
- 교통유발부담금	5.8	5.5	○ 보전지출	-	0.2
○ 지난연도수입	-	12.7	○ 다음연도이월액등	3.0	-
○ 국고보조금등	15.0	14.3			
○ 보전수입등	28.0	16.0			
○ 내부거래	32.0	33.0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전라남도 여수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0.1	9.7	계	10.1	9.7
○ 교통유발부담금	10.1	9.7	○ 교통시설관리	10.1	9.7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전라남도 순천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72.7	60.1	계	61.6	53.8
○ 경상적세외수입	-	-	○ 교통안전관리	25.1	18.8
○ 임시적세외수입	13.5	-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3.1	16.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8.2	36.9	-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1.7	1.9
- 교통유발부담금	7.4	7.3	- 밤샘주차 지도 단속	0.3	0.2
○ 지난연도 수입	-	13.9	○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22.6	18.7
○ 보전수입등	21	9.3	-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6	4.4

○ 내부거래	10	-	- 교통관제센터 운영	15.8	13.6
			- 해룡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0.7	0.7
			○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13.9	16.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상북도 포항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16.7	255.2	계	315.7	255.2
○ 부담금 수입	9.7	9.6	○ 도시교통사업	296.7	106.3
- 교통유발부담금	9.7	9.6	- 도시교통관리	3	3
○ 기타교통관련	276	214.6	- 교통시설개선	52	44
- 과징금,과태료	16	16	- 교통사고찾은곳개선	10	10
- 지난년도수입	9	9	- 교통정보센터운영	11	13
- 국고보조금	1	0.1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3	3
- 시도비보조금등	58	68	-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	4	2.4
- 잉여금	18	39.9	-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1	1
- 내부거래	174	81.6	- 주차질서확립	10	11.6
			- 행정운영경비	6	6
			- 기타	196.7	12.3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상북도 경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52.5	92.6	계	39.3	55.1
○ 부담금 수입	5.4	5.0	○ 시설물 정비	11.0	14.6
- 교통유발부담금	5.4	5.0	- 교통시설물 설치및 정비	4.8	4.9
○ 과징금,과태료 수입	18.4	16.2	- 사면내 차선 및 문자도색	5.8	3.8
- 과징금	0.1	0.2	- APEC 대비 노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	5.4
- 과태료	17.9	15.4	- 단지내도로 교통 안전 실태 조사	0.4	0.5
- 범칙금	0.4	0.6	○ 자동차 관리	3.3	3.3
○ 내부거래	-	44.3	- 불법자동차 처리	0.7	0.6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44.3	- 자동차 등록	1.1	1.0
○ 지난연도 수입	9.4	9.7	- 차량관련 세무업무	1.5	1.7
- 지난연도 수입	9.4	9.7	○ 일반운영비	1.4	1.5
○ 보전수입등	18.4	17.0	- 인력운영비	1.4	1.2

- 순세계잉여금	14.2	14.9	- 기본경비	-	0.3
- 이월사업비	4.2	2.1	○ 내부거래	4.9	11.8
○ 기타수입	0.9	0.4	- 예탁금원금예탁	4.9	11.8
- 기타수입	0.9	0.4	○ 다음연도 이월	18.7	23.9
			- 다음연도 이월	18.7	23.9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상북도 안동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5	78	계	57	69.9
○ 부담금 수입	3	3.1	○ 교통약자콜센터 관리	16	16.3
- 교통유발부담금	3	3.1	○ 지도단속인력운영비	5.6	4.5
○ 임시적세외수입	4.7	0.4	○ 교통안전관리및차량측	6.6	5.7
○ 과징금·과태료	10.9	12.5	○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	28.8	37.4
○ 국고보조금	1.4	2.3	○ 인력운영비		6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	59.7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구미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04	92.5	계	68.6	60
○ 교통유발부담금	7.9	7.3	○ 교통질서확립	14.8	12.7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3	26	- 공공운영비(과태료 고지서 송부 및 단속 카메라 회선 사용료 등)	6.5	5.2
○ 전입금	26.2	26.2	- 사무관리비(과태료 고지서 제작, 홍보물 제작 등)	8.3	7.5
○ 기타			○ 교통시설물설치관리	22.1	20
- 공공예금 이자수입					
- 전년도 이월사업비	46.9	33	○ 신호기설치공사	4.7	3.9
- 지난년도 수입 등			○ 차선도색공사	11.1	9.9
			○ 교통체계개선	5.2	5.4
			- 자승형교통체계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1	4.1

- 교통CCTV 등 회선 사용료, 전기료	1.1	0.9
- 교통체계개선 용역	0	0.4
○ 주정차단속	8	8.1
- 주차단속CCTV설치 등	2	2.1
- 주차단속 시스템 및 카메라 유지보수 용역	2	1.2
- 인력운영비(불법 주정차업무 추진, 시간선택임가제 급여 및 보험금 등)	4	4.8
○ 내부거래	2.7	0
- 예탁금	2.7	0

<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경상남도 창원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81.7	521.4	계	481.7	521.4
○ 공유재산임대료	0.9	1.7	○ 선진교통활성화	2.2	8.2
○ 혼잡통행료	3		○ 대중교통육성지원	88.7	56.3
○ 공영차고지임대료	14.9	16.4	○ 교통행정개선	17.7	56.6
○ 이자수입	2	1.8	○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4.1	24.4
○ 그외수입	3.7	2.7	○ 주차장관리	120	77.4
○ 사용료수입(주차요금등)	47	55.2	○ 공영주차장 조성	53	76.6
○ 과징금,과태료	148.7	137.5	○ 화물교통 환경개선	35	8.9
○ 부담금	48	43.7	○ 교통시설관리	38	43
○ 국고보조금	16.2	45.1	○ 교통사업예비비	35	25
○ 시도비보조금	17.5	38.2	○ 대중교통시설관리(버스)	32	111
○ 기타회계전입금	86.9	86.3	○ 행정운영경비		
○ 보전수입	35	47.3	- 인력운영비	3	3
○ 특별교부세	3.3	4	○ 다음연도이월액	33	31
○ 기타	54.6	41.5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계정) : 경상남도 진주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02.1	336.4	계	302.1	336.4
◦ 공영주차장임대료	5.5	4.1	◦ 선진교통확립		
◦ 공영차고지임대료	0.7	0.7	- 선진교통활성화	7	7.2
◦ 이자수입	1.9	1.4	- 대중교통육성지원	88.7	92.7
◦ 그외수입	0.2	0.2	- 교통행정개선	31.2	36
◦ 사용료수입(주차요금등)	2.7	60	-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4.1	24.4
◦ 과징금, 과태료	34	30	- 주차장관리	132.6	156
◦ 부담금	48	7.3	- 주차질서확립	9.5	9
◦ 국고보조금	24.6	26.8	◦ 행정운영경비		
◦ 시도비보조금	20	60.2	- 인력운영비	7.4	9.8
◦ 기타회계전입금	71.7	132.5	- 기본경비	1.6	1.3
◦ 기타	92.8	13.2			

※ 경상남도 김해시·거제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준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준치 권고	<부과목적의 유효성> ◦ 도심 내 승용차 진입 억제 및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부과 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부담금이 없어 준치 필요성 인정됨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과 타당성이 있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교통유발 부담금	'25	○교통유발계수를 입지 등에 따라 세분화	<추진 중 / 추진 완료> ○ 입지별 교통유발계수 차등방 안에 대한 연구 추진 - 연구결과에 따라 입지별 교 통유발계수 차등화 * (연구) '26.3~7월, (의견수렴) 8월, (시행규칙 개정) 10월~

8.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0.01.13.)**, 시행일**(1991.01.14.)**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산업입지정책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관명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관명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실수요자, 토지수요자 등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용의 범위 내에서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음 ○ 부담금 산정방식 및 감면
2. 시행령	시행령 제31조	○ 공공시설의 범위 · 건설비용, 부담기준, 징수방법 · 절차, 시설물별 감면기준 등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	○ 부담금 납부통지서
4. 고시·훈령		○
5. 기타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비용에 충당	법 제33조 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산업단지에 있는 존치 시설물 (기존 공장 또는 건축물) 소유자	존치시설물 소유자	법 제33조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text{시설부담금} = \text{단가} \times \text{존치면적}$ $\text{*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times \text{용도가중치}(1.0 \sim 2.6) \times \text{민간부담률}(20\%) \times \text{지역감면율}(50\% \pm 10\%)$	법 제33조 제3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	법 제35조
증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행정청인 사업시행자)	법 제35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공공업무시설, 공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학교 ○ 에너지·통신서비스·급수·배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 종교시설, 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 등	부담금 100% 면제	-	시행령 제31조제8항

※ '18. 6.12.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부담금 감면체계(20~50%)는 폐지, 기존 제도에서 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면제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부과대상> ○ '90.1.13 ○ '12.6.1 <감액근거> ○ '06.4.20 ○ '07.10.4 ○ '18.12.11.	<부과대상> ○ 존치시설물 소유자, 분양받은 자 ○ 존치시설물 소유자(법률 개정) <감면근거> ○ 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시행령 개정) ○ 시설물별로 부담금 감액(시행령 개정) ○ 부담금 면제대상(시행령 개정)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첨부하여 이의신청 하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및 부담금운용보고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의견을 듣고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이후 준치시설물 소유자 의견수렴 후	법 제33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법 제35조
납부기한 연장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법 제35조
분할납부	사업시행자가 분할여부 결정	법 제35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84	23,401	80	22,716	4	480	97.1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1	1,875	1	-1,875 ^{주1)}	-
2022	2	1,959	-	-	2	1,959 ^{주2)}	-
2021 (대전도시공사)	2 (‘20재징수)	227 (‘20재징수)	1	80	1	147 ^{주3)}	35.2
2020	6	1,167	4	940	2	227	80.5
2019	-	-	2	184	2	-184	-
2018	3	679	5	865	2	-186	127.4
2017	5	9,736	1	9,139	4	597	93.9
2016 이전	66	9,633	66	9,633	-	-	100

주1): 경기도 용인일반산단(1,875백만원) : 징수완료(‘23년)

주2): 경기도 용인일반산단(1,875백만원), 파주산단(84백만원) : 부과(‘22년), 미징수

주3) 대전시 소송결과 강제(압류) 경매 완료되었으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시설부담금 147백만원은 징수 불가(법률자문결과 특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세종특별자치시	-	8,542	
김포시	-	446	
평택시	-	1,107	
평택도시공사	-	3,807	
화성도시공사	-	281	
전주시	-	398	
횡성군	-	13	
대구도시공사	-	259	
토지주택공사	-	5,181	
의왕산단PFV(주)	-	45	
대전도시공사	-	80	
용인테크노밸리	-	1,875	
기타	-	682	'07이전으로 징수기관 파악불가
합 계	-	22,716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	-	-	-	'25년 실적 없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현행법령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이 있으며 해당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담금 제도 활용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납부기한(1개월), 독촉장 발부, 가산금(3%), 체납처분 절차 적용 등

- 연도별 징수율 차이는 부담금 분납 및 소송 등으로 징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산단 개발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	
합 계	1,875	-	-	-	○(체납 사유) ○(징수 계획)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기 타*	100%	-	법 제33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비, 공사비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해당없음

※ 산단 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기 설치한 시설의 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존치시설 소유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사후 징수하는 것으로,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은 별도로 없으며 법정 사용목적에 맞는지 관리할 필요성 낮음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9. 과밀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과밀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4.01.07.), 시행일 (1994.04.08.)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수도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659	팩스번호 : 044-201-5562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부 서 명 :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02-2133-8335	팩스번호 : 02-768-8917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부 서 명 :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02-2133-8335	팩스번호 : 02-768-8917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5조	과밀억제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신·증축, 용도변경)되는 인구집중유발 시설(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
2. 시행령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복합건축물임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등 과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법 제1조, 제16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25천㎡이상 업무용건축물 ○ 15천㎡이상 판매용건축물 ○ 25천㎡이상 복합용건축물 ○ 1천㎡이상 공공청사	서울특별시에서 부과대상 건축물을 건축(신·증축 및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표준건축비	건축비의 5~10%	<업무용·판매용·복합건축물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표준건축비 x 0.05 + 기준면적 초과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 기초공제면적 : 5천㎡ ** 기준면적 : 건축물별 부과기준면적 2)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 초과인 경우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나.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1) '기준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 (기준면적-기준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표준건축비 x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2) '기준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이 '기준면적' 초과인 경우 : (전체면적-기준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 용도변경의 경우 '기준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 적용 <공공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2

		가. 신축의 경우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나.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3%+월0.75%, 60개월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21조(부칙 제15조 및 제18조)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내지 제19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	시행령 제1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50	45,253백만원	"
○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직장어린이집,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시설	100	272,590백만원	"
○ 수도권만을 관할 공공법인(지점을 포함)의 사무소	100	-	"
○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에서 건축하는 연구소	100	-	"
○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	100	1백만원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9.01.16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제5, 6호 “산업단지 등에 건축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에 과밀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 2017.01.17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개정하여 과밀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요율을 국세징수법 제21조(체납된 금액의 3% 등)를 준용하도록 규정
○ 2017.06.20	하고,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방식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1.17) 및 시행령 개정(6.20)
○ 2023.12.1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개정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시기를 건축물의 허가 신고일에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신청일로 변경하여 부과 절차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12.19)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준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5건 (금액) 2,481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180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운용보고서 제출,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https://stat.molit.go.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대상,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미납 시 조치사항, 부담금 감면 요건·방법, 의견제출방법 및 불복절차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납입고지서 발부, (임시)사용승인신청일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건축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	법 제15조
납부기한	건축물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부과일로부터 6개월)	"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분할납부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2,266	3,630,904	1,373	2,804,569	893	826,335	77.2
2025	45	-9,334	26	63,892	19	-73,227	-684.5
2024	68	62,926	40	199,317	28	-136,391	316.7
2023	74	192,721	26	114,351	48	78,370	59.3
2022	72	147,090	28	38,295	44	108,795	26.0
2021	102	325,059	35	69,152	67	255,907	21.3
2020	57	90,716	21	132,567	36	-41,851	146.1
2019	50	204,485	34	48,146	16	156,339	23.5
2018	70	63,512	45	79,910	25	-16,398	118.8
2017	83	162,084	51	211,900	32	-49,816	130.7
2016 이전	1,645	2,391,645	1,023	1,847,039	578	544,606	77.2

주1) : 당초 과밀부담금은 건축허가일에 부과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부과일과 납부기한간 큰폭의 시차가 주요 원인, '24.1.20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에 부과하도록 시행령 개정('23.12.19)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63,892	2,740,677	
합 계	63,892	2,740,67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99,317	73,934	63,892	-135,425	'24년에는 마곡 마이스단지로부터 1,471억원 징수, '25년에는 대규모 사업 준공 실적 없음
서울시	199,317	73,934	63,892	-135,425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부담금 부과 시기와 징수 시기(사용허가 시)의 시차 단축을 위해 부과시기를 당초 건축허가 시에서 (임시)사용허가 신청 시로 변경('24.1.20. 시행)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국가)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	-	-	-	-
(광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
(광역)도시재생 특별회계(기금)	-	-	-	-	-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63,892	
국 가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50	31,946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
광역 자치 단체	균형발전특별회계	25	15,97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기금)	25	15,97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3.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등	○ 지방분권균형발전 법 제78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2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97	319	계	997	319
○ 부담금 수입	997	319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사업	997	319

< 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98	160	계	498	160
○ 부담금 수입	498	160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사업	498	160

< 도시재생특별회계(도시재생기금) 서울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98	160	계	498	160
○ 부담금 수입	498	160	○ 도시재생 지원 등	498	16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권고	<부과목적의 유효성> ○ 수도권 지역과 이 외의 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과밀화 수준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과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부과목적상 가장 내용이 가까운 교통유발부담금과도 부과대상, 부과기준, 법적 사용용도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기에 유사중복성 우려가 매우 낮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서울의 인구집중도를 완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들은 성격상 중장기적인 사업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77.12.31.), 시행일(1978.04.01.)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 044-201-4870	팩스번호 : 044-201-5587
부과기관	기 관 명 : 보험회사 등(불입)	부 서 명 : 불입
	전화번호 : 불입참조	팩스번호 : 불입
징수기관	기 관 명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 서 명 : 기획조정부
	전화번호 : 02-6103-9217	팩스번호 : 02-6101-160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 법에 의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
2. 시행령	시행령 제30조, 31조, 32조	○ 부담금의 상제 부과대상, 부과요율, 징수·납부 방법 등 세부적 사항 규정 ○ 부담금의 추가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책임보험의 보험료 1,000분의 5 납부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 15조	○ 부담금액 및 납부방법 규정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재원 조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39조의11, 제39조의1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보험회사등이 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 할 때 징수하여 납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 제32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0.5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0.5%	시행령 제31조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의 예 준용	법 제38조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85. 7.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1.54%
○ 1989. 7.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1.72%
○ 1995. 10.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0.26%
○ 1996. 8.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0.72%
○ 1997. 7.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2.60%
○ 1998. 9.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2.17%
○ 1999. 8.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4.4%
○ 2006. 5.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3.4%
○ 2009. 1.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1.0%
○ 2024. 7.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0.5%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는 이의가 있을 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결산보고서 국회에 제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등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됨을 고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자동차보험 계약 시, 청약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고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자동차책임보험(공제) 계약 체결 시	법 제37조
납부기한	수납일 익월 말일까지 부담금 수납 관리기관으로 납부	시행령 제31조 및 32조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	1,993,793	-	1,992,531	-	1,262	99.9
2025	-	14,213	-	14,120	-	90	99.3
2024	-	22,178	-	23,726	-	△1,548	107.0
2023	-	32,025	-	32,051	-	△26	100.1
2022	-	33,408	-	33,625	-	△217	100.6
2021	-	34,370	-	34,435	-	△65	100.2
2020	-	33,972	-	33,739	-	233	99.3
2019	-	32,357	-	32,228	-	129	99.6
2018	-	32,148	-	32,216	-	△68	100.2
2017	-	32,916	-	32,986	-	△70	100.2
2016 이전	-	1,726,206	-	1,723,405	-	2,801	99.8

주1」 : '17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로 부담금 부과·징수기간 변경

- (부과) 당해연도 1월분~12월분 / (징수) 전년도 12월분~당해연도 11월분

주2」 : 부담금은 책임보험 등의 계약 체결 시 납부하고, 보험 계약의 해지·취소·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반환하여 정확한 건수 파악이 불가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메 리즈화재	530	10,056	
한 화 손 보	356	9,356	
롯데손보	87	4,197	
예별손보(구 MG)	3	456	
흥 국 화 재	89	1,919	
삼 성 화 재	3,129	54,003	
현 대 해 상	2,242	43,930	
K B 손 보	1,802	29,135	
D B 손 보	2,687	47,879	
AXA 손 보	362	9,501	
하 나 손 보	139	3,837	
한화(구 캐롯)	73	1,928	
U S A A	16	170	
일반택시공제	464	8,733	
개인택시공제	412	5,472	
화 물 공 제	529	7,504	
버 스 공 제	451	6,839	
전세버스공제	215	2,313	
렌 터 카 공 제	495	7,779	
배달서비스공제	38	1	'24년 신설
합 계	14,120	255,006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편입('17년) 이후 실적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23,726	22,485	14,120	△9,606 (△40.5)	○ 부담금요율 인하 및 책임보험료 감소에 따라 수입 감소 - 요율 인하 적용* 시기 차이 및 총 책임보험료** 감소 * ('24.1~6월) 1.0% →('24.7월 이후) 0.5% ** '24년 대비 총 책임보험료 1,086억원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14,120	
국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00.0	14,120	법 제39조의 11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2.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4.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5.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 7.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보장사업과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1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지원 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3. 부담금의 수납·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675	2,554	계	2,675	2,554
○ 자체수입	613	426	○ 사업비	586	553
- 법정부담금	237	141	- 경상지출	586	553
- 기타재산이자수입	101	34			
- 기타경상이전수입	274	251	○ 기금운영비	3	3
○ 정부내부수입	1,032	1,541	○ 정부내부지출	1,500	1,500
- 기금예탁원금회수	1,000	1,500	- 공자기금예탁	1,500	1,500
- 기금예탁이자수입	32	41			
○ 여유자금회수	1,030	586	○ 여유자금운용	586	497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자동차 이용자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자동차 이용자 집단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낮은 부담으로 높은 공익적 편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안전망 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높음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중복성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든 공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11. 소음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소음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2.12.08.), 시행일(1993.06.09.)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공항운영과
	전화번호 : 044-201-4345	팩스번호 : 044-201-5635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울지방항공청	부 서 명 : 김포공항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전화번호 : 02-2660-5714	팩스번호 : 02-2662-0403
	기 관 명 : 부산지방항공청	부 서 명 : 관리국
	전화번호 : 051-974-2124	팩스번호 : 051-971-2632
	기 관 명 : 제주지방항공청	부 서 명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64-797-1722	팩스번호 : 064-797-1739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지방항공청	부 서 명 : 김포공항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전화번호 : 02-2660-5714	팩스번호 : 02-2662-0403
	기 관 명 : 부산지방항공청	부 서 명 : 관리국
	전화번호 : 051-974-2124	팩스번호 : 051-971-2632
	기 관 명 : 제주지방항공청	부 서 명 :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 064-797-1722	팩스번호 : 064-797-173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소음부담금은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 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3.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과 환율 적용 기준
4. 고시·훈령	-	-
5. 기타	「공항시설법」 제32조	○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정해진 사용료(착륙료 등)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 납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음대책사업의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부과요건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 부과대상 : 해당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운송사업자 등	○ 항공운송사업자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착륙료 및 항공기 소음등급	1등급 : 착륙료의 25% 2등급 : 착륙료의 20% 3등급 : 착륙료의 17% 4등급 : 착륙료의 14% 5등급 : 착륙료의 10%	착륙료×부담률	「공항소음방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채납된 부담금의 1% + 0.022%/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 채납처분의 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국세징수법」 제24조

⑨ 부담금의 감면(서울지방항공청)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원)	관련 법령
○ 시범운항	100%	3,761,390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규정’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 외교상 목적	100%	3,806,390	
○ 군용기	100%	599,600	
○ 기상악화	100%	476,85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09. 04. 01.	○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및 부과등급 신설 - 2등급 : 25% → 30% - 3등급 : 20% → 25% - 4등급 : 15% → 20% - 5등급 : 10% → 15% - 6등급 : (신설) 10%
○ '10. 09. 23.	○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법령 변경 - 항공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1. 11. 01.	○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부과 - 5등급 : 15% → 20% - 6등급 : 10% → 15%
○ '14. 11. 21.	○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3%) 부과 ○ 소음등급(6→5등급 체계) 및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1등급 : 30% → 25% - 2등급 : 30% → 20% - 3등급 : 25% → 17% - 4등급 : 20% → 14% - 5등급 : 15% → 10% - 6등급 : 10% ⇒ 6등급 폐지
○ '17. 12. 26.	○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고정액(3%)에서 일괄 계산으로 변경
○ '23. 10. 18.	- 체납시 가산금 : (당초) 체납된 부담금의 3% → (변경) 체납된 부담금의 1% + 0.022%/일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제6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 및 제7항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서향청) : (건수) 13 (금액) 552,500원
- 2023년 환급액(서향청) : (건수) 73 (금액) 3,187,50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사항 없음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과대상·근거 및 이의제기 절차, 납부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공문 및 고지서로 월 1회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납부기한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785,503	217,045	1,784,495	216,813	1,008	232	99.9%
2025	143,905	8,100	143,905	8,100	-	-	100.0%
2024	207,585	7,356	207,585	7,356	-	-	100.0%
2023	204,120	6,515	203,140	6,508	980	7	99.9%
2022	204,510	4,495	204,510	4,495	-	-	100.0%
2021	190,511	3,893	190,511	3,893	-	-	100.0%
2020	157,834	4,479	157,834	4,464	-	15	99.7%
2019	229,900	9,710	229,900	9,710	-	-	100.0%
2018	223,875	9,338	223,875	9,331	-	7	99.9%
2017	219,023	9,813	219,023	9,808	-	5	99.9%
2016 이전	4,240	153,346	4,212	153,148	28	198	99.9%

주1) : (부항청)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팬퍼시픽항공(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미수납('19~'20년)
 (제항청) 재정악화(영남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등으로 미수납 발생 ('20년)
 (서항청) 영남에어, 하이에어, 플리아강원 경영악화 등으로 미수납('13~'23년),
 하이에어, 플리아강원 '26.3월 고지서 재발송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지방항공청	3,116	22,931	
부산지방항공청	2,649	158,571	
제주지방항공청	2,335	27,211	
합계	8,100	208,713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7,356		13,200	8,100	800 (11.1%)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중인 상황으로 이에 따라 소음부담금 금액도 소폭증가
소음 부담금	서항청	3,020	13,200	3,116	122	
	부항청	2,144		2,649	535	
	제항청	2,192		2,335	143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1 (서항청)	0	0	0	○ (체납사유) 기업파산 ○ (징수계획) 일부 기업 회생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8,100	
국가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10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의 소음대책사업비로 전액 사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제1호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계		
○ 소음부담금 수입 - 소음부담금	7,356	8,100	○ 공항소음대책 - 민간경상보조	6,374	7,356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항공기 소유자에게 금전적 비용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부과금으로 존치 타당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소음 부담금	'25년	○ 본 부담금 준치 권고 ○ 추가 부담금^{2배 증가}의 실효성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소음대책사업 본인 자금으로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에 대한 일부 감면 전환 검토 필요	<추진 완료> ○ 항공사의 저소음 운항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체계 개편 및 추가적인 재원조달,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징수방안 검토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 반영하여 제4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 계획('26~'30) 수립 완료

12. 재건축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재건축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6.05.24.), 시행일(2006.09.2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주택정비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386	팩스번호 : 044-201-5532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군·구	부 서 명 : 주택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군·구	부 서 명 : 주택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제3조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
2. 시행령	제6조, 제8조, 제9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종료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산정, 감경에 관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고지 및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4. 고시·훈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3.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4호)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조합(조합원), 신탁업자(위탁자), 공공시행자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재건축부담금 = 초과이익 × 부과율 ·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 개발 비용)	10% ~ 50%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조합원수 +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 조합원수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조합원수 + 2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조합원수 + 2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발이익환수 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증가산금	월 0.75%(최대 60개월)	
연체료	채납시 가산금, 증가산금 부과	
강제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준용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함	10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1세대1주택자로서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감경	10%~70%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8. 6. 5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중 '09.6.30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2012.12.18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
○ 2014.12.31	○ '17.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
○ 2017. 3.21	○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도 납부대상에 추가, 신용 카드 납부 허용 등
○ 2020. 8.18	○ 광역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 상향,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시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활용 등
○ 2021. 7.20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 등
○ 2022. 2. 3	○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상가의 가격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상가 조합원의 부담 경감
○ 2023.12.26	○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3천만원→8천만원) 및 부과기간 조정,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경(최대 70%) 및 고령자(60세이상) 납부유예 등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 (고지 전 심사 청구)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 가능(법 제16조 제1항)
 - (심사결과 통지)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 제3항)
 - (심의 및 재산정) 고지 전 심사 내용이 주택가액의 산정(제9조)이나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의 산정(제10조)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 가능함(법 제16조 제4항)

- (행정심판)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함(법 제18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용(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해당없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대상사업명, 부과기준, 부과금액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 * 감경 시에는 8개월 이내, 고지전 심사 청구의 경우 결과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납부기한 연장	3년의 범위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분할납부	5년의 범위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	2,256	-	1,734	-	522	76.9
2025	-	-	-	10	-	△10	-
2024	-	-	-	89	-	△89	-
2023	-	-	-	99	-	△99	-
2022	-	-	-	144	-	△144	-
2021	-	-	-	233	-	△233	-
2020	-	-	-	1,059	-	△1,059	-
2019	-	-	-	-	-	-	-
2018	-	-	-	-	-	-	-
2017	-	-	-	-	-	-	-
2016 이전	5	2,256	3	100	2	2,156	4.4

* 주1) : '12년 부과분(용산구)이 소송으로 인하여 징수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종료에 따라 조합원 측에서 '20년부터 분할납부('20~'25) 중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1,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	90	
합계	10	1,724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89	24,880	10	△79	- 재건축사업단지의 준공지연
재건축 부담금	89	24,880	10	△79	- 조합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부과 절차 지연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 * 2014헌바381 위헌 소원('14.9.3.청구, '19.12.27. 합헌 결정)
 -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20.8.18 개정)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21.7.20 개정)
 -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상가의 가격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상가 조합원의 부담 경감('22.2.3 개정)
 - 재건축부담금 징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주택가격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 마련('22.9)
 - *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시점 조정,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배려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3천만원→8천만원) 및 부과구간 조정,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경(최대70%) 및 고령자(60세이상) 납부유예 등 부담금을
현실화('23.12.26.공포, '24.3.27. 시행)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22	-	-	-	○ (체납 사유) ○ (징수계획) 재산조회 및 압류 등 대응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0	
국 가	주택도시기금	50%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광역 자치 단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	3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기초 자치 단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	2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 주택개량 지원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등 2.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 임대주택 매입, 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4. 도시재생특별회계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 보조 또는 융자 비용 - 그 밖에 지방조례로 정한 필요한 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주택법」 제8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주택도시기금: 국가>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0.44	0.05	계	0.45	0.62
○ 재건축부담금	0.44	0.05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0.45	0.62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적 영역에서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화와 사회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목적은 유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정률(25%)를 환수하는 제도이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조합원의 평균 초과이익에 대해 누진율(10~50%)로 환수하는 제도이므로 부과대상, 요율 구조 등이 상이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경제여건과 시장 여건에 따라 정책 수단으로 운용범위와 요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평가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1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8.3.28), 시행일(2008.3.28)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부 서 명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07	팩스번호 : 044-201-5569
부과기관	기 관 명 : 지자체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지자체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절차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및 체납처분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2.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0의11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준 ○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기준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
3.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8	○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산정방법 ○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납부고지서·대장·물납신청서·연기신청서·독촉
4. 고시·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부담계획 등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5. 기타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자체별 용지환산계수, 세입·세출의 규정, 부과·징수등 사무의 위임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건축행위를 하는 자	국토계획법 제67~69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과 용지 비용 합산액에 건축연면적과 민간사업자 부담률 곱한 금액	20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times (건축연면적-200) \times \text{부담률}$ $*용지비용 = \text{지역별용지환산계수} \times \text{기반시설유발계수} \times \text{개별공시지가 부담구역별평균}$	국토계획법 제68조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법령
가산금	-	
증가산금	-	
강제징수 절차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 납부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 압류	국토계획법 제69조 제3항,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제19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법령
◦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비용		국토계획법 제68조제6항·제7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당비용의 10%		광역교통법 제11조
◦ 원인자부담금	해당부담금		도로법 제91조 제1·2항
◦ 과밀부담금	해당부담금의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원인자부담금	해당부담금		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	해당부담금	6,026,520	하수도법 제61조
◦ 학교용지부담금	해당부담금		학교용지법 제5조
◦ 폐기물비용부담금	해당부담금		자원재활용법 제19조
◦ 공공시설분담금	해당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건축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리며, 이의가 있을 경우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0

- 2025년 환급액 : 1건(건수) 6,026,520원(금액)
- 2024년 환급액 : 1건(건수) 3,693,900원(금액)
- 2023년 환급액 : 2건(건수) 6,473,956,470원(금액)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 시·군의회에 예산결산서 제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건축물, 부과예정금액, 부과기준,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기반시설설치 비용 예정통지서 송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3)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납부기한	◦ 건축허가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납부기한 연장	◦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8
분할납부	◦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8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444	52,450	1,426	29,296	20	23,154	55.7
2025	32	327	31	264	1	63	80.7
2024	54	502	53	495	1	7	98.6
2023	48	3,685	47	445	1	3,240	12.1
2022	93	8,022	94	8,013	1	9	99.9
2021	137	1,316	134	1,296	3	20	98.5
2020	86	665	88	673	-2	-8	101.2
2019	92	649	90	644	2	5	99.2
2018	98	20,452	97	647	1	19,805	3.2
2017	195	1,637	193	12,024	2	-10,387	734.5
2016이전	609	15,195	599	4,795	10	10,400	31.6

주1) : 부담금 부과는 건축허가시점이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까지로 부과년도와 징수년도간 차이가 발생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울산 남구	-	164	
울산 울주군	0.4	186	
전남 여수시	-	10,393	
부산 강서구	262	10,747	
경남 거제시	1	7,400	
경남 김해시	0.7	125	
경남 사천시	-	18	
합계	264.1	29,033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495.2	595	264.1	△231.1 (△46.7%)	
울산 남구	19.2	45	0	△19.2 (△100%)	건축행위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감소
울산 울주군	16	20	0.4	△15.6 (△97.5%)	건축행위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감소
부산 강서구	375	470	262	△113 (△30.1%)	건축행위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감소
경남 김해시	1	10	0.7	△0.3 (△30%)	건축행위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감소
경남 거제시	84	50	1	△83 (△98.8%)	건축행위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감소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64	64	◦ (체납 사유) 행정착오로 인한 미부과 및 미납부 ◦ (징수 계획) 부과완료 및 징수 독촉 예정

※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64.1	국토계획법 제70조
광역 자치 단체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99.2	262	
기초 자치 단체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0.8	2.1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 계획 수립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 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국토계획법 제70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1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6.58	10.9	계	15.22	11.82
○ 부담금 수입	4.9	2.62	○ 기반시설설치사업	14.43	5.65
			○ 예비비 등	0.22	6.1
○ 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 등	11.67	8.28	○ 통합재정기탁	0.57	0.07

다. 부담금운용 존치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건축행위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므로 적정
	<타 부과금과의 중복성> ○ 다른 법령에 따른 부담금과 이중부과되지 않도록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개별평가항목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14.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7.04.20.), 시행일(2007.07.2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번호 : 044-201-3413	팩스번호 : 044-201-5661
부과기관	기관명 :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관명 :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 시행자는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음 ○ 시행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2.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 존치대상 건축물의 존치요건을 구체화 ○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부과방법 및 면제 대상을 정함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훈령)	○ 건축물의 존치요건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구 내 존치하게 될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하게 되는 건축물 등이 택지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고 존치요건을 충족한 경우	○ 존치건축물 등의 소유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존치건축물 등의 부지 중 존치면적과 취득공급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게 함	20	○ 시설부담금 단가(원/㎡)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도가중치×부담률×지역 감면율(50%) ○ 시설부담금(원) : 시설부담금단가×[존치 부지면적(㎡)+취득공급부 지면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별표1]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서” 체결시 체납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운용 중	
증가산금	○ 관련기준 없음	
연체료	○ 관련기준 없음	
강제징수절차	○ 관련기준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학교, 공공청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내 설치된 시설물 ○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공고일 전에 한 경우	면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별표1]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9.28	○ 부담금 산출식에 따라 산출 *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가능
○ 2009.4.27	○ 고시 시행일(2009.4.27)부터 2년간은 산업시설의 존치부담금 감면률은 100분의 75로 함
○ 2009.11.20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법의 변경 * $\text{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times \text{용도가중치} \times \text{부담률}(20\%) \times \text{지역감면율}(50\%)$ ○ 존치부담금 감면조항 수정 * 감면 → 면제, 일부조항 삭제
○ 2010.06.17	○ 존치부담금 명칭변경 → 시설부담금
○ 2012.08.10	○ 재검토기한 연장(2012.08.19 → 2015.08.10)
○ 2013.04.23	○ 명칭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 2015.08. 7	○ 재검토기한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 2017.12. 5	○ 시설부담금의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2021.04.20.	○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를 적은 서면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별표1)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 방법 :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제4항, '21.4월 개정)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법적근거, 납부금액, 납부시기, 산출근거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서면고지, 존치약정 계약체결 전(존치협의를)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별표1]
납부기한	○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	상동
납부기한 연장	○ 일정기간동안 연장하여 분할 납부 가능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 시	상동
분할납부	○ 분할 납부 가능	상동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 계	71	13,157	70	12,030	1	1,127	91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	-	-	-	-
2022	1	56	1	56	-	-	100
2021	2	125	2	384	-	-259	307
2020	-	-	-	-	-	-	-
2019	-	-	3	6	-3	-6	-
2018	5	344	8	655	-3	-311	190
2017	5	631	4	641	1	-10	102
2016 이전	58	12,001	52	10,288	6	1,713	593

주1) : (차이 발생사유) 택지개발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또는 민원으로 인한 납부 지연 등으로 부과 시점과 징수 시점에 차이가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LH	-	12,030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계획	실적(B)		
합 계	0	-	-	-	-
택지개발 사업	0	-	-	-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해당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택지개발지구내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가 드물어 부과 실효성이 낮고 실적도 저조하므로 정비차원에서 폐지 추진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국 가	○○기금	-	-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에게 100% 귀속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특별회계	-	-	
	일반회계	-	-	
광역 자치 단체	○○기금	-	-	
	○○특별회계	-	-	
	일반회계	-	-	
기초 자치 단체	○○기금	-	-	
	○○특별회계	-	-	
	일반회계	-	-	
기 타		100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 부담금 수입	-	-	○ 공공시설설치비 (도로,교통,상하수도등)	-	-

다. 부담금 존치 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본 부담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등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음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국 토 교통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이의 신청에 대한 환급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 부담금 존치 평가결과에 따라 부담금 유지

1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20.04.07.), 시행일(2021.04.08.)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교통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816	팩스번호 : 044-201-5581
부과기관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교통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816	팩스번호 : 044-201-5581
징수기관	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서명 : 모빌리티연구처
	전화번호 : 054-459-7268	팩스번호 : 0502-384-5456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5	-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부터 제20조의1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산정기준, 납부주기, 납부기한의 연기, 연체료 납부,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
3.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업무, 집행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 규정
4. 고시·훈령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5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	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5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분기별 운송매출액 또는 운행횟수 또는 허가대수	- 매출액의 5% - 운행횟수당 800원 -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 해당분기 전체운송매출액 × 부담률(5%) - 해당분기 전체 운행횟수 × 부담률(800원) - 허가대수 × 3개월 × 부담률(40만원) ※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택 1하여 납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은 허가대수에 따라 납부비율 조정 - 200대이상 300대미만 50% 납부 - 100대이상 200대미만 25% 납부 - 100대미만 2년간 납부 연기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20조의9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
증가산금	○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객법 시행령 제20조의10제1항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0
연체료	○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객법 시행령 제20조의10제1항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0
강제징수절차	-	-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은 허가대수에 따라 납부비율 조정 - 200대 이상 300대 미만 - 100대 이상 200대 미만 - 100대 미만	50% 납부 25% 납부 2년간 납부의 연기 (필요시)	28,854,000 32,297,993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20조의9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1. 4. 8	○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법률 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23. 7. 18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6항 및 제7항
 - 납부고지서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서면 통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8제4항
 -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기여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 부과취소,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 2025년 환급액 : 없음
 - 2024년 환급액 : 없음
 - 2023년 환급액 :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없음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산정기준, 산출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방법,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분기별 고지서 발부 및 공문 발송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분기별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7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8
납부기한 연장	◦ 1년: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2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며,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9
분할납부	-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3	417	33	417			100
2025	9	71	9	71			100
2024	9	121	9	121			100
2023	9	207	9	207			100
2022	6	18	6	18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71	346	
합 계	71	346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21	154	71	△50 (△41.3%)	
여객 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	121	154	71	△50 (△41.3%)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0 조의9에 따른 사업자 납부 기간 유예로 계획 대비 징수 실적 감소 * '25년 유예액 : 116백만원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체납 사유) ○ (징수 계획)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7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제1항제9호
국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7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제1항제9호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5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교통시설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	4.2	계	-	-
○ 법정부담금	-	4.2	○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업 등	-	-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과 여객 자동차운송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존 운송사업자 근로여건 개선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과목적이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목적 및 부과대상이 유사한 부담금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제14장 해양수산물 소관

1.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2. 수산자원조성금
3. 방제분담금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1.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7. 8. 3.), 시행일(2007. 8. 3.)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통상무역협력과
	전화번호 : 051-773-5387	팩스번호 : 051-773-525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부 서 명 : 수입관리부
	전화번호 : 02-6300-8801	팩스번호 : 02-6300-8700
징수기관	기 관 명 : 수협중앙회	부 서 명 : 수산물전기금사무국
	전화번호 : 041-622-5993	팩스번호 : 041-622-399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유무역 협정(FTA) 농어업법 제22조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수산물을 협정 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고시·훈령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절차, 환급 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추천서 유효기간, 수입권 공매요령의 공고, 낙찰자의 수입의무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FTA 체결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 등의 지원에 기여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22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관세율할당품목 수입권에 대한 경쟁입찰 시 응찰가를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하여 낙찰된 자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22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액	경쟁입찰시 제시한금액	낙찰물량(ton)×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단위 톤당 응찰 금액(원)	수산물공매 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사유	환급 절차	관련법령
○ 공매납입금의 환급 - 낙찰자가 수입 이행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	○ 환급신청(공매납입금 납부자) → 환급검토·결정(해수부) → 환급금 지급(수입징수관)	수산물공매 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6, 7조

- 2025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
- 2024년 환급액 : (건수) 6건 (금액) 99,776,09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28,548,13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수산발전기금사무국 홈페이지(www.susanfund.com)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입찰방법, 입찰기일,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방법, 수입 이행기간, 기타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한국수산무역협회 입찰시스템에 공매 10일전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낙찰자가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에 제출할 때	수산물공매 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납부기한	○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 연장	○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분할납부	○ 수입이행기간 내 저율관세율 할당 추천물량을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77,866	651,592	77,866	651,243		349	99.9
2025	5,594	60,212	5,594	60,212	-	-	100.0
2024	6,085	58,789	6,085	58,789	-	-	100.0
2023	6,060	58,844	6,060	58,844	-	-	100.0
2022	5,889	58,595	5,889	58,595	-	-	100.0
2021	5,983	53,940	5,983	53,940	-	-	100.0
2020	6,654	57,345	6,654	57,345	-	-	100.0
2019	6,622	49,293	6,622	49,293	-	-	100.0
2018	7,721	54,339	7,721	54,339	-	-	100.0
2017	7,898	54,423	7,898	54,423	-	-	100.0
2016 이전	19,360	145,812	19,360	145,463		349	99.8

주1) : 낙찰자가 공매납입금 납부 후 환급사유(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로 인한 환급액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60,212	591,031	
합계	60,212	591,031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58,789	59,866	60,212	1,422 (2.4%)	환율상승 등에 따른 징수액 증가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60,212	
국가	수산물발전기금	100.0	60,212	자유무역협정 (FTA)농어업법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4.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금의 관라·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자유무역협정 (FTA)농어업법 제15조
1. 근해 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양식어업의 육성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용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 11. 어업인등의 지원(FTA 농어업법 특별법 제4조~제9조)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15.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수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8,785	9,119	계	8,785	9,119
○ 자체수입	6,021	5,644	○ 사업비	6,302	6,580
- 부담금	644	634	- 해양환경개선	566	538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3	5	- 수산물가격안정	2,475	2,87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	27	- 수산자원회복	155	155
▪ 수산물공매납입금	588	602	- 어업경영자금지원	515	259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품목별경쟁력강화	1,278	1,348
- 부담금 외	5,378	5,010	- 직접피해지원	49	26
○ 정부내부수입	-	1,000	- 유통·가공시설지원	7	8
- 정부출연금	-	-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186	1,286
- 기금예수금	-	1,000	- 원양어업기반구축	75	9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기금관리비	7	6
○ 여유자금회수	2,763	2,476	○ 사업운영비	1	1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운용	2,476	2,533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준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준치 권고	<부과목적의 유효성> ○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사용용도를 고려시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낮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율관세로 수산물을 수입한 수입업자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권 낙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사항 없음

2. 수산자원조성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수산자원조성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2.01.14.), 시행일(2003.07.1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수산자원정책과
	전화번호 : 051-773-5531~5532	팩스번호 : 051-773-554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수산자원조성금 등 부과 근거마련
2.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 조성금의 부과기준 ○ 조성금의 감액기준 ○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 대장의 기록·관리
3.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4. 고시·훈령	-	-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어업인 등 수혜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100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부수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100	○ 0.1톤당 50만원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4항 시행령 (별표 14)
○ 법 제52조제2항 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0	○ 건당 500만원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100	○ 헥타르당 21만6천원	"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6항
증가산금	해당없음	-
연체료	해당없음	-
강제징수절차	해당없음	-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및 양식업자 * 해당 어업·양식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양식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0% 미만 시 30% (어선의 경우 반파) 50% 이상 시 50% (어선의 경우 전파)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7조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2. 1.14	○ (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 2003. 7.15	○ (시행) 기르는어업육성법 * 법률 폐지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송
○ 2009. 4.22	○ (제정) 수산자원관리법
○ 2010. 4.23	○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 2025. 4.22	○ (개정) 부과·징수대상 일부 삭제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시 부과되던 조성금 삭제
○ 2025. 12.30	○ (개정) 조성금 분할납부 규정 추가 * 중소기업자인 경우 2회에 나눠 분할납부 가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환급방법 및 절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2025년 환급액 : 24,129,570원
- 2024년 환급액 : 해당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징수기관별 누리집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납부고지서 발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4에 해당되어 납부의무 발생한 경우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납부기한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할납부	○ 조성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 우 2회에 거쳐 분할납부 가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69,534	24,252	67,670	23,517	1,864	735	97.0
2025	384	215	391	216	-7	-1	100
2024	1,854	637	1,742	602	112	35	94.5
2023	5,024	766	4,754	737	270	29	96.3
2022	2,150	1,101	2,104	1,084	46	17	98.5
2021	1,102	647	1,087	635	15	12	98.1
2020	890	745	896	745	-6	0	100
2019	1,739	554	1,747	549	-8	5	99.1
2018	5,589	953	5,171	905	418	48	95.0
2017	2,369	943	2,337	937	32	6	99.4
2016 이전	48,433	17,691	47,441	17,107	992	584	96.7

주1) : 부과연도(연말)와 징수연도(연초) 및 미납액 등에 따른 부과·징수 차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강원특별자치도	3.3	497	
경기도	0	234.6	
경상남도	7.2	3,406.6	
경상북도	11.3	1,160.7	
부산광역시	0.6	1,555.1	
울산광역시	3.1	138.9	
인천광역시	6.1	433.2	
전라남도	68	10,357	
전북특별자치도	2.3	539.4	
제주특별자치도	95	4,138	
충청남도	19.2	840.2	
합 계	216.1	23,300.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601.7	-	215.7	△386 (△64.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개정시행(2025. 4. 22.)에 따른 부과대상 삭제(면허, 허가)로 인해 징수실적 감소 허가시기에 따른 징수실적 차이 발생 등
강원특별 자치도	11	-	3.3	△7.7 (△70%)	
경기도	16.3	-	-	△16.3 (△100%)	
경상남도	55.3	-	7.2	△48.1 (△87%)	
경상북도	30.6	-	11.3	△19.3 (△63.1%)	
부산광역시	3.8	-	0.6	△3.2 (△84.2%)	
울산광역시	2.1	-	3.05	0.95 (45.2%)	
인천광역시	2.2	-	6.08	3.88 (176.4%)	
전라남도	272	-	68	△204 (△75%)	
전북특별 자치도	23.8	-	2	△21.8 (△91.6%)	
제주특별 자치도	143	-	95	△48 (△33.6%)	
충청남도	41.6	-	19.2	△22.4 (△53.8%)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215.7	
광역 자치 단체	일반회계	44.1	95.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기초 자치 단체	일반회계	55.9	120.6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소규모바다목장, 시범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제7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일반회계(지자체)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6.01	2.15	계	6.01	2.15
○ 부담금 수입	6.01	2.15	○ 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종자방류, 환경개선 등	6.01	2.15

* 조성금만으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이용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며 특정 공익사업으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및 지하자원 개발자 등 수산자원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므로 이용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며, 부담금 부과는 타당함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3. 방제분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방제분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1997.04.10.), 시행일(1997.10.11.)

* 방제분담금은 구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에 의거 1997년부터 부과·징수 하였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2008.1.21.부터 해양환경공단이 부과·징수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해양환경정책과
	전화번호 : 051-773-5283	팩스번호 : 051-773-529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해양환경공단	부 서 명 : 방제기획처
	전화번호 : 02-3498-8591	팩스번호 : 02-3462-7716
징수기관	기 관 명 : 해양환경공단	부 서 명 : 방제기획처
	전화번호 : 02-3498-8591	팩스번호 : 02-3462-7716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기관, 사용용도를 규정
2.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
3. 시행규칙	해당없음	-
4. 고시·훈령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기타	해당없음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각 해역별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제9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별표9
○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유조선 이외의 선박 소유자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기름저장시설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유류수량	100리터 마다 8.84원 (경유 2.48원)	유류수량(리터)÷100×8.84원 (경유, 2.48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별표9: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유조선:매 입항시 - 내항선 - 외항선	2.74원/톤 14.76원/톤	항차시마다 2.74원/톤 항차시마다 14.76원/톤	
○ 유조선이외 선박 : 매 입항시 - 내항선 - 외항선	1.41원/톤 7.6원/톤	항차시마다 1.41원/톤 항차시마다 7.6원/톤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채납기간 1일당 채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가산금은 채납된 방제분담금 100분의 3 이내로 부과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2
증가산금	해당없음	-
연체료	해당없음	-
강제징수절차	○ 가산금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2

⑨ 부담금의 감면 : 2018. 5. 1. 폐지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	-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7. 11. 8. ○ 2002. 1. 1.	○ 분담금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징수 ○ 분담금 부과기준 개정(부과요율 조정)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해산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설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하던 분담금이 방제분담금으로 개칭되었으며, 법정방제능력(7,500톤)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요율을 조정('07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2008. 1. 21.	○ 법정방제능력 확보 및 효율적 방제업무 수행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과요율 조정('1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2015. 1. 1.	○ 방제분담금 산정주기 단축 및 기름저장시설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조정
○ 2018. 5. 1.	○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자료요청 근거 마련
○ 2019. 7. 2.	○ 기름저장시설 경유분담금 요율 재산정 (100ℓ 마다 2.76원) ※ 시행일 2020.1.1.
○ 2022. 1. 1.	○ 방제선·방제장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적정 국가방제능력 운용·유지를 위해 부과기준 현실화('21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과요율 조정) ※ 시행일 2022.1.1.
○ 2024. 7. 1.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부과요율 조정 ※ 시행일 2024.7.1.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사유	절차	관련법령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방제분담금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 방제분담금 납부 통지 9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 ○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2025년 환급액 : (건수) 62건 (금액) 25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46건 (금액) 58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양환경공단 이사회 보고 및 경영공시,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oem.or.kr>)에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1) 납부의무자
- 2)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3) 감면요건 및 방법과 방제분담금의 용도
- 4)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제출기관 및 기한 등)
- 5) 기타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제작·배부 및 홈페이지 상시 게시(다운로드 가능), 방제분담금 통지서에 명기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선박 : 매 입항 시 ○기름저장시설 :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령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 발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별표9: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납부기한	○매월 1~15일 분담금 : 익월 5일까지 ○매월 16일~말일 분담금 : 익월 2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없음	
분할납부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32,967	505,186	432,434	505,103	533	83	100.0
2025	31,033	26,252	31,033	26,252	-	-	100.0
2024	30,549	27,249	30,549	27,249	-	-	100.0
2023	31,196	28,361	31,196	28,361	-	-	100.0
2022	31,152	28,676	31,152	28,676	-	-	100.0
2021	31,600	24,883	31,600	24,883	-	-	100.0
2020	29,616	25,732	29,418	25,731	198	1	100.0
2019	30,162	25,899	30,148	25,899	14	-	100.0
2018	22,494	23,559	22,474	23,557	20	2	100.0
2017	20,954	23,718	20,713	23,665	241	53	99.8
2016 이전*	174,211	270,857	174,151	270,830	60	27	99.9

주1) : 해운사 폐업등의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 디브레인 시스템 입력 값과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해양환경공단	26,252	478,851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계	27,249	26,193	26,252	△ 997 (△ 3.7%)	• '24.7. 부담금 효율안하 적용에 따른 전년대비 연간 징수실적 감소 • 선박 입출항,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량량 변동 등 영향에 따라 '25년 징수계획 대비 부과실적 일부 증가
방제분담금	27,249	26,193	26,252	△ 997 (△ 3.7%)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해양환경공단	100	26,252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별표9)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2항, 제97조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해양환경공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272	262	계	272	262
○ 부담금 수입	272	262	○ 사 업 비	241	223
○ 기 타 (방제수입 등)	-		- 방제선 및 장비 관리 및 운영 등	216	199
			- 노후장비 교체 등	25	24
			○ 일반관리비	16	15
			- 인건비	-	-
			- 경 비	16	15
			○ 기 타 ¹⁾	15	24

1) 방제자산 대체를 위해 사용 또는 적립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대규모·중소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환경공단의 방제역량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목적에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양오염 방제선 배치·장비관리·약제확보 등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되므로, 타 환경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낮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 필요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6.10.04.), 시행일(2007.04.05.)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해양생태과
	전화번호 : 051-773-5318	팩스번호 : 051-773-5319
부과기관	기 관 명 : -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 배타적경제수역) - 시·도(기타 해역)	부 서 명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 시·도(해양수산물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 배타적경제수역) - 시·도(기타 해역)	부 서 명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 시·도(해양수산물과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시·도 부과·징수 담당부서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33-660-8374	033-662-3781
경기도	해양수산물과	031-8008-2672	031-8008-2679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24	055-211-3819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62	053-950-2829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65	051-888-3789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물과	052-229-2965	052-229-2969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	032-440-7902	032-440-8690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44	061-286-4793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63-280-4656	063-280-2819
제주도	해양산업과	064-710-3223	064-710-3259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041-635-4773	041-635-307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제49조 내지 제51조	○ (부과대상)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 - 공유수면 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 중 공유수면 내 10만㎡ 이상의 탐사·채굴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심층수 이용·개발행위는 제외 -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재원의 귀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 (산정방식)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지역계수 ○ (위임수수료) 시·도지사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를 시·도 수입으로 하며, - 50%의 범위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 (부담금 반환) 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 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신청을 받아 일부를 돌려줄 수 있음 - 반환금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범위 안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함 ○ (부담금의 용도) -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조치를 위한 사업,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해양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2.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의2	○ (부과대상)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 사업 중 공작물 설치 및 매립 등이 수반되는 사업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300원/㎡ ○ (지역계수) 지역별·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정도에 따라 2~40까지 차등 적용 ○ (분할납부) 납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 내에 분할납부 가능 ○ (재산정) 산정방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산정 후 납부자에게 부과 또는 반환 ○ (정산) 인·허가 등 사업변경이 된 경우에는 정산하여 부과 또는 반환 조치
3.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42조	○ (절차·규정) 부과·징수, 재산정, 정산, 반환 ○ (사업의 인·허가 통보 시점)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날 -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양생태계 훼손면적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에 사용	해양생태계법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는 제외 ○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	해양생태계법 제49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해양생태계 훼손면적	100	○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지역계수 - 지역계수(2~40), 대상지역 및 행위에 따라 차등 적용	해양생태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6조제1, 2항																	
		<table> <tr> <th rowspan="2">적용 지역</th> <th colspan="2">지역계수</th> </tr> <tr> <th>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th> <th>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th> </tr> <tr> <td>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td> <td>2</td> <td>2</td> </tr> <tr> <td>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td> <td>3</td> <td>6</td> </tr> <tr> <td>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td> <td>20</td> <td>40</td> </tr> <tr> <td>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td> <td>6</td> <td>12</td> </tr> </table>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비고 :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그 외 : 100분의 3	해양생태계법 제51조제1항
강제징수절차	○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해양생태계법 제51조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	100	-	해양생태계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9. 1. 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역이용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공유수면 내 바다골재 채취 등 개발 사업이 부과대상에서 제외
○ 2011. 5. 19.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지정 시 부과대상사업 포함
○ 2014. 5. 21.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요율 변경 -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1호 외의 경우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2017. 6. 28.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 (당초) 20억원 → (변경) 상한액 없음 ○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을 추가 - 추가사업 ▪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 1천㎡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5만㎡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1천㎡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단, 다음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①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조치를 위한 사업 ②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③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2017. 12. 29.	○ 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인상 - (당초) 250원/㎡ → (변경) 300원/㎡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8. 2. 1.	○ 지역계수 세분화 - (당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2 항만구역 외의 지역 : 4 - (변경) <table><tr><th rowspan="2">적용 지역</th><th colspan="2">지역계수</th></tr><tr><th>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th><th>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th></tr><tr><td>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td><td>2</td><td>2</td></tr><tr><td>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td><td>3</td><td>6</td></tr><tr><td>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td><td>20</td><td>40</td></tr><tr><td>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td><td>6</td><td>12</td></tr></table> 비고 :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함에 있어 통보 기산일이 되는 날을 명확히 함 <table><tr><th>당 초</th><th>변 경</th></tr><tr><td>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td><td>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td></tr><tr><td>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한 시점</td><td>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날</td></tr></table>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당 초	변 경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한 시점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날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당 초	변 경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의 탐광 및 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한 시점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날																						

년 월 일	변 천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당 초</th><th>변 경</th></tr> </thead> <tbody> <tr> <td>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td><td>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 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td></tr> <tr> <td>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td><td>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td></tr> </tbody> </table>	당 초	변 경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 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당 초	변 경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안의 매립사업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의 처분을 한 시점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 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의 처분을 한 시점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을 한 날						
○ 2018. 5. 29.	○ 협력금 부과금액별 분할납부횟수 규정 - (당초) 분할납부횟수 규정 없음 - (변경) 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2회 이하 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 3회 이하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징수액의 10%를 해당 시·도지사의 수입으로 의무화 - (당초) 협력금 징수액의 50%를 시·도지사에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20% 이내에서 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변경) 징수액의 10%를 해당 시·도지사의 수입으로 하며(의무화), 해양생태계 보호사업 시행을 위해 협력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 징수액의 50% 이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 2023. 4. 19.	○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2024. 5. 31.	○ 기존에는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회, 2억원 초과인 경우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5. 1. 3.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사업의 근거 법령 및 제도 명칭 변경	
	당 초 법 제49조 ②제1항에 다른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생략)	변 경 법 제49조 ②제1항에 다른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생략)
	시행령 제25조 ②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 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시행령 제25조 ②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가. 재산정 :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39조

-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이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 검토 → (필요시) 사실조사 → 결재 → 재부과 또는 환급 조치
- (요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 오류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방법) 납부고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라 재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
- (처리)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이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 검토 → (필요시)현지확인 → 결재 → 통보
- (요건) 인·허가 등의 변경으로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방법)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고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처리) 정산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으로 서면통지
- 관련근거 : (①재산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②정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0조

○ 2023년 환급액 : (건수) 14건 (금액) 3,485,093,700원

○ 공개방법 :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국회결산보고서 등

○ 고지 내용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해양생태계법 제50조 제2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방법 : 공문

- 고지시기 :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하고, 부과·징수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양생태계법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사업의 인·허가 시점	해양생태계법 제50조
납부기한	○ 부과한 날부터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일 이내	해양생태계법 제51조
분할납부	○ 납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 내에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횟수 : 3회 이하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1,548	167,616	1,453	109,989	95	57,627	65.6
2025	100	11,662	116	2,659	△16	9,003	22.8
2024	123	10,452	126	5,225	△3	5,227	50.0
2023	132	23,837	102	7,392	30	16,445	31.0
2022	158	11,296	134	9,879	24	1,417	87.5
2021	167	11,398	155	9,246	12	2,152	81.1
2020	91	19,161	59	3,985	32	15,176	20.8
2019	43	3,504	44	1,691	△1	1,813	48.3
2018	40	2,389	42	2,755	△2	△366	115.3
2017	37	3,852	58	5,323	△21	△1,471	138.2
2016 이전	657	70,065	617	61,834	△40	8,231	88.3

주1) : 2020년부터 골재채취사업 등으로 부과 건수·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채취 면적 감소, 골재채취 허가기간 도래 등으로 부담금 환급('25년 116.7억원)에 의한 차이 발생

[참고]

(단위 : 백만원, %)

	부과	수납	환급	징수	수납율	징수율
	금액(A)	금액(B)	금액(C)	금액(B-C)	(B/A)	((B-C)/A)
합계	167,616	122,622	24,603	109,989	73.2	34.4
2025	11,662	14,329	11,670	2,659	122.9	22.8
2024	10,452	11,269	6,044	5,225	107.8	50.0
2023	23,837	10,877	3,485	7,392	45.6	31.0
2022	11,296	9,907	28	9,879	87.7	87.5
2021	11,398	9,399	153	9,246	82.5	81.1
2020	19,161	3,985	-	3,985	20.8	20.8
2019	3,504	1,691	-	1,691	48.3	48.3
2018	2,389	2,755	-	2,755	115.3	115.3
2017	3,852	5,326	3	5,323	138.3	138.2
2016 이전	70,065	53,084	3,221	61,834	75.8	88.3

※ 훼손면적만큼의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부과목적 취지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훼손면적 변경으로 당초 납부한 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담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과액은 훼손면적 변경 전 당초 부과 금액이고, 징수액은 수납액에서 훼손면적 변경으로 인한 환급액을 정산한 금액으로 '25년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이 22.8%로 저조하나, '25년 수납율(수납액/부과액)은 122.9%로 초과 달성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647	18,919	징수액(10,345백만원) 대비 환급액(10,992백만원)이 많아 음수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60	2,322	
경기도	154	8,685	
경상남도	1,457	10,247	
경상북도	26	3,457	
부산광역시	62	5,857	
울산광역시	-	2,534	
인천광역시	1,574	26,791	
전라남도	539	11,988	
전북특별자치도	10	7,093	
제주도	23	781	
충청남도	△ 599	8,656	징수액(78백만원) 대비 환급액(677백만원)이 많아 음수 표기
합 계	2,659	107,330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5,225	8,366	2,659	△ 49.1 ^o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 채취 면적 감소, 골재채취 허가기간 도래 등에 따라 부담금 환급(약 117억원) 발생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5,225	8,366	2,659	△ 49.1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기관 별 채권 회수를 위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납부독려 조치 실시 등 채권회수 활동 지속 추진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부담금 체납현황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여 유선·방문을 통한 납부계획 점검 및 독촉·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절차 추진 등을 독려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5,464	15,145	11,083	△26.8	○ (체납 사유) 체납자 재력 부족, 소송 등에 따른 미납 ○ (징수 계획)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절차 추진 등

※ 분납에 따른 고지서 분할시 디브레인상 분할 채권의 이행기한이 모두 1회차 채권 이행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디브레인 기한도래 미수채권액은 실제 체납액보다 높음(실제 체납액 : ('23) 2,471백만원 → ('24) 6,793백만원 → ('25) 7,468백만원)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2,659	
국 가 수 산 발 전 기 금	100.0	2,659	해양생태계법 제49조제6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생태계법 제49조의2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수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8,785	9,119	계	8,785	9,119
○ 자체수입	6,021	5,644	○ 사 업 비	6,302	6,580
- 부담금	644	634	- 해양환경개선	566	538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4	5	- 수산물가격안정	2,474	2,87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	27	- 수산자원회복	155	155
▪ 수산물공매납입금	588	602	- 어업경영자금지원	515	259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품목별경쟁력강화	1,275	1,348
- 부담금 외	5,377	5,010	- 직접피해지원	49	25
○ 정부내부수입	-	1,000	- 유통·가공시설지원	7	8
- 정부출연금	-	-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186	1,286
- 기금예수금	-	1,000	- 원양어업기반구축	75	9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기금관리비	6	6
○ 여유자금회수	2,764	2,475	○ 사업운영비	1	1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운용	2,476	2,532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계 훼손 면적만큼의 비용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등 사용 용도를 고려할 때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낮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 필요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 없음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7. 8. 3.), 시행일(2007. 2. 4.)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해양개발과
	전화번호 : 051-773-5244	팩스번호 : 051-773-5238
부과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	부 서 명 : 환동해전략기획단
	전화번호 : 054-880-7619	팩스번호 : 054-246-9054
	기 관 명 : 강원특별자치도	부 서 명 :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 033-660-8349	팩스번호 : 033-660-8397
징수기관	기 관 명 : 경상북도	부 서 명 : 환동해전략기획단
	전화번호 : 054-880-7619	팩스번호 : 054-246-9054
	기 관 명 : 강원특별자치도	부 서 명 :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 033-660-8349	팩스번호 : 033-660-8397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심층수법') 제40조·41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30·31·32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부담금의 일괄납부, 부담금의 요율
3.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	해양심층수법 제40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먹는 해양심층수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 제외)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 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수입업자 : 평균 판매가격	0.5	평균판매가격×판매량×0.5%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32조(부담금 의 요율), 제36조(부담금 의 산정방법)
○ 상업용목적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 평균 공급가격	5.3	평균공급가격×판매량×5.3%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3 -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1	동법 시행령 제38조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강제징수절차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해양심층수의 개 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 (부담금 및 가산 금의 강제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수출하는 것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 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10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3. 8. 20	○ 부담금 채납 시 가산금의 세부기준 조정 - (기존) 납부기한 경과기간에 따라 3~5% 차등 부과 → (개정) 부담금의 3%
○ 2014. 11. 19	○ 먹는해양심층수 부담금 요율 인하('15.1.1부터 시행) - (기존) 1% → (개정) 0.5%
○ 2016. 7. 1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전액 면제('20.12.31.까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7.1. 시행)
○ 2021. 6. 8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간 4년 연장 ('20.12.31 → '24.12.3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6.8.)
○ 2024. 12. 24.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간 3년 연장 ('24.12.31 → '27.12.3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12.24.)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금 면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없음
- 2025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
- 2024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
- 2023년 환급액 : (건수) - (금액)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서 제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우편, 수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납부기한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납부기한 연장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제4항
분할납부	○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183	858	166	727	17	131	84.7
2025	-	-	-	-	-	-	-
2024	-	-	2	3	△2	△3	-
2023	-	-	-	-	-	-	-
2022	-	-	-	-	-	-	-
2021	-	-	-	-	-	-	-
2020	-	-	10	22	△10	△22	-
2019	-	-	-	-	-	-	-
2018	-	-	-	-	-	-	-
2017	-	-	-	^{주2)}	-	-	-
2016 이전	183	858	154	702	29	156	81.8

주1) : 누적 미납부액

주2) : ('17) 징수내역 누락(3건, 12백만원)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울시	-	10	
부산시	-	6	
강원도	-	513	
경상북도	-	210	
합 계	-	739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3	-	-	△3	※ '16년 이전 미수납금액 * '16~'27년도까지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제도 폐지 계획
 - (사유) '16년도 이후 지속 면제중이며, 동 부담금을 활용한 사업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등 부담금의 실효성이 없음
 - (방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16년도 이후 부담금 지속 면제중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 (체납 사유) ○ (징수 계획)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	
국가 수산발전기금	100.0	-	해양심층수법 제40조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심층수의 법 제40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수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8,785	9,119	계	8,785	9,119
○ 자체수입	6,021	5,644	○ 사 업 비	6,302	6,580
- 부담금	644	634	- 해양환경개선	566	538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4	5	- 수산물가격안정	2,474	2,87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	27	- 수산자원회복	155	155
▪ 수산물공매납입금	588	602	- 어업경영자금지원	515	259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품목별경쟁력강화	1,275	1,348
- 부담금 외	5,377	5,010	- 직접피해지원	49	25
○ 정부내부수입	-	1,000	- 유통·가공시설지원	7	8
- 정부출연금	-	-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186	1,286
- 기금예수금	-	1,000	- 원양어업기반구축	75	9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기금관리비	6	6
○ 여유자금회수	2,764	2,475	○ 사업운영비	1	1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운용	2,476	2,532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22년	○ 부담금 고유의 부 과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사용될 우려	<추진 중>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27)'에 따라 부담금 폐지 추진으로 추후 부담금 수입 사용사업(계획) 없음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01.09.12.), 시행일(2002.09.1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부과기관	기 관 명 :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대산), 지방해양경찰서(보령, 태안, 평택, 인천,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산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부 서 명 : 해양수산환경과(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대산), 지방해양경찰서(보령, 태안, 평택, 인천,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산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전화번호 : 부산해양수산청(051-609-6511) 인천해양수산청(032-880-6229) 여수해양수산청(061-650-6087) 마산해양수산청(055-981-5203) 동해해양수산청(033-520-6247) 군산해양수산청(063-441-2267) 목포해양수산청(061-280-1679) 포항해양수산청(054-245-1656) 평택해양수산청(031-680-7243) 울산해양수산청(052-228-5639) 대산해양수산청(041-660-7671) 보령해경서(041-402-2491) 태안해경서(041-950-2691) 평택해경서(031-8046-2391) 인천해경서(032-650-2391) 여수해경서(061-840-2491) 완도해경서(061-550-2591) 목포해경서(061-241-2391) 군산해경서(063-539-2291)	팩스번호 : 부산해양수산청(051-609-6519) 인천해양수산청(032-885-0032) 여수해양수산청(061-654-2429) 마산해양수산청(055-223-7995) 동해해양수산청(033-520-6230) 군산해양수산청(063-441-2354) 목포해양수산청(061-280-1677) 포항해양수산청(054-245-1655) 평택해양수산청(031-680-7249) 울산해양수산청(052-228-5589) 대산해양수산청(041-663-0427) 보령해경서(041-402-2991) 태안해경서(041-950-2991) 평택해경서(031-8046-2991) 인천해경서(032-650-2991) 여수해경서(061-840-2994) 완도해경서(061-550-2991) 목포해경서(061-241-2391) 군산해경서(063-539-2991)

	부안해경서(063-928-2491) 울산해경서(052-230-2491) 부산해경서(051-664-2291) 창원해경서(055-981-2391) 통영해경서(055-647-2291) 사천해경서(055-830-2391) 속초해경서(033-634-2391) 동해해경서(033-741-2491) 울진해경서(054-502-2591) 포항해경서(054-750-2597) 제주해경서(064-766-2391) 서귀포해경서(064-793-2291)	부안해경서(063-928-2991) 울산해경서(052-230-2991) 부산해경서(051-664-2991) 창원해경서(055-981-2991) 통영해경서(055-647-2991) 사천해경서(055-830-2991) 속초해경서(033-634-2991) 동해해경서(033-741-2991) 울진해경서(054-502-2997) 포항해경서(054-750-2991) 제주해경서(064-766-2991) 서귀포해경서(064-793-2991)
징수기관	기관명 :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대산), 지방해양경찰서(보령, 태안, 평택, 인천,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산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부서명 : 해양수산환경과(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대산), 지방해양경찰서(보령, 태안, 평택, 인천,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산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 서귀포)
	전화번호 : 부산해양수산청(051-609-6511) 인천해양수산청(032-880-6229) 여수해양수산청(061-650-6087) 마산해양수산청(055-981-5203) 동해해양수산청(033-520-6247) 군산해양수산청(063-441-2267) 목포해양수산청(061-280-1679) 포항해양수산청(054-245-1656) 평택해양수산청(031-680-7243) 울산해양수산청(052-228-5639) 대산해양수산청(041-660-7671) 보령해경서(041-402-2491) 태안해경서(041-950-2691) 평택해경서(031-8046-2391) 인천해경서(032-650-2391) 여수해경서(061-840-2491) 완도해경서(061-550-2591) 목포해경서(061-241-2391) 군산해경서(063-539-2291)	팩스번호 : 부산해양수산청(051-609-6519) 인천해양수산청(032-885-0032) 여수해양수산청(061-654-2429) 마산해양수산청(055-223-7995) 동해해양수산청(033-520-6230) 군산해양수산청(063-441-2354) 목포해양수산청(061-280-1677) 포항해양수산청(054-245-1655) 평택해양수산청(031-680-7249) 울산해양수산청(052-228-5589) 대산해양수산청(041-663-0427) 보령해경서(041-402-2991) 태안해경서(041-950-2991) 평택해경서(031-8046-2991) 인천해경서(032-650-2991) 여수해경서(061-840-2994) 완도해경서(061-550-2991) 목포해경서(061-241-2391) 군산해경서(063-539-2991)

부안해경서(063-928-2491) 울산해경서(052-230-2491) 부산해경서(051-664-2291) 창원해경서(055-981-2391) 통영해경서(055-647-2291) 사천해경서(055-830-2391) 속초해경서(033-634-2391) 동해해경서(033-741-2491) 울진해경서(054-502-2591) 포항해경서(054-750-2597) 제주해경서(064-766-2391) 서귀포해경서(064-793-2291)	부안해경서(063-928-2991) 울산해경서(052-230-2991) 부산해경서(051-664-2991) 창원해경서(055-981-2991) 통영해경서(055-647-2991) 사천해경서(055-830-2991) 속초해경서(033-634-2991) 동해해경서(033-741-2991) 울진해경서(054-502-2997) 포항해경서(054-750-2991) 제주해경서(064-766-2991) 서귀포해경서(064-793-299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시행령	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 행위> ○ 부담금=해양배출량(m³)×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 - 단위당 부과금액 : 1,100원/m³ - 부과계수 : 폐기물종류에 따라 1.0~2.34 차등 적용
	제25조의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 부담금=해양배출량(리터)×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 - 단위당 부과금액 : 350원/리터 - 부과계수 :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0.3~1.96 차등 적용
3. 시행규칙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해양환경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해양환경 복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 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폐기물해양배출량 감소 유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 행위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폐기물 종류별 차등 적용	폐기물(또는 오염물질) 해양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5조의 2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해양환경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강제징수절차	독촉을 받은자가 정해진 납부 기한내 미납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해양환경관리법 제20조제2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3. 1. 1	○ 폐기물배출업자의 폐기물해양배출행위 - 단위당 부과금액 : 800원/m ³
- 2004. 1. 1	- 단위당 부과금액 : 900원/m ³
- 2005. 1. 1	- 단위당 부과금액 : 1,000원/m ³
- 2006. 1. 1	- 단위당 부과금액 : 1,100원/m ³
- 2009. 1. 20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 단위당 부과금액 : 350원/리터
- 2018. 4. 3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삭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 2023. 11. 7	(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위임변경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경찰서장))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 납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가능(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 간 차액은 재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개
 - 검색경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부서별 사전공표 정보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부담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부담금 발생 사유 발생 시 및 납입고지서 발송 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폐기물배출업자의 폐기물해양배출행위 -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 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 배출행위 발생 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납부기한	○ (일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 ○ (예외)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 가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434	156,842	2,434	156,832	-	10	100%
2025	49	506	49	506	-	-	100%
2024	25	340	25	340	-	-	100%
2023	28	353	28	353	-	-	100%
2022	39	553	40	558	△1	△5	100.9%
2021	26	363	26	363	-	-	100%
2020	39	224	39	224	-	-	100%
2019	36	371	36	496	-	△125	133.7%
2018	30	415	32	425	△2	△10	102.4%
2017	28	385	25	235	3	150	61.0%
2016 이전	2,134	153,332	2,134	153,332	-	-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해양수산부	477	156,315	
해양경찰청	29	11	
합계	506	156,326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340	234	506	166 (48.8%)	○ 유류오염사고 부담금 증가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가	수산발전기금	100	506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5항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수산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4실적	'25실적	항목	'24실적	'25실적
계	8,785	9,119	계	8,785	9,119
○ 자체수입	6,021	5,644	○ 사업비	6,302	6,580
- 부담금	644	634	- 해양환경개선	566	538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4	5	- 수산물가격안정	2,474	2,87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	27	- 수산자원회복	155	155
▪ 수산물공매납입금	588	602	- 어업경영자금지원	515	259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품목별경쟁력강화	1,275	1,348
- 부담금 외	5,377	5,010	- 직접피해지원	49	25
○ 정부내부수입	-	1,000	- 유통·가공시설지원	7	8
- 정부출연금	-	-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1,186	1,286
- 기금예수금	-	1,000	- 원양어업기반구축	75	9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기금관리비	6	6
○ 여유자금회수	2,764	2,475	○ 사업운영비	1	1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운용	2,476	2,532

다. 부담금 준치평가결과

준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
· 본 부담금은 규정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므로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음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부담금 부과 타당성과 사용 용도의 적정성을 충족함 · 부과기준의 적절성, 사용용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부담금 운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0.03.31.), 시행일(2010.03.3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해양수산부	부 서 명 : 연안해운과
	전화번호 : 051-773-5737	팩스번호 : 051-773-578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 서 명 : 운항정책실
	전화번호 : 044-330-2385	팩스번호 : 044-330-237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 서 명 : 운항정책실
	전화번호 : 044-330-2385	팩스번호 : 044-330-237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해운법」 제22조의2제1항(삭제)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 부담
3.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 부담금의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
4. 고시·훈령	「여객선 운항관리 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폐지)	○ 운항관리비용은 여객운임액의 2.9%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각 선사별 독자적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 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해운법」 제22조의2제1항(삭제)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운임액의 2.9%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2조의2제1항(삭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폐지)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여객운임액의 2.9%	2.9	여객운임액 ×부담률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폐지)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 (60개월 초과 금지)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6조(폐지)
증가산금	해당없음	-
연체료	해당없음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9조(폐지)

※ 강제징수절차 : 「해운법」 제22조의2제4항('20.08.19. 시행)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관련 법령
○ 해당 없음	-	-	-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73. 8. 23.	○ 기본운임의 2% 이내에서 할증금 가산
○ 1974. 2. 2.	○ 기본운임의 2%를 운임원가에 포함
○ 1979. 5. 1.	○ 여객운임액의 2%
○ 1985. 3. 20.	○ 여객운임액의 4%
○ 1995. 5. 1.	○ 여객운임액의 5%
○ 2008. 7. 1.	○ 여객운임액의 4%
○ 2010. 1. 1.	○ 여객운임액의 3.5%
○ 2014. 4. 1.	○ 여객운임액의 3.2%
○ 2019. 3. 6.	○ 여객운임액의 2.9%
○ 2025. 4. 22.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개정)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환급금 지급 신청(「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폐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통지서 송부(「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폐지))
- 2025년 환급액 : (건수) 3건 (금액) 5,55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5건 (금액) 16,927,76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4건 (금액) 7,022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해당 없음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부담금 부과법적 근거, 부담금액, 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당월 분 부담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15일까지 징수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조항('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내항여객선이 계속적으로 운항하는 한 존속 필요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다음 달 10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고지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4조(폐지)
납부기한	10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15일 까지 징수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4조(폐지)
납부기한 연장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기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8조(폐지)
분할납부	해당 없음	

※ 납부기한 연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234	93,476	2,234	92,991		485	99.5
2025	44	1,325	44	1,319	-	6	99.5
2024	132	6,131	132	6,073	-	58	99.1
2023	132	6,423	132	6,359	-	64	99.0
2022	144	6,776	144	6,563	-	213	96.9
2021	144	4,232	144	4,187	-	45	98.9
2020	138	3,511	138	3,457	-	54	98.5
2019	132	5,502	132	5,475	-	27	99.5
2018	132	5,763	132	5,745	-	18	99.7
2017	132	6,434	132	6,434	-	-	100
2016 이전	1,104	47,379	1,104	47,379	-	-	100

주1) : '18~'23년 일부 선사(9개사) 부담금 미납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1,319	91,672	
합계	1,319	91,672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회계	6,073	-	1,319	△4,754 △78.3%	○ 해운법 개정(내항여객운송 사업자의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납부 폐지, '25.4.22.) 지연에 따라 2025. 4. 21. 까지 발생한 비용부담금 징수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023.08.02.)(폐지)
-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양수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토록 하여 부담금 징수율 제고(제9조)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17	6	△11 (△64.7%)	○ (체납 사유) 여객 감소 등 경영난 및 영세사업자로서 부담금 납부에 소극적 ○ (징수 계획) 해당 선사에 체납 독촉 등 지속적 납부 안내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00	1,319	「해운법」 제22조의2제1항(삭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4조(폐지)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운영 비용(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해운법」 제22조2제1항(삭제)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사업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42	130	계	142	100
○ 부담금 수입	63	16	○ 인건비	101	63
○ 정부지원	79	114	○ 경비	3	3
○ 기 타(이자)	-	-	○ 사업 외 비용	38	34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 없음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86.12.26.), 시행일(1986.12.26.)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중소벤처기업부	부 서 명 : 벤처정책과
	전화번호 : 044-204-7700	팩스번호 : 044-204-7709
부과기관	기 관 명 : 기술보증기금	부 서 명 : 경영기획부
	전화번호 : 051-606-7402	팩스번호 : 051-639-7611
징수기관	기 관 명 : 기술보증기금	부 서 명 : 자산운용실
	전화번호 : 051-606-7565	팩스번호 : 051-639-7618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금융회사등은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 ◦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2. 시행령	해당사항 없음	-
3.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별표1, 별표2	○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 및 출연요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천분의 3 - 금융회사 : 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13.5에 차등요율을 적용한 후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 ○ 출연의 금액·시기 및 방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해당분기 출연금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출연 - 금융회사는 해당월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출연 ○ 제출서류 - 출연금계산서 - 월중 평균잔액 또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 대출금의 명세서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고시·훈령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해당사항 없음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코자 설립 ○ 이러한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재산적 기초이자 보증채무이행 준비금으로써 부과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제12조, 제36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금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3호의 금융회사의 용자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금융회사^{주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주1) 금융회사의 범주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추가됨 ('20.2.21. 시행)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금 ○ 금융회사의 용자금	연율 1천분의 3 (연율 1만분의 13.5 ±차등요율^{주1)}) ±금융회사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대상 용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 × 3/1,000 {대상 용자금의 월중 평균잔액 × (13.5/10,000±차등요율^{주1)} } ±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주2)}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

주1) 차등요율 산정방법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 연율 1만분의 2
	1이상 ~ 2미만	- 연율 1만분의 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만분의 1
	4이상	+ 연율 1만분의 2

주2」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	상위 2위	하위 3위	하위 2위	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	-1백분의 10	-1백분의 5	+1백분의 3	+1백분의 5	+1백분의 7
나군 금융회사	-1백분의 7	-1백분의 3	+1백분의 2	+1백분의 3	+1백분의 5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87. 7.16. (재무부령 제1718호)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 연율 1만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 1989. 4. 1. (재무부령 제1786호)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 연율 1천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 1992. 4.24. (재무부령 제1881호)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 연율 1만분의 13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 1994. 8.25. (재무부령 제2002호)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 연율 1천분의 1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5. 8.26. (재정경제부령 제458호)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table><tr><th>시행시기</th><th>출연율</th></tr><tr><td>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td><td>연율 1천분의 3</td></tr><tr><td>2006년 2월 1일부터</td><td>연율 1천분의 1</td></tr></tabl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 출연요율은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 금융기관 1.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 연율 1천분의 3.0 2.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 연율 1천분의 2.0 3.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 연율 1천분의 1.5 4. 2006년 7월 1일 이후 : 연율 1천분의 1.5 ± 차등요율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차등요율</th></tr><tr><td rowspan="5">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td><td>1미만</td><td>- 연율 1천분의 0.2</td></tr><tr><td>1이상 ~ 2미만</td><td>- 연율 1천분의 0.1</td></tr><tr><td>2이상 ~ 3미만</td><td>0</td></tr><tr><td>3이상 ~ 4미만</td><td>+ 연율 1천분의 0.1</td></tr><tr><td>4이상</td><td>+ 연율 1천분의 0.2</td></tr></tabl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연율 1천분의 3 ○ 출연요율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대상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천분의 3 - 금융기관 : 대상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만분의 13.5 ± 차등요율 ○ 2006. 1.24. (재정경제부령 제481호) ○ 2007. 6. 4. (재정경제부령 제562호)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차등요율</th></tr><tr><td rowspan="5">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td><td>1미만</td><td>- 연율 1만분의 2</td></tr><tr><td>1이상 ~ 2미만</td><td>- 연율 1만분의 1</td></tr><tr><td>2이상 ~ 3미만</td><td>0</td></tr><tr><td>3이상 ~ 4미만</td><td>+ 연율 1만분의 1</td></tr><tr><td>4이상</td><td>+ 연율 1만분의 2</td></tr></table>	시행시기	출연율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연율 1천분의 3	2006년 2월 1일부터	연율 1천분의 1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 연율 1천분의 0.2	1이상 ~ 2미만	- 연율 1천분의 0.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천분의 0.1	4이상	+ 연율 1천분의 0.2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 연율 1만분의 2	1이상 ~ 2미만	- 연율 1만분의 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만분의 1	4이상	+ 연율 1만분의 2
시행시기	출연율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연율 1천분의 3																																		
2006년 2월 1일부터	연율 1천분의 1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 연율 1천분의 0.2																																	
	1이상 ~ 2미만	- 연율 1천분의 0.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천분의 0.1																																	
	4이상	+ 연율 1천분의 0.2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 연율 1만분의 2																																	
	1이상 ~ 2미만	- 연율 1만분의 1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 연율 1만분의 1																																	
	4이상	+ 연율 1만분의 2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0. 2.2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호)	○ 부담금 부담대상인 '금융회사' 범주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추가(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바목, 사목 신설)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경우 출연요율은 기준요율(1만분의 13.5)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출연금관리기준」 제9조에 의거, 출연금 과오납 발견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받아 확인 후 그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372,303,943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2건 (금액) 50,238,726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연차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kibo.or.kr)
 - 기금운용평가보고서(기획예산처)
 -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의 업무감사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 미고지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기술보증기금출연금 근거법령인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존속기한 미설정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매분기 종료 시 분기별 출연금 부과 ○ 금융회사 : 매월 종료 시 월별 출연금 부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납부기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분기별 출연금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 금융회사 : 월별 출연금을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41	12,966,894	441	12,966,894	-	-	100.0
2025	12	762,849	12	762,849	-	-	100.0
2024	12	735,741	12	735,741	-	-	100.0
2023	12	672,280	12	672,280	-	-	100.0
2022	12	607,861	12	607,861	-	-	100.0
2021	12	565,094	12	565,094	-	-	100.0
2020	12	545,968	12	545,968	-	-	100.0
2019	12	488,800	12	488,800	-	-	100.0
2018	12	482,730	12	482,730	-	-	100.0
2017	12	483,180	12	483,180	-	-	100.0
2016 이전	333	7,622,391	333	7,622,391	-	-	10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기술보증기금	762,849	12,204,045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735,741	631,503	762,849	27,108 (3.7)	'25년 출연대상 용자금 규모 증가 등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762,849	
국가	기술보증기금	100.0	762,849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보 기본재산(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제1항)으로 편입되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며 실제로는 대부분 금융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위한 용도로 지출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및 제13조제1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기술보증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6,486	37,147	계	36,486	37,147
○ 부담금 수입	7,357	7,629	○ 사 업 비	15,899	18,674
			- 대위변제	13,407	15,677
			- 중소기업투자	743	745
			- 기 타	1,749	2,252
			○ 기금운영비	2,141	2,338
○ 정부내부수입	2,221	1,153	○ 정부내부지출	1,950	-
○ 기 타	26,908	28,365	○ 기 타	16,496	16,135
- 자체수입	8,562	9,275	- 여유자금운용	16,496	16,135
- 여유자금회수	18,346	19,09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06년 3월 3일), 시행일(2006년 7월 1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중소벤처기업부	부 서 명 :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4-204-7528	팩스번호 : 044-204-7539
부과기관	기 관 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 서 명 : 경영전략부
	전화번호 : 044-270-4010	팩스번호 : 044-414-3137
징수기관	기 관 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 서 명 : 총무부
	전화번호 : 044-270-4040	팩스번호 : 044-414-3206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35조의6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연율 3/1,000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
2.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 출연기준대출금, 출연비율·시기 및 방법, 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시기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3. 시행규칙	해당 없음	
4. 고시·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86("21.12.27), 제2024-42("24.6.27)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5. 기타	해당 없음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금융회사 등의 대출로 인한 이익 일부를 출연하고, 출연금을 활용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보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회사 대출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과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산림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7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4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출연 대상 대출금	0.07* ± 차등요율**	출연대상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 × 부담률 × 일수 / 36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24.6.18.)에 따라 출연요율 상향(0.04%→0.05%) 단, 시행일 기준 2년간('24.6~'26.5) 출연요율 0.07% 적용

** 차등요율 산정방법

구분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1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4
	1이상 ~ 2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2
	2이상 ~ 3미만	0
	3이상 ~ 4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2
	4이상	+연 비율 1천분의 0.04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 법령
○ 직전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 - 1미만 : - 연율 0.04/1,000 - 1이상~2미만 : - 연율 0.02/1,000 - 2이상~3미만 : 0 - 3이상~4미만 : + 연율 0.02/1,000 - 4이상 : + 연율 0.04/1,000	$\pm 4\%$ (차등요율)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6. 7. 1.(개시)	○ 0.2/1,000 $\pm$ 0.004(차등요율)
○ 2010. 7. 26.(개시)	○ 햇살론 보증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출연근거 신설 - 농협 : 0.37/1,000 - 수협 : 0.54/1,000 - 저축은행 : 0.4/1,000 - 새마을금고 : 0.82/1,000 - 신협 : 0.71/1,000 - 산림조합 : 0.77/1,000
○ 2020. 8. 4.	○ 출연요율 상향 및 부과 대상 변경 - (0.2 $\rightarrow$ 0.4)/1,000 $\pm$ 0.004(차등요율) - 부과대상 대출금 중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2)
○ 2024. 2. 20.	○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 - 1/1000 $\rightarrow$ 3/1000
○ 2024. 6. 18.	○ 출연요율 상향 - (0.4 $\rightarrow$ 0.5)/1,000* $\pm$ 0.004(차등요율) * 단, 개정일 기준 2년간은(‘24.6~’26.5) 0.7/1000 적용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상·납부하며, 과오납 발생 시 관련내용의 산정근거 등을 기재한 요청 문서를 통하여 구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문서 요청내용 확인 후 익월분 납부시 가감하여 처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7항)
- 2025년 환급액: 해당없음
- 2024년 환급액: 해당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결산서 제출 및 홈페이지 경영공시(www.koreg.or.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금융기관은 대출금(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납부하고 있는 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사전고지의무 생략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3(출연의 비율·시기 및 방법 등) ①~④ (기재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2)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근로자 햇살론)가 이관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받고 있지 않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납부기한	부과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240	3,281,817	240	3,281,817	-	-	100.0
2025	12	408,348	12	408,348	-	-	100.0
2024	12	312,830	12	312,830	-	-	100.0
2023	12	208,429	12	208,429	-	-	100.0
2022	12	184,886	12	184,886	-	-	100.0
2021	12	170,869	12	170,869	-	-	100.0
2020	12	111,917	12	111,917	-	-	100.0
2019	12	85,361	12	85,361	-	-	100.0
2018	12	94,644	12	94,644	-	-	100.0
2017	12	130,740	12	130,740	-	-	100.0
2016 이전	132	1,573,793	132	1,573,793	-	-	100.0

주1) : 법정출연금 및 햇살론 출연금은 전월 대출잔액 및 고시된 출연요율등에 의해 자동 산출되므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일치함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8,348	2,873,469	
합 계	408,348	2,873,469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12,830	364,900	408,348	95,518 (30.5%)	
지역신용 보증재단 및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출연금	312,830	364,900	408,348	95,518 (30.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에 (24.6.18)의한 출연요율 상향*으로 인해 부담금 징수 실적 증가 * 0.04%→0.05% 상향, (단, 24.6~27.5 월까지 2년간 0.07%)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해당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408,348	
금융 기관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	60	245,00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42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	163,339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 조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35조의6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12,335	11,230	계	12,335	11,230
○ 정부출연금	1,560	6,798	○ 손실보전금 등	12,029	9,702
○ 금융기관출연금 등	900	1,487	○ 관리업무비	166	174
○ 재보증료 등	1,686	1,864	○ 기타	140	49
○ 기타(운용수익 등)	726	1,081	○ 기본재산(운용)	-	1,305
○ 기본재산(조달)	7,463	-			

< 지역신용보증재단(17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4,839	35,818	계	34,839	35,818
○ 출연금	8,480	11,190	○ 대위변제	24,667	24,105
- 정부	88	689	○ 재보증료	1,895	2,260
- 지자체	2,157	2,808	○ 관리업무비	2,615	2,755
- 금융기관	6,223	7,636	○ 기타	5,662	6,698
- 기타	12	57	○ 기본재산(운용)	-	-
○ 손실보전금	11,831	12,168			
○ 보증료	3,589	4,410			
○ 운용수익	2,229	1,974			
○ 기 타	5,888	5,326			
○ 기본재산(조달)	2,822	750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해당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해당없음

제16장 산림청 소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2. 임산물수입이익금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0.1.13.), 시행일(1990.7.14.)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림청	부 서 명 : 산지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141	팩스번호 : 042-484-4641
부과기관	기 관 명 : 산림청, 지자체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산림청, 지자체	부 서 명 : 불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며, 이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입으로 함
2. 시행령	시행령 제21조, 제24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정기준 등 규정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은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 또는 수납한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해야 함
4. 고시·훈령	산림청 고시 제2026-16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마련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	0~100%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일부 반영비율)	법 제19조 제8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산금	해당 없음	-
증가산금	해당 없음	-
연체료	해당 없음	-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법 제19조 제9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 법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50~100	4,568	법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0~100	3,378	
○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0~100	1,15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0. 7. 14.	○ 보전임지 전용에 대한 대체조립비 부과 제도 시행
○ 1992. 1. 1.	○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대체조립비 부과
○ 1995. 6. 23.	○ 대체조립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
○ 1997. 11. 29.	○ 대체조립비 50% 감면 규정 신설
○ 1999. 8. 6.	○ 분할납부허용 대상사업 확대 및 대체조립비 납입된 이후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2000. 4. 29.	○ 대체조립비 미납 시 국세채납처분 규정 준용
○ 2001. 4. 27.	○ 대체조립비 분할납부 허용 시 이행보증금 예치
○ 2003. 10. 1.	○ 산지관리법령의 제정에 따라 부담금 명칭 변경 - 대체조립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005. 8. 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 2. 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2007. 7. 27.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2008. 7. 2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2010. 5. 3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채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 2012. 2. 2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출단가에 공시지가의 일부 반영
○ 2013. 12. 17.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2014. 12. 3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우주센터 등)
○ 2015. 11. 1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국공립미술관 등)
○ 2016. 6. 2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감면(수도권 산업단지)
○ 2016. 12. 3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감면(국유림 지목변경지)
○ 2018. 12. 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축소(태양에너지설비)
○ 2020. 11. 2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조정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와 평창올림픽대회 직접 관련시설 제외하고,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추가)
○ 2021. 12. 1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대조비 납부 후 10년 이내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다시 산지전용허가 등 받는 경우 추가)
○ 2022. 8. 17.	○ 환급금 통보 및 청구 절차 마련
○ 2022. 8. 2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산업집적법」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미군공여 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관련 시설)
○ 2023. 6. 7.	○ 분할납부 허용금액 완화(5억원→1억원)
○ 2024. 7. 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공익시설사업 등 시설) ○ 부과기준 산출기준 중 개별공시지가의 일부 반영 비율 변경(1000분의 10→1000분의 1)
○ 2025. 3. 1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절차 정비 ○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마련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관련 근거(법령)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0호의2, 제10호의3 서식('25.3.11. 신설)
-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전 납부 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와 의견서 서식을 첨부하여 보내야 함
-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환급사유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 법령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환급절차·통지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준용	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 2025년 환급액 : (건수) 1,075건 (금액) 24,329백만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841건, (금액) 12,293백만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995건, (금액) 18,995백만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준수 여부 : 여(○), 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산출근거 및 납부예상액 등을 납부고지 전 통지
 -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여,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라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활용.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행위는 지속적
으로 발생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존치 필요

※ 「산지관리법」 제19조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법 제19조 제1항
납부기한	20일 이상 90일 이내	시행령 제24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	1회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한 내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	시행령 제21조 제2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80,834	4,457,336	550,664	3,415,769	42,381	1,041,568	76.6
2025	16,027	237,533	13,494	165,244	1,458	72,290	69.6
2024	18,699	264,535	17,166	199,061	1,533	65,474	75.2
2023	21,814	272,984	20,164	203,976	1,650	69,008	74.7
2022	25,138	326,680	23,486	263,837	1,652	62,843	80.8
2021	27,691	298,991	25,525	261,356	2,166	37,635	87.4
2020	27,382	251,737	25,166	208,927	2,216	42,810	83.0
2019	27,916	197,752	25,799	157,953	2,117	39,799	79.9
2018	29,534	200,361	27,603	160,380	1,931	39,981	80.0
2017	29,068	216,429	27,644	163,712	1,424	52,717	75.6
2016 이전	357,565	2,190,334	344,617	1,631,323	29,234	559,011	74.5

주1)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분할납부(4년 이내), 납부기한(30일, 60일, 90일)

등에 따라 해당연도 내 부과 결정건의 연내 100% 수납이 어려움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서 울	218	8,395	8,613
부 산	1,120	36,690	37,810
대 구	540	12,016	12,556
인 천	3,361	82,891	86,252
광 주	446	21,166	21,612
대 전	650	14,807	15,457
울 산	3,741	53,869	57,610
경 기	67,833	1,212,111	1,279,944
강 원	15,610	313,710	329,320
충 북	18,290	265,094	283,384
충 남	16,885	333,128	350,013
전 북	4,466	89,391	93,857
전 남	4,946	152,934	157,880
경 북	16,095	307,700	323,795
경 남	5,342	215,449	220,791
제 주	8,738	86,712	95,450
세 종	860	19,354	20,214
경제자유구역청 등 기타	834	9,095	9,929
산림청(본청)	△6,125	△38,711	△32,586
국립산림과학원	-	11	11
북부지방청	672	11,524	12,196
동부지방청	162	22,116	22,278
남부지방청	343	8,109	8,452
중부지방청	57	6,708	6,765
서부지방청	160	6,256	6,416
합 계	165,244	3,250,525	3,415,769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199,061	217,437	165,244	△33,817	○ 전용 수요 감소 * '24 대비 - (부과 건수) △2,672건(△14.3%), - (징수결정액) △270억원(△13.6%)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부담금 미납 시 산지전용허가 등의 중지명령제도 도입
 - 분할납부 제도 확대(3년→4년, 3회→4회, 10억→5억)
 - 납부기간 연장 등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35,450	25,981	33,516	7,535	○ (체납 사유)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12,718백만원), 징수· 정리유예(9,689백만원) 등 ○ (징수 계획) 징수기관별 독촉· 이행보증금 처분 등 조치 촉구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0	165,244	법 제1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임업진흥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의2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자원별 운영현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269	10,379	계	9,184	10,353
○기타경상이전수입	2,286	1,899	○산림자원육성관리	3,558	3,157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63	162	○목재및임산물활용	1,021	903
○융자원금회수	254	337	○임업정책자금지원	534	940
○세계잉여금이입액	56	85	○산림경영경쟁력강화	112	111
○전 입 금	6,388	7,870	○산림병해충예방및대응	1,138	1,330
○기 타	122	26	○기 타	2,821	3,912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24년	○ 권리구제절차 명시 및 징수율 제고 노력	<추진 완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3.) 을 통해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 마련 ○ 「산림청 소관 미수납 채권 관리 계획」(25.4.) 수립 및 관할청별 채권 관리현황 실태조사 실시

2. 임산물수입이익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임산물수입이익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94.12.31.), 시행일(1995.1.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산림청	부 서 명 : 임업수출교역팀
	전화번호 : 042-481-1807	팩스번호 : 042-481-8884
부과기관	기 관 명 : 산림청	부 서 명 : 임업수출교역팀
	전화번호 : 042-481-1807	팩스번호 : 042-481-8884
징수기관	기 관 명 : 산림조합중앙회	부 서 명 : 유통지원부
	전화번호 : 02-3434-7330	팩스번호 : 02-3434-733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41조	○ 산림청장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2.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품목 : 밤·잣·대추 ○ 수입이익금 징수방식 : 수입권공매방식 ○ 수입이익금 금액산정방법 :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시 납입의사 표시한 금액 ○ 수입이익금 납부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고시·훈령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 요령	〈산림청 고시 제2024-133호〉 ○ 양허관세적용물량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임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 및 임업·산림발전의 재원으로 활용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밤, 잣, 대추)을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산림자원법 제41조 제3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수입권 공매	100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낙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⑧ 가산금 등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강제징수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산림자원법 제41조제5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1995년 설치 이후 변경사항 없음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환급액 : 해당사항 없음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국회에 결산자료 제출,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 준수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수입공매 입찰 공고 시 입찰유의서를 통해 사전 안내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임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 및 임업·산림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산물수입이익금 존치 필요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9조
납부기한 연장	30일의 범위에서 1회 한정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1	37,955	31	37,955	-	-	100
2025	1	3,006	1	3,006	-	-	100
2024	1	3,196	1	3,196	-	-	100
2023	1	1,918	1	1,918	-	-	100
2022	1	2,864	1	2,864	-	-	100
2021	1	2,660	1	2,660	-	-	100
2020	1	3,134	1	3,134	-	-	100
2019	1	1,522	1	1,522	-	-	100
2018	1	1,274	1	1,274	-	-	100
2017	1	974	1	974	-	-	100
2016 이전	22	17,407	22	17,407	-	-	100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산림조합중앙회	3,006	34,949	
합계	3,006	34,949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196	2,291	3,006	△190 (△6%)	○ 국내 대추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9.9%)하여 입찰 경쟁 완화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25년 12월) 대추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해당 없음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국 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0	3,006	산림자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2.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의2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269	10,379	계	9,184	10,353
○기타경상이전수입	2,286	1,899	○산림자원육성관리	3,558	3,157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63	162	○목재및임산물활용	1,021	903
○융자원금회수	254	337	○임업정책자금지원	534	940
○세계잉여금이입액	56	85	○산림경영경쟁력강화	112	111
○전 입 금	6,388	7,870	○산림병해충예방및대응	1,138	1,330
○기 타	122	26	○기 타	2,821	3,912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존치평가 결과	'25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부과목적의 유효성>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임산물 수입 이익금	'24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4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마련	<추진 중> ○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제7항 권리구제절차 제도 마련(산림자원법에서 이관) * 22대 김선교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5.8)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86.05.12.), 시행일(1986.11.13.)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 서 명 :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 02-397-5888	팩스번호 : 02-6273-7805
부과기관	기 관 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 서 명 :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 02-397-5888	팩스번호 : 02-6273-7805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 서 명 : 기금관리부
	전화번호 : 031-626-9735	팩스번호 : 031-625-289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제1항	○ 방사능방재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56조의2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안위고시)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물리적방호체계 및 방사능재난예방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부담 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방사능방재법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원자력 안전법 상 부담금	○ 발전용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 방사성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 종사자 피폭관리 ○ 수출입요건확인 ○ 면허소지자보수교육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I/RG 이용업체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출입요건신고자 면허소지자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
방사능 방재법 상 부담금	○ 발전용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 방사성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능방재법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투입인력(인.일)당 KINS : 1,016,097원 KINAC : 805,530원 KIRAMS : 796,673원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2,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투입인력(인.일)당 KINS : 424,000원 KINAC : 336,100원 KIRAMS : 332,400원		
○ 피폭관리	1년간 1명당 2만원	고시금액 × 종사자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
○ 수출입요건확인	요건종류별 차등부과	고시금액 × 수출입금액의 가액	
○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면허별 차등부과	고시금액×인원수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 부담금 및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강제징수),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3(강제징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증가산금	○ 부담금 및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강제징수),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3(강제징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강제징수),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3(강제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0년 12월 27일	○발전용원자로 및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134,462원
○1992년 1월 25일	○발전용원자로 및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163,747원
○1993년 2월 24일	○발전용원자로 및 기타 원자력시설('93 임금인상률 5% 적용)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171,934원
○1994년 3월 30일	○발전용원자로 및 기타 원자력시설('94 임금인상률 6.2% 적용)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182,594원
○1995년 5월 10일	○발전용원자로(미국 NRC제도 도입하여 제도 변경) ① 가동중원전 · 산정공식 (사업자부담 인건비 + 경상운영비) × 발전용원자로 투입률 + 정기검사 등 실소요경비 · 호기당 단가 : 950,000천원 ② 건설중원전 · 산정공식 투입인력 × 기준단가 × 인상율 × 직접경비율 · 호기당 단가 : 300,000천원 ○기타 원자력시설('95 임금 인상률 6.8% 적용)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195,010원
○1996년 2월 23일	○발전용원자로 ① 가동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950,000천원 ② 건설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314,100천원(인상율 4.7%적용) ○기타 원자력시설('96 임금 인상률 8.0% 적용)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10,610원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7년 8월 23일	○발전용원자로 ① 가동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992,750천원 ② 건설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328,235천원 ○기타 원자력시설('97 임금 인상률 5.0% 적용)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21,140원
○1999년 3월 25일	○발전용원자로 ① 가동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012,605천원 ② 건설중원전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334,800천원 ○기타 원자력시설('97 대비 2% 인상)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25,560원
○2000년 12월 12일	○발전용원자로(가동중원전과 건설중원전 단가통합) - 산정공식 $(A + B) \times \frac{M1}{M1 + M2} + \text{기준단가} \times M1 \times \text{직접비비율}$ · A = 사업자부담 인건비(총 인건비 - 출연금 및 R&D 총당액) · B = 사업자부담 경상운영비 (총경상운영비 - 출연금 및 R&D 총당액) · M1 = 발전용원자로 투입인력 · M2 = 기타사업투입인력 · 직접비비율 = 안전규제 인건비 대비 직접비 - 호기당 단가 : 765,650천원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적용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99 대비 0.8% 인상)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적용 - 기준단가 : 227,360원
○2001년 12월 19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783,260천원('00 대비 2.3% 인상)

년 월 일	변 천 내 용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32,590원('00 대비 2.3% 인상)
○2002년 11월 29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815,374천원('01 대비 4.1%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42,126원('01 대비 4.1% 인상)
○2003년 9월 6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837,389천원('02 대비 2.7%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48,663원('02 대비 2.7% 인상)
○2004년 8월 25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867,535천원('03 대비 3.6%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57,615원('03 대비 3.6% 인상)
○2005년 12월 8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898,766천원('04 대비 3.6%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66,889원('04 대비 3.6% 인상)
○2006년 12월 27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040,743천원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던 원전 2차계통 관련 업무가 이관 되면서 해당비용을 추가 부담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74,000원('05 대비 2.7% 인상)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7년 4월 4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063,639천원('06 대비 2.2% 인상) ○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80,000원('06 대비 2.2% 인상)
○ 2008년 4월 18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090,230천원('07 대비 2.5% 인상) ○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287,000원('07 대비 2.5% 인상)
○ 2009년 5월 1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141,471천원('08 대비 4.7% 인상) ○ 기타 원자력시설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기준단가 : 300,000원('08 대비 4.7% 인상)
○ 2010년 12월 15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437,000천원 (투입인력,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 ○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08,400원('09 대비 2.8% 인상)
○ 2011년 12월 27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478,673천원('10 대비 2.9% 인상) ○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17,000원('10 대비 2.9% 인상)
○ 2012년 12월 31일	○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537,820천원('11 대비 4% 인상)

년 월 일	변 천 내 용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29,000원('11 대비 4% 인상)
○2013년 12월 26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571,652천원('12 대비 2.2%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36,200원('12 대비 2.2% 인상)
○2014년 12월 09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전년과 동일 - 호기당 단가 : 1,592,083천원('13 대비 1.3% 인상)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40,570원('13 대비 1.3% 인상)
○2015년 9월 18일	○발전용원자로 - 산정공식 : {직전년도 연간비용 + (직전년도 MD당 단가 × 당해연도 순증감 MD)} × (1+직전년도 물가 상승률) - 정부보조 인건비 - 기준단가 : 832,288원 ○기타 원자력시설 - 투입인력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345,000원('14 대비 1.3% 인상)
○2016년 1월 1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918,599원, KINAC : 651,766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383,000원, KINAC 271,000원
○2017년 1월 1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935,960원, KINAC : 666,574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390,000원, KINAC 278,000원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23년 2월 3일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992,930원, KINAC : 776,937원 KIRAMS: 806,747원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414,300원, KINAC : 324,200원 KIRAMS: 336,600원
○ 2024년 1월 26일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1,009,235원, KINAC : 778,375원 KIRAMS: 800,698원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421,100원, KINAC : 324,800원 KIRAMS: 334,100원
○ 2025년 1월 22일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1,016,097원, KINAC : 805,530원 KIRAMS: 796,673원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산정공식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 KINS : 424,000원, KINAC : 336,100원 KIRAMS: 332,400원

* '16.1월부터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관련 조항(산정방식 등)을 신설하고, 원자력 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으로 관리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납부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차년도에 징수할 부담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등 납부의무자 의견이 사전에 반영
 - 부담금 제도개선('26.1.1.)에 따라 납부의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부할 납부, 징수유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터 제156조의5에 규정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
 - 관련근거(법령)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
(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 2025년 환급액 : (건수) 120건 (금액) 102,665,950원
- 2024년 환급액 : (건수) 105건 (금액) 283,723,450원
- 2023년 환급액 : (건수) 144건 (금액) 130,753,780원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공개방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 시 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개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산출내용, 납부금액, 납부처, 납부기한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3(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따라 고지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따라 부과·징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3(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납부기한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허가 신청시 또는 신고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1호 업무: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2호 업무: 교육신청시 또는 보수교육 실시연도 6월 30일까지(교육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3호 업무: 수출입 신고 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3(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납부기한 연장	해당 사항 없음	
분할납부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40조의3(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00,175	1,725,099	199,397	1,724,640	779	461	99.9
2025	17,011	124,441	16,897	124,373	114	68	99.9
2024	14,950	118,599	14,840	118,546	110	53	99.9
2023	21,272	118,175	21,180	118,118	92	57	99.9
2022	12,161	112,331	12,014	112,256	147	75	99.9
2021	16,233	111,693	16,155	111,668	78	25	99.9
2020	15,454	96,190	15,355	96,142	99	48	99.9
2019	15,576	92,905	15,438	92,772	138	133	99.9
2018	14,413	90,108	14,414	90,111	△1	△3	100
2017	13,490	88,897	13,489	88,894	1	3	99.9
2016 이전	59,615	771,760	59,615	771,760	-	-	100

주1 : 체납자 거소 불명 및 재력부족, 부담금 납기미도래, 카드 납부 미정산, 소멸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처리 등에 따라 차이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24,373	1,600,267	'15년까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서 징수
합계	124,373	1,600,267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18,546	123,165	124,373	5,827 (4.9%)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107,710	111,238	113,155	5,445 (5.1%)	업무량 증가 등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을 제외한 자	10,836	11,927	11,218	382 (3.5%)	업무량 증가 등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기한 미도래액(a)	14	15	51	-	○ (체납 사유) 납기 도과 후 계속적 미납
기한 도래(b)	31	27	16	△11 (△40.7%)	○ (징수 계획) 정기적 독촉 및 체납처분
합 계(a+b)	45	42	67	25 (59.5%)	

주: 디브레인상 기한도래 미수채권액은 “합계(a+b)”이나, 해당 숫자는 디브레인을 통해 발급하지 않는 법정부담금의 납기미도래건과 카드미수납건이 포함된 숫자로, 실질상 기한 도래액과 미도래액을 구분하여 작성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24,373	
국 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100%	124,373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원자력기금내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2항 및 제3항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원자력 기금 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2항 및 제3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3,334	3,643	계	3,334	3,643
○ 부담금 수입	1,185	1,244	○ 사업비	1,235	1,268
○ 과태료·과징금 등	△157	7	○ 기금운영비	13	13
○ 기 타	2,306	2,393	○ 기 타	2,086	2,362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여유자금운용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	'21년	○ 매년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를 개정(고시)해야 하므로 지속가능한 산정체제로 개선 필요 ○ 권리구제절차 규정 명시 필요	<추진 완료> ○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년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허가시설별 정책제 등으로 산정체계 변경('26.1.1.) ○ 납부의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수유예, 분할납부, 이의신청 등을 법령에 반영·개정('26.1.1.)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부터 제15조의5
	'24년	○ 권리구제절차의 규정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 개정 필요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 (2014. 3. 18.), 시행일(2014. 12. 19.)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번호 : 043-719-2719	팩스번호 : 043-719-2700
부과기관	기관명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서명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전화번호 : 02-2172-6828	팩스번호 : 02-2172-6802
징수기관	기관명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서명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전화번호 : 02-2172-6828	팩스번호 : 02-2172-680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률	약사법제86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2.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간,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부담금 납부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부담금 부과 및 납부 관련 서식을 정함
4. 고시·훈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62호('17.7.25)>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정함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약사법 제86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의료기관·약국 등에 공급한 완제의약품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약사법 제86조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기본부담금 - 전년도 의약품 생산·수입액의 1,000분의 1 이내의 일정 비율	0.018	의약품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액등 × 품목별 계수* × 부담금 부과요율 * 품목별 계수 <table><tr><td>가</td><td>일반의약품 : 0.1</td></tr><tr><td>나</td><td>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 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td></tr><tr><td>다</td><td>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td></tr></table>	가	일반의약품 : 0.1	나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 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	다	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	약사법 제86조의2 제2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
가	일반의약품 : 0.1								
나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 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								
다	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								
○ 추가부담금 -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의 100분의 25	25	피해구제급여액 x 품목별 계수* x 100분의 25 * 품목별 계수 <table><tr><td>1</td><td>「약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td></tr><tr><td>2</td><td>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td></tr></table>	1	「약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	2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			
1	「약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								
2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	약사법 제86조의2 제5항
강제징수절차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약사법 제86조의2 제6항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4. 3. 18.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주관을 “의약품의 제조 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015. 11. 23.	○ 2016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 ('15) 0.018% → ('16) 0.027%
○ 2016. 11. 29.	○ 2017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 ('16) 0.027% → ('17) 0.047%
○ 2017. 11. 16.	○ 2018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 ('17) 0.047% → ('18) 0.027%
○ 2020. 12. 1.	○ 2021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 ('18) 0.027% → ('21) 0.022%
○ 2023. 12. 21.	○ 2024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 ('21) 0.022% → ('24) 0.018%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관련근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의신청 결과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 2025년 환급액 : 1건, 20,210원
- 2024년 환급액 : 1건, 1,258,200원
- 2023년 환급액 :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등 홈페이지에 공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부담금 산정내역, 징수 금액, 부과 기관, 부담금 개요, 법적 근거, 산정 기준, 납부대상자, 납부고지서 발급 예정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절차, 재원의 관리·운용 절차, 의견신청 방법, 문의처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방법) 등기 우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한 안내
 - (시기) 납부고지서 발급 약 2개월 전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연 2회(1월, 7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납부기한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30일	
납부기한 연장	90일의 범위에서 1회 연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분할납부	2회로 분할하여 납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8,180	54,292	8,169	54,291	11	0.68	100.0
2025	757	4,720	757	4,720	-	-	100.0
2024	760	4,753	760	4,753	-	-	100.0
2023	766	5,449	766	5,449	-	-	100.0
2022	750	5,006	750	5,006	-	-	100.0
2021	747	4,646	747	4,646	-	-	100.0
2020	740	5,460	740	5,460	-	-	100.0
2019	723	5,115	723	5,115	-	-	100.0
2018	741	4,859	737	4,859	4	0.34	100.0
2017	737	7,772	736	7,772	1	0.03	100.0
2016	702	4,014	700	4,013	2	0.26	100.0
2015 ^{주2)}	757	2,497	753	2,497	4	0.04	100.0

주1)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부담금 미납

주2) 2014년도 이전에는 부과·징수 실적이 없으며, 2015년도부터 실시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4,720	49,571	

iii-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4,753	5,041	4,720	△33 (△0.7)	○ 추가부담금 차등 부과에 따른 부과 대상 감소 ○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iii-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	-	-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0	4,720	-
기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00.0	4,720	약사법 제86조의2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약사법 제86조의2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47.5	47.2	계	47.5	47.2
○ 부담금 수입	47.5	47.2	○ 피해구제급여	18.4	27.4
			○ 적립금	29.1	19.8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제19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 ① 부담금의 명칭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0.03.22.), 시행일(2011.01.01.)
-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 서 명 : 혁신기획담당관
	전화번호 : 02-2110-1375	팩스번호 : 02-2110-0132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 서 명 : ICT기금관리본부
	전화번호 : 061-350-1242	팩스번호 : 061-350-1280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 서 명 : ICT기금관리본부
	전화번호 : 061-350-1242	팩스번호 : 061-350-128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 부담금 납부대상자와 징수기준, 최대징수율, 면제·경감 및 징수율 차등 책정 등을 규정
2.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부담금의 징수율 결정 시 고려사항(방송 운용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과 부담금의 면제·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등을 규정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과기정통부)	○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율, 산정기준, 납부기한, 납부 절차 등을 고시
5. 기타	-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함 -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 양질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등을 통해 해당분야의 시장실패 완화와 긍정적 외부효과 견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및 제26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KBS/EBS : 0.68%/1.50%, MBC/SBS : 4.12%/3.65%, 지역방송 : 0.24%~1.14%, 라디오 : 0.01%~1.35%, 지상파DMB : 0.06%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 × 징수율 ※ 방송광고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징수율 상한 사업자별 감경규정에 따라 최종 징수율 차등 적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 (방통위고시 제2022-14호)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1.36%~3.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 단,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의 경우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과기정통부고시 제2019-92호)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서비스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결산상 영업이익	TV : 13%, 데이터 : 10%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징수율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가산금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7항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3 가산금 부과 (단,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증가산금	-	-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8항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25년 감면액 (백만원)	관련법령
○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	면제 또는 경감	4,79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5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부담금 면제 (100%)	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 춘천문화방송(주)	100.00	15	
· 제주문화방송(주)	100.00	15	
· 안동문화방송(주)	100.00	12	
· 원주문화방송(주)	100.00	9	
· (주)경인방송	100.00	0	
· (재)가톨릭평화방송	100.00	5	
· (재)원음방송	100.00	1	
· (재)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100.00	0	
· (재)글로벌광주방송재단	100.00	0	

-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총액 이상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100%)	1,77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주)제이티비씨	100.00	1,770	
-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총액 미만인 사업자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2,9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5.76	11	
·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45.65	51	
· (주)엠비씨충북	5.18	2	
·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86.58	136	
· 와이티엔라디오	38.66	1	
· (주)와이티엔디엠비	61.23	0	
· (주)채널에이	24.54	334	
· (주)연합뉴스티브이	9.51	103	
· 딜라이브(강동) 등 14개사	37.68	1,500	
· 케이타에이치씨엔(관악방송) 등 8개사	34.17	833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1. 1. 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10.3.22.) 및 시행('11.1.1.)에 따라 방송 통신발전기금 설치 ※ (기존) 방송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설치·운영 (~'10.12.31.)
○ 2011. 3. 29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지역)의 징수율을 3.37%에서 3.00%로 인하하고,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영어FM포함)의 징수율은 2.87% 에서 2.50%로 변경 고시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12%에서 13%로 1%p 변경 고시
○ 2012. 3. 29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을 유예에서 0%로 변경 고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을 0%로 신규 고시

○ 2013. 2. 22	○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KBS, EBS의 징수율을 2.94%, MBC, SBS를 4.4%, 지역방송을 2.78%로, 라디오방송을 2.32%로 변경 고시 ○ 위성방송(일반)의 징수율을 1.33%로 변경 고시																								
○ 2013. 3. 23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690호)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금 공동 관리 체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구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개정('13.3.23.)																								
○ 2015. 6. 22	○ 납부통지서 송부 및 분담금 징수일자 변경<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head><tbody><tr><td>납부통지서 송부</td><td>■ 6월 30일</td><td>■ 8월 31일</td></tr><tr><td>분담금 징수시기</td><td>■ 1차 : 7월 31일 ■ 2차 : 9월 30일</td><td>■ 1차 : 9월 30일 ■ 2차 : 11월 30일</td></tr></tbody></table>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15.6.22.)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납부통지서 송부	■ 6월 30일	■ 8월 31일	분담금 징수시기	■ 1차 : 7월 31일 ■ 2차 : 9월 30일	■ 1차 : 9월 30일 ■ 2차 : 11월 30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납부통지서 송부	■ 6월 30일	■ 8월 31일																							
분담금 징수시기	■ 1차 : 7월 31일 ■ 2차 : 9월 30일	■ 1차 : 9월 30일 ■ 2차 : 11월 30일																							
○ 2015. 8. 27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을 5구간 초과누진제에서 3구간 초과누진제로 변경 고시(미래부고시 제2015-60호)<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부과기준</th><th colspan="2">변경전</th><th colspan="2">변경후</th></tr></thead><tbody><tr><td rowspan="5">종합 유선</td><td rowspan="5">방송서비스 매출액</td><td>25억원 이하</td><td>1.0</td><td rowspan="3">100억원 이하</td><td rowspan="3">1.0</td></tr><tr><td>25억원~50억원</td><td>1.3</td></tr><tr><td>50억원~100억원</td><td>1.8</td></tr><tr><td>100억원~200억원</td><td>2.3</td><td>100억원~200억원</td><td>2.3</td></tr><tr><td>200억원 초과</td><td>2.8</td><td>200억원 초과</td><td>2.8</td></tr></tbody></tabl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징수율을 0%에서 0.5%로 변경 고시(미래부고시 제2015-60호)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을 사업군별 징수에서 매출액 구간에 따른 징수로 부과기준 변경 고시(방통위고시 제2015-19호) ○ 종합편성방송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징수율을 0.5%로 변경 고시(방통위고시 제2015-19호) ※ 단, 2016년부터 징수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 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1.0	25억원~50억원	1.3	50억원~100억원	1.8	100억원~200억원	2.3	100억원~200억원	2.3	200억원 초과	2.8	200억원 초과	2.8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 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1.0																				
		25억원~50억원	1.3																						
		50억원~100억원	1.8																						
		100억원~200억원	2.3	100억원~200억원	2.3																				
		200억원 초과	2.8	200억원 초과	2.8																				
○ 2016. 9. 2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3구간 초과누진제 징수율 변경 고시(미래부고시 제2016-97호)<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부과기준</th><th colspan="2">변경전</th><th colspan="2">변경후</th></tr></thead><tbody><tr><td rowspan="3">종합 유선</td><td rowspan="3">방송서비스 매출액</td><td>100억원 이하</td><td>1.0</td><td>100억원 이하</td><td>1.0</td></tr><tr><td>100억원~200억원</td><td>2.3</td><td>100억원~200억원</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td><td>2.8</td><td>200억원 초과</td><td>2.3</td></tr></tbody></tabl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징수율을 0.5%에서 1.0%로 변경 고시(미래부고시 제2016-97호) ○ 종합편성방송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징수율 0.5% 고시에 따른 최초징수 실시(방통위고시 제2016-4호)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 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200억원	2.3	100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8	200억원 초과	2.3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 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200억원	2.3	100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8	200억원 초과	2.3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징수율을 1.5%로 변경 고시(과기정통부고시 제2017-11호) <table><tr><th>구분</th><th>부과기준</th><th colspan="2">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종합유선</td><td rowspan="3">방송서비스 매출액</td><td>100억원 이하</td><td>1.0</td><td rowspan="3">1.5</td></tr><tr><td>100억원~200억원</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td><td>2.3</td></tr><tr><td>위성방송</td><td>방송서비스 매출액</td><td>-</td><td>1.33</td><td rowspan="2">1.5</td></tr><tr><td>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td><td>방송서비스 매출액</td><td>-</td><td>1.0</td></tr></table> ※ 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매출액 100억 이하 구간에 1.0/100, 매출액 100억 초과구간에 1.5/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 ○ 종합편성방송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징수율 0.5→1.0% 변경 고시(방통위고시 제2017-10호)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1.5	100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3	위성방송	방송서비스 매출액	-	1.33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	1.0																																	
구분	부과기준	변경전		변경후																																																					
종합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1.5																																																					
		100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3																																																						
위성방송	방송서비스 매출액	-	1.33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	1.0																																																						
○ 2017. 9. 6																																																									
○ 2018. 9. 5	○ 종합편성방송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징수율 1.0%→1.5% 변경 고시(방통위고시 제2018-9호)																																																								
○ 2019. 8. 29	○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방송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산정방식을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결정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변경 고시(방통위고시 제2019-10호) <table><tr><th colspan="3">변경전</th><th colspan="3">변경후</th></tr><tr><td rowspan="10">지상파</td><td colspan="2"><기본징수율></td><td rowspan="10">지상파 및 중 편 보 도 PP</td><td colspan="2"><기본징수율></td></tr><tr><td>방송광고매출액</td><td>징수율 구간</td><td>방송광고 매출액 구간</td><td>기본징수율(%) 산정방법</td></tr><tr><td>1조원 초과</td><td>5.0% 초과 6.0% 이하</td><td>1조원 초과</td><td>[5.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원)÷1조원] × 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td></tr><tr><td>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td><td>4.0% 초과 5.0% 이하</td><td>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td><td>[4.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0억원÷9,000억원) × 조정계수]</td></tr><tr><td>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td><td>3.0% 초과 4.0% 이하</td><td>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td><td>[3.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0억원÷500억원) × 조정계수]</td></tr><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0% 초과 3.0% 이하</td><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억원÷400억원) × 조정계수]</td></tr><tr><td>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td><td>1.0% 초과 2.0% 이하</td><td>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td><td>[1.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50억원) × 조정계수]</td></tr><tr><td>50억원 이하</td><td>1.0% 이하</td><td>50억원 이하</td><td>[0.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 × 조정계수]</td></tr><tr><td colspan="2"><최종징수율></td><td colspan="2"></td></tr><tr><td>구분</td><td>최종징수율</td><td colspan="2"></td></tr><tr><td>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td><td>1.5%</td><td colspan="2"></td></tr><tr><td>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td><td>1.5%</td><td colspan="2"></td></tr></table> 비고 :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기 추세를 고려하여 0.0766을 감경하여 조정한 0.9234로 한다. ※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기본 징수율로 함	변경전			변경후			지상파	<기본징수율>		지상파 및 중 편 보 도 PP	<기본징수율>		방송광고매출액	징수율 구간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원 초과	5.0% 초과 6.0% 이하	1조원 초과	[5.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원)÷1조원] × 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초과 5.0%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0억원÷9,000억원) × 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초과 4.0%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0억원÷500억원) × 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초과 3.0%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억원÷40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초과 2.0%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5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이하	1.0% 이하	50억원 이하	[0.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 × 조정계수]	<최종징수율>				구분	최종징수율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1.5%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1.5%		
변경전			변경후																																																						
지상파	<기본징수율>		지상파 및 중 편 보 도 PP	<기본징수율>																																																					
	방송광고매출액	징수율 구간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원 초과	5.0% 초과 6.0% 이하		1조원 초과	[5.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원)÷1조원] × 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초과 5.0%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0억원÷9,000억원) × 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초과 4.0%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0억원÷500억원) × 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초과 3.0%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억원÷40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초과 2.0%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5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이하	1.0% 이하		50억원 이하	[0.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 × 조정계수]																																																				
	<최종징수율>																																																								
	구분	최종징수율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1.5%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1.5%																																																								

- 2025년 환급액 : 0건
- 2024년 환급액 : 0건
- 2023년 환급액 : 1건, 123백만원
-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O), 부()
 - 공개방법 :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고, 주요사항을 홈페이지(www.kmcc.go.kr)에 공개
- 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 고지 내용 :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개별통지, 매년 8월 31일까지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O)
 - 근거 법령 및 규정 내용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하기 위해 계속 존속 필요
- ⑮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년 8월 31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납부기한	매년 9월 30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납부기한 연장	-	-
분할납부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2회로 분납 가능 (납부기한 : 9월 30일[1차], 11월 30일[2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2,174	2,662,010	2,161	2,660,622	13	1,388	99.9
2025	138	156,316	136	156,756	2	△440	100.3
2024	140	159,388	129	157,560	11	1,828	98.9
2023	143	186,580	143	186,580	-	-	100
2022	144	192,639	144	192,639	-	-	100
2021	143	181,414	143	181,414	-	-	100
2020	145	178,706	145	178,706	-	-	100
2019	149	179,204	149	179,204	-	-	100
2018	153	186,681	153	186,681	-	-	100
2017	148	181,757	148	181,757	-	-	100
2016 이전	871	1,059,325	871	1,059,325	-	-	100

주1) : ('24년 차이금액) '24. 12. 31. 기준으로 '24년 부과분 체납(11건, 1,828,050,130원) 발생

('25년 차이금액) '25. 2. 28. 기준으로 '24년 부과분 체납(11건, 1,828,050,130원) 완납

'25. 12. 31. 기준으로 '25년분 체납(13건, 1,388,979,320원)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25년	2024년까지 누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56,756	2,503,866	'11년부터 누계
합계	156,756	2,503,866	

iii - i) 202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실적(A)	2025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 획	실적(B)		
합 계	157,560	152,608	156,756	△804 (△0.5)	○ 매출액 변동 등에 따른 전체 분담금 감소
지상파방송 사업자	24,227	20,949	19,974	△4,253 (△17.6)	○ 방송광고매출액 감소에 따른 분담금 감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사용 사업자	8,378	7,177	7,078	△1,300 (△15.5)	○ 방송광고매출액 감소에 따른 분담금 감소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23,875	23,516	22,891	△984 (△4.1)	○ 방송서비스매출액 감소 및 채납액 발생에 따른 분담금 감소
위성방송 사업자	7,380	7,009	7,113	△267 (△3.6)	○ 방송서비스매출액 감소에 따른 분담금 감소
홈쇼핑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18,591	16,655	23,525	4,934 (26.5)	○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5,109	77,302	76,175	1,066 (1.4)	○ 방송서비스매출액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

iii - ii)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 없음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iv) 부담금의 체납현황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2023년	2024년 (A)	2025년 (B)	증감(B-A) (%)	주요 체납 사유 및 징수 계획
합 계	-	1,828.05	1,388.979	-24	○ (체납 사유) 사업자 재정악화에 따른 현금 보유량 부족 ○ (징수 계획) '26.5월말 까지 전액 징수를 위해 매월 독촉장 발급 등의 행정절차 추진

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5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156,756	
국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00	156,7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7.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8.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9.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0.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2.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3.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4.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5.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8.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9.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한 융자 및 투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ii)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4실적	'25실적	항 목	'24실적	'25실적
계	9,786	8,180	계	9,786	8,180
○ 방송사분담금	1,576	1,568	○ 사 업	9,000	7,368
○ 주파수할당대가	4,208	4,082	- 콘텐츠방송	1,428	737
○ 정부내부수입	3,433	1,873	- 산업육성		
○ 기타수입	280	252	- 정보통신방송	153	130
○ 재산수입	101	71	- 국제협력		
○ 여유자금 회수	188	334	- 정보통신방송	103	69
			- 기반조성		
			- 인터넷융합산업	281	197
			- 정보통신융합	3,046	3,012
			- 산업		
			- 통신정책지원	160	150
			- 전파활용방송	181	143
			- 서비스산업		
			- 인공지능데이터	1,508	859
			- 진흥		
			- 행복한방송	1,791	1,727
			- 통신환경조성		
			- 이용자보호	32	32
			- 및 공정경쟁		
			- 안전한인터넷	213	205
			- 활용기반구축		
			- 연구개발기획	104	107
			- 평가		
			○ 기금운영비	42	40
			○ 기 타	744	772
			- 정부내부지출	410	493
			- 여유자금운용	334	279

다.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이행실적

부담금명	평가연도	주요 내용	'25년 이행실적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24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부 록]

- 개별 부담금 개요
- 부처별 부담금 현황

개별 부담금 개요

< 개별 부담금 개요 >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금융위원회			
1.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1987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 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의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 조성	한국주택금융공사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971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 4조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조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법 제56조 제3항 (국민주택기금, 은행, 신탁, 농협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출연요율× 해당월 일수÷해당 연도 일수 • 금융기관 대출금: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출연요율× 해당월 일수÷ 해당 연도 일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출연요율: 0.01 ~ 0.30%	한국주택금융 공사	중앙정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100%)	893,193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지역수협, 지역산림조합	• 농협은행, 수협은행: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0.27%× 대상월 일수÷대상 연간일수 • 지역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0.013%× 대상월 일수÷대상 연간일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앙정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0%)	219,246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의 조성	신용보증기금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1971년)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대한 연구 및 계몽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2002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제4, 5항	우체국 금융의 공적자금 상환 분담	금융위원회
6.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 (2002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공적자금 상환재원 조달	예금보험공사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법 제2조 제3호 금융회사 등 (은행, 신탁업자, 농·수협은행 등)	• 매월말 출연기준 대출금 평균 $\times$ (연율 0.225% $\pm$ 차등요율) $\times$ 해당일수/ 365	신용보증기금	중앙정부: 신용보증기금 (100%)	1,302,370
한국화재보험협회 12개 사원사	• {(각 손해보험사 실적비율 $\times$ 70%)+ (1/12 $\times$ 30%)} $\times$ 방재활동협회비 총액	한국화재보험 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화재보험 협회 (100%)	23,047
우체국예금· 보험특별회계	• 우체국예금: 전년도평균잔액 $\times$ 0.1% • 우체국보험: 전년도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과의 산술평균금액 $\times$ 0.1%	금융위원회	중앙정부: 공적자금상환 기금(100%)	115,961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회사)	• 은행: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times$ 0.1% $\times$ 1/4 • 종합금융, 신용협동 조합 등: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times$ 0.1% •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times$ 0.1%	예금보험공사	중앙정부: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 (100%)	2,689,339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7.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 출연금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한국주택금융공사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가계대출 등을 통해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법 제2조 제8호의2에 의한 대출금을 보유한 금융기관 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	•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1호관련)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출연요율× 해당월의 일수/해당 연도 일수 •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관련) • 출연기준 대출금 월중평균잔×출연요율× 해당월의 일수/해당 연도 일수×100분의 20 ※ 출연요율: 0.01~0.30%	한국주택금융 공사	중앙정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100%)	83,771
법 제47조 제2항 금융회사 (은행, 보험, 여신전문,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부과요율×해 당월의 일수/해당 연도 일수 ※ 부과요율: 1만분의 3 •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금액 월중 평균잔액×부과요율×해 당월의 일수/해당 연도 일수 ※ 부과요율: 0.5~1.5%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등: 서민금융진흥원 (100%)	439,573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재정경제부			
9.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001년)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	(재)연초생산안정화 재단
10. 외환건전성 부담금 (2011년)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3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	기획재정부
교육부			
11. 학교용지부담금 (199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시·도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비용부담금 (1996년)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 2항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국내 담배제조업자	• 궐련 20개비당×5원	(재)연초생산 안정화재단	공공기관 등: (재)연초생산 안정화재단 (100%)	12,806
비예금성외화 부채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 증권· 보험·여전업자	• 부과대상 부채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공제액)×부과요율 ※ 부과요율: 0.1%	한국은행	중앙정부: 외국환평형기금 (100%)	127,504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자 (300세대 이상 규모)	• 공동주택: 분양가격×0.4% • 단독주택: 토지분양가격×1.4%	시·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340,414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한국수력 원자력(주))	전전년도 원자력발전량 (kWh)×1.2원	한국연구재단	중앙정부: 원자력기금 (100%)	216,525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외교부			
13. 국제교류기여금 (1991년)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제16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	한국국제교류재단
행정안전부			
1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1949년)	지방자치법 제155조	자치단체 공공시설 설치· 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15. 출국납부금 (1997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	문화체육관광부
16.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994년)	관광진흥법 제30조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자	※ 부담금(국내/국외) · 10년 여권 (12,000원/\$12) · 5년 여권 (9,000원/\$9)	한국국제교류 재단	중앙정부: 국제교류기금 (100%)	49,565
공공시설 수익자 (급수공사 신청자)	• 급수관 구경별 산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7,259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 1인당 1만원 (선박 이용시 1천원)	문화체육관광부 (부과·징수대행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산·인천항만 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 기금(100%)	262,445
카지노사업자	• 연간 총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1~10%)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 기금(100%)	271,805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17.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2007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영화진흥위원회
18.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2012년)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 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9. 농지보전부담금 (1973년)	농지법 제38조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
20.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 22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 구조의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1. 양곡수입이익금 (1994년)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농산물 가격안정,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영화상영권 입장 관람객	• 입장권 단가÷1.03×3%	영화진흥위원회	중앙정부: 영화발전기금 (100%)	22,449
사행산업사업자 (외국인 카지노 제외)	• 사행산업사업자별 연간 매출액×3.5/1000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중앙정부: 국민체육진흥 기금(100%)	25,735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상한금액: 5만원/m ²)	농림축산식품부 사·도 및 사·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정부: 농지관리기금 광역시·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887,666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 관세율차해당액 × 환율 × 납입비율(%) ※ 관세율차해당액 = 수입단가 × TRQ물량 × 관세율차(%)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중앙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100%)	85,641
(시판용 쌀) 양곡 수입자, (콩, 감자 등)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 (시판용 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 등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콩, 감자 등) 수입차익금의 범위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중앙정부: (시판용 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00%) (콩, 감자 등) 농산물가격 안정기금(100%)	46,830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22.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납부금 (1995년)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촉진·유통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인삼 산업 진흥	농림축산식품부
23. 대체초지조성비 (1991년)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시·군·구
24. 축산물 수입이익금 (1977년)	축산법 제45조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25. 농산물 수입이익금 (1994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 등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수입차익금의 범위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앙정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100%)	-
초지를 전용하는 자	• (초지조성단가+3년간 초지관리비)×전용면적 ※ 징수율: 1만㎡당 납입기준액(매년 농식품부 고시)	농협경제제주	중앙정부: 축산발전기금 (100%)	2,469
축산물 수입자	• (수입권 구매) 구매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외화획득용) 수입금액×2%×환율	농협경제제주	중앙정부: 축산발전기금 (100%)	3,069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 수입차익금의 범위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앙정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100%)	26,134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산업통상부			
26.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994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	산업통상부
27.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	산업통상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16원/ℓ - 천연가스: 발전용 3,800원/톤, 발전용 외 24,242원/톤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36원/ℓ - 부탄*: 62,283원/톤 ※ ‘22.5.1.~12.31. : 43,600원/톤	한국석유공사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100%)	1,210,180
광해방지의무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해방지사업: 총사업비×자부담율 (20~40%) • 산림 또는 토지복구 사업: 복구비 예치 통지액× 광종별 효율(30~60%) ÷(잔여) 개발연수	한국광해광업 공단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100%)	13,373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28.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1991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 규제 및 대체 물질의 개발과 이용 촉진	산업통상부
29. 안전관리부담금 (1996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	산업통상부
30.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994년)	광업법 제87조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 지원	-
보건복지부			
31.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금연교육, 흡연피해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업자	• (제1종) 제조업자의 판매량 또는 수입업자의 수입량×클로로디플루 오르메탄의 공장도가격 (2,557원)×오존파괴지수 (0.1~10.0)×종류별 부담률(3~30%) • (제2종) 제조업자의 판매량 또는 수입업자의 수입량×1,1,1,2-테트라 플루오로에탄의 수입 가격(4,000원)×지구온 난화지수(53~14,800)× 부담률(0.00074%)	한국석유화학 협회	중앙정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100%)	1,648
LPG 제조·판매자 및 LPG·LNG 수입자	• LPG(액화석유가스): 징수물량(kg)×4.5원 • LNG(액화천연가스): 징수물량(m³)×3.9원	한국석유공사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100%)	130,854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 없음 * 시행령 미제정	-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100%)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 궐련 20개비당 841원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1ml당 525원 등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국민건강증진 기금(100%)	2,877,124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2. 배출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1981년) - 환경오염시설법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재산을 보호하고 생태계 피해 방지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청, 시·도지사
33.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1991년)	수도법 제71조	수도시설의 유지 등을 위한 수도공사 및 손괴 원인 제공자에 비용 부과	시·도 및 시·군·구
34. 배출부과금 - 물환경보전법 (1981년) - 환경오염시설법 (2015년)	물환경보전법 제4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방지 및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35. 생태계보전 부담금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 및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	시·도
36. 폐기물부담금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 방지	기후에너지환경부
37. 재활용부과금 -자원재활용법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기준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 오염물질 배출량에 1kg당 부과금액, 지역별·위반횟수별 계수 등 적용	유역·지방환경 청, 수도권청, 시·도지사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34,149
당해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각 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시·도 및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상수도특별 회계(21.5%), 기초자치단체: 상수도특별 회계(78.5%)	370,307
기준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 오염물질 배출량에 1kg당 부과금액, 지역별·위반횟수별 계수 등 적용	시·도 및 지방환경청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8,247
개발사업자	•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시·도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59,407
부과대상 제품· 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도소매자 또는 수입업자	•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 ×부과요율·금액 ×부담금 산정지수	한국환경공단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224,747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 조합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재활용 단위비용)+ 가산금액	한국환경공단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25,419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38.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1966년)	하수도법 제61조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시·도 및 시·군·구
39.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법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시·군 등 수도사업자
40. 환경개선부담금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환경오염 저감 유도	시·도·특례시(시·군·구)
4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992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42.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법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시·군 등 수도사업자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하수를 발생시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도 및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하수도특별회계 (30.3%)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9.7%)	807,136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부과요율 (170원/톤)	시·군 등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한강수계관리 기금(100%)	481,943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지역계수	시·도·특례시(시· 군·구)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143,080
공공폐수처리시설 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소요사업비 전액 (단, 수도권은 50%, 접경지역 및 수도권 외 지역은 70% 국고보조)	환경부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2,666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부과요율 (170원/톤)	시·군 등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금강수계관리 기금(100%)	130,410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43.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법 (2002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시·군 등 수도사업자
44.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2002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시·군 등 수도사업자
45.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
46.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 제31, 33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 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부과요율 (170원/톤)	시·군 등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낙동강수계관리 기금(100%)	224,719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부과요율 (170원/톤)	시·군 등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0%)	94,57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사업공제 조합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재활용 기준비용)+ 가산금액·감정금액	한국환경공단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1,453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장 (단,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인 사업주	• 일반분담금: 보수총액×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 특별분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5.5% 금액×허가량 누계 비율	일반분담금: 근로복지공단 (건설업),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반사업장) 특별분담금: 환경부	중앙정부: 석면피해구제 기금(100%)	39,103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47.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2011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에게 회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
48. 지하수이용 부담금 (2005년)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시·군·구
49. 폐기물처분 부담금 (2016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여 처분하는 경우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
50.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1984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전기 미공급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촌 생산력 및 농어민 생활 향상	시·도
5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000년)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안전 확보, 보편적 전력공급 등 구현	기후에너지환경부
5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재활용사업공제 조합	• (회수의무 미이행량× 회수 기준비용)+ 가산금액·감정금액	한국환경공단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1,422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57.6%) , 일반회계(42.4%)	12,953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자 (지자체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부과요율(원/kg)× 산정지수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 회계(100%)	185,077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대상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	• 정액(200,000원)	한국전력공사	중앙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100%)	-
전기사용자	• 전기요금×2.7%	한국전력공사	중앙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100%)	2,766,975
원자력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주))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경수로 319,814천원, 중수로 13,202천원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중앙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100%)	772,956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고용노동부			
53. 사업주 부담금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	고용노동부
54. 장애인 고용부담금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및 제33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모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5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국토교통부
56. 개발부담금 (198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 4조	토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 임금총액×부담금 비율(0.6/1,000)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앙정부: 임금채권보장 기금(100%)	432,153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	• 미달장애인수× 부담기초액×개월수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중앙정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0%)	886,222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제지역 개발자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과 건축물 건축허가면적× 지가차액×부과요율 • 해제대상 지역의 제공미터당 개별공시 지가 평균치의 20/100	시·군·구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100%)	137,969
개발사업 시행자	• 개발이익(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부담률 (25% 또는 20%)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50%)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50%)	448,360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5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001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시·도
58.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1961년)	도로법 제91조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	국토교통부, 시·군·구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개발사업 시행자	• 택지개발사업·도시 개발·대지조성사업: [표준개발비×부과율 ×개발면적×(용적율 /200)]-공제액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사업: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 주상복합건축사업: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합계)]-공제액	시·도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40%) 광역시자치단체: 지방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60%)	159,773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	각 지방 국토관리청, 광역시·도, 시·군·구	중앙정부: 교통시설특별 회계(100%) 기초자치단체: 기금 또는 일반회계 등(100%)	114,626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59.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2000년)	도시개발법 제5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또는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 시·도
60. 혼잡통행료 (1996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도심 승용차 진입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서울 대기질 개선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61. 교통유발부담금 (1990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 재원 확보	시·도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 시·도, 시·군·구 및 공공시설 관리자	• 개발계획 포함시: 설치비용×100% • 개발계획 미포함시: (공사비+조사비+ 설계비+보상비+ 기타비용)≤(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의 총사업비)×10% •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자: (해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조사·측량비+설 계비+관리비)×1/3	국토교통부, 시·도	광역자치단체: 기반시설특별 회계(100%)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100%)	20,100
교통혼잡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	• 해당 지자체의 조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2인 이하)에 대해 2,000원 부과)	서울시설공단	광역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100%)	5,874
도시교통정비지역 시설물의 소유자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과금×교통유발 계수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60.1%) 기초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24.8%) 일반회계(15.1%)	527,951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62.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법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 내 도로·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국토교통부
63. 과밀부담금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서울특별시
6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1977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자동차사고 인한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 지원	국토교통부
65. 소음부담금 (1992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존치시설의 소유자	• 시설부담금 단가× 존치면적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100%)	-
대형 건축물을 건축(신·증축 및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표준건축비의 5~10%	서울특별시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50%)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회계(25%), 도시재생 특별회계(25%)	63,892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1.0%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00%)	14,120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운송 사업자 등	• 착륙료×부담률 (10~25%)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중앙정부: 교통시설특별 회계(100%)	8,100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66. 재건축부담금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도모	국토교통부
67.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0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증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나 필요한 용지의 확보	시·도 및 시·군·구
68.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예정지구 내 존치 건물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69.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 (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 및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국토교통부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또는 신탁업자	- 초과이익*×부과요율 (10~50%) *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 격상승분+개발비용)	시·군·구	중앙정부: 주택도시기금 (50%) 광역자치단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30%) 기초자치단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20%)	10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용지비용*)× (건축연면적-200)× 부담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 유발계수 ×개별공시지가 부담구역별 평균	시·도 및 시·군·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부담 구역 특별회계 (100%)	264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시설물 소유자	- 시설부담금 단가*× (존치부지면적+ 취득공급부지면적) * 표준시설비용×용도별 가중치×부담률(20%)× 지역감면율(50%)	택지개발사업시 행자	공공기관 등: 한국토지주택 공사(100%)	-
플랫폼운송사업자	- 해당분기 전체운송 매출액×부담률(%) - 해당분기 전체 운행 횟수×부담률(800원) - 허가대수 × 3개월 × 부담률(40만원)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교통시설특별 회계*(100%) *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개정 후 세입 포함 예정	71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해양수산부			
70. 수산물 구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2007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FTA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 등 지원	해양수산부
71. 수산자원조성금 (2002년)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시·도
72. 방제분담금 (199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법정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관리 재원 확보	해양환경공단
73.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1조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에 사용	해양수산부, 시·도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수입권을 부여 받은 자	• 낙찰물량(ton)×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단위 톤당 금액(원)	수협중앙회	중앙정부: 수산발전기금 (100%)	60,212
어업인 등 수혜자	• 업태별 헥타르(ha)당, 총톤 수당, 건당 등으로 부과	시·도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27.5%)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72.5%)	216
유조선 및 기름저장 시설 소유자,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소유자	• 기름저장시설: 100리터 당 8.84원, 경유 2.48원 • 유조선: 내항선 톤당 2.74원, 외항선 톤당 14.76원 • 유조선 이외 선박: 내항선 톤당 1.41원, 외항선 톤당 7.6원	해양환경공단	공공기관 등: 해양환경공단 (100%)	26,252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	• 훼손 단위면적(m ²)당 300원×지역계수(2~40)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중앙정부: 수산발전기금 (100%)	2,659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7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2007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 41조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육성	해양수산부
75.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2001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폐기물 해양 배출량 감소 유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중소벤처기업부			
76.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986년)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기술보증기금
77.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35조의6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 평균판매가격× 판매량×0.5%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 하는 자: 평균판매가격× 판매량×5.3%	해양수산부	중앙정부: 수산발전기금 (100%)	-
폐기물해양배출 업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 폐기물(또는 오염물질) 해양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부과계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중앙정부: 수산발전기금 (100%)	506
신기술사업금융 업자, 금융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3/1,000 • 금융회사: 융자금 월중 평균잔액 ×(13.5/10,000±차등요율) ±금융회사 평가 순위에 따른 가감액	기술보증기금	중앙정부: 기술보증기금 (100%)	762,849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탁업자 등	• 출연대상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부담률× 일수/365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공공기관 등: 지역신용보증 재단(6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40%)	408,348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산림청			
78.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 납부이행보증금 (1990년)	산지관리법 제19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	산림청
79. 임산물 수입이익금 (199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임업· 산림발전 재원으로 활용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80. 원자력안전 관리부담금 (1986년)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제1항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 제1항	방사선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물리적 방호체계 및 방사능 재난 예방체계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 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1000)	산림청	중앙정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100%)	165,244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수입자 결정(낙찰)시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에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산림조합중앙회	중앙정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100%)	3,006
원자력관계 사업자 등	- 발전용원자로사업자 등: 기준단가×업무별 전년도 업무량(MD) - 피폭관리: 고시금액×종사자수 - 수출입요건확인: 고시금액×수출입금액의 가액 -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고시금액×인원수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중앙정부: 원자력기금 (100%)	124,373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8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2014년)	약사법 제86조의2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	식약처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 기본부담금: 의약품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액등 × 품목별 계수* × 부담금 부과요율 * 품목별 계수 <table><tr><td>가</td><td>일반의약품 : 0.1</td></tr><tr><td>나</td><td>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td></tr><tr><td>다</td><td>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td></tr></table> • 추가부담금: 피해구제급여액 x 품목별 계수* x 100분의 25 * 품목별 계수 <table><tr><td>1</td><td>「약사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td></tr><tr><td>2</td><td>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td></tr></table>	가	일반의약품 : 0.1	나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	다	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	1	「약사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	2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공공기관 등: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100%)	4,720
가	일반의약품 : 0.1													
나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													
다	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													
1	「약사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이 같은 기간 지급된 피해구제급여 총액의 10% 초과하는 의약품 : 1													
2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 0													

부담금 (제정연도)	근거 조항	부과 목적	부과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2.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 (2010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지원, 공익 목적의 방송통신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위 : 백만원)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징수 기관	귀속 주체	징수액 (‘25년)
방송사업자	• 종합유선·위성·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징수율 ※ 징수율: 1.5% •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징수율 ※ 징수율: 13%(TV), 10%(데이터) •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징수율 ※ 징수율: 최대 4.1%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앙정부: 방송통신발전 기금 (100%)	156,756

부처별 부담금 현황

부처별 부담금 현황 (2025년 12월)

부처별(총 82개)	부담금명
기후에너지환경부 (21개)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등),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자원재활용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환경개선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사후핵연료관리부담금
국토교통부 (15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도로법),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과밀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소음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산업통상부 (5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금융위원회 (8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문화체육관광부 (4개)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해양수산부 (6개)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농림축산식품부 (7개)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양곡수입이익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농산물수입이익금
재정경제부(2개)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외환전전성부담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외교부(1개)	국제교류기여금
고용노동부(2개)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소벤처기업부(2개)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산림청(2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수입이익금
교육부(1개)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안전부(1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보건복지부(1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식품의약품안전처(1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원자력안전위원회(1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1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6년 5월 일 인쇄

2026년 5월 일 발행

발행처 기 획 예 산 처

TEL : (044) 214-3231

인쇄처 (주) 삼일기획

TEL : (044) 866-3011~4
